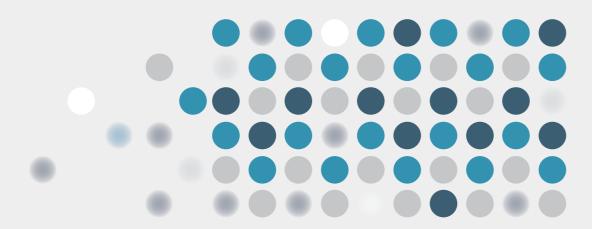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Studies on Child Abuse and its Victims .

Trends and Legal Policies



ISBN 978-89-7366-559-4

연구총서 15-AA-08

아

히대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AA-08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Studies on Child Abuse and its Victims : Trends and Legal Policies

강은영 | 김희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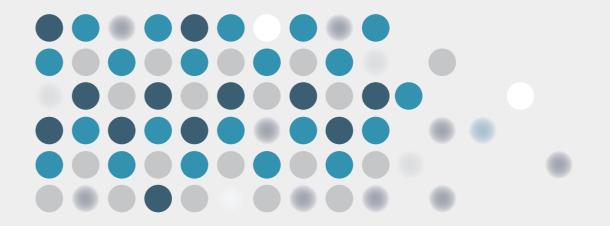
조소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년인턴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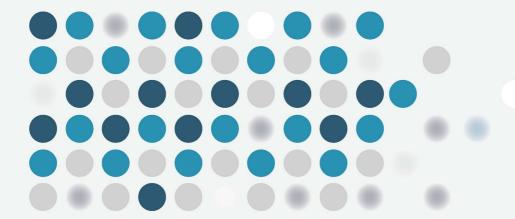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Studies on Child Abuse and its Victims : Trends and Legal Policies

강은영 | 김희균





발간사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훈육이라는 명분하에 아동을 체벌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아동학대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사실입니다.

최근 경제위기, 가족해체, 부모의 사회적 고립,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아동보호기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후반 이후, 충격적인 학대 및 방임 사례들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2010년 이후에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 울산 초등생 구타사망사건과 서울 골프채 체벌 사망 사건, 인천 소금밥 학대 사망사건은 대표적인예라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12월 3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였고, 2014년 2월에는 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아동과 부모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아동학대의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통한예방 및 재발방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및지역사회 유관기관을 통한 조기발견 활성화,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사후관리 강화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법 시행 초기부터 현장에서의 업무혼란과 업무과중 등의 문제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으며, 특히 2014년 4월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2015년 일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사망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발생실태와 처벌현황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는 상황이며,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발생특성과 처벌현황, 가해자 피해자 특성 등에 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개선 방안을 이론적 및 실천적으로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법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연구 결과가 형사사법절차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현장에서 기초자료로 잘 활용되고, 나아가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사법적 민감성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년 동안 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책임자 강은영 연구위원과 조소연, 유경희, 황정미, 김민지 인턴연구원, 그리고 외부 연구진 이신 김희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 특히 바쁜 업무 중에도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21개 검찰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加 烈 乾

목 차

국문요약	···· 1
제1장 연구개요 (강은영)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9
1. 연구의 필요성	29
2. 연구 목적	···· 31
제2절 연구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 32
제2장 아동학대의 현황과 쟁점 (강은영·황정미) ·······	- 35
제1절 아동학대의 발생현황	··· 37
1. 공식통계상 아동학대 발생현황	37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발생통계 현황	···· 40
3.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상의 가정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58
제2절 아동학대 관련 쟁점	63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63
2. 아동학대의 원인	66
3. 학대피해아동 특성	69
4. 학대 가해자 특성	···· 72
5. 가정내 학대	···· 76
6. 중복학대·복합학대·반복학대 ·····	···· 79
7. 시설내 학대	···· 84
8. 아동학대샄인	88

제3장 아동학대의 일반적 특성 (강은영)	···· 95
제1절 조사방법	97
1.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	97
2. 신문기사 분석	102
제2절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 결과 나타난 아동학대의 일반적 특성 …	····· 103
1. 아동학대의 처분 특성	103
2. 아동학대 가해자 특성	113
3. 학대피해아동 특성	120
4. 아동학대행위 특성	129
5.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142
제3절 분석결과 요약	····· 143
제4장 아동학대의 유형별 특성 (강은영)	·· 153
제1절 가정내 아동학대와 시설내 아동학대	156
1. 처분 특성 비교	156
2. 가해자 특성 비교	166
3. 피해자 특성 비교	172
4. 범행행위 특성 비교	177
5.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비교	
제2절 학령전 아동학대, 학령기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	····· 184
1. 처분 특성 비교	194
2. 가해자 특성 비교	
3. 피해자 특성 비교	
4. 범행 특성 비교	
5.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비교	
제3절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	
1. 처분 특성 비교	
2. 가해자 특성 비교	····· 217

3. 피해자 특성 비교	221
4. 범행 특성 비교	225
5.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비교	231
제4절 친부모 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	232
1. 처분 특성 비교	
2. 가해자 특성 비교	
3. 피해자 특성 비교	
4. 범행 특성 비교	
5.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비교	
제5절 아동학대살인	
1. 아동학대살인사건 신문보도현황	
2. 아동학대살인의 일반적 특성	
3. 아동학대살인의 유형별 특성	
제6절 분석결과 요약	
제5장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김희균)	307
제1절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09
제1절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	309 310
제1절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 1. 아동보호제도의 역사 ······ 2.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	309 310 323
제1절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09 310 323 338
제1절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09 310 323 338 347
제1절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09 310 323 338 347
제1절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09 310 323 338 347 347 348
제1절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09310323338347348
제1절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제1절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09310323347347348358363
제1절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09310323338347347348358364

제4절 일본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70
1. 아동학대방지법	
2. 아동학대의 정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 조기발견제도	
5. 신고 후의 조치	
6. 기타: 지역네트워크	
7. 결론	
제5절 우리나라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1. 아동복지법 ····································	
2. 아동학대범죄의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3. 실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제6장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개선방안 (강은영·김희균) ····································	391
제1절 아동학대 관련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393
1. 『아동복지법』에서『아동학대처벌법』으로	. 393
2. 학대피해아동 지원문제	. 399
3. 위탁양육과 입양	
4. 가중처벌의 필요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원회 전환	
제2절 아동학대 관련 영역별 개선방안	
1. 아동학대 예방 강화	
2.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활성화	
3.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412
참고문헌	1 19
Abstract	427
[부록]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지 ···································	431

표 차례

(표 2-1) 검찰청별 아동복지법 및 특례법위반 사건수(2011-2015) ·······37
〈표 2-2〉아동복지법 및 특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구형 현황(2010-2015) ·············39
〈표 2-3〉 연도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아동보호전문기관)
〈표 2-4〉아동특성별 자녀학대 발생률(2007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
$\langle \mathtt{H} \ 2-5 angle$ 아동특성 및 학대유형별 아동학대 발생률 $(2007\ \mathtt{T}\ \mathtt{T})$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 \cdots 59$
〈표 2-6〉 학대유형별 아동학대 발생률(2010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표 2-7〉학생 대상 아동학대 발생실태(2010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61
〈표 2-8〉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2013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
〈표 2-9〉행위자 및 행위유형별 자녀폭력 발생률(2013) ····································
〈표 3-1〉해당 죄명
(표 3-2) 기록조사지의 구성······99
(표 3-3) 검찰청별 조사대상 사건수······101
(표 3-4) 신문기사 분석의 변인 구성······103
(표 3-5) 죄명104
〈표 3-6〉 경합여부 및 이종경합 죄명 ·······105
〈표 3-7〉검거 경위······105
(표 3-8) 최초 신고자····································
〈표 3-9〉구속 여부 및 검찰 처리현황······109
〈표 3-10〉구형량110
(표 3-11) 최종심 유형 ························111
〈표 3-12〉 변호인 유무 및 유형 ·······111
〈표 3-13〉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 ······ 112
〈표 3-14〉고소취하 여부와 합의 여부······112
(표 3-15)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114
(표 3-16) 가해자의 주거특성 ·······116
(표 3-17) 가해자의 전과 유무와 전과 횟수······117
〈표 3-18〉가해자의 동종 전과 및 이종전과 수 ·······118
〈표 3-19〉가해자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여부······119
(표 3-20) 가해자의 적응·행동 특성 ······120
(표 3-21)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21
〈표 3-22〉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간의 관계 ·······122
〈표 3-23〉 피해자 입장에서의 가해자와의 관계(중복)····································

〈표 3-24〉가해자-피해자 동거여부	·· 125
(표 3-25) 피해자의 가족 특성······	·· 126
(표 3-26) 피해자의 사회적·지리적 고립 여부 ······	·· 127
〈표 3-27〉 피해자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여부	·· 127
(표 3-28) 피해자의 적응·행동 특성	·· 128
(표 3-29) 범행 장소	·· 130
(표 3-30) 피해 기간	·· 130
〈표 3-31〉 학대 빈도······	·· 131
(표 3-32) 공범 관련 특성······	·· 132
〈표 3-33〉복합학대 여부 및 학대유형 ····································	·· 133
〈표 3-34〉유형별 학대행위······	·· 135
(표 3-35) 신체적 학대의 학대도구······	·· 137
(표 3-36) 학대 동기·····	·· 138
〈표 3-37〉학대 당시 가해자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 139
(표 3-38) 학대 결과 및 후유증 유형 ·····	·· 139
〈표 3-39〉 구체적인 학대후유증	·· 140
〈표 3-40〉 학대 가해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 142
〈표 3-41〉학대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 143
〈표 4-1〉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죄명 비교	·· 157
〈표 4-2〉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경합여부 비교	·· 158
〈표 4-3〉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검거경위 비교	·· 159
〈표 4-4〉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최초신고자 비교	·· 160
〈표 4-5〉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구속여부 비교	·· 161
〈표 4-6〉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검찰처분결과 비교	·· 161
〈표 4-7〉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구형량 비교	·· 162
〈표 4-8〉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최종심유형 비교	
〈표 4-9〉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변호인유무 비교	·· 164
〈표 4-10〉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 비교	·· 165
〈표 4-11〉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고소취하 및 합의 여부 비교	·· 166
〈표 4-12〉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 168
〈표 4-13〉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거주지역 및 주거안정성 비교 …	169
〈표 4-14〉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의 전과특성 비교	·· 170
〈표 4-15〉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171
〈표 4-16〉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173

王〉	4-17>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간의 관계 비교 … 173
狂〉	4-18>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가해자 동거여부 비교 174
狂〉	4-19>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가해자 동거여부 비교 174
狂〉	4-20>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 가족유형 및 동거가족수 비교 … 175
王〉	4-21>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의 사회적·지리적 고립여부 비교 ·· 175
狂〉	4-22>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 176
狂〉	4-23>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학대장소 비교177
狂〉	4-24>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학대피해기간 비교178
莊〉	4-25>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학대빈도 비교178
狂〉	4-26>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공범 특성 비교179
莊〉	4-27>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학대유형 비교180
狂〉	4-28>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학대동기 비교181
狂〉	4-29>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비교 181
狂〉	4-30>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학대피해아동 후유증 비교182
狂〉	4-31>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184
狂〉	4-32>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184
狂〉	4-33>	학령전 아동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죄명 비교 185
狂〉	4-34>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경합여부 비교 … 185
狂〉	4-36>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최초신고자 비교 … 187
狂〉	4-37>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구속여부
		비교188
狂〉	4-38>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검찰처분결과 비교189
狂〉	4-39>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구형량 비교 189
狂〉	4-40>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최종심유형 비교 … 190
狂〉	4-41>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변호인유무 비교 … 191
狂〉	4-42>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태도 비교 192
王〉	4-43>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고소취하 및
		합의 여부 비교
狂〉	4-44>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사회・
		인구학적 특성 비교194
狂〉	4-45>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거주지역
		및 주거안정성 비교196
王〉	4-46>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전과특성 비교 … 196

王〉	4-47>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 198
王〉	4-48>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199
王〉	4-49>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간의 관계 비교	199
王〉	4-50>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피해자	
		관계 비교	200
王〉	4-51>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가해자	
		동거여부 비교	201
王〉	4-52>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 가족유형	
		및 동거가족수 비교	202
王〉	4-53>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의 사회적	•
		지리적 고립여부 비교	202
压〉	4-54>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	203
压〉	4-55>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학대장소 비교 \cdots	204
压〉	4-56>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학대피해기간	
		비교	· 204
王〉	4-57>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학대빈도 비교 …	205
莊〉	4-58>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공범 특성 비교·	206
莊〉	4-59>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학대유형 비교 …	207
王〉	4-60>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학대동기 비교 …	207
王〉	4-61>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비교	. 208
王〉	4-62>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학대피해아동	
		후유증 비교	209
王〉	4-63>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 210
莊〉	4-64>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 210
班〉	4-65>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죄명 비교	211
班〉	4-66>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경합여부 비교	211
⟨₩	4-67>	가정내 중복한대와 비중복한대의 검거경위 비교	. 212

廷〉	4-68>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최초신고자 비교213
莊〉	4-69>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구속여부 비교213
莊〉	4-70>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검찰처분결과 비교214
王〉	4-71>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구형량 비교214
班〉	4-72>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최종심유형 비교215
班〉	4-73>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변호인유무 비교216
班〉	4-74>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태도 비교217
王〉	4-75>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고소취하 및 합의 여부 비교 217
班〉	4-76>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218
班〉	4-77>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거주지역 및 주거안정성 비교 \cdots 220
班〉	4-78>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전과특성 비교220
班〉	4-79>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班〉	4-80>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222
莊〉	4-81>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간의 관계
		비교
莊〉	4-82>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피해자 관계 비교 223
莊〉	4-83>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가해자 동거여부 비교 224
班〉	4-84>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 가족유형 및 동거가족수
		비교
班〉	4-85>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의 사회적·지리적 고립여부
		비교
班〉	4-86>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班〉	4-87>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학대장소 비교226
班〉	4-88>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학대피해기간 비교226
班〉	4-89>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학대빈도 비교227
班〉	4-90>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공범 특성 비교227
班〉	4-91>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학대유형 비교 228
莊〉	4-92>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학대동기 비교229
莊〉	4-93>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비교 \cdots 230
莊〉	4-94>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학대피해아동 후유증 비교230
莊〉	4-95>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231
任〉	4-96>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231

狂〉	4-97>	친부모 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죄명 비교 232
王〉	4-98>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경합여부 비교 233
狂〉	4-99>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검거경위 비교 233
狂〉	4-100>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최초신고자 비교234
王〉	4-101>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구속여부 비교 235
狂〉	4-102>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검찰처분결과 비교 235
狂〉	4-103>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구형량 비교235
狂〉	4-104>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최종심유형 비교236
王〉	4-105>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변호인유무 비교237
狂〉	4-107>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고소취하 및 합의 여부 비교 238
王〉	4-108>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 239
狂〉	4-109>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거주지역 및 주거안정성
		비교
狂〉	4-110>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전과특성 비교241
狂〉	4-111>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狂〉	4-112>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 242
狂〉	4-113>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간의
		관계 비교243
狂〉	4-114>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가해자 동거여부 비교 … 244
王〉	4-115>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 가족유형 및 동거가족수
		비교
狂〉	4-116>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의 사회적·지리적 고립여부
		비교
狂〉	4-117>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狂〉	4-118>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학대장소 비교246
狂〉	4-119>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학대피해기간 비교246
狂〉	4-120>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학대빈도 비교246
狂〉	4-121>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공범 특성 비교247
王〉	4-122>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학대유형 비교248
王〉	4-123>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학대동기 비교248
狂〉	4-124>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비교249

〈표 4-125〉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학대피해아동 후유증 비교 249
$\langle \pm 4\text{-}126 \rangle$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cdots 250
$\langle \pm 4\text{-}127 \rangle$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cdots 250
〈표 4-128〉아동학대 살인사건 신문보도 현황·······252
(표 4-129)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신고자·······253
〈표 4-130〉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신고기관·······253
〈표 4-131〉아동학대 살인사건의 가해자 형량····································
〈표 4-132〉아동학대 살인사건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254
〈표 4-133〉아동학대 살인사건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256
〈표 4-134〉아동학대살인 사건의 가해자-피해자 관계(1)····································
〈표 4-135〉 아동학대살인 사건의 가해자-피해자 관계(2) ····································
(표 4-136) 아동학대살인 사건의 가해자-피해자 동거유무·······259
〈표 4-137〉아동학대살인 피해아동의 가 족 유형 ····································
〈표 4-138〉아동학대 살인사건의 학대장소······261
(표 4-139)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학대지속기간 ·······261
〈표 4-140〉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가해자 수 ···································
〈표 4-141〉아동학대 살인사건의 공범특성 ····································
(표 4-142)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학대유형 ····································
(표 4-143)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학대이유 ····································
(표 4-144)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학대행위유형 ·······265
(표 4-145)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학대도구 ······ 266
(표 4-146)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신체적 상처 유형 ·······267
〈표 4-147〉아동학대 살인사건의 사망사인 ··································
〈표 4-148〉아동학대 살인사건의 살인 은폐방법····································
〈표 4-149〉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신고자 비교 269
〈표 4-150〉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가해자 특성 비교 ······270
\langle 표 4 -151 \rangle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피해자 특성 비교271
〈표 4-152〉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가해자-피해자관계 비교 271
〈표 4-153〉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 동거여부 비교 ···································
〈표 4-154〉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가 족 유형 비교 ·······271
〈표 4-155〉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학대장소 비교 272
〈표 4-156〉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공범유무 비교 272
〈표 4-156〉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학대지속기간 비교 272
〈표 4-158〉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학대유형 비교 272

xii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狂〉	4-159>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신고자 비교 273
王〉	4-160>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가해자 특성 비교 273
王〉	4-161>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피해자 특성 비교 274
王〉	4-162>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동거여부 비교 275
莊〉	4-163>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기족유형 비교 275
王〉	4-164>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학대장소 비교 276
班〉	4-165>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학대지속기간 비교 276
莊〉	4-166>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공범유무 비교 276
⟨₩	4-167>	아동학대삭이사거의	가해자-피해자과계볔	학대유형 비교 276

그림 차례

[그림 2-1]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아동보호전문기관)4	1
[그림 2-2] 아동학대신고접수 전년대비 증가율(아동보호전문기관)4	1
[그림 2-3] 연도별 아동학대 재신고율(아동보호전문기관)4	2
[그림 2-4]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판정(아동보호전문기관)4	:3
[그림 2-5] 연도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4	4
[그림 2-6]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신고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4	:5
[그림 2-7] 아동학대 신고자 분포(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4	6
[그림 2-8] 아동학대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 분포(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 4	6
[그림 2-9] 아동학대 신고자 중 비신고의무자 분포(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4	:7
[그림2-10] 아동학대 유형(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7
[그림 2-11] 아동학대유형별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8
[그림 2-12] 아동학대 가해자-피해자 관계(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4	9
[그림 2-13] 아동학대 가해자-피해자 관계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4	9
[그림 2-14] 아동학대 가해자-피해자 동거여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5	0
[그림 2-15] 아동학대 가해자 성별(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5	0
[그림 2-16] 아동학대 가해자 성별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5	1
[그림 2-17] 아동학대 가해자 연령(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5	1
[그림 2-18] 아동학대 가해자 연령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5	2
[그림 2-19] 아동학대 가해자 직업(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5	2
[그림 2-20] 아동학대 가해자의 정신·심리적 특성(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5	3
[그림 2-21] 아동학대 피해자 성별(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5	4
[그림 2-22] 아동학대 피해자 성별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5	4
[그림 2-23] 아동학대 피해자 연령(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5	5
[그림 2-24] 아동학대 피해자 성별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5	5
[그림 2-25] 아동학대 피해자의 정신·심리적 특성(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5	6
[그림 2-26]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족형태(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5	7
[그림 2-27]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족형태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5	7
[그림 2-28] 학대피해아동가족의 수급권 대상여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5	8
[그림 2-29] 학대피해아동가족의 수급권 대상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5	8
[그림 4-1] 아동학대 살인사건 현황25	2
[그림 4-2] 아동학대살인 가해자 성별 추이 25	5

[그림	4-3]	아동학대살인	가해자	평균연령	추이	 255
[그림	4-4]	아동학대살인	피해자	성별 추이		 257
[그림	4-5]	아동학대살인	피해자	평균연령	추이	 257
[그림	4-6]	아동학대살인	의 구체?	적인 학대학	행위 .	 266

국문요약

제1장 연구개요

□ 연구필요성

- 최근 경제위기, 가족해체, 부모의 사회적 고립,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아동보호기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부모의 자녀학대 사망 사건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히 보도되면서 아동학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됨
- 아동학대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발생실태와 처벌현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학대피 해아동 보호법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발생특성과 처벌현황, 가해자 피해자 특성 등에 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이론적 및 실천적으로 개발하는데 있음
- 첫째,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발생 실태와 특성,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을 분석하고, 둘째, 신문기사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실태를 분석하며, 셋째, 외국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의 시사점을 검토하고, 넷째, 국내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되어 실시 혹은 실시 예정인법제도들을 검토함으로써, 다섯째,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아동학대 예방 대책,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대책, 학대피해아동 지원대책,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대책 등)을 제시하고자 함

제2장 아동학대의 현황과 쟁점

제1절 아동학대의 발생현황

□ 공식통계상 아동학대 발생현황

- 2010년에서 2015년 5월까지 발생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총 4,411건이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은 총 99건으로 이 둘을 합하면, 4510건에 이름
- 『아동복지법』위반사건의 19.68%는 구공판, 9.34%는 구약식, 10.7%는 기소유 예이며, 불기소 비율이 32.04%로 높은 편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사건은 구공판이 30.3%, 기소유예가 7.07%이며, 불기소는 10.10%임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발생통계 현황

- 최근 10년 동안(2004-2013)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수는 총 95,622건으로, 2004년 6,998건이 신고되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13,076건에 이름. 특히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4880건에서 10,857건으로 크게 증가. '재신고율'역시 7.6%에서 14.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우려할만한 수준
- '피해아동 발견율'이란 우리나라의 아동인구 대비 아동학대로 판정을 받은 사례의 비율로,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 피해아동수를 말하는데, 2004년 0.34이던 것이, 2013년에는 0.73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함
- 최근 10년 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의 68.0%는 비신고의무자가, 32.0%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로 접수된 사건이 훨씬 적음. 다만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음
- 학대유형은 중복학대(40%), 방임(34%), 정서적 학대(13%), 신체적 학대(8%), 성적 학대(4%), 유기(1%)의 순으로 많고, 최근 10년 동안 중복학대와 정서적 학대 신고자 가장 많이 증가함
-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가장 많고(83%), 대리양육자(7%), 친인척(6%), 타인

(2%)의 순으로, 부모가 가해자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아동학대 가해자는 남자가 60%, 여자가 40%로 남자가 20% 가량 더 많고, 40대가 가장 많고(41%), 30대(32%), 50대(10%), 20대(8%)의 순임. 직업은 무직(28%), 단순노무직(15%), 서비스 및 판매직(9%), 주부(7%), 전문직(4%) 등의 순으로 많음
- 학대 피해아동은 여아가 53%, 남아가 47%로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많고, 10-12세(25%), 7-9세(21%), 13-15세(20%) 순으로, 10-15세 아동이 전체 학대 피해아동의 66%를 차지함

□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상의 가정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 2007년 조사 결과, 자녀학대 발생률은 66.9%로 아동 10명당 6.7명 정도가 아동학대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0년 조사에서는 59.1%로 낮아짐. 2010년 함께 실시된 [아동·청소년의 학대피해 실태조사]에서는 학생들의 65.8%가부모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3년 조사결과 자녀학대율은 '응답자의 학대행위비율'은 46.1%. '응답자 배우자의 학대행위비율'은 31.3%임

제2절 아동학대 관련 쟁점

□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 아동학대의 협의의 개념은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고의적 행동으로 그에 따른 손상의 결과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며, 광의로는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 즉 가정환경, 교육환경, 사회환경 등 주변 환경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미치고 있는 환경으로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행위를 포함함. 『아동복지법』 제2조 4호는 아동학대 유형을 신체적·정서적·성적학대,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원인

- 정신병리학적 관점은 세상에 대한 혐오감, 공격성, 완고함, 충동성, 온정결핍, 합리성·융통성 부족, 소극적, 의존성향 등의 부모특성이 아동학대를 유발한다고

4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봄. 반면 발달론적 관점은 아동의 유전학적 신체·행동의 특성이 아동학대의 워인이라고 설명함
- 사회심리학적 관점은 아동학대를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수준, 사회문 화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원인을 분석하며, 생태학적 관점은 아동특성, 부모특성, 가족관계의 역동, 지역사회의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주변 환경에 주목함
- 학습이론은 가해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적절한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기술과 지식 습득 실패를, 환경이론은 환경적 스트레스의 증가를, 가족체계이론은 부부문제 를, 스트레스 이론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적 환경이 아동학대의 원인이라고 설명함

□ 학대피해아동의 특성

- 학대피해아동은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중학생의 순으로 많으며, 신체적 질병이 나 만성적 장애, 정신지체, 문제행동, 행동통제결여가 많음. 연령이 낮은 아동의 경우 신체적 학대 가능성이 높고, 지적능력이 높고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아동은 학대 재발 가능성이 낮음
- 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라 학대의 후유증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영아기는 애착문 제, 걸음마기와 학령전기는 대인관계문제, 중기 아동기에는 적응문제를 야기함
- 신체학대 피해아동은 부모 및 성인에 대한 의심이 많고 가정과 부모에 대해 과장하며 부모의 요구를 두려워하고 편안함을 얻으려 하지 않음. 방임아동은 낮은 자아 존중감, 부정적 자아상, 자신감 결여, 열등감, 비판적 태도, 실망 및 좌절, 신뢰형성 실패, 자기 파괴적, 집중력 장애, 공격적 행동, 파괴적 행동, 좌절분노조절 실패, 스트레스에 민감하지만 처리에 미숙한 특징을 보임. 정서적 학대 피해아동은 정신적 불안, 비활동성, 비사회성, 낮은 책임감, 불안과 우울, 몸을 흔들거나 손가락을 빨아 스스로 위로하려는 태도, 분노, 적대성, 수동성, 습관장애, 품행장애, 반사회적 행동, 신경증적 반응, 지적·정서적 발달 지체, 낮은 학업성취의 특성을 보임

□ 아동학대 가해자 특성

- 아동학대 가해 부모는 연령·학력수준이 낮고, 만성적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이 있으며, 아동기의 학대경험 비율이 높음. 또한 가해자 개인적으로는 약물남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빈곤, 가족 사회적 고립, 가족해체가, 사회적으로는 체벌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학대유발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의 70%가 아동 학대를 가하고 있어 중복학대가 심각함

□ 가정내 학대

- 가족 내 학대는 학대 형태 간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한 가지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고 기본적으로 정서적 학대가 모든 학대의 기저에 깔려 있음. 선행연구결과 가정내학대 위험요인으로는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음주문제, 친부모 여부가, 보호요인으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절적한 지지와 관심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 중복학대, 복합학대, 반복학대

- 중복학대는 한 가정 내에서 노인 학대, 배우자 폭행과 같은 다양한 폭력들이 아동학대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복합학대는 한 명의 피해아동에게 가해지는 학대의 유형이 단일한 유형으로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다발적으로 가해지는 학대를, 반복학대는 이전에 학대가 발생하고 이후 다시 학대가 가해지는 형태의 아동학대를 의미. 중복학대와 복합학대, 반복학대는 피해아동에게 지속적인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입히며,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함.

□ 시설내 학대

- 시설내 학대는 아동복지 시설 혹은 아동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를 말하며, 2010년~2012년 사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접수된 어린이집 아동학 대중 총 91개 어린이집에서 215명의 아동이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해 학대를 당함. 또한 3년 간 아동학대 판정률은 평균 19.7%로 2012년 미국 아동보호기관 의 학대판정률 18.5%와 유사한 수준

-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아동학대에 관하여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정서적학대, 방임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 또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발생원인은 직무스트레스, 과다한 업무, 보육교사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살인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는 과소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과 관련한 데이터 관리 방안이 절실한 상황. 특히 아동학대 조기발 견과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74 건으로, 피해아동은 여아(55.4%), 1세 미만(27.0%)이 많음. 학습 및 언어발달 문제가 있는 아동이 19.4%, 사회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22.6%임.

제3장 아동학대의 일반적 특성

제1절 조사방법

□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

-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0_2015.5)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를 실시함.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은 2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572개 사건이 분석 대상에 포함됨

□ 신문기사 분석

- 200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17일까지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한 모든 신문기 사를 검색하고, 총75건의 아동학대살인 사건기사를 수집함. 기사검색은 1) 21개의 일간지 및 주간·월간지와 2) 네이버, 구글, 야후 검색, 3) SBS, 뉴시스,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검색의 방법으로 이루어짐

제2절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 결과 나타난 아동학대의 일반적 특성

□ 아동학대의 처분 특성

- 아동학대는 97.0%가 『아동복지법』으로 처벌되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약3.0%에 불과. 경합비율은 64.5%이며, 이종경합보다는 동종경합이 많고, 이종경합의 경우 주로 상해, 치상, 폭행 등 폭력범죄와 경합됨
- 아동학대 피의자들은 주로 신고에 의해 검거되는데(93.4%), 그 중에서도 신고의 무자 이외의 '제3자 신고'가 55.5%,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24.4%이고. '피해자 본인 신고'도 13.5%에 이름. 신고자는 '부모'가 47.6%로 가장 많고(모 37.1%, 부 10.5%),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11.8%, '교육 및 보육시설 종사자'(교원, 보육교직원, 유치원종사자)가 10.9%임. 또한 친인척(조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4.8%)보다는 이웃사람(6.0%)과 모르는 사람(7.1%)이 신고하는 비 율이 높아,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 아동학대 가해자의 구속율은 11.7%이고, 검찰 처분결과 '구공판'이 32.2%, '구약 식'이 12.7%, '기소중지'가 0.6%, '기소유예'가 30.3%이며, 그 외 '혐의 없음'이 13.4%, '공소권 없음'이 1.4%임. 아동학대의 구속율과 구공판 비율은 전체범죄 와 강력범죄(폭력)보다는 높고, 강력범죄(흉악)보다는 낮음.

구형량은 '유기징역'(34.9%)이 가장 많으나 아직까지 '벌금'(28.5%) 선고비율도 높은 편임. 변호인 선임비율은 34.6%이고 사선변호인 보다는 국선변호인이 더 많음. 수사과정에서 고소취하가 이루어진 사건은 19.8%에 불과하고, 88.5%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아동학대 가해자의 특성

- 분석에 포함된 659명의 가해자 중 남성 45.4%, 여성 54.6%로 여성가해자의 비율이 다소 높고, 30대(31.4%)와 40대(37.6%)가 가장 많고, 20대(15.9%), 50대 (11.5%)로, 평균 연령은 39.4세임
- 가해자들은 '고졸자'가 가장 많고(33.8%), '대졸'(30.5%), '중졸'(11.5%) 순. 가해

자의 직업은 어린이 집 등 교사에 의한 학대의 영향으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가장 많고(32.3%), 단순노무 노동자(13.4%), 사무종사자(7.6%)와 주부(7.6%)가 많고. 무직 비율은 19.1%. 혼인상태는 결혼(초혼)이 38.5%로 가장 많고. 이혼 15.6%, 미혼 11.2%, 재혼 9.0%임

- 아동학대 가해자의 평균 총 체포횟수는 4.7회, 초범은 43.9%, 전과자는 43.9%이 며, 평균 전과는 4.3범임. 14.3%가 실형전과가 있고, 평균 실형전과는 2.0범, 2.7%가 본 건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체포된 적이 있음
- 가해자의 31.3%는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이 있으며, 우울장애'(30.4%), 신체장애 (17.4%). 물질 및 중독 장애(17.4%)가 많음. 적응이나 행동문제가 있는 가해자는 31.0%로 폭력행동(31.6%), 음주(29.8%), 우울(11.6%), 반항/충동/공격성(6.1%), 불안(2.7%), 인터넷·게임중독(2.4%), 성문제(2.4%) 등이 많음

□ 학대피해아동의 특성

- 분석에 포함된 813명의 학대피해아동 중 여아가 56.9%, 남아가 42.2%로 여아가 다소 많고, 연령은 미취학 아동(6세 이하)이 가장 많아 42.9%이고, 학령기 아동 (7-12세)과 청소년(13세 이상)은 28.9%와 28.0%로 유사하며 피해아동의 평균연 령은 7.7세. 피해자들의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82.9%, '읍면 지역'은 10.6%이며. 피해아동의 11.2%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이고 '비수급권자'가 35.2%임
- 75.4%의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아동이 1명이고, 나머지 24.6%는 피해 아동이 다수인데. 이 경우 피해자들의 관계는 거의 대부분이 형제자매(58.1%)이거나 친구(39.5%)임.
- 아동학대 가해자는 98.0%가 면식범으로, 친부모(48.8%), 계부모(7.5%), 부모의 동거인(2.7%)을 모두 합하면 실질적인 부모의 위치에 있는 자가 59.0%에 이름. 친부가 30.9%, 친모가 17.9%로 친아버지가 친어머니보다 많고, 계부 2.1%, 계모 5.4%로 계모가 계부보다 많음. 그 외에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종사자'(23.4%), '복지시설종사자'(6.9%). '학원강사'(3.1%). '교원'(1.2%). '베이비시터'(1.1%)임. 59.0%의 피해아동은 학대 가해자와 동거하는 상황
-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 가족'이 가장 많고(35.8%), 재혼가정이거나 친부

- 모이지만 법률적인 결혼상태가 아닌 가정(동거가정, 재혼가정, 미혼부모 가정)(14.5%), '한부모 가정'(24.7%) 순임. 피해아동의 약10%는 사회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가족인 것으로 파악됨
- 신체장애나 질환이 있는 피해자 비율은 8.7%로, 구체적으로는 신경발달 장애 (54.1%), 신체장애(10.6%), 언어장애(8.2%), 우울장애(7.1%),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장애(4.7%), 급식 및 섭식장애(3.5%)가 많음. 적응이나 행동문제가 있는 비율은 39.9%(미상제외 62.7%)로, 반항, 충동, 공격성(12.7%)과 거짓말(11.4%), 주의산만(8.7%), 도벽(7.2%), 성격 및 기질문제(6.9%), 학습문제'(6.7%), 가출 (6.4%), 인터넷(게임)중독(5.2%) 등의 비율이 높음

□ 아동학대의 범행특성

- 아동학대는 주로 실내 그리고 주거지에서 발생하며, 실외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5.9%에 불과. 가장 많은 학대공간은 '가해자 주거지/피해자 주거지/공동주거지' 로 45.2%이고, 두 번째로 유치원(20.1%), 학교(1.5%), 학원(2.8%)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 24.4%. 그 외 복지시설(4.6%), 숙박업소(1.5%), 병원0.9%), 이웃집/ 친척집(0.5%), 종교시설(0.4%) 등이 학대 장소로 조사됨
- 아동학대의 피해기간은 1회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고(46.1%), '1개월 미만'이 5.5%, '1-5개월'이 11.9%, '6-12개월'이 8.7%, '1년-2년'이 7.1%이며, '10년 이상' 지속된 사례도 1.4%. 학대빈도는 일회성 학대가 가장 많지만(50.8%), 15.6%는 '거의 매일' 학대를 당했고, '2-3일에 한번'(5.5%), '일주일에 한번'(4.2%), '2주일에 한번'(2.7%), '1개월에 한번'(3.6%) 등으로 조사됨
- 아동학대는 공범이 있는 경우가 25.9%이고, 공범간의 관계는 시설내 학대의 영향으로 '직장동료'가 가장 많고(46.6%), 그 외 '부부'(27.3%)나 '동거인 및 애인'(10.9%) 이 상대적으로 많음
- 아동학대유형은 하나의 유형의 학대만 발생한 '단일학대'는 51.7%, '복합 학대'
 는 48.3%. 단일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 35.4%, '정서적 학대' 7.6%, '방임'
 5.7%, '유기' 3.0%이며, 복합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26.6%),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12.7%), '신체적 학대+방임'(5.8%), '정서적 학

대+방임'(2.0%)의 순으로 많음

- 신체적 학대행위로는 '손 발 등으로 때림'(33.1%), '도구로 때림'(25.0%), '벌을 세움'(7.7%). '떠밀고 움켜잡음'(6.8%). '꼬집거나 물어뜯음'(4.6%). '벽에 밀어붙 임'(3.7%), '음식물/토사물 등 강제섭취'(3.1%), '조르거나 비틀었음'(3.0%)의 순 으로 발생비율이 높음. 정서적 학대로는 '언어 폭력'(42.7%), '사물이나 음식물 등을 던지거나 위협'(15.7%),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함'(9.2%), '감금'(8.2%) 등의 발생율이 높음. 방임의 대표적인 학대행위는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25.6%)과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방치'(22.4%). '학교에 보내지 않음'(14.6%). '의료적 처치나 개입을 하지 않음'(14.0%) 등이 있음. 유기행위로 는 '보호하지 않고 버림'이 많음(72.7%)
- 가해자의 학대동기는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50.3%), '가해자 개인특성'(20.4%),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9.3%), '부부 문제'(7.2%), '경제적 문제'(5.5%)의 순으로 비율이 높음. 23.9%의 가해자들이 학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70.1%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
- 학대피해아동 중에서 후유증이 없었던 경우는 21.2%이고, 62.8%는 후유증을 경험. 신체적 결과가 40.1%로 가장 많고, 사회적 결과가 4.1%, 정서적 결과가. 1.2%. 그러나 많은 수는 복합적인 후유증 내지 학대결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신체적+사회적 결과' 5.8%,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결과' 4.9%, '신체 적+정서적 결과' 3.6%, '정서적+사회적 결과' 3.2%의 순

□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제공유무와 서비스 유형

- 아동학대 가해자의 28.7%는 상담, 치료 등 서비스를 받았고, 35.2%는 받지 못함. 서비스 유형으로는 상담서비스(47.2%), 교육(35.4%), 의료서비스, 심리치료 서 비스, 가족기능강화 서비스가 모두 각각 5.8%임
- 피해아동의 57.8%가 서비스를 받았는데, 서비스 유형은 상담서비스(38.1%), 의 료서비스(9.4%), 심리치료 서비스(9.1%), 가족기능강화서비스(1.8%) 등이 있음

제4장 아동학대의 유형별 특성

제1절 가정내 아동학대와 시설내 아동학대

□ 처분특성 비교

- 죄명, 경합, 가해자 검거경위, 구속여부, 검찰처분 유형, 변호인선임에서는 유의 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나, 죄명, 구형량이나 최종심 유형, 고소취하여부, 합 의여부에는 차이가 없음
- 시설내 학대는 가정내 학대에 비하여 동종경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종 경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시설내 학대는 가정내 학대에 비하여 '제3자 신고', 특히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도 '부모'에 의해 신고되는 비율이 매우 높고(72.4%), 가정내 학대는 시설내 학대에 비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각각 14.3%와 8.3%)
- 가정내 학대 가해자의 구속율이 15.8%로 시설내 학대 가해자 구속율 3.9%보다 약4.1배나 높으며, 가정내 학대는 구공판, 기소유예, 타관송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설내 학대는 구약식, 불기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는 부모에 의한 가정내 학대가 시설내 학대보다 장기화되고, 학대 정도나 피해아동에 미치는 후유증 등의 면에서 더욱 심각하기 때문.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상대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임비율이 높음
-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시설내 학대 가해자에 비하여 범행을 '전적으로 시인'하는 비율이 훨씬 높고(각각 41.0%와 31.8%),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범행을 '부인' 하는 비율이 훨씬 높음(각각 25.3%와 17.0%). 또한 가정내 학대보다 시설내 학대의 경우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음(각각 44.3%, 68.9%)

□ 가해자 특성 비교

- 가해자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종교, 전과,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이나 적응 및 행동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됨
-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고, 3,40대 비율이 더 높으며, 상대적으로 저학력이고, 동거와 재혼, 별거/이혼/사별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

로 미취업자 비율이 높고, 무종교 비율이 높고, 범죄전과가 많으며,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이나 적응 및 행동문제가 많음.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 20대 비율, 고학력 비율, 초혼과 미혼비율이 높고, 전문관리직에 집중되어 있고, 종교가 있는 비율이 높고, 범죄성이 약하고,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이나 적응 및 행동문제가 적음

□ 피해자 특성 비교

-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여부, 피해자수 및 피해자들간 의 관계, 가해자-피해자 관계, 동거여부, 가족유형, 사회적 지리적 고립여부에서 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나, 거주지역과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이나 적 응 및 행동문제에는 차이가 없음
- 가정내 학대 피해아동은 시설내 학대에 비하여 남아비율이 적고, 나이가 더 많고(학령기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비율이 높고, 피해자 수가 적고, 가해자-피해자 동거비율이 높고, 친부모가족 외 가족형태가 많고,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 시설내학대 피해아동은 가정내 학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남아비율이 높고, 나이가 어리고(미취학),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피해자 수가 많고, 가해자-피해자 동거비율이 낮고, 친부모 가족비율이 높고, 가해자는 대부분 교육/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자/학원강사임

□ 범죄행위 특성 비교

- 학대장소, 학대기간, 학대빈도, 공범특성, 학대유형, 학대동기, 음주여부, 후유증 유무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나, 약물복용 여부, 후유증 유형에는 차이가 없음
- 가정내 학대는 시설내 학대에 비하여 학대기간이 길고, 학대빈도가 높으며, 공범이 적고, 공동주거지/아동 혹은 가해자 주거지에서 많이 발생. 복합학대가 많고, 양육태도 혹은 훈육문제/가해자 개인 특성/양육부담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문제 때문에 학대가 발생하고, 가해자가 범행당시 음주인 비율이 높고, 피해아동이 학대후유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시설내 학대는 가정내 학대에 비하여

학대기간이 짧고, 학대빈도가 적으며, 공범수가 많고, 유치원·어린이집/학교/학원/복지시설에서 발생. 단순 신체적 학대가 많고, 주로 양육태도 혹은 훈육문제 때문에 학대가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학대 후유증 발생 비율이 낮음

□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제공유무와 서비스 유형 비교

- 가정내 학대 가해자의 51.4%가 서비스를 받은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는 27.5%만이 서비스를 받았고, 피해자 대상 서비스 역시 가정내 학대의 경우 78.5%, 시설내 학대의 경우 58.0%의 피해자가 제공받음. 따라서 가정내 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피해자보다 상담 등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제2절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

□ 처분특성 비교

- 죄명, 경합여부, 검거경위, 검찰처분결과, 변호인 유무 및 유형, 피해아동들의 가해자 처벌에 대한 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나, 구속여부, 구형량, 최종심 유형, 가해자 범행 시인 정도, 고소취하 여부나 합의 여부에는 차이가 없음
- 죄명은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이용행위'는 학령전 아동학대와 청소년 학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습'은 학령기 아동학대가, 기타 아동복지법 위반은 청소년 학대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음.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가 이루어진 경우 경합비율이 높고, '동종경합'은 피해자가 어릴수록, '이종경합'은 피해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높음
- 피해아동이 어릴수록 부모 등의 비신고의무자 신고에 의해 가해자가 검거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비율이 높음. 피해아동이 어릴수록 '부모 및 위탁부모' 신고비율이 높은 반면,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교원/보육교직원/유치원 종사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늘어나며, 특히 학령기 아동은 '이웃'과 '모르는 사람'

- 의 비중이, 청소년 학대는 '의료인 및 소방구급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학령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학대는 구공판이 많은 반면, 청소년 학대는 기소유예의 비율이 더 높음.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는 벌금 처분이(53.0%), 청소년 학대가해자는 유기징역이(46.9%), 학령기 아동학대가해자는 유기징역과 집행유예가(각각 39.2%와 36.7%) 많음. 또한 학령기 아동학대와 청소년 학대의 경우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율이 더 높은데 반하여(각각 27.3%와 29.3%), 학령전아동학대가해자들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율이 더 높음(21.5%)
- 피해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 록 처벌을 원치 않는 경향이 나타남

□ 가해자 특성 비교

- 가해자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업, 전과유무와 실형전과 횟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나, 가해자 국적과 종교, 총체포횟수, 총전과횟수, 아동학대 체포 경험 유무 에는 차이가 없음
- 피해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여성가해자 비율이 높고, 피해자 연령이 많을수록 가해자 연령 역시 높아짐.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대졸이 가장 많은 반면 (46.1%), 학령기 및 청소년 학대 가해자들은 고졸자 비율이 가장 높음(각각 48.8%와 42.9%).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많은 수가 초혼이거나, 미혼인 반면, 학령기 아동학대와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초혼과 별거/이혼/사별이 많고, 동거나 재혼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음.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전문관리 직 비율이 높은데 비해(55.3%), 청소년 학대 가해자들은 단순노무직(20.1%)이 가장 많음. 피해아동 연령이 많을수록 가해자의 범죄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의 전과자 비율이 높고, 가해자의 실형횟수가 많음.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 자들은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과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피해자 특성 비교

- 피해자 성별, 국민생활보장수급권 대상자 여부, 피해자 수, 가해자-피해자 관계, 가해자-피해자 동거여부, 가족유형, 피해자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나, 거주지역, 피해아동의 사회적 혹은 지리적 고립에는 차이가 없음
- 피해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남아 비율이 높고, 피해자 수가 적고, 가해자가 면식범이나 교원/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자/학원강사일 비율이 높고, 친부모가 족 비율이 높고, 피해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가해자가 비면식범이나 부모일 비율이 높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거하는 비율이 높고, 친부모 외 가족 비율이 높고,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유무와 적응 및 행동문제가 있는 아동이 많음

□ 범죄행위 특성 비교

- 학대장소, 학대지속기간, 학대빈도, 공범특성, 학대유형, 가해자 음주여부, 피해 자 후유증 유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나, 가해자 약물복용 여부, 후유증 유형에는 차이가 없음
- 학대피해아동 연령이 어릴수록 유치원·어린이집/학교/학원/복지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단일학대 비율이 높음. 학대피해아동 연령이 많을수록 가해자 피해자 공동거주지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학대지속기간이 길고, 학대빈도가 높고, 단독범일 가능성이 높고, 복합학대 비율이 높고, 범행당시 가해자 음주비율이 높고, 후유증이 적음

□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제공유무와 서비스 유형 비교

-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가해자의 많은 수는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는 반면,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대를 한 가해자들은 절반 정도가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음. 또한 서비스 제공비율이 가장 높은 피해자 집단은 학령기 아동으로(77.7%),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령기 아동이 학대 후유증이 가장 많다는 사실과 연관됨

제3절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 학대

□ 처분특성 비교

- 죄명, 경합여부, 검거경위, 최초신고자, 구속여부, 검찰처분유형, 최종심유형, 변호사 선임 유무 및 유형,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 태도와 피해자 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나, 구형량, 고소취하 여부와 합의 여부에는 차이 가 없음
- 중복학대는 경합비율이 높고, 부모 등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이 높고, 구속율이 높고, 구공판 및 구약식 비율이 높고, 2심 3심 비율이 높고, 변호사선임 비율이 높고, 국선선임비율이 높고, 일부만 범행을 시인하는 비율이 높고, 피해 자들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비율이 높음. 반면 비중복학대는 경합비율이 낮고,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구속율이 낮고, 기소유예 비율이 높고, 사선선임비율이 높고, 범행을 전적으로 시인하는 비율이 높음

□ 가해자 특성 비교

- 가해자 성별, 직업, 체포횟수, 전과 유무, 총전과 횟수, 가해자의 적응 및 행동문 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나 연령, 국적, 교육수준, 혼인상태, 종 교, 실형전과와 아동학대 체포 여부, 신체 장애나 정신질환에는 차이가 없음
- 중복학대는 비중복학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남성가해자가 많고, 무직 비율이 높고, 범죄경력이 많고, 가해자의 적응 및 행동문제가 많음.

□ 피해자 특성 비교

- 피해아동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피해아동의 적응 및 행동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나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가족특성에는 차이가 없음. 즉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가해자 피해자 관계, 가족특성 등은학대 위험요인이기는 하나, 중복학대 위험요인은 아님

□ 범죄행위 특성 비교

- 학대장소, 학대지속기간, 학대빈도, 공범특성, 학대유형, 학대동기, 가해자 음주 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나, 가해자 약물복용 여부, 피해자의 후유증 유무와 후유증 유형에는 차이가 없음
- 중복학대는 가해자-피해자 공동주거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학대지속기 간이 길며, 학대빈도가 높고, 단독범비율이 높고, 복합학대 비율이 높고, 양육부 담과 양육 스트레스 때문에 학대를 하며, 가해자가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하는 비율이 높음. 반면, 비중복학대는 중복학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대장소가 보다 다양하고, 학대지속기간이 짧고, 학대빈도가 낮으며, 공범이 있는 비율이 높고, 단일 학대 비율이 높고, 양육 방식, 태도나 훈육문제 차원에서 학대를 하는 경향이 강함

□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제공유무와 서비스 유형 비교

-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제공유무와 서비스 유형'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음

제4절 친부모 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

□ 처분특성 비교

- 가해자 처분특성 면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가해자가 친부모인지 아닌 지가 아동학대의 가해자에 대한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가해자 특성 비교

- 가해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직업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나, 국적, 교육수준, 종교, 전과특성, 가해자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유무와 적응 및 행동문제 유무에는 차이가 없음
- 친부모학대는 남성가해자 비율이 높고, 40대가 많으며, 혼인상태는 별거/이혼/ 사별 혹은 초혼인 경우가 많고, 단순노무직/사무직/가정주부 비율이 높음. 그러

나 친부모학대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에 비해 신체장애나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더 많거나, 교육수준이 낮거나, 범죄경력이 더 많은 것은 아님

□ 피해자 특성 비교

- 피해아동의 동거가족수, 적응 및 행동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나, 그 외 특성에는 차이가 없음
- 친부모 학대의 경우에는 그 외 가족학대에 비하여 동거가족수가 더 적음. 그 외 가족학대 피해아동들은 친부모학대보다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아, 친부모가족이 아닌 경우 피해아동의 적응 및 행동문제가 학대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남

□ 범죄행위 특성 비교

- 공범자관계와 가해자 역할, 학대동기에서만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어, 친부 모학대의 범행특성이 많은 면에서 다른 학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친부모 학대는 보조적 역할의 비중이, 그 외 가족학대 가해자는 단순가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친부모 학대는 가해자 개인특성 때문에 학대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친부모 외 가족학대는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음

□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제공유무와 서비스 유형 비교

- 가해자 서비스 수혜여부 면에서만 차이점이 발견되었는데, 친부모 학대 가해자 가 그 외 가족학대 가해자보다 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비율이 높음

제5절 아동학대 살인

□ 처분특성

- 최근 11년 9개월 동안(2004-2015. 9) 신문 및 뉴스에 보도된 아동학대 살인사건 은 총 75사례를 분석함 - 아동학대 살인 사건의 신고자는 일반 아동학대와 달리, 가해자 본인이 아동을 살해한 후 직접 신고한는 경우가 가장 많고(25.7%). 그 다음으로 타인(9.3%), 친부모(5.3%), 친인척(5.3%)이 주요 신고자. 가해자에 대한 법원 처분 현황을 보면 유기징역이 22.6%이며, 미상 비율이 69.8%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약75%가 유기징역형을 받는 셈

□ 가해자 특성

- 75개 아동학대 살인 사건의 가해자 106명 중 남자가 35.8%, 여자가 64.2%로 여성가해자가 훨씬 많음. 연령 면에서는 30대가 가장 많고(41.5%), 그 다음은 20대(28.3%), 40대(13.2%)의 순임

□ 피해자 특성

- 피해아동은 75명 중 남아 46.7%, 여아 41.3%로 유사한 수준. 피해아동의 평균 연령은 3.24세로, 1세 미만의 영아가 가장 많았고(42.7%), 1-3세와 4-6세가 각각 17.3%. 또한 7-9세가 13.3%, 10-12세가 6.8%, 13-15세가 1.3%. 즉 아동학 대살인의 피해자는 많은 수가 영유아임(77.3%)
- 가해자는 친모(39.6%), 친부(23.7%)로 친부모가 전체 가해자의 63.3%이고, 여기에 계모(11.3%), 부모의 동거인(4.7%), 양부모(3.8%) 까지를 합하면 아동의 부모혹은 양육자가 아동을 살해한 비율이 무려 83.1%. 그 외 위탁모(3.8%), 친인적 (3.8%), 친모의 지인(1.9%) 등은 비율이 낮음
- 아동학대살인 피해아동의 가족형태는 초혼 친부모 가족(25.3%)과 재혼가족/동 거(22.7%), 미혼부모가정(20.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즉 초혼 친부모가 족에서도 아동학대 살인이 많이 발생하며(약1/4), 동거가족이나 미혼부모, 모자, 혹은 부자가정 등의 비율이 절대 낮지 않아, 가족해체가 양육부담을 가중시키고, 아동학대살인으로 이어지는 위험요인을 작용

□ 범죄행위 특성

- 살인장소는 많은 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70.7%), 가정 외 장소는 숙박업소

- (8.1%), PC방/주유소/공원(5.4%), 어린이집(1.3%), 주차장(1.3%), 기숙사(1.3%), 병원(1.3%), 고시원(1.3%) 등. 학대 지속기간은 평균 173일
-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54.7%는 단독범이며, 공범들간의 관계는 부부가 가장 많았 음(73.5%). 살인동기로는 양육기술부족이 가장 많았고(35.3%). 원치않은 아동이 거나 아동에 대한 애정부족(16.4%), 생활고(9.4%), 가해자 개인의 불안, 우울, 혹은 정신질화(9.4%)의 순
- 학대유형을 분석한 결과 72.0%가 단일학대이고, 25.3%는 복합학대. 단일학대 중에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고(49.3%). 복합학대 중에는 신체적 학대+방임이 가장 많음(13.3%). 신체적 학대 중에는 도구로 때리거나(16.9%) 손. 발 등으로 때리는 경우가(13.5%) 가장 많았으나 그 외에도 다양한 신체적 행위가 발견됨. 정서적 학대로는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거나(2.1%), 감금(1.4%)하는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 방임 중에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가장 많음(9.3%)
- 아동의 사망사인은 외상성 쇼크(16.1%), 질식사(12.1%), 두부손상(105%)가 상대 적으로 많고, 그 외 간, 소장, 장 파열(6.7%), 패혈성 쇼크 및 패혈증(4.0%), 급성 신부전 쇼크(4.0%), 아사(2.7%) 등이 있음

제5장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제1절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 □ 1874년 아동학대로 인하여 처음으로 형사 처벌된 사건, 즉, "메리 앨런 케이스" 가 보고되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됨. 1909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백악관 내 특별회의를 통해 아동보호를 책임질 자원봉사단체의 설립 지원을 약속. 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져서 1930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안에 '범죄 위험에 노출된 유기아동 지원'을 위한 기금 규정이 명시되기에 이름
- □ 1912년에는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할 연방 아동보호국(Children's Bureau)이 만들어졌고. 1958년 개정 사회보장법은 아동보호를 위하여 각주가 기금을 조성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삽입. 1950년대와 60년대 각종 미디어들이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되었고, 1960년대 중반 연방법에 아동학대신고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1974년 『아동학대의 방지 및 치료에 관한법률』즉, CAPTA(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의 제정과 아동보호소(Child Protection Services)의 신설로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새로운 장을여는 계기가 됨

제2절 영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 □ 영국의 아동보호 제도 역시 1800년대와 1950년대 이후로 나뉘는데, 대략 1880년대까지는 아동학대만을 따로 다루는 법정이 없었고, 아동학대 및 유기 문제는 주로 아동에 대한 잔혹행위를 처벌하는 개별법의 규율을 받고 있었음
- 그러다가 중요한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서 아동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관심이 촉발됨. 하지만 구체적으로 아동보호 제도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여러 명의 희생자가 더 필요했는데, 1945년 양부에 의해 살해당한 12살 소년 데니스 오닐 (Dennis O'Neil)의 사건을 계기로 커티스 위원회의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이것은 아동의 살인사건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음. 이어 1973년에는 7살소녀 마리아 콜웰(Maria Colwell)의 사망을 계기로 현대적인 아동보호제도가 마련되기에 이르렀고, 1984년에는 4살짜리 자스민 벡포드(Jasmine Beckford)를 포함한 여러 명의 아동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의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됨
- 하지만 영국 아동보호 제도의 새 전기를 마련한 것은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의 제정. 1989년 『아동법』은 본격적으로 아동학대 및 유기 문제 등에 국가 가 조기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법으로, 이 법 이후 영국은 아동보호제도의 선구적인 역할을 나라로 인식되기에 이름
- □ 영국의 아동보호제도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음
- 그 첫 번째가 바로 1989년에 제정되어 이후 수차례 개정된 『아동법』이고, 『아동법』 일 통해서 아동보호에 관한 법제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둘째는 『아동법』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 공익단체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지침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한 영국의 피학대아동보호법 제를 도드라지게 하는 요소가 됨. 세 번째는 아동보호 제도에 각 지역의 주도적인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마다 설치된 지역아동보호위원회.

제3절 국제연합법상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 □ 국제연합법 상 피학대아동 보호법제의 특징은 학대행위로부터의 안전을 아동의 권리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으로, 국제연합은 인간의 권리 선언에 이어 아동권리협약을 만들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아동의 권리 선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학대 관련 협약 상 권리'의 4가지 권리를 선언함
- 역사적으로 볼 때 아동의 존재가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고 국가가 이들의 권리보 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일련의 권리 선언을 통해서였음. 다만 198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는 선언이 아니라 협약을 통해서 당사국의 입법적. 행정적 조치 를 강제하고, 연차보고서의 제출이라는 형태로 후속조치를 도모하고 있음

제4절 일본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 □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동학대는 오래도록 숨어 있는 범죄로 취급되어 왔음.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견도 쉽지 않고. 아동의 자립 능력 부족으로 발견 이후에도 아동과 가해부모를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 보니 아동학대는 점점 더 은밀해지면서 더 가혹해지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일본도 약 15년 전에 아동학대의 이런 폐해를 감지하고 피학대아동보호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면서 『아동학대방지법』이라는 단일 법률 을 제정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모든 조치를 담기에 이름. 그리고 2004년 개정을 통해서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가해아동의 치료라는 치료적 대응방법까지 갖추게 됨
- □ 한 마디로 정의하면 "[일본의] 이러한 제도들은 아동학대에 대하여 보다 엄격히

대처하고, 피학대 아동에게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고 있는 추세" 그런 점에서 이제 아동학대를 가정폭력이라는 범주에서 떼어 내서 총체적 대응체계를 고민하고 있는 일본의 『아동학대방지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임

제5절 우리나라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 □ 종전의 『아동복지법』이 현장출동 및 격리조치만 규정하고 있던 데서 벗어나서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외국 법제들이 채용하고 거의 대부분의 임시조치, 긴급조치, 긴급명령, 보호명령 등 학대범죄피해자와 학대행위자를 위해 필요한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 학대범죄에만 국한되는 거라서 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아동학대범죄의발생부터 처리까지 이렇게나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 『아동학대처벌법』의 이런 태도는 다시 『아동복지법』에도 영향을 미쳐 2014년 여러 규정들이 추가되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또 하나의 진전을 이루게 됨
- 먼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업무에 있어서 중책을 맡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대응조치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명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함
- 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경찰이 아동학대의 의심 있는 사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통고하도록 했고,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응급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함.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행위자에 대해서 상담을 권고할 수 있고, 정부는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학대행위자의 취업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6장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개선방안

제1절 아동학대 관련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국내 법 규정을 보면 종래 『아동복지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던 것에서 벗어나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전체의 감응도가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점 등에서 충분히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할 것임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 실무에 들어가 보면 법제도의 화려한 수사 와는 달리 근본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눈에 띔. 가령, 피학대아동에 대한 지원 문제와 위탁양육과 입양, 학대행위자에 가중처벌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외상후 장애 등 보다 근본적인 상처를 가지고 가정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별한 담보장치 없이 이들을 원가정에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됨.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처분에 걸맞은 이유의 해명도 없이, 또, 적절한 후속조치도 없이 가정에게 문제의 처리를 떠맡겨서는 안 될 것임
-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많은 짐을 아동보호전문기 관에게 지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영국처럼 지역별 아동보호 위원회로 격상시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볼 만함

제2절 아동학대 관련 영역별 개선방안

□ 아동학대 예방 강화

- 첫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과 지역사회 단위의 예방프로그램을 통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둘째, '아동 및 아동관련 직종종사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강화', 셋째, 자녀가 출생하기 직전이나 직후 자녀양육이 시작되는 시점(병원에서 정기검진을 할 때 혹은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교육을

실시', 넷째 '전체 사회의 폭력 감수성 향상 및 음주문화 개선', 다섯째, CCTV, CPTED 도입, 교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시설내 아동학대 예방강화'가 필요함을 논의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활성화

- 첫째, 사회적 감시망 강화를 통한 조기발견 체계 구축을 위해 '가정방문서비스 제도화', '예방의료체계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의료체계연계를 통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신고의무 강화', '아동학대 초기사정용 간이지표 개발 및 활용'을 제안
- 둘째, 조기개입 활성화를 위해 '위기개입과 사례관리, 사후관리의 유기적 연계', '잠재적 위험사례 관리 강화' 필요
- 셋째,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상담원 증원', '조사단계의 전문성 강화', '아동치료서비스의 강화', '가족지원 강화 및 가족내 추가학대 예방',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지속적 관리', '통합적 사례관리 실시', '아동학대 사망사례팀 구성과 통계집적'을 제안

제1장

KORFAN INSTITUTE OF CRIMINOLOGY

연구개요

강 은 영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아동의 정상 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1장 제3조의7).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훈육이라는 명분하에 아동을 체벌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어왔던 사회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 가족해체, 부모의 사회적 고립,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아동보호기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자녀학대 사망 사건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반번히 보도되면서 아동학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접수사례를 중심으로 매년 보고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매3년마다 가정폭력실태조사에 아동학대를 포함하여 조사, 보고하고 있다. 그 중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수는 총 95,622건이며, 2013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사건은 13,076건으로 2004년 6998건이 신고된 것과 비교하면 10년 동안 약1.9배 증가한 셈이다. 특히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된 이후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최근 5년간(2009-2013년)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2014년 1월부터 급증하여 11월말 현재 11개월 동안 44.2%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2013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학 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인구 1000명당 0.73으로 2004년 0.34명과 비교할 때 약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들 학대 사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아동학대행위 자가 부모(친부모, 계부모, 양부모)인 경우가 대다수(83.1%)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1990년대 후반 충격적인 학대 및 방임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집중되고 국가의 공식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공적 개입체 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개통되고. 전국에 아동호보전문기관이 설치되었는데, 2013년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47개소가 설치되어있다.

또한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법에서는 아동학대 발견 및 개입 활성화를 위해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포함하였다.

이어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13.10.24). 서울 골프채 체벌 사망 사건 ('13.10.29), 인천 소금밥 학대 사망사건('13.11.22)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 현안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2013년 12월 3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다 (2014.1.29 공포, 9.29 시행).

한편 2014년 2월 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에는 아동과 부모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통한 예방 및 재발방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통한 조기발견 활성화.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사후관리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아동학대 발생초기부터 사법기관 개입, 아동학대 신고의무 직군 확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아동보호를 위한 격리와 함께 친권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 아동학대 치사, 중상해, 상습 아동학대 처벌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및 진술조력인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 대 특례법』은 법 시행 초기부터 현장에서의 업무혼란과 업무과중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으며, 2014년 4월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2015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이 다시부각되었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서비스는 예방보다는 학대 조사와 사후치료 측면에 치중되어있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발견되기 까지 아동이 아무런 사회적 관심 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학대로 발견된 아동은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고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실태에 관한 기초연구는 부족한 상황으로 가정폭력피해조사나 아동보호기관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발생실태와 처벌현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특례법』,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법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서구의 경우 아동학대 살인·치사는 개념정의의 모호함 등으로 과소추정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에 형사사법기관과 의료기관간의 연계를 통해 아동 학대 사망에 대한 정의와 진단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내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 하는 아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망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않으며, 아동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연구가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태와 특성을 밝히고, 아동학대 사건 중에서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즉 사망사례 예측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보고서의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발생 실태와 특성.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을 분석하고, 둘째, 신문기사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실태를 분석하며, 셋째, 외국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의 시사점을 검토하고. 넷째. 국내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되어 실시 혹은 실시 예정인 법제도들을 검토함으로써, 다섯째,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아동학대 예방 대책,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대책, 학대피해아동 지원 대책,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대책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대검찰청의 [공식통계자료]와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피해조사],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신고접수 통계인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대한 2차 분석을 통하여 아동학 대의 발생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둘째,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인지된 아동학대사건의 특성을 처분특성, 가해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행위특성의 측면에 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가해자-피해자 관계, 피해자 연령, 중복학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아동학대를 '가정내 아동학대' '시설내 학대', '가정내 중복학대', '친부모 학대', '아동학대 살인' 등으로 유형화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국내·외 아동학대 관련법과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들을 검토하고 비교하고 자 한다.

넷째,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내용을 포괄하는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동학대 발생현황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대검찰청과 여성가족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관련통계에 대한 2차 분석을 통하여 아동학대 발생특성을 재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공식통계는 최근 5년간 (2010-2015)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였고, 피해조사는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피해조사], 그리고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실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신고접수 통계를 이용하였다. 제2절에서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론과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먼저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별특성, 발생특성을 중심으로 선행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를 통해 분석된 아동학대의 일반적 특성을 논의 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처분 특성, 가해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행위 특성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 결과 수집된 아동학대사건을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아동학대 유형은 가해자-피해자 관계('가정내 학대'와 어린이 집 등 '시설내 학대'), 학대 피해아동 연령(학령전 아동학대, 학령기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 가정내 학대의 피해자 수('가정내 중복학대', '비중복 학대'), 친부모 여부('친부모 학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네 가지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더불어 신문기사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살인'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 U.N,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아동학대 관련법과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들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제, 특히 피학대아동 보호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아동학대의 현황과 쟁점

강은영·황정미

아동학대의 현황과 쟁점

제1절 아동학대의 발생현황

1. 공식통계상 아동학대 발생현황

〈표 2-1〉은 대검찰청으로부터 2010년에서 2015년 5월까지 발생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사건 목록을 제공받아, 이 중에서 아동 보호시설 관리 등에 대한 조항 위반을 제외한 순수한 아동학대사건만을 대상으로 검찰청별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5년 5개월간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총 4,411건이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사건은 총 99건으로 이 둘을 합하면, 4,510건이다.

〈표 2-1〉 검찰청별 아동복지법 및 특례법위반 사건수(2011-2015)

번호	검찰청 명	아동복지법	특례법
1	강릉지청	40	1
2	거창	6	-
3	경주지청	18	-
4	고양지청	145	2
5	공주지청	5	-
6	광주지방검찰청	226	2
7	군산지청	83	-
8	김천지청	17	1
9	남원지청	13	-
10	논산지청	12	-
11	대구서부지청	80	3

번호	검찰청 명	아동복지법	특례법
12	대구지방검찰청	160	6
13	대전지방검찰청	112	-
14	마산지청	10	-
15	목포지청	32	-
16	밀양지청	9	-
17	부산동부지청	87	-
18	부산지방검찰청	175	2
19	부천지청	99	6
20	상주지청	12	-
21	서산지청	14	-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58	1
2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04	1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66	7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42	8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31	1
27	성남지청	99	1
28	속초지청	23	-
29	수원지방검찰청	244	11
30	순천지청	88	2
31	안동지청	17	-
32	안산지청	220	8
33	안양지청	70	-
34	여주지청	61	2
35	영덕지청	10	-
36	영동지청	8	-
37	영월지청	4	-
38	울산지방검찰청	185	6
39	원주지청	37	4
40	의성지청	16	-
41	의정부지방검찰청	202	2
42	인천지방검찰청	268	8
43	장흥지청	13	_
44	전주지방검찰청	101	1
45	정읍지청	34	2
46	제주지방검찰청	36	-

번호	검찰청 명	아동복지법	특례법
47	제천지청	30	1
48	진주지청	55	-
49	창원지방검찰청	108	1
50	천안지청	65	2
51	청주지방검찰청	60	-
52	춘천지방검찰청	16	-
53	충주지청	23	1
54	통영지청	37	-
55	평택지청	45	2
56	포항지청	39	-
57	해남지청	12	3
58	홍성지청	29	1
	총합계	4,411	99

또한 각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동복지법』위반사건의 19.68%는 구공판, 9.34%는 구약식, 10.7%는 기소유예, 0.91%는 가정폭력사범지정 상담소위탁조건부, 0.29%는 보호관찰선도 위탁조건부, 0.16%는 교육이수조건부이며, 협의없음, 죄가안됨 등 불기소 비율이 32.04%로 높은 편이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사건은 구공판이 30.3%, 기소유 예가 7.07%이며, 불기소는 10.10%이고, 요보호처분이 36.36%로 높다.

〈표 2-2〉 아동복지법 및 특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구형 현황(2010-2015)

	처분내용	아동복지법	특례법
7771	구속	313 (7.10%)	18 (18.18%)
구공판	불구속	555 (12.58%)	12 (12.12%)
	구약식	412 (9.34%)	-
	선고유예	11 (0.25%)	-
	기소유예	444 (10.07%)	7 (7.07%)
가정폭력.	사범지정 상담소위탁조건부	40 (0.91%)	-
보호	한관찰선도 위탁조건부	13 (0.29%)	-
	교육이수조건부	7 (0.16%)	-
ᆸᅬᇫ	혐의없음	1113 (25.23%)	6 (6.06%)
불기소	죄가안됨	18 (0.41%)	_

처분내용	아동복지법	특례법
공소권없음	89 (2.02%)	-
각하	193 (4.38%)	4 (4.04%)
기소중지	256 (5.80%)	7 (7.07%)
참고인중지	12 (0.27%)	-
타관송치	192 (4.35%)	3 (3.03%)
소년보호사건송치	44 (1.00%)	-
가정보호사건송치	263 (5.96%)	6 (6.06%)
요보호처분	435 (9.86%)	36 (36.36%)
법원송부	1 (0.02%)	-
계	4,411 (100%)	99 (100%)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발생통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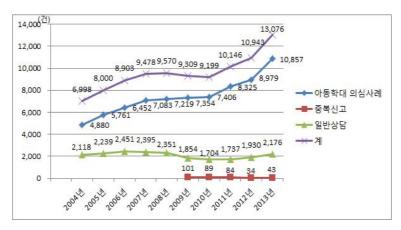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통계인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최근 10년간(2004-2013년) 아동학대 발생현황 및 특성을 재분석하였다.

가. 아동학대 신고 및 발생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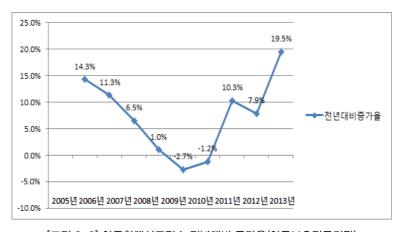
1) 신고접수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수는 총 95,622건이다. 2004년 6998건이 신고되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신고건수가 13,076건에 이른다(〈그림 2-1〉). 전년 대비 신고건수 증가율만 보아도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있다(〈그림 2-2〉).

신고된 사건은 아동학대 의심사례와 일반상담, 그리고 중복신고로 구분되어진다. 이 중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신고건수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 4880건에서 2013년 10,857건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일반상담'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동안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1700-2100건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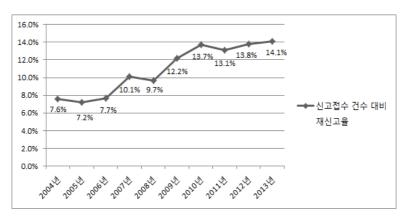
[그림 2-1]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림 2-2] 아동학대신고접수 전년대비 증가율(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림 2-3〉은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재신고율의 비율은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반복학 대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지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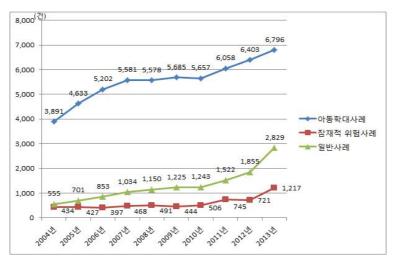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재신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도에 7.6%이 던 것이 2013년도에는 14.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 하겠다.



[그림 2-3] 연도별 아동학대 재신고율(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가 판정되게 된다. 사례판정은 '아동학대 사례', '잠재적 위험사례', '일반 사례'의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아동학대 신고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형 모두 절대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먼저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2004년 3891건에서 2013년에는 6796건으로 증가하였으나, 비율 면에서 보면 전체 신고 사건 중 79.7%에서 62.6%로 감소하였다. 반면 '잠재적 위험사례'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동안 절대 건수가 434건에서 1217건으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비율도 8.9%에서 11.2%로 증가하였고, '일반 사례' 역시절대 건수는 555건에서 2829건으로, 비율은 11.4%에서 26.1%로 늘어났다. 다시 말해최근 10년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에 따라 아동학대 판정 사례도 그 절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신고 건수 대비 비율 면에서는 아동학대 판정사례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아니며, 잠재적 위험사례와 일반 사례가 증가하였다.



[그림 2-4]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판정(아동보호전문기관)

2) 피해아동 발견율

'피해아동 발견율'이란 우리나라의 아동인구 대비 아동학대로 판정을 받은 사례의 비율로,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 피해아동수를 말한다. 아동학대는 암수율이 높아 신고율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생율'이 아닌 '피해아동 발견율'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2004년 0.34이던 것이, 2013년에는 0.73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서 2004년 우리나라 아동인구 1000명당 0.34명이 아동학대를 당하였다면, 2014년에는 0.73명이 학대피해아동인 셈이다(〈표 2-3〉, 〈그림 2-5〉). 앞서 신고율 증가와 사례판정율 추이를 종합할 때 피해아동발견율 의 증가는 대부분 신고율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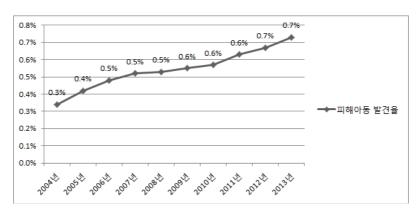
	추계아동인구 (만0-17세)	아동학대 사례	학대피해아동발견율 (아동인구1000명당)	
2004	11,297,516	3,891	0.34	
2005	11,105,069	4,633	0.42	
2006	10,903,869	5,202	0.48	
2007	10,704,846	5,581	0.52	

(표 2-3) 연도볔 한대피해이동 박겨육(아동보호전문기관)

/ı	/ı
I	ı

	추계아동인구 (만0-17세)	아동학대 사례	학대피해아동발견율 (아동인구1000명당)
2008	10,490,534	5,578	0.53
2009	10,247,497	5,685	0.55
2010	9,976,186	5,657	0.57
2011	9,688,376	6,058	0.63
2012	9,578,186	6,403	0.67
2013	9,331,894	6,795	0.73

^{*}통계청(www.kosis.kr). 2004-2013년 추계인구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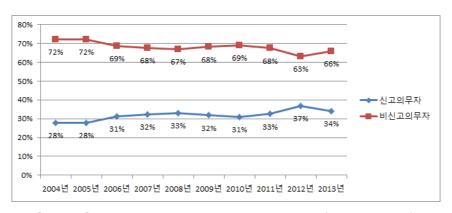


[그림 2-5] 연도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3) 신고자

아동학대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신고되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 무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고의무자'에는 교원, 의료인, 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유치원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성매매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등이 있다. '비신고의무자'에 는 부모, 이웃, 친구, 친인척, 형제자매, 경찰, 종교인, 낯선 사람, 아동본인 등이 있다1).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의 평균을 구해보면 68.0%는 비신고의무자가, 32.0%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으로, 신고의무자의 신 고로 접수된 사건이 훨씬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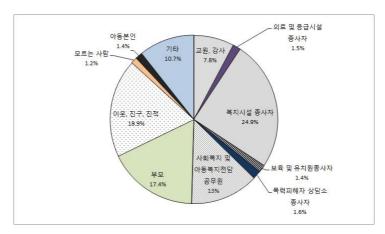
그러나 10년간의 추이를 분석하여 보면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의 비율은 2004년 28%에서 소폭 증가하여 34%가 되었고, 반면 비신고의무자는 72%에서 66%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신고의무자를 확대한 결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이해도 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그림 2-6〉).



[그림 2-6]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신고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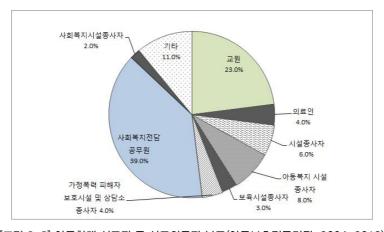
구체적인 신고자 비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신고자들의 비율을 그래프 로 제시하였다.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고자 유형을 교원 및 강사, 의료 및 응급시설 종사자, 복지시설 종사자, 보육 및 유치원종사자, 폭력피해자 상담소 종사 자,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부모, 이웃·친구·친척, 아동본인, 모르는 사람, 기타의 10개로 단순화하였다.

¹⁾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9년부터 시설종사자 항목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가정폭력피 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로 구분하여 집계하였으며, 유치원 종사자 항목을 새롭게 신설함. 또한 2012년 8월 5일, 전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동복지전담공무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추가됨 (아동복지법 제2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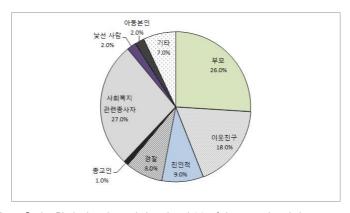


[그림 2-7] 아동학대 신고자 분포(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이번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하여 신고자 유형별 비율을 두 개의 파이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신고의무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신고자 유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교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순이다(〈그림 2-8〉). 또한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 관련종사자, 부모, 이웃친구의 순으로 비율이 높다 (〈그림 2-9〉).



[그림 2-8] 아동학대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 분포(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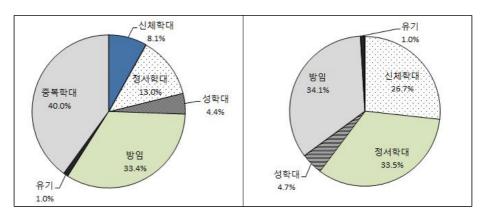


[그림 2-9] 아동학대 신고자 중 비신고의무자 분포(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나. 아동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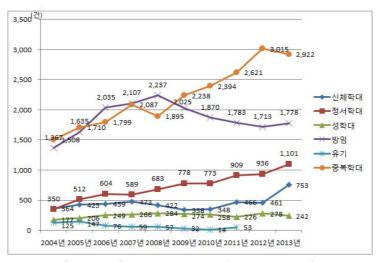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성적 학대, 그리고 다수의 학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중복학대로 구분된다. 아래 〈그림 2-10〉에는 최근 10년간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유형을 그래프화하였는데 왼쪽 그래프는 중복학대를 포함하였고, 오른쪽 그래프는 중복학대를 제외한 것이다.

중복학대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을 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학대유형은 중복학대로 40%에 이르며, 방임이 34%, 정서적 학대가 13%, 신체적 학대 가 8%, 성적 학대가 4%, 유기 1%의 순이다. 반면 중복학대를 제외하고 분석하면 방임이 34%. 정서적 학대가 33%. 신체학대가 27%. 성적 학대가 5%. 유기가 1%이다.



[그림2-10] 아동학대 유형(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이어서 학대 유형별 추이를 분석하여 보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중복학대이고, 정서적 학대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신체적 학대는 큰 변화없이 300-400건을 유지하다가 2013년 크게 증가하였다. 방임은 2008년까지 는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성학대는 큰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성적 학대는 아동학대보다는 성폭력으로 분류하여 신고, 처우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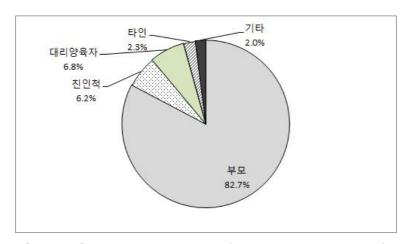


[그림 2-11] 아동학대유형별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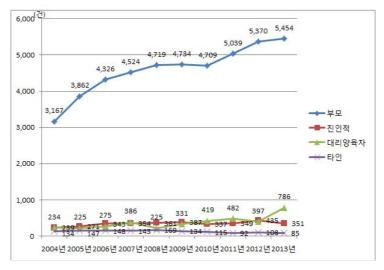
다. 가해자-피해자 관계

아동학대의 가해자-피해자 관계는 부모(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친인척 (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대리양육자(부모의 동거인, 유치원 종사자, 교원, 시설종 사자, 위탁모, 베이비시터 등), 타인, 기타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10년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피해자 관계 비율의 평균값을 그래 프화하면 〈그림 2-12〉와 같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부모'로 83%를 차지한다. 이어서 대리양육자 7%, 친인척 6%, 타인 2%의 순이다.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른 가해자 집단에 비하여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가해자 집단은 증가율이 크지 않고 타인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다만 대리양육자는 2013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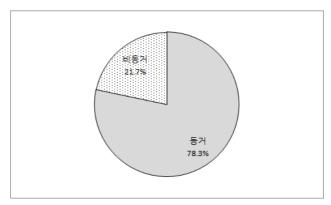


[그림 2-12] 아동학대 가해자-피해자 관계(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그림 2-13] 아동학대 가해자-피해자 관계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가 많기 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 에 동거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78%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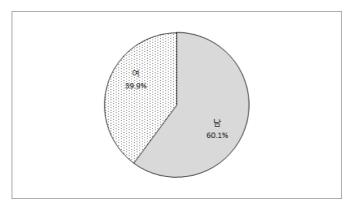
[그림 2-14] 아동학대 가해자-피해자 동거여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라. 가해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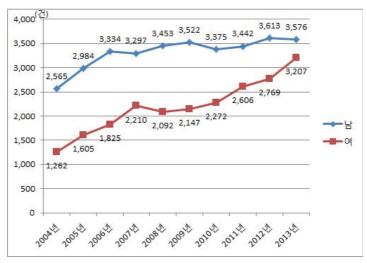
1) 가해자 성별

최근 10년간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성별을 분석하여 보면, 남자가 60%, 여자가 40%로 남자가 20% 가량 더 많다.

그러나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증가속도가 남성의 증가속도 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남성 가해자 수는 2004년 2565명에서 2013년 3576명으로 1.4배 늘었지만, 여성가해자 수는 같은 기간동안 1262명에서 3207명으로 2.5배 증가 하였고, 2014년 기준으로 남녀 가해자 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러한 증가속도라면 여성가해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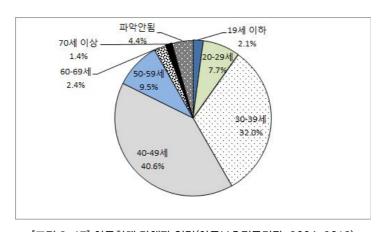
[그림 2-15] 아동학대 가해자 성별(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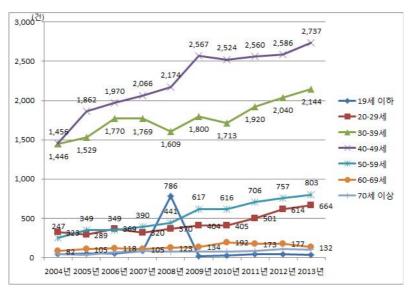
[그림 2-16] 아동학대 가해자 성별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2) 가해자 연령

최근 10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가장 많고(41%), 그 다음은 30대(32%), 50대(10%), 20대(8%)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의 가해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 서도 4,50대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다. 50대는 2004년 323명에서 2013년 803명으 로, 40대는 2004년 1456명에서 2013년 2737명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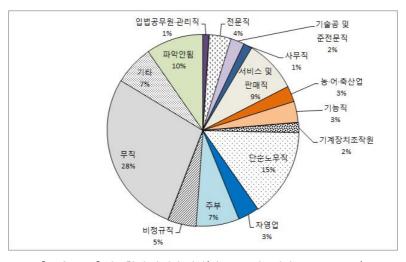
[그림 2-17] 아동학대 가해자 연령(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그림 2-18] 아동학대 가해자 연령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3) 가해자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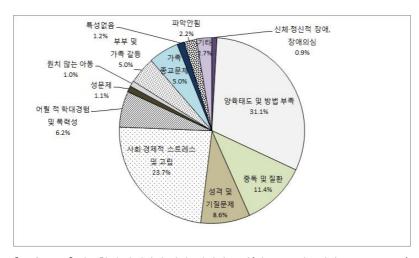
아동학대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이 가장 많고(28%), 단순노무직(15%), 서비스 및 판매직(9%), 주부(7%), 전문직(4%) 등의 순으로, 다른 범죄자 집단에 비하여 주부와 전문직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림 2-19] 아동학대 가해자 직업(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4) 가해자의 정신적·심리적 특성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다양한 환경적,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문제는 '양육태도 및 양육방법 부족'과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가해자들은 '알코올 등 중독 및 질환', '성격 및 기질 문제', '어린 시절 학대경험 및 폭력성', '부부 및 가족 갈등', '가족 및 종교문제'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림 2-20] 아동학대 가해자의 정신·심리적 특성(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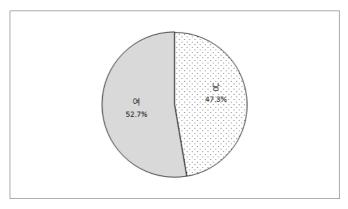
마. 피해아동 특성 및 가족 특성

1) 피해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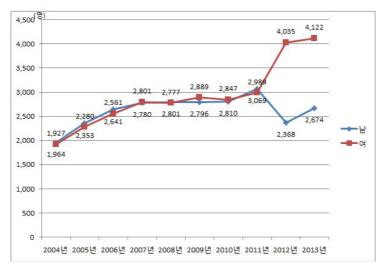
지난 10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는 여아가 53%, 남아가 47%로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약6% 더 많다(〈그림 2-21〉).

10년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4년부터 2011년까지는 남녀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2년과 2013년 여자아동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2》). 본 연구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데이터 접근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원인 을 예측이 어려우며, 자체적인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2-21] 아동학대 피해자 성별(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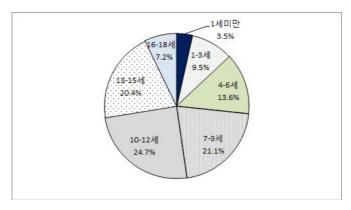
[그림 2-22] 아동학대 피해자 성별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2) 피해자 연령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연령을 1세 미만, 1-3세, 4-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8세로 나누었을 때, 가장 많은 피해아동이 있는 연령구간은 10-12세(25%), 7-9 세(21%). 13-15세(20%)이다. 따라서 10-15세 아동이 전체 학대피해아동의 66%를 차지한다. 그러나 1-3세도 9%, 16-18세도 7%로 나타나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이 학대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2-23〉).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피해자 연령층의 절대수가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

서도 1세 미만, 4-6세, 13-15세, 16-18세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1세 미만은 2004년 144명에서 2013년 394명으로, 4-6세는 635명에서 1007명으로, 13-15세는 589명에 서 1414명으로, 16-18세는 226명에서 570명으로 증가하였다(〈그림 2-24〉).



[그림 2-23] 아동학대 피해자 연령(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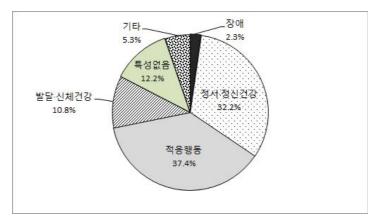
[그림 2-24] 아동학대 피해자 성별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3) 피해아동의 정신적·심리적 특성

아동학대 피해자들 역시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환경적, 정신적, 심리적 문제

를 가지고 있다. 피해아동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특성은 '적응행동상의 문 제'(38%)와 '정서적 정신건강 상의 문제'(32%)이다. 그 외에 발달 및 신체건강 상의 문제'(11%)나 '장애'(2%)도 일부 있었다.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은 1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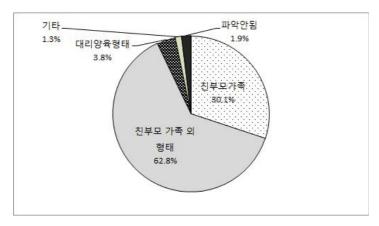
[그림 2-25] 아동학대 피해자의 정신·심리적 특성(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4) 피해아동 가족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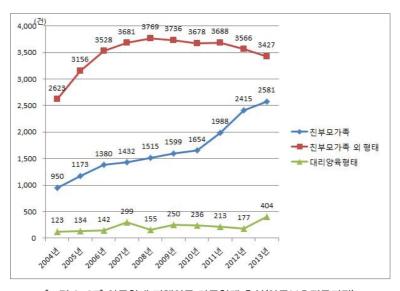
피해아동 가족특성은 피해아동의 가족형태와 가족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대 상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피해아동의 가족형태는 '친부모가족'과 '친부모가족 외 가족'(부자가정, 모자 가정, 미혼부모가정, 재혼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소년소녀가정 등), '대리양육 가족'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지난 10년간 신고된 아동학 대 사건 피해자의 가족형태는 친부모 가족인 경우가 평균 30%, 친부모가족 이외 형태 인 경우가 평균 63%이며, 대리양육 형태의 가족이 평균 4%이다(〈표 2-26〉). 따라서 아동학대는 많은 수가 친부모가족이 아닌 가족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에게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약68%).

그러나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친부모가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950건에서 2013년 2571건으로 2.7배 증가하였다. 반면 친부모가족 외 가족은 2623건에서 3427건으로 1.3배 증가하였다(〈표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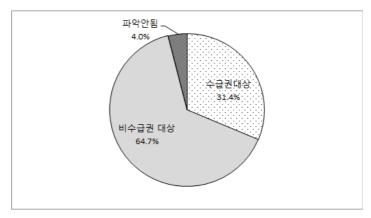
[그림 2-26]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족형태(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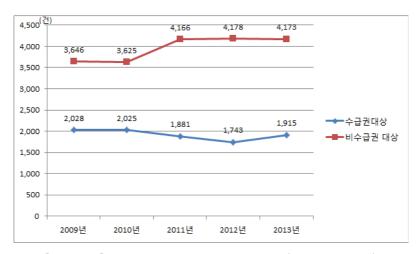
[그림 2-27]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족형태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이어서 학대 피해아동 가족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대상 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권 대상 가족인 경우가 31%, 대상이 아닌 가족인 경우가 65%로, 비수급권 대상이 더 많았다.

지난 5간의 추이를 살펴보아도 비수급권 대상 가족의 수가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반면, 수급권 대상 가족 수는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2-28] 학대피해아동가족의 수급권 대상여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그림 2-29] 학대피해아동가족의 수급권 대상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3.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상의 가정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여성가족부에서는 2007년부터 3년 마다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 다. 이 실태조사는 조사내용에 배우자폭력, 노인폭력만이 아니라 아동학대를 포함하 고 있다. 다만 이 조사는 주로 가정내 학대. 자녀학대 실태를 다루고 있고. 어린이집 등 시설내 학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는 2007년과 2010년, 2013년 세 차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나타난 아동학대 실태를 자녀학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2007년 가정폭력실태조사상의 자녀학대 발생현황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 조사 완료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모두 4,439명이었 다.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 이내 발생한 아동학대발생률은 66.9%로 아동 10명당 6.7명 정도가 아동학대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상당히 높은 비율의 아동이 가정 내에서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아의 69.2%, 여아의 64.4%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령별로는 취학전 아동의 64.4%, 초등학생의 89.9%, 중학생의 49.9%, 고등학생의 32.7%가 학대 를 경험하였다.

	ナロオラに田	HL내르/2007	거그기저프러시티도	111
〈표 2-4〉 아동특성별	자녀익네	달성귤(200/	신국가성국학결대소	.^[)

구	분	자녀학대발생률(%)	분석대상수(명)
	년체	66.9	4,425
서 변	남아	69.2	2,315
성 별	여아	64.4	2,123
	취학전	67.4	1,024
연령	초등학생	89.9	1,760
(학제)	중학생	49.9	885
	고등학생	32.7	769

〈표 2−5〉 아동특성 및 학대유형별 아동학대 발생률(2007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단위: %, 명

			아동		닌체적 폭력	4			
구 분		학대 발생률	정서적 폭력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 +중한) 폭력	방임	성학대	분석 대상수
	<u>년</u> 체	66.9	63.3	48.8	8.7	49.7	2.7	1.1	4,425
성 별	남아	69.2	65.4	51.0	9.1	52.0	2.7	1.3	2,315
	여아	64.4	60.9	46.3	8.3	47.2	2.7	0.9	2,123
	취학전	67.4	64.5	50.0	6.7	50.6	1.0	1.2	1,024
연령	초등학생	89.9	86.6	69.4	11.1	70.1	4.2	1.7	1,760
(학제)	중학생	49.9	43.8	33.1	8.9	34.6	2.5	0.6	885
	고등학생	32.7	30.3	17.8	5.9	19.2	2.0	0.4	769

나.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상의 자녀학대 발생현황

2010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의 경우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자 중 만 18세 미만 자녀를 듀 1.523명을 대상으로 자녀학대 발생률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자녀학 대 발생률은 59.1%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 피해윸은 신체적 폭력이 29.2%. 정서적 폭력이 52.1%. 방임이 17.0% 이다.

〈표 2-6〉 학대유형별 아동학대 발생률(2010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단위: %, 명

		신체적폭력					ㅂ서
구분	자녀 학대율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분석 대상수
전체	59.1	28.2	7.9	29.2	52.1	17.0	1,523
추정 발생수	7,544,066	3,598,357	1,004,313	3,725,730	6,653,636	2,172,391	

주: 1) 신체적 폭력유형 중 경한 폭력은 허리띠(벨트), 막대기 등으로 자녀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손바닥으로 자녀의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 자녀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리는 행위이며, 중한 폭력은 자녀를 주먹 이나 발로 세게 때리는 행위, 자녀를 사정없이 때리는 행위, 자녀의 목을 조르는 행위, 고의적으로 자녀에 게 화상을 입히는 행위, 칼이나 흉기 등으로 자녀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됨 2) 가중치 부여한 분석결과임

이 조사에서는 자녀학대와 더불어 아동·청소녀의 학대피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전국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청 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지역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5개 권역(수도 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으로 구분하였다. 할당 기준에 따라 권역별 초등학 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0개교를 선정하고, 이들 학교에서 1개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학급에는 본 조사의 연구원이 직 접 방문하여 설문의 취지 및 비밀보장 원칙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아동·청소년의 자기기입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였으 며, 총 1.026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 중 응답이 부실한 11명을 제외한 아동·청소년 1.015명(초등학생 305명, 중학생 369명, 고등학생 341명)이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분석 결과 학생들의 65.8%가 부모의 폭력을 경험하였고, 52.2%는 아버지의 폭력, 53.6%는 어머니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대의 경우 신체적 폭력 피해율은 39.1%, 정서적 폭력 피해율은 59.9%, 방임은 14.0%이다. 아버지의 폭력 피해율은 신체적 폭력 26.3%, 정서적 폭력 47.1%, 방임 9.0%이고, 어머니의 폭력 피해율은 신체적 폭력 27.2%, 정서적 폭력 47.0%, 방임 11.3%이다.

〈표 2-7〉 학생 대상 아동학대 발생실태(2010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단위: %, 명

		폭력유형별 발생률							
구분		신체적 폭력					전체학대	분석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대상수	
부모의	전체	37.4(380)	16.5(167)	39.1(397)	59.9(608)	14.0(142)	65.8(668)	1,015	
자녀	남학생	35.0(166)	15.6(74)	36.7(174)	54.2(257)	13.3(63)	60.8(288)	474	
폭력	여학생	39.3(211)	16.9(91)	41.0(220)	65.2(350)	14.7(79)	70.2(377)	537	
	전체	24.4(248)	11.4(116)	26.3(267)	47.1(478)	9.0(91)	52.2(530)	1,015	
아버지의 폭력	남학생	25.3(120)	11.8(56)	27.6(131)	44.9(213)	9.5(45)	50.6(240)	474	
77	여학생	23.5(126)	10.8(58)	25.0(134)	49.2(264)	8.6(46)	53.6(288)	537	
어머니의 폭력	전체	25.6(260)	10.3(105)	27.2(276)	47.0(477)	11.3(115)	53.6(544)	1,015	
	남학생	21.9(104)	7.8(37)	22.8(108)	39.2(186)	9.9(47)	44.5(211)	474	
	여학생	28.5(153)	12.5(67)	30.7(165)	54.0(290)	12.7(68)	61.5(330)	537	

다.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상의 자녀폭력 발생현황

2013년 실태조사 역시 만 19세 이상의 기혼자(사실혼 포함) 중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1.380명을 대상으로 자녀폭력학대 발생률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1년간 자녀학대 발생률은 응답자가 자녀에게 46.1%, 응답자의 배우자가 자녀에게 31.3%로 나타났다. 내가 자녀에게 행한 폭력의 가해율은 신체적 폭력 18.3%, 정서적 폭력 42.8%, 방임 5.0%이고, 배우자가 자녀에게 행한 폭력 가해율은 신체적 폭력 10.1%. 정서적 폭력 28.8%, 방임 3.8%이다.

〈표 2-8〉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2013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단위: %, 명

	자녀폭력		신체적 폭력		정서적	방임	(분석 대상수)
구분	발생율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 폭력)	폭력		
내가 자녀에게	46.1	17.5	4.8	18.3	42.8	5.0	(1,380)
배우자가 자녀에게	31.3	9.8	2.6	10.1	28.8	3.8	(1,333)

- 주: 1)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
 - 2) 자녀폭력 발생율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행위를 포함
 - 3) 신체적 폭력 중 경한 폭력은 '허리띠(벨트), 막대기 등으로 엉덩이 때렸다',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 렸다', '자녀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에 해당하며, 중한 폭력은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 '사정없이 때렸다', '목을 졸랐다', '고의적으로 화상을 입혔다', '칼, 가위 등으로 위협했다'에 해당함
 - 4) 정서적 폭력은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했다'에 해당하며, 방임은 '자녀의 식사를 제 때에 잘 챙겨주지 않았다',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였다'에 해당함

구체적인 행위유형별 자녀폭력 발생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9〉 행위자 및 행위유형별 자녀폭력 발생률(2013)

행위자		폭력행위	있다	없다	계
	경한	허리띠(벨트), 막대기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8.9	91.1	100.0(1,380)
	신체적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	12.4	87.6	100.0(1,380)
	폭력	자녀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	2.5	97.5	100.0(1,380)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	3.2	96.8	100.0(1,380)
	중한	사정없이 때렸다	2.7	97.3	100.0(1,380)
	신체적	목을 졸랐다	0.9	99.1	100.0(1,380)
내가	폭력	고의적으로 화상을 입혔다	8.0	99.2	100.0(1,380)
데기 자녀에게		칼, 가위 등으로 위협했다	0.7	99.3	100.0(1,380)
	정서적 폭력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40.2	59.8	100.0(1,380)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했다	17.5	82.5	100.0(1,380)
		자녀의 식사를 제때에 잘 챙겨주지 않았다	3.6	96.4	100.0(1,380)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1.3	99.7	100.0(1,380)
	방임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	1.1	98.9	100.0(1,380)
		어른과 함께 있어야하는 상황에도 혼자 있게 하였다	3.2	96.8	100.0(1,380)
= -1-1	경한	허리띠(벨트), 막대기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5.8	94.2	100.0(1,333)
배우자가 자녀에게	신체적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	7.1	92.9	100.0(1,333)
- 1 1700	폭력	자녀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	2.1	97.9	100.0(1,333)

행위자		폭력행위	있다	없다	계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	2.3	97.7	100.0(1,333)
	중한	사정없이 때렸다	2.0	98.0	100.0(1,333)
	신체적	목을 졸랐다	1.2	98.8	100.0(1,333)
	폭력	고의적으로 화상을 입혔다	1.1	98.9	100.0(1,333)
		칼, 가위 등으로 위협했다	1.0	99.0	100.0(1,333)
	정서적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27.7	72.3	100.0(1,333)
	폭력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했다	11.1	88.9	100.0(1,333)
		자녀의 식사를 제때에 잘 챙겨주지 않았다	2.9	97.1	100.0(1,333)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1.4	98.6	100.0(1,333)
	방임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	1.7	98.3	100.0(1,333)
		어른과 함께 있어야하는 상황에도 혼자 있게 하였다	2.9	97.1	100.0(1,333)

제2절 아동학대 관련 쟁점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가. 아동학대의 개념

사회적 문제의 정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초기에 협의로 정의되었던 개념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되고 유형화되는데, 아동 학대 역시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시대나 지역,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과 인식은 덴버의 소아과 의사 C. Henry Kempe 와 그의 동료들의 저서 『The Battered Child Syndrome(1962)』이후 확산되었으며, 아동학대의 유형도 성학대, 방임, 신체 적 학대 등으로 확장되었다2). 이 저서의 발간 이후 아동학대와 관련된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도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Kempe 는 『The Battered Child Syndrome(1962)』에서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로 제한하여

²⁾ Best, Joel. 1988. "What is child abuse? definition, typification, and domain expansion in claims-making." Society for the Study of Social Problems.

부모나 돌보는 사람에 의해 어린 아동에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으로 정의하였다3¾.

Fontana(1964)는 학대증후군의 개념에 정서태만, 영양부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를 부적절한 아동양육의 한 극단적 단면으로 정의하였으며 Burgess와 Conger(1987) 는 학대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가벼운 신체적, 언어적 체벌에서부터 극심한 신체적 폭력에 이르는 연속체로 개념화하였다5).

Gil(1979)은 아동학대 개념을 확대하여 개인, 가정, 제도, 사회에 의해 가해지는 아동의 평등권과 자유박탈 혹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적극적 행위나 소극적 방임 과 더불어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잠재력 발휘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까지를 아동학대 개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이.

일본은 아동학대를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자(친권자. 미성년후견 인, 기타의 자로 아동을 감호하는 자)가 감호아동(18세 미만)에 대해 ① 아동의 심신에 외상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것 ② 아동에게 외설적 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으로 하여금 외설적 행위를 하게하는 것 ③ 아동 심신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현저한 감식 또는 장기간 방치, 기타 보호자로서의 감호를 현저히 소홀히 하는 것 ④ 아동에게 현저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7).

국내 연구에서도 1990년대 이후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관련 연구 활동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이 명확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에 의거하여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 와 방임으로 규정하고 있다8).

그러나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개념 규정에 다소 차이를 보이

³⁾ 윤혜미. 1995. "아동학대 및 방임사례와 신고제에 대한 학부모 태도조사." 한국아동복지학 3(1): 169-203.

⁴⁾ 정덕영. 2006. "아동학대 피해자의 심리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2(2): 3-38.

⁵⁾ 정덕영. 2006. "아동학대 피해자의 심리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2(2): 3-38.

⁶⁾ 정덕영. 2006. "아동학대 피해자의 심리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2(2): 3-38, 재인용.

⁷⁾ 정덕영. 2006. "아동학대 피해자의 심리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2(2): 3-38, 재인용.

⁸⁾ 국립보건원(2003), 아동학대전문상담원과정.

기도 한다. 정덕영9)은 부모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인위적 행동, 즉 경미한 학대와 부당 대우까지 학대에 포함시켰으며 김미정·염동문·이경은10도 성인에 의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협의 개념은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고의적 행동으로 그에 따른 손상의 결과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광의 개념은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 즉 가정환경, 교육환경, 사회환경 등 주변 환경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미치고 있는 환경으로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된다11).

나. 아동학대 유형

아동복지법 제 2조 4호는 아동학대 유형을 신체적·정서적·성적학대. 방임으로 구 분하고 있다.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이 아동에게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주는 모든 행위와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모두 심각한 신체학대로 좌절과 분노 수반하고 구타.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이다. 학대 피해아동에게는 상처흔적이 발견되며 지나치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의기소침하며 불안. 자신 감 결여가 나타날 수 있다. 신체적 학대로 인한 학대 피해아동은 불안정한 아동기와 성인기의 불안정한 대인관계 형성 및 갈등적 상황에서 파괴적 행동 가능성 농후하며 정서적 학대로 인한 학대 피해아동에게는 피해에 관한 가시성이 없으므로 심각성 인식에 어려움이 있다12).

성 학대는 성인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행동으로 강간 이외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⁹⁾ 정덕영. 2006. "아동학대 피해자의 심리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2(2): 3-38

¹⁰⁾ 김미정, 염동문, 이경은. 2013. "Cart 분석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피해자 학연구, 21(1): 293-315.

¹¹⁾ 김경태. 2004.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被害者學研究, 12(2): 205-232

¹²⁾ T. Styron & R. Janoff-Bulman(1997), "Childhood attachment and abuse: Long-term effects on adult attachment, depression, and conflict resolution", Child Abuse & Neglect., Vol. 21, pp.1015-1020.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는 것,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거나 물리적 억압, 위협이나 공포 조성 등이 모두 성 학대에 포함된다. 성 학대 피해아동은 성적부 위에 손상을 입었거나 다양한 정서적 특징을 보이는데 극도의 정서적 불안과 공포. 말을 전혀 하지 않거나 몸을 움직이려 하지는 않는 경우, 정신착란의 증세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성적학대는 가족 내·외부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강압적일 때가 많지만 물리적 외상성 장애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즐기는 경우가 많다13).

학대 피해아동은 자아발달과 인격형성에 손상이 성인기까지 이어져 부모역할 수행 이나 부부관계에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 며14) 청소년 성매매와도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15).

정서학대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로 언어적, 정신 적, 심리적 학대와 유사하다. 학대 피해아동은 감정이 풍부하지 못하고 의욕과 자신감 이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방임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 는 행위로 학대 피해아동은 발육부진, 심한 경우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발달 상황에 있어 아동의 다양한 측면에 잠재된 파생적 문제가 발견된다. 예를 들면 청결치 않은 외모로 인한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 행동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방임의 경우 피해아동은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건강악화, 가정 불화 등 변화로 인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2.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한 이론은 정신병리학적 관점, 발달론적 관점, 사회심리학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16)

¹³⁾ 이윤호. 2011.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박영사.

¹⁴⁾ Meyerson, Lori A., Patricia J. Long, Robert Miranda Jr, and Brian P. Marx. 2002. "The influence of childhood sexual abuse, physical abuse, family environment, and gender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6(4): 387-405.

¹⁵⁾ Siegel, L. J., B. Welsh, and J. J. Senna. 2006. Juvenile delinquency. Belmont, CA: Thomson/Wadsworth.

정신병리학적 관점은 부모 특성에 맞추어 설명하는 이론으로, 학대부모는 세상에 대한 잠재적 혐오감과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 완고함, 충동성, 온정결핍, 합리성·융통 성 부족, 소극성, 의존성향 등을 보인다. 대체로 부모의 지능은 높지만 신체적 무능력 으로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잦은 체벌과 구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원인은 심리적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자녀양 육부담감 증가이다.

발달론적 관점은 아동특성에 초점을 두고 아동학대의 원인을 설명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발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아동의 유전학적 신체·행 동의 특성이 학대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특히 장애아동의 특성은 사회적 소외, 멸시, 천대로 이어져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부모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학대 유발하기도 한다17).

사회심리학적 관점은 아동학대를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수준, 사회문화 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원인을 분석하는 것으로써, 부부폭력, 부모갈등, 별거, 이혼 등 결손가정, 적대적·통제적·안일·비합리적 양육태도와 학대와의 연관성에 주목한 다. 대가족에 비하여 핵가족에서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고,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입이 적은 빈곤가정에서 발생빈도가 높다.

생태학적 관점은 가족, 아동, 사회문화적 차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동학대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아동특성, 부모특성, 부모를 포함한 가족관계의 역동,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의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주변 환경과 관련되어 아동학대의 원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생태학적 관점은 발달 생태학적 관점으로도 불리는데 학대원인 을 광범위한 체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여 아동발달연령에 따라 아동학대 원인을 파악한다. 다원론적 측면에서 학대원인을 파악하여 아동학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을 동시에 설명하는 장점이 있다18). 아동학대 위험요인이 보호요인을 능가할 때 아동 학대 발생가능성 높으며. 특히 아동학대 위험요인이 동시에 여러 개 존재할 때 아동학 대 발생가능성 기하급수적 증가한다.

¹⁶⁾ 정덕영. 2006. "아동학대 피해자의 심리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2(2): 3-38.

¹⁷⁾ 이소희. 1990. "兒童虐待 確認을 위한 家庭環境 分析 研究." 국내박사학위논문. 淑明女子大學校.

¹⁸⁾ Fish, M. 1S. 1993. "Early patterns of mother-infant dyadic interaction: Infant, mother, and family demographic antecede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6(1): 1.

이와 유사하게 아동학대 원인을 설명한 또 다른 이론에는 학습이론, 환경이론, 가족 체계이론, 스트레스 이론 등이 있다.

학습이론은 가해부모들의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기술과 지식습득 실패에 주목한다. 부모역할에 대한 불만, 사회적 기술 결여, 아동발달을 무시하고 아동의 성숙한 행동을 기대하여 훈육만 고집하는 태도가 학대 원인이며, 따라서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 와 자녀에 대한 구체적 행동의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로 연결되는 선행행동을 차단해 야한다고 주장한다.

환경이론은 스트레스 강조, 환경적 스트레스 증가가 아동학대 유발요인이라 설명한 다. 스트레스 증가는 좌절,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증가로 이어지고 경제적 하층·노동 자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는 신체적 훈육을 빈곤층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가족체계이론은 가족관계에 관한 이론으로 아동학대 원인을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아동을 희생양으로 선택, 아동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투사함으로써 자신들의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부부문제 는 없으나 가족 구성원간의 경계가 경직되어 자녀의 독립과 자율을 부정하려는 부모 역시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가족에 대한 가치관 혹은 인지의 왜곡이 학대의 원인이다.

스트레스 이론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적 환경에 주목한다. 부모가 외부환경으로부 터 과중한 압박을 받을 때, 가족 간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고 아동특징이 부모 역할에 스트레스 부과하여 부모 자녀 사이의 긍정적 관계가 발달하지 못하고 이에 대처하는 양육방법기술 미숙할 때 아동학대가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국외의 경우, Stephanie Miller(2002)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에서 애 착이론과 페미니스트들의 이론을 통해 아동학대로 정의 될 수 있는 가능 원인들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 Miller는 일반적으로 빈곤이나 실업, 편부모가정이 아동학대 원인으로 거론되기는 하나 아동학대가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을 강화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 하며 정부의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을 지지하였다19).

¹⁹⁾ Miller, Stephanie. 2002. "Child abuse and domestic violence." British Journal of

3. 학대 피해아동 특성

가. 일반적 특성

학대 피해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연령, 성별, 신체적·정신적 장애, 성격·기질, 저체 중아, 임신 및 출생에서의 문제, 질병 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20) 연령이 낮은 아동의 경우 특히 신체적 학대의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세 미만은 유기 의 빈도가 높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에게 흔히 나타나는 특성은 신체적 질병이나 만성 적 장애, 정신지체, 아동의 문제행동, 과잉행동 등이다21). 아동의 성별에 면에서는 가부장적 인식의 영향으로 여아에게 더 많은 학대가 발생하며, 아동의 문제행동정도 가 심각할수록 학대 발생이 높았는데 반항. 공격성. 거짓말. 도벽 같은 적응·행동특성 37.4%, 오락중독, 주의산만 같은 정신·건강특성 35.6%로 보고되었다²²⁾. 아동의 성적 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관련한 연구에서 아동성적이 낮을수록 아동학대가 일어났으나 일관적이지 않았다²³⁾. 지적능력이 높고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아동은 학대 재발 가능 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청소년기 학대는 세대 간 전수 가능성이 미약했다24).

Jon M. Hussey와 동료들(2006)은 1994~1995년, 1995~1996년, 2001~2002년까 지 3차에 걸쳐, 7-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연구에 관한 국가 종단적 연구(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실시하고, 미국의 아동학대를 진단한 바 있다. 연구결과 집에 혼자 방치된 아이의 경우가 응답자 중 4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28.4%), 방임(11.8%), 성학대(4.5%)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징, 인종 등이 아동학대와 긴밀히 연관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Midwifery 10(9): 565.

²⁰⁾ Hicks, F. M. 2000. "Family violence across the lifespan: An introduction, by ola W. barnett, cindy L. miller-perrin and robin D. perri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1: 296.

²¹⁾ 노충래. 2002.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 국아동복지학 13(-): 123-154.

²²⁾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²³⁾ 김미정, 염동문, 이경은. 2013. "Cart 분석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피해자 학연구, 21(1): 293-315.

²⁴⁾ 정덕영. 2006. "아동학대 피해자의 심리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2(2): 3-38.

나. 학대 유형별 아동 특성

학대유형과 아동연령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초등학생(56,1%), 미취학아동 (29.3%), 중학생(15.9%) 순으로 많았다. 신체학대는 남자초등학생이, 방임은 미취학아 동이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신체학대는 14.6% 정서 학대는 7.3%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25), 방임은 미취학아동이 13.4% 초등학생 11.0%로 나타났다. 여자아동은 방임(33.3%), 남자아동은 신체학대(23%)를 주로 경험 하다26).

보건복지부 발간 20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보고된 아동학대사례유형별 피해아동 특성은 모든 학대유형에서 거짓말, 가출, 학교 부적응 등과 같은 적응·행동 특성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세부적으로 성 학대에서는 장애특성이 60건(6.4%). 방임에서는 발달·신체건강 문제 중 특히 위생문제가 623건(9.2%). 정서학대에서는 정서·정신 건강 특성 중 불안특성이 8.1%로 나타났다.

다. 학대유형별 피해 후유증

학대 피해아동은 학대유형별로 상이한 후유증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아동이 학대 를 경험한 연령에 따라서도 후유증에 차이가 있는데 학대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성인 기에 더 심각했으며 애착형성 방해, 도덕발달, 불안감,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라서도 학대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정덕영(2006)의 연구 에 따르면 우선 영아기는 애착과 관련하여 피해후유증을 구분하는데, 거부적, 적대적 어머니와 관련된 '회피형 유형(밀접한 접촉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경향)', 방치하는 어머니와 관련된 '저항적 유형(접촉의 갈망과 갈망이 좌절되어 분노 의 양가혼합을 보이는 경향)', 거부적이면서 방치하는 어머니와 관련된 '비조직화/비 정형화 유형(혼합결과)'으로 나눌 수 있다.

걸음마기와 학령전기 아동학대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엄마에 대한 애착

²⁵⁾ 장화정. 2004. "아동학대와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과 권리 8(4): 777-792.

²⁶⁾ 장화정. 2004. "아동학대와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과 권리 8(4): 777-792.

불안정성은 또래의 사회적 세계 확장을 왜곡시키며, 특히 신체적 학대 경험은 친숙한 사람들과의 접촉 회피 뿐 아니라 또래와의 친사회적 만남에 공격적 반응을 보이게 만든다. 놀이에서도 또래보다 병행놀이와 집단놀이 참여가 저조하고 공격적이며 말수 가 적다. 신체적 학대를 받고 방치된 아동들은 또래와는 상호작용을 잘 하지 않지만 교사들과는 친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중기 아동기에는 적응문제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가족과 또래관계에 대한 반항, 불만, 공격성이 표면화되면서, 탈 중심화와 타인의 관점을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공갂능력 둔갂해 지며 저조한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적 기술, 위축과 우울을 경험하기도 한다.

신체학대를 당한 아동은 부모에 대한 의심이 많고 가정과 부모에 대해 과장하며 부모의 요구를 두려워하고, 다른 성인에 대해서도 의심이 많고 신체적 접촉을 피해 규율을 어기는 특성을 보인다. 신체적 학대 피해 아동은 또래들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적게 하고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며 교사에게 행동장애로 보이기도 한다. 아동은 우울증상이 있으며 부모갈등을 더 많이 지각하고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해 부정적이며 부모와의 애착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성 학대 피해아동은 공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행동문제, 성적 행동, 낮은 자아 존중감으로 표준화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아동은 우울, 학교문제, 학습문제, 위축, 자살 혹은 자해 행동, 신체불편. 불법적 행동, 가출 등을 청소년기에 겪기도 한다. 성적 행동은 학령전기에 빈번하지만 아동기 중기에 급격히 감소하고 사춘기에 난잡하게 재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의 20~52%는 다양한 정신병과 신경증을 가지고 있다.

유아기 성학대의 단기적 영향은 갑작스런 체중감소나 증가, 복부통증, 구토, 요도관 감염, 수면 장애, 악몽, 강박적인 자위행위, 조숙한 성적 놀이, 배변 훈련의 상실, 잦은 목욕, 원인 없는 울음, 칩거, 손 빨기, 매달리기, 퇴행행동 등으로 표출된다. 유아기 성학대 경험은 학대 후 2년 이내 두려움, 불안, 우울, 분노, 공격적 행동, 생애 전반에 심각하고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피해자의 81%가 다시 가해자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화 될 경우, 우울증, 자기파괴, 성 학대 재범, 약물중독을 보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만성적 외상적 신경증(Chronic Traumatic Neurosis)에 영향을 미치기 도 한다.

기 발달과업 성취에 실패하게 된다.

성 학대는 손상된 물건 신드롬(자신의 신체가 오염되어 여성으로서 매력을 상실했다 느끼게 되는 것), 죄의식, 두려움, 우울증, 낮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기술부족, 억압된 분노, 적대감, 손상된 신뢰능력, 역할경계의 모호성 및 역할 혼동, 발달과업성취실패가 수반된 가식적 성숙지배와 통제, 죄의식(성적행위, 폭로, 가족해체에 대한 책임감), 어두움과 낮선 이에 대한 두려움, 악몽 등의 후유증을 보인다. 외형적으로는 슬픔, 위축, 가라앉은 분위기, 피곤, 신체적 질병, 절망으로 인한 자해 혹은 자살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학대 피해아동은 가해자와 자신의 부모 혹은 가족성원에 분노를 표출하

기도 하는데 억압된 분노는 우울증, 위축 때로는 신체적 증상과 정신증적 증상으로 표출된다. 신뢰능력 저하된 근친 성학대 가족 내 아동은 역할혼동, 사회적 기술 박탈을 특징을 보이고 성적학대가 지속되는 경우 피학대 아동은 정상적인 아동기 및 청소년

방임아동의 경우, 낮은 자아 존중감, 부정적 자아상, 자신감 결여, 열등감, 비판적 태도, 실망 및 좌절, 신뢰형성 실패, 자기 파괴적, 집중력 장애, 공격적 행동, 파괴적 행동, 좌절분노조절실패, 스트레스에 민감하지만 처리에 미숙한 특징을 보인다. 방임 피해 아동은 또래관계에 미숙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이른 등교, 늦은 하교, 위축 혹은 과잉행동의 양상을 띤다.

정서적 학대는 대부분 신체적 학대를 수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은 적대적인 언어행동을 보이고, 반항적이며 자기 통제력이 낮고, 과 과제에 대한 지속성과 열의가 결핍되어 있으며, 엄마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분노와 회피를 보인다. 피해 아동은 정신적 불안, 비활동적, 비사회적, 낮은 책임감, 불안과 우울, 몸을흔들거나 손가락을 빨아 스스로 위로하려는 태도, 분노, 적대적, 수동적, 습관장애, 품행장애, 반사회적 행동, 신경증적 반응, 지적, 정서적 발달 지체, 낮은 학업성취의특성을 보인다.

4. 아동학대 가해자 특성

가. 일반적 특성

아동학대 가해자의 특성에 관해서는 성별, 건강상태, 정신질환유무, 약물남용유무,

이전의 학대경험, 가정폭력 경험, 부모의 경직된 양육태도 및 신념 등이 연구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의 연령·학력수준이 낮고, 만성적 정신질 환이나 신체질환이 있으며, 부모가 아동기의 학대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경직된 양육 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들은 폐쇄된 가정에서 양육되고 부모가 약물을 남용하거나 가정폭력, 부부간의 마찰, 가정 내의 부정적 사건의 연속, 가족의 낮은 수입, 가족의 지역사회활동 및 종교 활동 참여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경 제적으로는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해체, 즉 부모의 실업, 저소득층 복지서비스의 결여, 낮은 가계소득, 사회적 억압 및 차별, 체벌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취하는 문화적・역사 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부나 계부가 모보다 성 학대 가능성 높으며 모가 부보다 양육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신체학대 가능성이 높다27). 부모직업은 최근 5년간 부의 실직 경험이 신체학대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직 24.8% 단순직, 전업주부, 비정규직이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28).

가족형태 면에서는 양육과 경제활동 병행의 이중적 부담과 양육일관성 유지의 어려 움과 스트레스 가중으로 한부모 가정의 아동학대 발생율이 높았는데, 특히 모자가정 에서는 방임이, 부자가정에서 신체학대가 발생했다29.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양육형태가 적대적이거나 비합리 적, 통제적인 경우, 사회적 지지가 낮거나 지원이 부족할 경우 재 학대 가능성 높았고 도시지역의 경우 폭력과 학대를 허용하는 분위기와 부정적 이웃관계 등으로 학대 가능성 높았다. 가해자는 남성이 많고 아동기 학대경험이 있고 알코올문제나 성격・기 질의 문제, 가정폭력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30).

한편 김지혜, 정익중, 이희연, 김경희는 2000년 이후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현황 을 분석하였는데 가해자는 미혼모 49건(34.8%), 친모 32건(22.7%), 친부 13건(9.2%) 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 48건(34.0%). 30대 46건(32.6%). 10대 15건(10.6%)으

²⁷⁾ 노충래. 2002.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 국아동복지학, 13(-): 123-154.

²⁸⁾ 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²⁹⁾ 김미정, 염동문, and 이경은. 2013. "Cart 분석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21(1): 293-315.

³⁰⁾ 노충래. 2002.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 국아동복지학, 13(-): 123-154.

로 나타났다³¹⁾.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주로 6세 이하 어린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므로 이 연령대를 양육하는 20대와 30대 부모가 주 가해자로 나타나며 20대 미혼모도 다수 포함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최근 실시된 조민상, 장석헌(2014)의 연구32)에서는 학대행위자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친부(47.1%), 친모(32.6%)로 부모가 전체구성비의 83.9%로 학대행위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주로 발생되었으며 학대 행위별 유형전반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밝히고 있다. 부모 외 가해자는 전체 구성비에 16.1%로 친인척에 의한 학대행위가 2.7%이며 2012년 기준 낯선사람에 의한 학대행위는 50%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학대 유형별 가해자 특성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 신체학대와 방임을, 어머니인 경우 주로 방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 출신 부모들이 주로 학대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순으로 학대가 주로 이루어졌다. 학대가 하자의 결혼 상태는 이혼, 가출 등 결손가정인 경우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이주로 발생하였으며 초혼 일반가정에서도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두 가지 결혼 상태 모두 가정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는 30~40대 연령층의고등교육을 받은 계층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발간 20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보고된 아동학대사례유형별학대 행위자,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아동학대사례유형에서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성 학대를 제외한신체, 정서, 방임에서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부부 및 가족갈등 순으로나타났는데, 이는 학대가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³¹⁾ 김지혜, 정익증, 이희연,김경희. 2013.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한국사회 복지학, 65(2): 131-154

³²⁾ 조민상, 장석헌. 201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공안행정 학회보, 57(-): 190-216.

다. 가해자 조치 결과

아동학대 행위자, 즉 가해자에 관한 경찰수행 절차는 ① 신고접수 후 현장 출동 ② 관찰(학대흔적) ③ 수사·조사(조사 시 학대와 직접 연관된 부분만 거론) ④ 피의자를 검찰로 인계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최종조치가 취해지는데 가해자에 대한 최종조치결과란 아동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 중 당해 연도 가장 마지막 차수에 해당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20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학대행위자 대상 최종조치 결과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속관찰로 총 5.220건(76.8)로 지속관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게 필요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거나 재학대 발생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한편, 고소·고발과 아동과의 분리는 각각 544건(8.0%), 372건 (5.5%)인데 이는 학대행위자인 부모에 대해 상담 및 교육을 통한 교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조계의 인식결여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660건(9.7%)으로 행방불명, 수감, 개입거부, 사망 등이 이해 해당되며 이외에도 특히 학대 가해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거부하 는 경우 강제 서비스 제공권한이 없으며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가해자에 관한 강제조 치 권한이 없으므로 한계가 있다33).

아동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에서는 지속관찰이 70%이상인 반면, 성 학대의 경우 고소·고발(55.3%)의 비중이 높았다. 성 학대는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타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으 로도 강력대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1년 강동욱의 연구에서도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결과는 지속관찰 (83.8%), 고소고발(5.1%), 타기관 의뢰(3.4%)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대행위원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과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으로 행위자의 성행교정과 재 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고 신원 및 소재파악의 어려움 및 증거불충분 등으로 처벌이 되지 않거나 검찰과 법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 학대 가능성이 90%이상으로 조사되었다34).

^{33)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4)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다음으로 연도별로 재학대 사례 학대가해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지속관찰의 경우 2011년까지 80%보다 높은 수준이었던 반면 2013년에는 75.2%로 감소하였지만 고소·고발의 경우는 2011까지 약 5%수준이었던 수치가 2013년 9.8%까지 상승하였 다. 한편 사망아동 사례 학대가해자의 경우에는 유형별 추세를 보이지는 않으나 2013 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관찰 사례(36.4%)보다는 고소·고발 (45.5%)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강동욱(2011)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처리결과, 경찰수사만 이 30.1%. 내사 종결된 사례가 21.7%. 수사 중인 사례가 8.4%이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례는 24.7%, 이중 '불기소'는 16.4%, '기소' 4.7%, '수사 중'은 3.6%이며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한 사례는 45.2%. 공판진행 중은 10.1%. 법원판결 35.1%. 이 중 보호처분은 5.0%, 형사처분은 30.1%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고소·고발된 아동 학대 사례가 법원에 기소된 경우에는 대부분 형사처분 되고 법원 송치 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보다 형사처분을 주로 받는 것은 사법부의아동학대에 관한 이해부족에 기인 한다고 설명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2009)에 의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은 총 49.758회 로 상담서비스(73.3%, 이 중 개별상담이 57.5%), 의료서비스(18.6%), 심리치료서비 스, 학대예방교육,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35).

5. 가정 내 학대

'가족 내 학대(abuse in the family)'라는 용어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아동방임. 아동 성학대. 가정 폭력 및 노인 학대를 포함하며 가족학대(family maltreatment /abuse), 가족폭력(family violence) 등의 용어와 유사하게 사용되어 왔다³⁰. 가족 내 학대는 학대 형태 간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한 가지 이상이 동시다발 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고 기본적으로 정서적 학대가 모든 학대의 기저에 깔려 있다37). 한편 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족 폭력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사건 즉시

³⁵⁾ 강동욱. 2011. "아동학대행위자와 그에 대한 조치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34: 97-115.

³⁶⁾ 알란 켐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 연구회 역. 2001. 「가족학대·가족폭력」, 나남출판. 28면.

³⁷⁾ 알란 켐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 연구회 역. 2001. 「가족학대·가족폭력」. 나남출판. 36면.

가족 폭력의 증인(목격자)이 되거나 후에 인식하게 되어 상처를 받거나 개입하려는 노력과 포기 등을 반복하면서 영향을 받게 된다.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 초등학생 3.050명을 대상으로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한 연구38)에서 아동학대 유형 중 신체학대는 1년 동안 10명 중 2~3명,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다는 방임은 3명 중 1명이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상호작용을 전혀 하지 않는 경향도 나타났다. 아동 성별에 따른 아동학대 유형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남아가 여아에 비해 모든 유형의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여아들은 방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신체학대와 방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정서학대는 6학년이 4학년에 비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령이 어릴수록 학대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상반된 결과이며 학력수준, 학업등수에 따라 서는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의 학대 경험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많았다.

가족변인으로는 가족유형, 결혼상태, 생활수준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쳤는데 재혼 가정과 편부모가족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상대적으로 조손가정, 친부 모 가정에서는 유의미하게 학대율이 낮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부 모의 결혼 상태에 따라서도 아동학대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부모의 이혼, 가출, 별거, 사별 등 한쪽 부모나 양부모가 부재하는 가정의 아동이 신체학대와 방임 등 더 많은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다39). 구족의 구조적 결손과 관련하여 가족구조 변화로 급증하는 부자(父子)가족에서의 아동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의 부자(父子)가족이 거품경제의 결과이며, 거품경제의 위기를 이기지 못한 여성들의 가출이나 이혼의 증거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부자가족에서 의 가정 내의 폭력은 사회적 원조의 결핍으로 인해 다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보고된 건만 2백만 건 이상이며 이렇게 발생하는 폭력은 적절한 보호의 박탈. 체벌. 성적·정서적 학대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40. 마지막으로 생활수준에 따른 아동

³⁸⁾ 이서원, 한지숙, 조유진. 2011. "초등학생의 가정내 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9(3): 103-127.

³⁹⁾ 이서원, 한지숙, 조유진. 2011. "초등학생의 가정내 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9(3): 103-127.

⁴⁰⁾ 문선화. 1999. "부자가족에서의 아동의 문제와 복지대책." 한국아동복지학 8(1): 213-233.

학대 경향을 살펴본 결과, 주관적 생활수준, 즉 경제적 빈곤을 많이 지각하는 가정의 아동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등 모든 영역의 학대를 더 많이 경험했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각기 다른 가족 형태 내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아동보호기관에 가정 내 아동학대를 학대를 경험한 후 격리 보호 되었다가 가정으로 복귀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아동들의 심리 행동적 적응 실태와 심리 행동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41), 90%가 부모에 의한 학대로 밝혀졌으며, 신고당시 학대는 단일학대보다는 중복학대가 많았고 학대아동의 65% 이상이 1주일에 2회 이상 학대를 당해오고 있었다. 격리 전과 가정 복귀 후 모두 모 부자가정이 70% 정도로 높았으며 대부분 이혼이나 가출에 의한 가정해체 가족이 상당수였다. 격리 전에는 부자가정 내에서 생활하던 아동이 가정 복귀 후에는 모자가 정에서 양육되기도 하는 등 환경이 변화되기도 하였다.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의 심리 행동적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호시설 변동여부, 자존감, 재학대가 중요 변인 작용하였다.

가족 내 아동학대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피해아동들은 성별과 가정 유형, 부모의 결혼 상태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실제로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동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발생시 키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정 내 위기요인을 실직, 부모의 음주정도, 부모형태, 부부싸움과 가정폭력으로 분류하고 아동학대 실태와 함께 아동학대 위기요인을 연구한 결과42) 아동학대율은 신체학대가 23.5%, 36.1%, 방임은 68.1%, 성학대는 14.6%로 조사되었고, 실직이 경 제적 어려움이라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방임으로 표출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위기 요인 중 부의 음주는 신체학대와 모의 음주는 방임과 관련되어 있었다. Haves와 Emshoff(1993)도 이중질병(comorbidity) 또는 물질남용 문제와 가족폭력의 동시발생에 관한 문헌 연구를 검토한 이후 여러 연구들이 아동학대와 방임 사례의 반 이상을 가족의 물질 남용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물질남용 치료를

⁴¹⁾ 한지숙. 2004. "피학대아동의 가정복귀후 심리행동적 적응 요인." 국내박사학위논문. 숙명여 자대학교 대학원.

⁴²⁾ 장화정, 강미경, 신소현. 2000. "가정내 위기 요인과 아동학대의 관계." 아동과 권리 4(2): 125-138.

받는 가족 중 60%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을 것이라고 보았고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아동의 2/3가 신체적 학대나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정서적 학대를 당했을 것이라 고 지적하였다. 한편 양육자가 계부모인지 양친인지의 부모형태에 따라서도 아동학대 경험에서 차이를 보였다43).

이와 반대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연구한 결과44)에서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 교사지지, 가족지지의 순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쳤고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에는 자아존중감과 교사지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학대를 경험한 아동집 단에서는 비가해 가족구성원의 지지가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보호 요인이나 위험 요인을 가려내기 위해 수행된 연구들과 유사한 맥락 에서 가족 내 부부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신체적 학대와 부모의 현 양육방식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완충작용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신체학대 경험은 후기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었지만 아동기 신체학대 경험은 청소 년 비행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완화되어가거 나 악화됨이 밝혀졌다45). 특히 부모의 끊임없는 자녀에 대한 감독과 지지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데 중요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반면 방임에 가까운 부모의 지나친 지지는 오히려 비행을 조장할 가능성도 존재함이 포착되었다. 따라서 가정 내 학대에 서 가족 형태 혹은 학대 유형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절적한 지지와 관심은 가족 내 폭력 양상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6. 중복학대·복합학대·반복학대

일반적으로 '중복학대'는 한 가정 내에서 노인 학대. 배우자 폭행과 같은 다양한 폭력들이 아동학대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해자는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이 될 수 있으나 피해자는 두 명 이상 발생하게 되는 가정 내 폭력이다. '복합학대'는 한 명의 피해아동에게 가해지는 학대의 유형이 단일한 유형으

⁴³⁾ 알란 켐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 연구회 역. 2001. 「가족학대·가족폭력」, 나남출판. 70면.

⁴⁴⁾ 조은정. 2012.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학 대경험 아동집단과 비경험 아동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29(-): 138-164.

⁴⁵⁾ 엄명용. 2001.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8): 149-178.

로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다발적으로 가해지는 유형의 학대이다. 마지막으로 '반복학대'는 주로 선행연구들에서 재학대로 명명되어 있는 학대로서 이전에 학대가 발생하고 이후 다시 학대가 가해지는 형태의 아동 학대이다.

중복학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외 연구는 1980년대 이후부터 실태조사 와 함께 중복학대에 관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Straus, Gelles와 Steinmetz(1980)는 미국 전역 실태조사에서 아내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이 일반가정에 비해 129%가 높은 아동학대발생률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Stark와 Flitcraft(1988) 는 아동학대 혐의로 의뢰된 116명 어머니들의 병원기록 분석결과 45%가 아내학대의 피해자였음을 확인하였다. 1990년대 이후 중복학대를 검증하는 조사들의 축적과 종 합적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경우 아내학대 혹은 아동학대가 발겨되는 가구들 의 약 30~60%에서 중복학대가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보다 심각한 피해(중상, 사망)를 경험하는 가정들에서 더 높은 중복발생률을 보였다. 중복학대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연계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미국, 영국, 호주 등 아동학대학회에 서 아내학대를 아동학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로 확인하고 아내학대 피해자 지원 체계와 학대아동 서비스 체계와의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권장하였다46.

국내문헌들 중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은경4까은 쉼터 여성사례조사에서 중복발생률을 50-60%로 추정하고 있고, 한국여성의 전화(1995)의 상담사례분석에서 중복현상을 65.9%로 집계하였으며, 신혜섭은 전국 쉼터거주여성 의 자녀 58명에 대한 조사결과 약 90%에 이르는 아동들이 학대경험을 보고하였다. 한편 전국적 단위의 비임상인구 대상으로 조사에서는48) 두 문제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아내구타가정에서는 폭력의 수준에 상관없이 자녀들이 학대받는다고 보 고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두 문제의 높은 중복발생률이 객관적 사실임을 시사하고 있다49).

⁴⁶⁾ 정혜숙. 2009.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중복발생을 둘러싼 여성주의비판모델과 여성복지적 과제의 검토." 한국여성학 25(4): 110-139.

⁴⁷⁾ 김은경, 2001.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보고서.

⁴⁸⁾ 김재엽, 류원정, 오세헌, 이현. 2014. "가정폭력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여성의 생애주기 상 재피해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1): 81-101.

⁴⁹⁾ 정혜숙. 2009.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중복발생을 둘러싼 여성주의비판모델과 여성복지적 과제의 검토."한국여성학 25(4): 110-139.

아동이 중복 피해를 당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첫째, 가해부모가 배우자 뿐 아니라 자녀까지 폭행할 경우, 둘째, 아동의 행동이 가해배우자의 화를 돋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의 학대. 셋째.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 학대가 될 가능성에 있다. 피해부모는 부부폭력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 아동학 대 가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향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부정적인 태도로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아동학대가 부부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부부의 훈육방식이 불일치 할 때 학대를 중지시키고자 하는 배우자의 개입이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부부 사이에서는 폭력으로 번지기 도 한다50).

중복학대의 원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 내 위기요인을 부부갈등, 가정폭력, 가족형태, 부-모의 음주, 실직(경제적 어려움)으로 분류하고 아동 학대와의 관계를 살핀 연구에서는 경제적 빈곤이 방임의 원인이 되며 이와 더불어 실직 또한 방임과 관련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의 음주경험은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밀접하고 모의 음주정도는 방임과 관련되어 있었다. 부모형태에 따라서도 아동학대 발생정도가 달라졌는데 계부모에 의한 학대가 계부는 8.6%, 계모에 의한 학대는 14.2%에 달한다. 이는 재혼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다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도 하나 재혼 가정 내 아동이 친부모 가정의 아동보다 아동학대를 더욱 많이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51)

미국의 전국적 설문조사(NatSCEV)에서 부부폭력 노출 아동의 33.9%가 아동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부부폭력에 노출되지 않은 아동의 비율이 8.6%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국내연구에선 아직까지 개별적 학대 피해의 영향과 더불어 중복적 발생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의 70%가 아동 학대를 가하 고 있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중복성문제를 제기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 관계에

⁵⁰⁾ Slep, A. M., and S. G. O'Leary 2001. "Examining partner and child abuse: Are we ready for a more integrated approach to family violenc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2):87-107.

⁵¹⁾ 장화정, 강미경, 신소현. 2000. "가정내 위기 요인과 아동학대의 관계." 아동과 권리 4(2): 125-138.

있어서는 양육형태가 적대적이거나 비합리적·통제적인 경우, 지역사회지지는 사회적 지지가 낮거나 지원이 부족할 경우 재 학대 가능성이 높았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폭력과 학대를 허용하는 분위기와 부정적 이웃관계 등으로 인하여 학대 가능성이 농촌 지역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가해자는 주로 남성이었으며 아동 기 학대 경험이 있고 알코올문제나 성격 기질의 문제, 가정폭력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52). 한편 부부폭력 빈도에 따라 살펴보면 부부폭력이 많을수록 신체적 학대가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는 성적폭력요인과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부폭력형태에 따른 자녀의 사회적 능력은 폭력위협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폭력위협을 보지 않은 자녀의 독단성은 낮고 순응성은 높게 나타났다. 학대 받은 아동은 독단성은 높고 주도성, 순응성, 참여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받지 않은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학대받은 아동보고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53).

중복학대 뿐 아니라 자녀에게 가해지는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 등이 두 가지 이상 발생되는 복합학대가 많으며 이는 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다54). 미국에서는 9.3%에서 60.0%의 피해아동이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5).

국내에서는 42.3%가 복합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조합이다56. 그러나 복합학대 중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최악의 조합(The worse combination)"은 신체학대와 방임의 조합이다57). 신체학대와 방임의 복합학대 조합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과 사회적 지지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 자녀는 부모와의 애착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자기통제력이 약화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이는 다시 피해

⁵²⁾ 노충래. 2002.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하 연구." 한 국아동복지학 13(-): 123-154.

⁵³⁾ 김정옥, 류도희. 1997. "논문편 : 부부폭력과 아동의 신체적 , 정서적 학대와의 관계." 대한가 정학회지 35(3): 205-22.

⁵⁴⁾ Belsky, j. 1993. Etiology of child maltreatment: A developmental-ecologic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3). 413.

⁵⁵⁾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11.

⁵⁶⁾ 보건복지부. 2011.

⁵⁷⁾ Ney, P. G., Fung, T., & Wickett, A. R. 1994. The worst combination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19(9), 705-714.

아동에 대한 주변인들의 부정적 평가로 돌아오게 되어 사회적 지지를 철회토록 만든 다. 따라서 복합학대 피해아동은 문제아로 낙인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고립으 로 인해 우울감이 증대되는 악순화이 발생하게 된다58). 복합학대 피해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 비행행동을 신체학대와 방임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는 데 조사대상자의 9.0%가 복합학대를 경험하였으며 우울과 공격성은 복합학대 피해 집단이 신체학대만 경험하거나 둘 다 경험하지 못한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에서 특히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우울과 공격성은 심리 적 부적응으로 인해 자살행동이나 폭력행동으로 발현될 가능성도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한 비행행동에 있어서도 복합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비율이 높았다59).

아동학대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또 다른 학대로는 반복학대가 있다. 아동은 학대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입게 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고 성인이 된 후에도 학대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고 이를 후대에 전승하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발생 하는 학대는 더 큰 위험성을 지닌다.

반복학대는 주로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증가하였는데 가해자가 약물문제를 가지 고 있는 경우와 가해자의 정서적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에 0~3세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반복학대 수준이 2.4배 까지 높아졌으며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1/3 정도 더 많이 수치를 보였다. 아동 특성에 따라서는 아동이 정신건강의 문제나 발달장애와 같은 요인을 보일 경우에 반복학대 위험성이 증가되었고 학대가 만성적이고 심각한 수준일 경우에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유형별로는 방임이 가장 빈번하 게 반복 발생하였고 반복되는 시기 또한 짧았다. 특히 복합학대의 경우에 반복적으로 학대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가족과 관련하여서는 친부모가족이 아닌 경우와 하부모 가정에서 반복학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중복학대가 발생한 가족 에서,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의 지원을 이용하는 가족 의 능력이 낮을수록 반복학대의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⁵⁸⁾ 김재엽, 최권호. 2012. "중복학대 피해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비행행동: 신체학대와 방임의 중복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193-213.

⁵⁹⁾ 김재엽, 최권호. 2012. "중복학대 피해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비행행동: 신체학대와 방임의 중복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193-213.

국내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처음 신고당시 나이가 25세 이하인 경우 반복학대 가능 성이 높았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반복학대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았다. 연령으로는 4~11세의 아동에게서 반복학대가 더 많이 발생하였고 첫 신고당시 보고된 학대빈도 가 잦았던 경우에 반복학대 위험성이 높았다. 가정특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일 경우에 반복학대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아동보호서비스 사례개입이 종결된 이후에 반복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60).

7. 시설 내 학대

일련의 아동복지 시설 혹은 아동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이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에 관한 대중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전국 보육교사 51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경험과 아동학대 목격 시 대처방 안, 아동학대 발생원인 등 조사한 연구에서 보육교사 92명(17.9%)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교사의 학대를 목격한 경우에 대해서는 '학 대받은 영유아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원장의 학대를 목격한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학대를 목격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교사의 학대를 목격한 경우에는 보육이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원장의 학대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 보육교사의 아 동학대 발생원인은 직무스트레스, 과다한 업무, 보육교사정신건강 문제 순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보육교사들은 만일 아동학대 전문상담기관이 신설된다면 457명(88.9%) 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으며 490명(95.3%)이 보육교사아동학대 전문상담요 원(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이 필요하고 담당역할은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및 사례판정'으로 전문화하고 자격요건도 대졸이상, 심리학 및 아동학 전공, 3년~5년 의 경력과 자격증 보유를 요구하였다61).

⁶⁰⁾ 김세원. 2002. "아동학대 재발생의 영향요인".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⁶¹⁾ 이경숙, 박진아, 최명희. 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 요 구도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2): 227-252.

이와 유사하게 서울 소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7명에 대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를 실시한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험만 가지고 있었으며 아 동학대를 목격했을 당시에 어떠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을 주로 하였다. 아동 학대 증가에 관해서는 최근 급증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보도로 인해 보육교사로서의 직업정체성에 관한 혼란과 직무만족도 저하. 아동학대와 관련된 과도한 심리적 부담 감 및 좌절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 집 내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보육교사들의 과도한 보육업무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감정적 조절불 능 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 및 행동특성을 보이는 영유아들의 보육과정 중에 부지불식 가 혹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편 어린이집 내 아동학 대 발생 원인에 관하여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가 무상보육정책으로 자녀를 어린이집 에 무분별하게 위탁하고 있으며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로 인해 보육교사가 과도한 양육업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보았다62).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동안 관찰된 아동학대의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유아교육기관으로 현장실습을 다녀온 후 지각한 아동학대에 관해 조사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 중 신체적 학대는 떠밀고 당기기, 치거나 때리기, 벌주기가 주로 관찰되었고 정서적 학대는 무시하기, 강제로 시키기, 비아냥거 리기, 방임은 제외시키기, 교사의 부재, 무관심의 형태가 관찰되었다63). 그러나 이 연구들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인지한 것에 관한 조사였으므로 실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2010년~2012년 사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어린이집 아동학 대 전수(n=462)를 조사한 결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성을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면. 3년 가 전국 42.527개 어린이 집64) 중 총 91개 어린이집에서 215명의 아동이 어린이 집 종사자에 의해 학대를 당했으며 2010년에는 13개 어린이집에서, 2011년 29개, 2012년 29개로 해마다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⁶²⁾ 박진아, 이경숙, 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에 관한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幼兒教育研究 35(3): 27-54.

⁶³⁾ 차영숙 문혜련. 2009.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유아교육기관의 아동학대." 한국영유아보육학 58: 61-80.

⁶⁴⁾ 보건복지부. 2012. "보육통계"

이와는 달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대로 판정된 사례의 증가세는 270%였으며 특히 일반사례는 681%나 되는 높은 증가를 보였다. 즉, 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 중 조사결과 학대가 없었던 것으로 판정된 일반사례에 관하여 지난 3년 간 증가추세가 학대사례보다 2.5배 이상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실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증가라기보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집 학대 발견과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공공보육 정책 도입 초기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불안을 반영한다. 3년 간 아동학대 판정률은 평균 19.7%로 미국 아동보호 서비스 연간 보고서가 보고한 2012년 미국 아동보호기관의 학대 판정률인 18.5%와 유사한 수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정률을 보여준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자 유 형을 살펴보면, 실재 학대 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신고의무자(17.6%)보다 비신고의무자(82.4%)의 비율이 높고 특히 그 중 학부모의 비 율(63.7%)이 높았다. 학대 유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신체적 학대의 비율(55%)이 월등하다는 점이다. 이와 비교하여 정서학 대는 14%, 성학대 7%, 방임 3%, 중복학대 21%로 성학대와 방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학대의 경우에는 만지기, 방임의 경우에는 감독방임이 빈번하였다. 학대 원인에 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조사에서 학대행위자들은 훈육과 체벌을 목 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경향이 많았다. 아동학대에서 도구를 사용한 사례는 전체 신체학대의 28.4%, 신체손상이 있었던 사례는 전체 신체학대의 67.2%였 으며 신체학대의 상당수는 1회성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나 방임의 경우에 는 두 번 이상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최종조치는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신체학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 으며 학대 행위자에게 제공되는 최종조치는 고소고발 50%, 해임 33.9% 등 대부분 강력한 처벌 위주였다65).

시설 내 발생한 아동학대를 직접 경험한 대상들을 조사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아 중 11명(69%)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되었으며 불안증세(52%, 학대경험 외상 재연 반복 이야기, 악몽, 공포, 분리불안, 사회적 위축), 파괴적 행동(26%, 공격성,

⁶⁵⁾ 김기현, 장화정, 김경희, 장희선. 2014. "한국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학대 특성 및 아동보호서 비스의 최종조치 관련 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6(4): 25-52.

반항적 행동) 및 기타 문제행동(대변실수, 퇴행해동, 수면문제, 산만성, 야경증 등)이 나타났다. 인천에 소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유아와 부모 총 16쌍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유아 중 81.3%가 임상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의 외상관련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62.%는 임상적 조치가 필요한 외상관련 증상을 보였다. 또한 부모 중 약 80%가 불안과 우울증상을 보였으며 유아들은 신체 및 언어적 공격성, 교사에 대한 부정적 표상, 외상 관련 해리, 재 경험 및 회피반응, 이야기 비일관성, 부정적 공포, 산만함 등의 검사 수행 태도를 보였다.

한편. 어린이 집 이외의 타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실태와 현황을 연구한 선행연구들 중 가족과 분리되어 1개월 이상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9~12세 학령기 아동 3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시설보호현황을 살펴보면, 35%의 아동이 9세 이전의 나이 에 시설에 입소하고 있었고 40% 이상의 아동이 1년 이상 원가족과 분리된 채 방임되 고 있었으며 가정 복귀 후 재입소하거나 시설 간 이동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활하 는 경우가 많았다67).

일반적으로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아동학대에 관하여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순으로 아동학대 발생 정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신고의무자인 것에 대한 인식도 강하여 자신들이 최우선 의무자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68). 그러나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고 기관장의 영향력이 직접적이며 강한 유아교육기관 장들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관장들도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과 유사하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 순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신체 적 학대에 관하여 자녀를 기절시키거나 흉기 담뱃불 등으로 위협하고 상해를 주는 것에 관해서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빗자루나 회초리에 대해서는 다소 둔감하게 반 응하였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장들이 여전히 우리사회의 만연한 전통적 훈육 방식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2~3년 사이에 학대에 관해 인식이 고취되어 최근 1년 간 학대 피해아동 목격 경험이 1997년 23.7%에서 31.8%로 증가하였으나

⁶⁶⁾ 이경숙, 박진아, 신의진. 2015.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 유아의 외상 관련 증상 및 정신적 표상."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72-272.

⁶⁷⁾ 주소영. 2008. "아동학대와 탄력성의 관계에서 인지기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국내박 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⁶⁸⁾ 윤선오, 박복숙. 20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식 연구." 福祉行政論叢 21(2): 25-59.

여전히 학대 피해아동을 따뜻하게 대해주었다(54.5%)는 응답이 가장 많아 여전히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69).

8. 아동학대살인

아동학대 사망은 치명적 아동학대(fatal child abuse), 치명적 방임(datal neglect), 비고의성 상해로 인한 사망(unintentional injury death) 등 다양한 용어로 분류된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는 외국의 경우 과소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경우, 사망 원인이 아동학대로 분류되지 않거나 아 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되지 않고 경찰서나 병원 내에서만 단독처리 되는 경우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제기되어왔다70). 따라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나 살인과 관련한 국가 아동학대 시스템의 구축과 데이터 관리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하여 법학, 사회학, 사회복지 등 각 계에서 아동학대 사망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아동 학대 사망사례 74건을 조사한 연구에서 피해아동은 여아가(55.4%)였고 1세 미만 (27.0%)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사망사례 가운데 6세 이하가 총 54건으로 73%를 차지 했다. 아동발달 특성은 학습 및 언어발달 문제가 있는 아동의 경우가 19.4%, 사회적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22.6%의 순으로 나타나 피해 아동의 대부분이 특정한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71).

가해자의 경우에는 여자인 경우(56.9%)가 남자의 경우보다 조금 더 많았고 연령은 25세 미만(28.5%)과 '31~35세'인 경우(24.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미상 인 경우가 많았으나 파악된 경우에는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29.7%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은 '성격 및 기질 문제(25.4%)', '부적절한 양육태도(55.9%)',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54.2%)'이 아동학대 사망사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72).

⁶⁹⁾ 정채옥. 2002. "유아 교육 기관장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연구." 幼兒教育研究 22(1): 185-210.

⁷⁰⁾ 김세원, 이정은, 정익중, 장화정. 2014.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현황과 예측요인." 한국아동복 지학 46(-): 25-56.

⁷¹⁾ 김세원, 이정은, 정익중, 장화정. 2014.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현황과 예측요인." 한국아동복 지학 46(-): 25-56.

⁷²⁾ 김세원, 이정은, 정익중, 장화정. 2014.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현황과 예측요인." 한국아동복 지학 46(-): 25-56.

다음으로 아동학대 사망사례에서 소득이 파악된 사례 중 월평균 가구소득이 '50~100 만원 미만'인 경우가 21.6%이었으며 한부모 가구가 21.4%의 수치를 보였다73).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예측요인을 살펴보면 1세 미만의 피해 아동이 13세 이상의 아동에 비해서 사망 발행 가능서이 15배 더 높았고 신체 학대의 경우 사망 발생 가능성 이 23배 더 높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성격 및 기질문제, 부부 및 가족갈등, 가구소득 등이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예측요인이 아니었으므로 결론적으로 영아가 학대에 노출된 경우에 아동학대가 우연히 사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다룬 또 다른 연구74)에서는 141건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관한 신문기사를 분석하였다. 가해자는 미혼모(34.8%). 친모(22.7%). 동거녀 및 계모 (9.9%). 친부(9.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 연령은 20대가 34.0%. 30대가 32.6% 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아동 살해의 원인은 미혼모나 미혼부모의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살해(37.6%)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양육능력 부족 (시끄럽게 움, 말 안들음, 거짓말, 가출, 술김에 화나서, 25.5%), 산후우울증(7.1%), 생활고와 경제능력부족(5.7%)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연령에 따라서는 1세 미만의 아 동의 경우는 출생즉시 미혼 부모에 의해 살해되는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1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에는 양육능력 부족으로 인한 아동사망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가해자는 양육능력 부족에 의한 아동살해가 11건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에는 미혼모에 의한 신행아 살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75).

한편 지금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개입 과정에서는 주로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역할만이 강조되어 온 반면, 병원의 역할은 크게 부각되지 않아왔다. 하지만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대 피해아동보호팀을 운영하는 전국 62개 병원과 접촉하여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아동사망사건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병원에서 사망한 아동학대 사례는 병원 내원 후 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었다. 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⁷³⁾ 김세원, 이정은, 정익중, 장화정. 2014.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현황과 예측요인." 한국아동복 지학 46(-): 25-56.

⁷⁴⁾ 김지혜, 정익중, 이희연, 김경희. 2013.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한국사회 복지학 65(2): 131-154.

⁷⁵⁾ 김지혜, 정익중, 이희연, 김경희. 2013.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한국사회 복지학 65(2): 131-154.

학대피해아동은 매우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거나 보호자의 거짓말이나 치료거 부로 병원 이송 초기 치료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아동의 사망 진행을 막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보호팀의 의심과 개입을 통해서 사망 원인이 학대임을 밝혀낸 것이 학대피해아동보호팀 활동의 의미있 는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76).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하여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하여 왔으나 부산고등법원이 '울산계모아동학대 살해사건'에 대하여 '살인죄를 선고한 판결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성인들 사이에 발생한 사망 사건과는 달리 가족 내에서 암행적으로 이루어지고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신체적 차이 와 학대의 상습성, 위계적 권력관계 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 을 고려하여, 법원이 사실을 인정할 때 피고인 진술에 대한 또 다른 객관적 증거뿐 아니라 일반적 행동법칙에 따라서 신빙성에 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만 한다.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범행에 익숙해지고 취약해진 피해아동에게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해자가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체 조건이 아동에 비해 월등한 성인이 주먹이나 발로 상해를 가하는 행위도 피해아동에게는 흉기로 폭력을 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에서는 이미 흉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폭력으 로만 가정 내에서 성인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었 다78).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의 피해부위는 머리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아동의 경우 머리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져 사망 에 이르기도 하나 아동의 경우에는 심장과 폐 등 주요장기의 발달이 아직 다 이루어지

⁷⁶⁾ 김경희, 이희연, 정익중, 김지혜, 김세원. 2013. "병원 학대피해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 사망사 건 개입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4): 61-88.

⁷⁷⁾ 박량호. 2015. "특별기고(特別寄稿):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法曹 64(2): 5-56.

⁷⁸⁾ ① 베트남신부가 결혼생활을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가슴부위를 밟아 늑골 18개 골절로 인한 흉부손상으로 사망. 대전고법 2008. 1.23.선고, 2007노425판결 ② 처가 퇴직금 약 2억원을 다단계회사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자 12시간정도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다발성 분쇄늑골골절로 인한 흉곽동요로 사망한 사안. 대법원 2007.3.29. 선고, 2007도713 판결, 박량호. 2015. "특별기고(特別寄稿) :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法曹 64(2): 5-56. 재인용

지 않았기 때문에 몸통에 대한 폭력 또한 치명적일 수 있다79). 따라서 아동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폭력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여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국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관련 사망사건 중 영국, 독일, 미국에서 발생한 '아동학 대 사망사건'에 대해서 사건개요, 살인죄 인정여부, 양형 등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Daniel Pelka'사건은 피해아동 다니엘 펠카(잠. 4세)의 친모와 동거남이 공부하여 피해자를 굶기고 감금·구타·체벌 등을 가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소금을 강제 로 먹이고 욕조에 빠뜨리는 등의 지속적 학대를 행하였으며 사망하기 수 개월 전부터 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구타하여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뒤 이를 방치하여 경막하부 혈종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80). 영국 법원은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가해자가 피해 자의 머리를 난타한 것이지만 사망하기 14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팔을 골절시키고 굶기고 소금을 먹이는 등의 학대행위로 피해자가 범행에 극도로 취약해진 결과, 사망 에 이른 것이라는 판단하고 살인죄를 인정하고 최소구금기간81) 30년을 정하고 무기 금고형을 선고하였다. 특히 최소구금기관과 관련하여 '유례없는 심각한 폭력적 특징' 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전모를 은폐하기 위해 의료복지 담당 유관기관을 속이도 개입 을 차단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참작하였다82).

독일의 'Karolina'사건⁸³)은 피해자의 친모의 동거남이 피해자의 얼굴을 심하게 강타하여 뇌손상으로 2004.1.7.경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2002년 1월 1일 경부터 같은 달 4일 경까지 반복해서 손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심하게

⁷⁹⁾ 박량호. 2015. "특별기고(特別寄稿) :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法曹 64(2): 5-56.

⁸⁰⁾ R v Mariusz Krezolek and Magdelena Luczak(T20127199) Birmingham Crown Court (2013.8.2.선고). 박량호. 2015. "특별기고(特別寄稿):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法曹 64(2): 5-56.. 재인용

⁸¹⁾ 살인죄의 경우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데, 2003년 법 개정으로 강간살인 등을 제외하고 가석망 을 위한 최소구금기간 개념이 도임되어, 경찰관 살인이나 무기소지 살인의 경우에는 30년, 그 밖의 경우에는 15년(18세 미만 12년)이 최소구금기간의 시작점이다. 박량호. 2015. "특별기 고(特別寄稿):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法曹 64(2): 5-56. 재인용

⁸²⁾ 박량호. 2015. "특별기고(特別寄稿):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法曹 64(2): 5-56.

⁸³⁾ BGH Beschuluss vom 17. Januar 2007 - 1 StR 539/06, Memmingen 지방법원(2007.1.17. 선고)

때리고 벽이나 바닥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밀봉된 플라스틱 병이나 불꽃으로 몸에 화상을 가하거나 차가운 방에 가두었고 친모 역시 부분적으로 학대에 가담하고 피해 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어떠한 보호나 개입을 하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의 의식이 없음에도 의사 부르지 않고 방치하다 다음날 오후 병원 화장실에 유기하여 사망하게 하였다84). 이에 대하여 뮌헨 지방법원은 가해자인 피고인들에게 학대와 보살죄를 적용하여 각각 무기자유형에 처하고 연방대법원에서 2007년 판결이 확정되 었다85).

미국의 'Eli Johnson'사건86)은 친모와 동거남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 중 동거남이 2009년 9월 15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져서 피해자 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적어도 9개월 전부터 학대를 당해왔고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발을 심하게 때리는 등 온몸에 멍이 들도록 학대하였다. 사건 당일에는 용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온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탁 위에서 발끝으로 서있게 하여 여러차례 식탁에서 떨어졌다. 이에 더 분노한 가해자는 피해자를 들어 여러 번 바닥에 던졌으며 친모는 동거남이 피해자에게 학대를 가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진통제를 복용하고 쉬면 서 보호나 개입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이후 5시간 동안 토하고, 먹거나 걷지도 못했지만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방치하다가 피해자가 쓰러지자 병원으로 이송 하였으나 이송 후 20분 후 사망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팔, 다리, 배, 얼굴, 이마, 생식기 에 온통 멍이 든 상태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친모의 동거남에 대해서는 2013년 1급 살인죄 및 2건의 아동학대죄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으며 친모에 대해서는 1급 살인죄로 무기징역 및 2건의 아동학대 방조로 각각 징역 1년, 3년과 아동 유기 징역 7년 형을 선고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87).

미국에서 발생한 'Edna Hunt'사건88)은 2011년 7월경부터 10월 6일까지 가해자와

⁸⁴⁾ 박량호. 2015. "특별기고(特別寄稿):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法曹 64(2): 5-56.

⁸⁵⁾ BGH Beschuluss vom 17. Januar 2007 - 1 StR 539/06, Memmingen 지방법원(2007.1.17. 선고)

⁸⁶⁾ Oklahoma County District Court case number: CF-2009-5643

⁸⁷⁾ 박량호. 2015. "특별기고(特別寄稿) :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法曹 64(2): 5-56.

⁸⁸⁾ Atelia Hunt Marlboro County Forth Judical Circuit Case number M9095610, Alexander

피해자인 작은 딸(여. 3세)을 손이나 주먹으로 등이나 어깨를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 의 질 부분을 지지고, 치아를 강제로 뽑고 머리를 심하게 때린 후 머리카락을 미는 학대행위를 가하여 피해자가 요로염에 의한 염증이 지속되어 혈액감염으로 번지게 된 합병증으로 2011년 10월 6일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주 가해자에게 는 살인죄, 아동학대죄, 미성년자간음죄를 적용하여 배심원 평결에 의하여 무기징역 을 선고하였고 피해자의 학대여부를 인지하고도 개입하지 않은 또 다른 가해자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8》.

마지막으로 미국의 'Lilv' 사건'90)은 2010년 1월부터 11월경까지 피해자(여. 2세)와 남편(친부)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질투한 가해자(계모)가 친부의 부재를 틈타 피해자의 질에 물건을 집어넣고 피부를 찢고 바닥에 심하게 던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지속하여 2010년 11월 20일 두부 손상으로 사망케 한 사건이다. 피해자 의 친모. 친부는 계모의 학대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자에게 살인죄, 아동학대죄 및 미성년자 간음죄91)를 적용하여 무기징역형92)을 선고하였고 가해자는 사고사를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이와 같이 영국·독일·미국 모두 주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 '흉기 등의 사용이 없는' 경우에도 살인죄를 인정하고 법정 최고형을 포함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Daniel Pelka'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 가 극도로 범행에 취약해져 있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면서도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도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OECD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아동학대 발생의 관계를 아동학대로 인한

Mike Huckabee marlboro County Forth Judicial Cirrcuit Case number 2012GS3400135 89) 박량호. 2015. "특별기고(特別寄稿) :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하 소고-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法曹 64(2): 5-56.

⁹⁰⁾ Renee king 16th judicial Circuit Court Macomb Country(Michigan) Case number 2011-00149-FC

⁹¹⁾ 세 죄명 모두 1급(first degree)범죄로 기소되어 협의 모두 인정되었음. 박량호. 2015. "특별 기고(特別寄稿):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法曹 64(2): 5-56. 재인용

⁹²⁾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without parole). 박량호. 2015. "특별기고(特別寄稿): 아동학대 사 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法曹 64(2): 5-56. 재인용

⁹³⁾ 박량호. 2015. "특별기고(特別寄稿):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法曹 64(2): 5-56.

사망률을 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는 '고의적 아동사망률'은 각 국가의 경제적 특징과 사회적 특징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임과 아동의 안전까지 포함한 경우의 아동사망률인 '우발적 아동사망률'은 사회적 특징보다는 경제적 특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94).

⁹⁴⁾ 김선숙 유민상. 2012. "Oecd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아동학대 발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16(4): 591-617.

제3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아동학대의 일반적 특성

강 은 영

아동학대의 일반적 특성

제1절 조사방법

본 연구는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와 신문기사 분석의 두 가지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일반 아동학대 현황 자료는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고, 아동학대살인 자료는 일간지 분석을 통해 수집되었다.

1.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

가. 조사의 범위와 내용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처벌된다. 다만 이 두 법 상에는 순수한 의미의 아동학대만이 아니라 아동보호시설 등에 대한 규정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식통계상의 두 법 위반을 모두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조사는 조사대상을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사건 중에서 아동학대행위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중에서 성학대는 조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성학대는 중요한 아동학대의 유형이기는 하지만,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과 같은 일반 학대와 그 성격이 매우 상이하며, 가해자의 특성 역시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대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아동성학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만으로 처벌되지 않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성폭력특별법』, 『형법』 등에 의해서도 규율되기 때문에 성학대까지를 포함할 경우조사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성학대 관련 죄명이 포함되어있으나 실제 조사에서 는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가 동반되지 않고 순수하게 성학대만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사례에서 제외하였다.

본 조사의 범위는 최근 5년간(2010-2015)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행위이며, 해당 죄명은 아래와 같다.

〈표 3-1〉 해당 죄명

관련법	해당조문 및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제5조 " (아동학대중상해) 제6조 " [상습(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카목의 각 죄명)] 제7조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그 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제1의2호	

조사 내용은 처분 특성, 가해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행위 특성,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학대유형별 특성이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기록조사지 구성은 〈표 3-2〉와 같다.

첫째, 처분관련 특성은 죄명 특성과, 검거 및 처분 특성,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 태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죄명 특성에는 죄명, 경합여부, 경합죄명이 포함되 었고, 검거 및 처분 특성에는 검거경위, 최초신고자, 구속여부, 검찰구형, 최종심유형, 변호인 유무 등이,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 피해자 태도에는 가해자 범행시인 정도, 피해자의 가해자 처벌에 대한 태도, 고소취하여부, 합의여부가 포함되었다.

둘째, 가해자 관련 특성으로는 가해자 성별, 연령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전과유 무, 채포 및 전과횟수 등의 전과 특성. 그리고 가해자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셋째, 피해자 관련 특성에는 피해아동 성별, 연령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피해자 수 및 관계, 가해자 피해자 관계, 피해자 가족특성, 그리고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을 포함하였다. 특히 아동학대는 가족특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일반적으로 수사 및 재판기록에서 조사하지 않는 가족유형, 피해자 동거가족수, 사회적・지리적 고립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였다.

넷째, 범행관련 특성의 주요 변인은 학대장소 및 기간, 가해자 수와 공범특성, 학대 유형, 학대 공기, 학대 결과이다.

다섯째, 수사, 재판, 그리고 형집행 등의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상담·치료 등 서비스 제공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여섯째,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 아동학대살인은 별도의 변인을 구성하여 조사 하였다.

〈표 3-2〉 기록조사지의 구성

	변인 유형	세부 변인
	죄명특성	죄명, 경합여부, 동종경합죄명, 이종경합죄명
처분관련 특성	검거 및 처분 특성	피의자 검거경위, 최초신고자, 구속여부, 검찰처분결과, 검찰구형, 징역형 형기, 집행유예기간, 벌금액수, 최종심유형, 최종심처분 내역, 변호인 유무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 피해자 태도	가해자 범행시인 정도, 피해자의 가해자 처벌에 대한 태도, 고소취하여부, 합의여부
-1-11-1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해자 성별, 가해자 연령, 가해자 교육수준, 가해자 국적, 가해자 혼인 상태, 가해자 직업, 가해자 종교, 가해자 주거지역, 가해자 주거안정성
가해자 관련 특성	전과특성	전과유무, 총체포횟수, 총전과수, 실형전과, 아동학대로 인한 체포유무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유무, 적응 및 행동문제 유무
	사회인구학적 특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연령, 피해자 주거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여부
	피해자수 및 관계	피해자수, 피해자들간의 관계
피해자 관련 특성	가해자 피해자 관계	가해자 피해자 관계, 가해자 피해자 동거여부
22.70	피해자 가족특성	가족유형, 피해자 동거가족수, 사회적·지리적 고립여부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유무, 적응 및 행동문제 유무
	학대장소 및 기간	학대장소, 학대피해기간, 학대빈도
범죄행위 특성	가해자 수와 공범특성	가해자 수, 공범유무, 공범간의 관계
¬ o	학대유형	복합학대여부. 학대유형

변인 유형		세부 변인
	학대동기	학대동기,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학대결과	후유증 유무, 후유증 유형
	피해자 상담·치료 등 서비스 제공	가해자 상담·치료 등 서비스 제공, 피해자 상담·치료 등 서비스 제공
가	정내 학대 특성	중복학대 여부, 중복학대 대상 및 피해유형, 피해자 부모의 부부관계, 부부직업 유무, 피해자의 형제관계, 가해자의 평소 양육태도, 가해자 의 평소 대인관계, 가해자 성장시 학대여부, 피해자 부모의 배우자에 대한 행동, 피해자 부모의 부부싸움 동기, 학대행위 직후 가해자의 태 도, 학대당시 피해자의 저항정도, 비가해가족의 학대당시 태도, 친권 제한 및 박탁여부, 피해아동 조치결과, 원가정 복귀시기
시	설내 학대 특성	가해자 직책, 가해자 자격증 보유 유무, 가해자 종사기관, 가해자의 경력, 가해자 근무형태, 가해자 근무시간, 가해자 종사시설유형, 종사시설의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여부, CCTV 설치여부
아동	등학대살인 특성	사망일시, 사망당일 학대지속기간, 직접적 사망원인, 사망에 이르기 전 피해자 상태, 사망에 이르기 전 학대행위자의 조치, 아동사망 후 학 대행위자의 조치, 범행현장 특성, 사체유기장소, 피해자의 저항정도

나.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아동학대 사건은 연간 발생비율이 높지 않아 검찰청 당 해당사건의 수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가능한 많은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으로부터 2010년에서 2015 년 5월까지 발생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사건 의 목록을 제공받아, 이를 검토한 후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은 21개 검찰청을 선정하고. 각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기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 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 찰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대 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주지 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이다.

기록조사는 조사자들간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록조 사표를 사전에 작성한 후 해당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기록조사지에 기입하도록 하였고, 조사원 교육을 통하여 조사의 체계성을 높였다.

예비조사는 2015년 7월 22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실시되었고, 본조사는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17일간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총 572개 사건이 표본으로 확보되었다. 검찰청 별 수집 표본수와 비율은 〈표 3-3〉과 같다.

⟨표 3-3⟩ 검찰청별 조사대상 사건수

조사기관명	수집 표본수	비율(%)
서울중앙지검	27	4.7
서울서부지검	33	5.8
서울남부지검	26	4.5
서울북부지검	36	6.3
의정부지검	31	5.4
인천지검	23	4.0
 부천지청	26	4.5
수원지검	36	6.3
성남지청	20	3.5
안산지청	49	8.6
안양지청	23	4.0
원주지청	14	2.4
대전지검	23	4.0
청주지검	12	2.1
대구지검	30	5.2
부산지검	26	4.5
울산지검	46	8.0
	31	5.4
순천지청	17	3.0
전주지검	28	4.9
제주지검	15	2.6
Ä	572	100.0

본 연구에서는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로 빈도분석, 교차표 분석, 분산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이용하였다.

2. 신문기사 분석

가. 조사의 범위와 내용

국내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 부족과 아동학대 사망 개념에 대한 합의부족. 형사사법기관-의료기관-민간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미흡 등의 문제로 정확한 사망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않다. 아동학 대 살인의 경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살인죄나 치사죄로 처벌하는데, 아동학대살인(치사) 죄명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별도로 구분하는 지표가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사례 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를 통하여 아동학대일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해서는 아동학대 살인 관련 사건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신문기사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문기사 자료는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수집되었다.

첫째, 기사통합검색 시스템 카인즈(http://www.kinds.or.kr/)를 통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 경상일보, 세계일보, 부산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영남일보, 한국일보, 헤럴드 경제, 강원일보, 대전일보, 데일리안, 수워일보, 머니투데이, 로이슈 경북매일, 전민일보를 분석하였다.

둘째,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문기사 검색을 실시하였다.

셋째, 네이버, 구글, 야후 검색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SBS, 뉴시스,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검색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17일까지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 한 모든 기사이며, 여러 매체에 중복 보도된 사건은 1건으로 처리해 분석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아동상해치사. 아동폭행치사. 아동유기. 아동유기치사. 영아유기치 사, 서현이 사건, 입양아 폭행사건, 아동학대치사, 영아사망, 아동폭행 사망, 아동살해,

분석에 포함된 변인 구성은 아래 (표 3-4)와 같다.

신생아살해, 계모학대이다.

첫째, 처분 특성으로 죄명,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둘째, 신고특성으로 신고자, 신고일, 신고기관을 조사하였다.

셋째, 가해자 특성으로 연령, 성별을 조사하였고, 가능한 경우 학력, 범죄전력, 직업, 부부관계를 포함하였다.

넷째, 피해자 특성으로 연령, 성별, 가해자와 관계, 가해자와 동거유무를 포함하였다. 다섯째, 범행특성으로는 사건일, 범행장소, 거주지역, 학대도구, 학대이유, 학대양 상, 사망사인, 은폐방법이 포함되었다.

여섯째. 보도매체명과 보도일자를 조사하였다.

(TO 4) CE/14	(# 0 %) (10 1/4) (1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변인 유형	세부 변인			
처분 특성	죄명,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			
신고 특성	신고자, 신고일, 신고기관,			
가해자 특성	연령, 성별, (학력, 범죄전력, 직업, 부부관계)			
피해자 특성	연령, 성별, 가해자와 관계, 가해자와 동거유무			
범행 특성	사건일, 범행장소, 거주지역, 학대도구, 학대이유, 학대양상, 사망사인, 은폐방법			
보도매체	매체명 부도인자			

(표 3-4) 신문기사 분석의 변인 구성

제2절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 결과 나타난 아동학대의 일반적 특성

이하에서는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 분석결과 나타난 아동학대의 일반적 특성을 처분특 성, 가해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행위 특성으로 나누어 빈도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아동학대의 처분 특성

가. 죄명 특성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결과 572개의 아동학대 관련사건이 수집되었다. 이들 사건의 죄명 분포를 살펴보면 〈표 3-5〉와 같다. 조사대상 사건의 아동학대 관련죄명은 동종죄 명까지를 포함하여 총 638개이다. 이 중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위반이 약3.0%이고, 나머지 97.0%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이다. 특례법은 2013년 12월 제정되고, 2014년 9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구체적인 죄명 분포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 아동 유기 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이용행위' 위반이 47.9%로 가장 많고, '그 외 아동복지법' 위반이 47.6%이며, 다른 죄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1% 이하로 매우 적다.

〈표 3-5〉 죄명

	구분	빈도	비율(%)
	제71조 제1항 제1호(아동매매)	8	0.8
	제 71조 제1항 제1의 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6	0.6
	제71조 제1항 제2호(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이용행위)	484	47.9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양육알선금품취득, 아동금품유용)	6	0.6
	제71조 제1항 제4호 (곡예강요행위, 제3자 인도행위)		
	제72조(상습)	4	0.4
	그 외 아동복지법 위반	481	47.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상습)	14	1.4
	제7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5	0.5
	그 외 특례법 위반	1	0.1
	계	1,010	100.0

아동학대는 이질적인 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단일 범죄로 저질러지 거나, 경합이 되더라도 동종경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 사건 중에서 경합인 사건은 64.5%이고, 경합이 아닌 사건이 35.5%이다. 경합범 중에는 '이종경합' 은 12.6%에 불과하고, '동종경합'이 37.0%이며, '동종+이종경합'은 14.9%이다.

이종경합의 구체적인 죄명은 '치사죄(상해치사, 과실치사, 유기치사)'가 4.1%, '상 해/치상죄(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폭행치상)'이 30.1%, '폭행(폭행, 특수폭행, 존속폭 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 36.6%이며, 그 외에도 '성폭력(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2.4%, 협박(협박, 존속협박)'이 5.7%이다. 다시

말해서 아동학대는 주로 폭력범죄와 경합된다.

⟨표 3-6⟩ 경합여부 및 이종경합 죄명

	구분	빈도	비율(%)
	경합 아님	234	35.5
	이종경합	83	12.6
경합여부	동종경합	244	37.0
	동종+이종	98	14.9
	Л	659	100.0
이종경합	상해치사/ 과실치사/ 유기치사	12	4.1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폭행치상	90	30.1
	폭행 /특수폭행 /존속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09	36.6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7	2.4
	협박/ 존속협박	17	5.7
	기타	63	20.9
	계	298	100.0

나. 검거 특성

아동학대 피의자들은 주로 신고에 의해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93.4%). 그 중에 서도 신고의무자 이외의 '제3자 신고'가 가장 많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55.5%).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두 번째로 많다(24.4%). 또한 '피해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전체 조사대상 사건의 13.5%에 이른다.

반면 다른 범죄와 달리 '현행범 체포'(3.6%), '자수'(1.7%), '다른 조사 중 발각' (0.9%)에 의해 검거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표 3-7〉 검거 경위

	구분	빈도	비율(%)
피의자 검거 경위	자수	11	1.7
	현행범 체포	24	3.6
	피해자 신고	89	13.5
	신고의무자 신고	161	24.4

구분	빈도	비율(%)
제3자 신고(신고의무자제외)	366	55.5
다른 사건 조사 중 발각	6	0.9
알 수 없음	2	0.3
계	659	100.0

신고를 통하여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최초신고자가 누구인지를 살펴 보면, 〈표 3-8〉과 같다. 표에는 전체 신고자 중 비율과 신고의무자95) 및 비신고의무자

- 9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3. 「아동복지법」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7.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12.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13. 「유아교육법」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 15.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 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17.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 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의 장과 그 종사자
 - 18. 「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19. 「청소년 보호법」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 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23.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24. 「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중 비율을 함께 제시하였다.

전체 신고사건 533개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은 30.2%이고 비신고의무 자가 신고한 사건은 66.4%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이 더 적다.

표 우측의 전체 신고자 중 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개별 신고자 유형으로는 아동의 모(37.1%),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11.8%), 아동의 부(10.5%), 모르는 사람(7.1%), 교원(6.2%), 이웃(6.0%)의 순서로 신고비율이 높다.

집단 유형으로 묶어 분포를 살펴보면 '부모'가 47.6%로 가장 많은데, 특히 모가 가장 많아 37.1%이고, 부는 10.5%이다. 부 혹은 모가 학대가해자일 때 비가해 부 혹은 비가해 모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내 학대의 경우 대부분 부모가 신고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11.8%, '교육 및 보육시설 종사자'(교원, 보육교직원, 유치원종사자)가 10.9%로 신고비율인 높다.

주목할 점은 친인척(조부모, 형제자매, 친인척)(4.8%)보다는 이웃사람(6.0%)과 모르 는 사람(7.1%)이 신고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핵가족화로 인하여 확대가족 구성원 들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으며, 특히 부모가 학대가해자일 때 아동들을 학대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지역공동체가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그 외에 '의료인'이 3.0%, '복지시설 등 종사자(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지설, 사회 복지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3%, '관련 공무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전 닦공무원)' 1.7%. '소방구급대원'이 0.6%로 집계되었다.

/	_	ω \	-1-		고자
(#	.3-	·8>	신소	· ^I	ᆟ사

	구분		비율(%)	비율(%)
신고의무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63	39.1	11.8
	교원	33	20.5	6.2
	보육교직원	24	14.9	4.5
	유치원종사자	1	0.6	0.2
	의료인	16	9.9	3.0
	아동복지시설종사자	7	4.3	1.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3	1.9	0.6

	구분	빈도	비율(%)	비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	0.6	0.2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1	0.6	0.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1.2	0.4
	아동복지전담공무원	7	4.3	1.3
	소방구급대원	3	1.9	0.6
	소계	161	100.0	30.2
	부	56	15.1	10.5
	모	198	53.2	37.1
	조부, 조모	7	1.9	1.3
	친인척	13	3.5	2.4
비신고의무자	형제, 자매	6	1.6	1.1
	위탁부, 위탁모	4	1.1	0.8
	이웃	32	8.6	6.0
	모르는 사람	38	10.2	7.1
	소계	372	100.0	66.4
	미상	18		3.4
	계	533		100.0

다. 검찰 및 법원 처분 특성

아동학대 피의자에 대한 처분 특성은 검찰 처분 특성과 법원 처분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검찰 처분 특성을 보면, 구속여부 면에서는 구속율이 11.7%로 2014년 기준 전체범죄 구속율 1.4%, 강력범죄(폭력) 구속율 0.8% 보다는 높고, 강력범죄(흉악) 구 속율 16.1%보다는 낮다.

검찰 처분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공판'이 32.2%, '구약식'이 12.7%, '기소 중지'가 0.6%, '기소유예'가 30.3%이며, 그 외 '혐의 없음'이 13.4%, '공소권 없음'이 1.4% 등이다. 아동학대의 구공판 비율은 2014년 기준 전체범죄 구공판 비율 7.8%. 강력범죄(폭력)의 구공판 비율 5.9% 보다는 높고, 강력범죄(흉악) 구속율 40.0%보다 는 낮다.

〈표 3-9〉 구속 여부 및 검찰 처리현황

	구분	빈도	비율(%)
	구속	77	11.7
구속 여부	불구속	568	86.2
구속 어구	알 수 없음	14	2.1
	계	659	100.0
	구공판	212	32.2
	구약식	84	12.7
	기소중지	4	0.6
	기소유예	200	30.3
거차귀긔청하	혐의 없음	88	13.4
검찰처리현황	공소권 없음	9	1.4
	타관송치	31	4.7
	죄가 안 됨	7	1.1
	기타	24	3.7
	계	659	100.0

검찰수사결과 구공판과 구약식 처분을 받은 피의자들만을 대상으로 구형량을 분석 하면. '유기징역'을 구형한 경우가 가장 많아 34.9%에 이르고, 그 다음이 '벌금'으로 28.5%이다. 어린이 집 등 시설내 학대의 경우는 제외하고, 가정내 학대, 특히 부모의 학대의 경우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없음에 도 아직까지 벌금을 구형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기징역 형기는 대체로 '1-12개월'이 가장 많아 37.5%이고, 다음으로는 '13-24개 월'이 27.5%, '25-36개월'이 15.0%로 나타났다. 37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도 약20%에 이른다.

집행유예기간은 '13-24개월'이 가장 많아 75.5%이며, '25-36개월'이 12.2%, '1-12 개월'이 10.2%의 순이다. 벌금액은 '201-300만원'이 39.7%, '101-200만원'이 25.9% 의, '51-100만원'이 12.1%, '30-50만원'이 10.3%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3-10〉 구형량

	구분	빈도	비율(%)
	유기징역	82	34.9
	집행유예	52	22.1
	집행유예+보호관찰	19	8.1
구형 유형	집행유예+수강명령	9	3.8
11 0	집행유예+사회봉사	6	2.6
	벌금	67	28.5
	계	235	100.0
	1-12개월	15	37.5
	13-24개월	11	27.5
유기징역 형기	25-36개월	6	15.0
	37개월 이상	8	20.0
	계	40	100.0
	1-12개월	5	10.2
	13-24개월	37	75.5
집행유예 기간	25-36개월	6	12.2
	48개월	1	2.0
	계	49	100.0
	30-50만원	6	10.3
	51-100만원	7	12.1
	101-200만원	15	25.9
出그 - 이 사	201-300만원	23	39.7
벌금 총 액수	400만원	2	3.4
	500만원	4	6.9
	1000만원	1	1.7
	계	58	100.0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사 및 재판기록에는 일반적으로 판결문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최종심 선고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파악 가능한 사건 중에서 최종심 유형을 중심으로 법원 처분결과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사건의 재판은 '1심'이 가장 많아 34.9%이고, '2심'이 12.0%이며, '3심'은 3.2%이다. 다만 미상이 많아 49.9%에 이른다.

〈표 3−11	〉최종심	l 유형
---------	------	------

구분		빈도	비율(%)
최종심	1심	230	34.9
	2심	79	12.0
	3심	21	3.2
	미상	329	49.9
	계	659	100.0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없는 경우가 53.0%이며,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가 34.6%이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불기소 처분의 경우 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사선변호인 보다는(13.2%), 국선변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1.4%).

〈표 3-12〉 변호인 유무 및 유형

구분		빈도	비율(%)
변호인 종류	변호인 없음	349	53.0
	국선 변호인	141	21.4
	사선 변호인	87	13.2
	미상	82	12.4
	Й	659	100.0

라.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

이하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 합의여 부, 고소취하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합의 및 고소취하 여부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기록조사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는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 입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본 조사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자의 주관을 가능한 배제하고, 진술조서나 탄원서 등을 토대로 가능한 객관적으로 파악하 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가해자의 범행시인 정도는 '일부만 시인'한 경우가 가장 많아 41.9%이고,

'전적으로 시인'한 경우도 38.0%에 이른다. '부인'한 경우는 20.1%였다.

많은 수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대 피해아동들은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갈등을 보이기 쉽다. 조사결과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55.4%), 일부는 처벌을 원치 않기도 하고(36.6%), 또한 일부는 양가감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0%)

구분		빈도	비율(%)
	전적으로 시인	243	38.0
가해자의	일부시인	268	41.9
범행시인 정도	부인	129	20.1
	계	640	100.0
피해자의 태도	처벌을 원함	270	55.4
	처벌을 원치 않음	178	36.6
	양가감정을 보임	39	8.0
	Й	487	100.0

〈표 3-13〉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고소취하를 했는지, 또한 가해자와 합의를 했는지를 피해 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고소취하 비율과 합의비율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 중에서 수사과정에서 고소취하가 이루어진 사건은 19.8%이고 약80%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여부 면에서는 합의를 안한 경우가 88.5%로, 이중 18.5%는 단순한 선처를 요망한 경우이다. 반면 합의를 한 경우는 11.5%이다.

〈표 3−14)	〉 고소취하 여부와 합의	여부
----------	---------------	----

구분		빈도	비율(%)
고소취하 여부	고소취소함	100	19.8
	고소취소 안함	404	80.2
	계	504	100.0
합의 여부	합의안함	329	70.0

구분		비율(%)
합의안함(단순한 선처요망)	87	18.5
합의함	40	8.5
합의함(피해자가 자신의 책임 일부인정)	8	1.7
합의함(피해자가 피의자의 범죄사실 일부부정)	6	1.3
 Л	470	100.0

2. 아동학대 가해자 특성

가.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아동학대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업, 종교를 조사하였고, 더불어 다문화가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해 자의 국적을 추가 분석하였다.

먼저 아동학대 가해자는 남녀 비율이 유사하기는 하나, 남성가해자보다는 여성가해 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가해자'의 비율은 45.4%이고, '여성가해자' 의 비율은 54.6%이다.

가해자 연령은 20세 미만에서 70대 까지 전 연령층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3, 40대로 '40대'가 37.6%, '30대'가 31.4%이며 이를 합하면 69.0%에 이른다. 다음으로 '20대'가 15.9%이고. '50대'가 11.5%이다. 나머지 연령대 의 비율은 매우 낮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9.4세이다

국적 면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는 내국인이며(99.2%). 극히 일부만이 외국인인 것으 로 나타났다(0.8%).

가해자의 교육수준은 84.5%만이 파악되었는데, '고졸자'가 가장 많아서 33.8%이 고, '대졸'이 30.5%, '중졸'이 11.5%의 순이다.

혼인상태를 보면, 결혼(초혼)이 38.5%로 가장 많고, 이혼 15.6%, 미혼이 11.2%, 재혼이 9.0%의 순이다. 특징적으로 첫째,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많기 때문에 미혼보다는(11.2%) 동거, 초혼, 재혼 등 유배우자의 비율이 높다(57.8%). 미혼은 시설 내 학대 가해자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아동학대는 재혼 가정 비율보다는 (9.0%) 초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38.5%). 셋째, 별거, 이혼, 사별 후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에 의한 학대의 비율 역시 24.2%로 높은 편이다.

가해자의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가장 많고 32.3%, 두 번째로는 단순노무노동자가 13.4%, 세 번째로는 사무종사자와 주부가 각각 7.6%이다. 전문직의 비율이높은 것은 어린이 집 등 교사에 의한 학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취업자의비율은 19.1%이다.

가해자들은 종교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고(31.1%), 개신교(21.5%), 불교(11.5%), 천주교(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5〉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남자	299	45.4
가해자 성별	여자	360	54.6
	계	659	100.0
	20세 미만	4	0.6
	20대	105	15.9
	30대	207	31.4
	40대	248	37.6
가해자 연령	50대	76	11.5
가에서 현당	60대	7	1.1
	70대	5	0.8
	미상	7	1.1
	계	659	100.0
	평균	39.4세	
	국내	654	99.2
가해자 국적	국외	5	0.8
	계	659	100.0
	무학	9	1.4
	초등학교 졸업	28	4.2
	중학교 졸업	76	11.5
가해자의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223	33.8
	대학교 졸업	201	30.5
	대학원 이상	20	3.0
	미상	102	15.5
	계	659	100.0

	구분	빈도	비율(%)
	미혼	74	11.2
	동거(혼인 전)	26	3.9
	동거(이혼, 사별, 별거 후)	41	6.4
	결혼(초혼)	254	38.5
기테다이 중이사대	재혼	59	9.0
가해자의 혼인상태	별거	43	6.6
	이혼	103	15.6
	사별	13	2.0
	미상	46	7.0
	계	659	100.0
	미취업	126	19.1
	관리자	19	2.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13	32.3
	사무종사자	50	7.6
	서비스 종사자	32	4.9
	판매 종사자	17	2.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	.8
가해자의 검거 당시 직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9	2.9
0/17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5	2.3
	단순노무 종사자	88	13.4
	군인	1	.2
	학생	3	.5
	가정주부	50	7.6
	미상	21	3.2
	계	659	100.0
	개신교	142	21.5
	천주교	30	4.6
	불교	76	11.5
가해자 종교	무속	1	0.2
	기타	6	0.9
	종교없음	205	31.1
	미상	199	30.2
		659	100.0

이어서 가해자들의 주거특성을 살펴보면 〈표 3-16〉과 같다.

먼저 주거지역 면에서는 대도시 거주자가 대부분은 89.5%이며, 9.1%만이 읍면지역 에 거주하고 있다.

주거가 일정한 사람이 91.7%이고, 주거부정자는 5.0%에 불과하다.

미상

계

구분		빈도	비율(%)
	대도시	590	89.5
가해자	읍면지역	60	9.1
주거 지역	미상	9	1.4
	계	659	100.0
	주거일정	604	91.7
	주거부정	33	5.0

22

659

3.3

100.0

〈표 3-16〉 가해자의 주거특성

나. 가해자의 전과 특성

가해자 주거안정성

아동학대 가해자의 전과특성은 총체포 수, 전과 유무, 전과 횟수, 실형전과 수, 동종전과 수, 이종전과 수 그리고 아동학대로 인한 체포횟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총 체포횟수를 보면 본 건을 제외하고, 가해자들이 체포된 횟수는 1-5회가 가장 많아 72.5%이고, 6-10회가 15.7%, 11-15회가 6.5%이다. 조사대상 아동학대 가해자의 평균 총 체포횟수는 4.7회이다.

조사대상 가해자 중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은 43.9%이고 초범은 43.9%이다. 전과가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범수를 분석하여 보면 1-5회가 75.1%로 가장 많고, 6-10회가 15.2%, 11-15회가 6.2%이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평균 전과범수는 4.3범이다.

전체 조사대상 가해자 중에서 94명의 가해자가 실형전과가 있었는데(14.3%), 실형전 과 1범이 55.3%, 2범이 24.5%, 3범이 9.6%이며, 평균 실형전과는 2.0범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조사대상 가해자 중에서 18명은 본 건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체포된 적이 있었 던 것으로 나타났는데(2.7%), 1회 체포된 경우가 88.9%, 2회 체포된 경우가 11.1%이 다. 평균 체포횟수는 1.1회이다.

〈표 3-17〉 가해자의 전과 유무와 전과 횟수

	구분	빈도	비율(%)
	1-5회	245	72.5
	6-10회	53	15.7
	11-15회	22	6.5
총 체포횟수	16-20회	11	3.3
	21회 이상	7	2.0
	계	338	100.0
	평균	4.7회	
	전과 있음	289	43.9
전과유무	전과 없음	342	51.9
包绍布士	미상	28	4.2
	계	659	100.0
	1-5호	217	75.1
	6-10회	44	15.2
	11-15회	18	6.2
총 전과횟수	16-20회	8	2.8
	21회 이상	2	0.7
	계	289	100.0
	평균	4.3회	
	1건	52	55.3
	2건	23	24.5
	3건	9	9.6
실형전과	4건	3	3.2
결정신坪	5건	1	1.1
	6건 이상	6	6.4
	계	94	100.0
	평균	2.0회	
	1회	16	88.9
가동학대로 인한	2회	2	11.1
체포횟수	계	18	100.0
	 평균	1.1회	

이어서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동종전과와 이종전과 수를 살펴보면 〈표 3-18〉과 같다. 동종전과 평균은 1.2회, 이종전과 평균은 4.3회로 이종전과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전과 횟수는 대부분 1회로 83.3%이나, 이종전과 횟수는 1회가 34.4% 로 훨씬 적고 1회가 15.1%, 3회가 11.5%이며, 10회 이상도 11.8%에 이른다.

〈표 3-18〉 가해자의 동종전과 및 이종전과 수

	구분		비율(%)
	1회	10	83.3
도조저기 하스	2회	2	16.7
동종전과 횟수	Л	12	100.0
	평균	1.2	
	1회	96	34.4
	2회	42	15.1
	3회	32	11.5
	4회	24	8.6
	5회	14	5.0
	6회	14	5.0
이종 전과횟수	7회	9	3.2
	8회	12	4.3
	9회	3	1.1
	10회 이상	29	10.4
	20회 이상	4	1.4
	Л	279	100.0
	평균	4.3	

다. 가해자의 장애 및 정신·심리 특성

본 조사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장애 및 심리적, 정신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가해자들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는 가해자 비율이 31.3%이며, 없는 경우가 20.6%이다. 기록조사의 특성상 미상 비율이 48.1%로 높다.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사하였고 미상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장애나 질환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장애 및 질환 유형을 구분하여 보면,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우울장애'로 30.4%이고, 다음은 '신체장애'와 '물질 및 중독 장애'로 각각 17.4%이다. 그 외에도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가 7.8%, 신경발달 장애가 7.0%이다.

〈표 3-19〉 가해자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없음	136	20.6
신체장애 및	있음	206	31.3
정신질환 여부	미상	317	48.1
	계	659	100.0
	신체장애	20	17.4
	불안장애	4	3.5
	강박 및 관련 장애	5	4.3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3	2.6
	우울장애	35	30.4
	양극성장애	3	2.6
장애 및 질환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	9	7.8
유형	성격장애	2	1.7
	수면-각성 장애	2	1.7
	물질 및 중독 장애	20	17.4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 장애	3	2.6
	신경발달 장애	8	7.0
	언어장애	1	0.9
	Л	115	100.0

장애나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적응이나 행동 문제가 있는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가 31.0%로 나타났다. 미상 비율은 48.4%이다.

구체적인 적응 문제 및 행동문제를 살펴보면 폭력행동(31.6%)과 음주(29.8%)가 가장 많고, 그 외에 우울(11.6%), 반항/충동/공격성(6.1%), 불안(2.7%), 인터넷·게임중 독(2.4%), 성문제(2.4%) 등이 있었다.

〈표 3-20〉 가해자의 적응·행동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없음	136	20.6
적응·행동	있음	204	31.0
문제 유무	미상	319	48.4
	계	659	100.0
	주의산만	1	0.3
	인터넷(게임)중독	8	2.4
	불안	9	2.7
	애착문제	3	0.9
	무력감	5	1.5
	우울	38	11.6
	낮은 자아존중감	1	0.3
적응·행동 특성*	성격 및 기질문제	25	7.6
40.89 40	반항, 충동, 공격성	20	6.1
	거짓말	7	2.1
	도벽	1	0.3
	음주	98	29.8
	성문제	8	2.4
	폭력행동	104	31.6
	대인관계기피	1	0.3
	계	329	100.0

^{*} 중복응답

3. 학대피해아동 특성

가.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조사의 분석에 포함된 아동학대 피해자는 총 813명이다. 이들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교육수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대 피해 아동은 여자가 남자보다 다소 많아서 '여성 피해자' 비율이 56.9%, '남성 피해자' 비율은 42.2%이다. 다만 7명은 성별이 미상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가해자 와 피해자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연령 면에서는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 가장 많아 42.9%이고, 7-12세의 '학령기 아동'과 13세 이상의 '청소년'은 각각 그 비율이 28.9%와 28.0%로 유사하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평균연령은 7.7세이다

교육수준은 어린이 집 및 유치원 재원이 가장 많고(33.7%), 초등학교 재학이 29.0%, 중학교 재학이 16.4%, 고등학교 재학이 5.9%이다. 이는 피해자들의 연령분포와 유사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조차 다닐 수 없는 어린 아동들의 경우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 전체 피해자의 10.1%를 차지한다. 다만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졸업하였으나 진학을 하지 않은 상태의 아동들도 일부 있었다. 25명의 피해자는 교육수준을 파악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의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82.9%이고, 10.6%는 '읍면 지역' 거주자이다.

〈표 3-21〉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여자	463	56.9
피해자의 성별	남자	343	42.2
파에시크 경크	미상	7	0.9
	계	813	100.0
	미취학아동(6세 이하)	350	42.9
	학령기 아동(7세-12세)	235	28.9
피해자 사건당시 피해자의 연령	청소년(13세 이상)	228	28.0
-1411-1 E8	계	813	100.0
	평균	7.7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274	33.7
	초등재학	236	29.0
	초등졸업	8	1.0
	중등재학	133	16.4
피해자의 교육수준	중등졸업	7	.9
	고등학교 재학	48	5.9
	교육경험 없음	82	10.1
	미상	25	3.1
	계	813	100.0
피테지 조기 되어	대도시	674	82.9
피해자 주거 지역 	읍면지역	86	10.6

1	22
ı	1.7.

구분		빈도	비율(%)
미상		53	6.5
	계	813	1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권 대상	수급권	91	11.2
	비 수급권	286	35.2
	미상	436	53.6
	계	813	100.0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 상자 여부를 조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11.2%가 '수급권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수급권자'가 35.2%이다. 다만 미상 비율이 53.6%로 매우 높아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로 피해자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간의 관계

아동학대는 어린이 집 등 시설내 아동학대나 가정내 아동학대 모두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아동학대 사건당 피해자 수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75.4%의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이 '1명'이고, 나머지 24.6%는 다수의 피해 아동이 있는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아동이 다수인 사건 중에는 피해아동이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아 14.7%, '3명'이 4.6%, '3명'이 1.8%의 순이었으며, 10개 사건은 '10명 이상'의 학대 피해아동이 있는 경우였다(1.5%).

〈표 3-22〉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간의 관계

	구분		비율(%)
	1명	497	75.4
	2명	97	14.7
	3명	30	4.6
피해자의 수	4명	12	1.8
피에시의 구	5명	4	0.6
	6명	3	0.5
	7명	6	0.9
	10명 이상	10	1.5

구분		빈도	비율(%)
	계	659	100.0
	친 형제자매	90	55.6
피해자들간의 관계	의붓 형제자매	4	2.5
	같은 시설 이용자 및 친구	64	39.5
	친척	1	0.6
	모르는 사이	3	1.8
	계	162	100.0

다수의 피해아동이 있는 아동학대 사건만을 대상으로 피해자들간의 관계를 분석하 여 보면, 거의 대부분이 형제자매이거나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 형제자매'가 가장 많아 55.6%이며, '의붓 형제자매' 범주까지를 합하면 피해자들이 '형제 자매'인 경우가 58.1%에 이른다. 두 번째로는 '같은 시설 이용자 및 친구'가 39.5%로 이는 시설내 학대에 해당된다.

다. 가해자-피해자 관계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모든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분석결과 아동학 대는 아는 사람, 특히 보호자의 위치에 있는 성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이다. 분석결 과 885명의 가해자 중에서 면식범인 경우가 98.0%이고, 2.0%만이 비면식범이다.

〈표 3-23〉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부모이다. 친부모와 계부모를 모두 합하면 56.3% 에 이른다. 여기에 '부모의 동거인'의 비율 2.7%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부모의 위치에 있는 자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가 59.0%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친부모'의 비율이 매우 높아, 전체 가해자의 48.8%에 이르며, '친부'가 30.9%, '친모'가 17.9%로 친아버 지가 친어머니보다 더 많다. '계부'는 2.1%, '계모'는 5.4%로 친부모와 달리 계모가 계부보다 비율이 높다.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가해자 집단은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종사자'로 전체 가해자 중 23.4%를 차지하며, '복지시설종사자(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 설, 청소년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역시 6.9%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학원강사'가 3.1%, '교원'이 1.2%, '베이비시터'가 1.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하여 비교하여 보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 가해자 중 34.5%이고, 비신고의무자인 경우가 65.5%로 신고의무자가 학대행위자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

〈표 3-23〉 피해자 입장에서의 가해자와의 관계(중복)

구분		빈도	비율(%)	
	교원		11	1.2
	보육교직원,	유치원 종사자	206	23.4
신고 의무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보	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전문기관)	61	6.9
	학원	······································	27	3.1
	계/	소계	305	34.5
	žIHO.	친부	273	30.9
	친부모	친모	158	17.9
	жып	계부	19	2.1
	계부모	계모	48	5.4
	부・모으	니 동거인	24	2.7
	친조부모		6	0.7
비신고	형제	, 자매	2	0.2
미선고 의무자	친 ⁽	인척	6	0.7
	ЩОІІ	비시터	10	1.1
	위	=====================================	2	0.2
	0	 옷	3	0.3
	기타 아는 사람(친구의 부모, 부모의 친구, 스님, 외조부의 동거녀, 외조부의 동거녀의 딸, 부의 내연녀 등)		11	1.2
	모르는	는 사람	18	2.0
	계/ 소계		580	65.5
	계		885	100.0

학대 가해자와 학대 피해아동이 함께 동거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59.0%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38.3%보다 많았다. 미상은 2.7%이다.

구분	빈도	비율(%)
동거	480	59.0
비동거	311	38.3
미상	22	2.7
계	813	100.0

〈표 3-24〉 가해자-피해자 동거여부

라. 피해자의 가족 특성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가족특성은 매우 중요한 보호요인이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정 외 학대의 경우에도 학대사실의 발견과 피해아동 보호의 면에서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가족특성은 아동학대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본 조사에서는 가족특성은 가족유형, 동거가족 수, 학대피해아동 가족의 사회적, 지리적 고립여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아동학대는 '친부모 가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 피해자의 35.8%를 차지한다. 둘째, 재혼가정이거나 친부모이지만 법률적인 결혼상태가 아닌 가정인 '동거가정'(7.0%), '재혼가정'(7.1%), '미혼부모 가 정'(0.4%)는 14.5%이다. 셋째, '부자(부녀)가정'이 14.4%, '모자(모녀) 가정'이 10.3% 로 한부모 가정의 비율은 24.7%로 한 부모 가정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나 양육 부담 등의 문제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그 외 '친인척보호 가정', '조손가정', '가정위탁', '입양가정' 등의 경우 비율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이를 합하면 7.4%이다.

이어서 피해아동의 동거가족 수를 살펴보면 '3인' 혹은 '4인'과 함께 사는 경우가 가장 많아, 각각 25.8%와 24.4%를 차지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핵가족의 경우가 많음 을 알 수 있다.

〈표 3-25〉 피해자의 가족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친부모가족	291	35.8
	동거가정	57	7.0
	재혼가정	58	7.1
	미혼부모가정	3	0.4
	부자(부녀)가정	117	14.4
	모자(모녀)가정	84	10.3
가족유형	친인척보호	8	1.0
	조손가정	3	0.4
	가정위탁	1	0.1
	입양가정	6	0.7
	시설보호	42	5.2
	미상	143	17.6
	계	813	100.0
	1명	6	0.7
	2명	84	10.3
	3명	210	25.8
	4명	198	24.4
피해아동의 동거가족수	5명	93	11.4
0/1/177	6명	21	2.6
	7-11명	15	1.8
	미상	186	22.9
	계	813	100.0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있는 경우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혹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가족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학대사실의 발견이 어려워 피해가 장기화되고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피해아동 가족의 사회적, 지리적 고립여부를 조사하였다. 다만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의 특성상 기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고립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어 38.4%가 미상으로 분류되었다.

분석결과 10%는 사회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가족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미상을 제외하고 비율은 계산할 경우 16.2%에 이른다.

구분	빈도	비율(%)
예	81	10.0
아니요	420	51.7
미상	312	38.4
계	813	100.0

〈표 3-26〉 피해자의 사회적·지리적 고립 여부

다. 피해자의 장애 및 정신·심리 특성

본 조사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만이 아니라 피해아동들의 장애 및 심리적, 정신적 특성도 알아보았다. 가해자 특성과 마찬가지로 기록상 정확한 진단명이 있는 경우에 만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먼저 장애나 질환이 있는 피해자 비율이 8.7%이며, 없는 경우가 45.6%이다. 미상 비율은 45.6%이다. 앞에서 분석한 가해자들의 장애 및 질환비율 12.6%보다 낮은 수치 로. 피해아동보다는 가해자들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문제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장애 및 질환 유형을 구분하여 보면,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신경발달

장애'로 무려 54.1%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는 '신체장애'가 10.6%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장애 및 질환이 나타났는데 '언어장애'가 8.2%, '우울장애'가 7.1%,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장애'가 4.7%, '급식 및 섭식장애'가 3.5%의 순이다.

/エ 2_27\	ΠΙΞΗΤΙΟΙ	시체자에	미저	시진화 (1) 브	

구분		빈도	비율(%)
	없음	371	45.6
신체장애 및	있음	71	8.7
정신질환 여부	미상	371	45.6
	계	813	100.0
	신체장애	9	10.6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1	1.2
장애 및 질환 유형*	우울장애	6	7.1
	양극성장애	2	2.4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	1	1.2
	성격장애	2	2.4

구분		비율(%)
급식 및 섭식장애	3	3.5
수면-각성 장애	2	2.4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	1	1.2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 장애	4	4.7
신경발달 장애	46	54.1
언어장애	7	8.2
틱(음성, 신체, 뚜렛)	1	1.2
계	85	100.0

장애나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적응이나 행동 문제가 있는 피해아동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가 39.9%로 꽤 높게 나타났다. 미상 비율은 36.4%로 미상을 제외하 고 비율을 계산하면 62.7%이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아동들의 적응 및 행동문제가 학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학대 이후 후유증으 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다수 있다.

구체적인 적응 문제 및 행동문제를 살펴보면 '반항, 충동, 공격성'(12.7%)과 '거짓 말'(11.4%)이 가장 많고, '주의산만'(8.7%), '도벽'(7.2%), '성격 및 기질문제'(6.9%). '학습문제'(6.7%)', '가출'(6.4%), '인터넷(게임) 중독'(5.2%)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3-28〉 피해자의 적응·행동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없음	193	23.7
적응·행동 특성	있음	324	39.9
40,89 49	미상	296	36.4
	계	813	100.0
	주의산만	53	8.7
	과잉행동	32	5.2
	인터넷(게임)중독	12	2.0
적응·행동 특성*	불안	15	2.5
	애착문제	8	1.3
	무력감	2	0.3
	우울	13	2.1

구분	빈도	비율(%)
낮은 자아존중감	3	0.5
성격 및 기질문제	42	6.9
반항, 충동, 공격성	78	12.7
거짓말	70	11.4
도벽	44	7.2
가출	39	6.4
약물, 흡연, 음주	12	2.0
성문제	6	1.0
학교부적응	17	2.8
잦은 결석	17	2.8
늦은 귀가	27	4.4
학습문제	41	6.7
비행집단 활동	17	2.8
불건전한 또래관계	19	3.1
대인관계 기피	3	0.5
대소변문제	13	2.1
언어문제	16	2.6
자해	4	0.7
식습관 문제	9	1.5
 Л	612	100.0

^{*} 중복응답

4. 아동학대행위 특성

가. 학대 장소와 기간

아동학대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주로 실내 그리고 주거지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아동학대는 주로 실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실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동주거지'로 43.1%이며, '아동 주거지' 1.1%와 '가해자 주거지' 1.0%를 합하면 45.2%이다. 두 번째로 유치원(20.1%), 학교(1.5%), 학원(2.8%)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 24.4%로

나타났다. 그 외 복지시설(4.6%), 숙박업소(1.5%), 병원0.9%), 이웃집/친척집(0.5%), 종교시설(0.4%) 등이 학대 장소로 조사되었다.

아동학대의 피해 기간은 일회 발생한 경우부터 10년 이상 지속된 경우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례는 '일회' 발생한 사건으로 46.1%로 나타났다. '1개월 미만'이 5.5% '1-5개월'이 11.9%, '6-12개월'이 8.7%, '1년-2년'이 7.1% 등으로 나타났고 '10년 이상' 지속된 사례도 1.4%이다.

〈표 3-29〉 범행 장소

구분		빈도	비율(%)
	가해자 피해자 공동주거지	350	43.1
	아동 주거지	9	1.1
	학대가해자 주거지	8	1.0
	유치원·어린이집	164	20.1
	학교	12	1.5
	학원	23	2.8
주	복지시설	37	4.6
범행장소	숙박업소	12	1.5
	병원	7	0.9
	이웃집, 친척집	4	0.5
	종교시설	3	0.4
	실외 공간	48	5.9
	미상	136	16.6
	Й	813	100.0

〈표 3-30〉 피해 기간

구분	빈도	비율(%)
일회성	375	46.1
1개월 미만	45	5.5
1-5개월	97	11.9
6-12개월	71	8.7
1년-2년	58	7.1
2년-3년	35	4.3

구분	빈도	비율(%)
3년-5년	28	3.4
5년-9년	23	2.8
10년 이상	11	1.4
미상	70	8.6
계	813	100.0

〈표 3-31〉은 학대 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학대 빈도는 일회성 학대(50.8%)를 제외하면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다(15.6%).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다는 특성상 거의 매일 학대를 당하는 피해아동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2-3일에 한번'(5.5%), '일주일에 한번'(4.2%), '2주일에 한번'(2.7%), '1개월에 한번'(3.6%) 등으로 나타났다.

〈표 3-31〉 학대 빈도

구분	빈도	비율(%)
거의 매일	127	15.6
2~3일에 한 번	45	5.5
일주일에 한 번	34	4.2
2주일에 한 번	22	2.7
1개월에 한 번	29	3.6
2~3개월에 한 번	18	2.2
6개월에 한 번	13	1.6
1년에 한 번	10	1.2
일회성	413	50.8
미상	102	12.5
계	813	100.0

나. 가해자 수와 공범 특성

아동학대는 공범이 있는 경우가 25.9%이고, 나머지 73.8%는 공범이 없는 단독범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범이 있는 사건만으로 대상으로 공범수를 살펴보면 '1명'이 87.1%로 가장 많고, '2명'이 12.9%이다.

공범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장동료가 46.6%로 가장 많다. 아동학대 사건 중에서 공범이 있는 경우는 어린이집 등 시설내 학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정내 학대의 경우에는 '부부'(27.3%)나 '동거인 및 애인'(10.9%)이 가장 많다. 그 외 '가족 및 친척'이 6.2%, '친구 및 선후배'가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시 가해자의 역할은 주도적 역할이 가장 많아 63.7%이고, 보조적 역할과 단순 가담은 각각 12.9%이다. 미상 비율은 10.5%이다.

〈표 3-32〉 공범 관련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공범 없음	486	73.8
THMH	공범 있음	171	25.9
공범여부	미상	2	0.3
	계	659	100.0
	1명	149	87.1
공범수	2명	22	12.9
	계	171	100.0
	부부	45	27.3
	동거인, 애인	18	10.9
	가족 및 친척	10	6.1
공범자관계	직장동료	77	46.6
	친구, 선후배	10	6.1
	모르는 사이	5	100.0
	계	165	100.0
	주도적역할	109	63.7
	보조적역할	22	12.9
가해자의 역할	단순가담	22	12.9
	미상	18	10.5
	계	171	100.0

다. 학대 유형

본 조사에서는 아동학대 유형을 성적 학대를 제외하고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아동학대 는 단일한 유형의 학대형태도 발생하기도 하기만,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학대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학대유형은 증가하게 된다.

〈표 3-33〉은 조사대상 사건의 학대유형의 복합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하나의 유형의 학대만 발생한 '단일학대'는 813건 중 420건으로 51.7%, 여러 유형의 학대가 함께 발생한 '복합 학대'는 393건으로 4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단일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만 발생한 경우 가 가장 많아서 35.4%, '정서적 학대'만 발생한 경우가 7.6%이며 '방임'만 발생한 경우는 5.7%, '유기'만 발생한 경우는 3.0%이다.

복합학대의 경우 여러 유형의 학대유형 조합이 나타났는데 가장 많은 사례는 '신체 적 학대+정서적 학대'로 전체 사건의 26.6%를 차지하며, 두 번째는 '신체적 학대+정 서적 학대+방임'으로 12.7%이다. 세 번째로 많은 유형은 '신체적 학대+방임'으로 5.8%이며, 네 번째 유형은 '정서적 학대+방임'으로 2.0%다. 그 외 학대 유형은 모두 1% 미만에 머물고 있다.

〈표 3-33〉 복합학대 여부 및 학대유형

구분			빈도	비율(%)
	단일학대		420	51.7
복합학대 여부		복합학대	393	48.3
-11		계	813	100.0
	단일학대	신체적 학대	288	35.4
		정서적 학대	62	7.6
		방임	46	5.7
하디아하		유기	24	3.0
학대유형	복합학대 —	신체, 정서	216	26.6
		신체, 방임	47	5.8
		신체, 유기	3	0.4
		정서, 방임	16	2.0

구분		빈도	비율(%)	
	방임, 유기	5	0.6	
		신체, 정서, 방임	103	12.7
	신체, 방임, 유기 신체, 정서, 유기, 방임		1	0.1
			1	0.1
신체, 정서, 방임, 살인치사 계		신체, 정서, 방임, 살인치사	1	0.1
		813	100.0	

이번에는 각 학대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학대행위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신체적 학대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한 학대행위는 '손 발 등으로 때림'으로 신체적 학대 중에서 33.1%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행위는 '도구로 때림' 으로 25.0%이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학대행위가 발생하였는데, 비율이 높은 순서대 로 소개하면 '벌을 세움'이 7.7%, '떠밀고 움켜잡음'이 6.8%, '꼬집거나 물어뜯음'이 4.6%. '벽에 밀어붙임'이 3.7%. '음식물/토사물 등 강제섭취'가 3.1%. '조르거나 비틀 었음'이 3.0%의 순이었다.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할큄, 흉기나 뾰족한 도구로 찌름, '화학물질이나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 '강하게 흔듦', '신체를 묶음', '던짐', '거꾸로 매닮', '물에 빠뜨림' 등 상상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적 학대 역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의 유형은 '언어 폭력'으로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전체 정서적 학대 중 42.7%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학대행위는 '사물이나 음식물 등을 던지거나 위협'하는 것으로 15.7%이며, 세 번째로는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함'으로 9.2%이. 네 번째로는 '감금'이 8.2%이다.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잠을 재우지 않음', '벌거벗겨 내쫓음', '형제·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함', '가족 내에서 소외시킴',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쫓음',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데리고 다님', '약취 및 유인', '노동 착취',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 등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분석되었다.

방임의 대표적인 학대행위는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25.6%)과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방치'(22.4%)이다. 또한 '학교에 보내지 않음'14.6%). '의료적

처치나 개입을 하지 않음'(14.0%), '방치'(12.7) 역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방임행 위 형태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출생신고 하지 않음', '아동을 가정에 두고 가출', '시설 근처, 친족집 근처에 두고 사라짐', '무단결석 방치' 등이 방임행위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유기행위 중 가장 발생비율이 높은 학대행위는 '보호하지 않고 버림'으 로 전체 유기 중 72.7%를 차지한다. 그 외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짐'이 15.2%, '시설 근처에 버림'이 12.1%이다.

⟨표 3-34⟩ 유형별 학대행위

	구분	빈도	비율(%)
	손, 발 등으로 때림	406	33.1
	꼬집거나 물어뜯음	56	4.6
	조르거나 비틀었음	37	3.0
	할큄	15	1.2
	도구로 때림	307	25.0
	흉기나 뾰족한 도구로 찌름	34	2.8
	화학물질이나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	5	0.4
	화상을 입힘	8	0.7
신체학대	강하게 흔듦	28	2.3
선세역대	신체를 묶음	28	2.3
	벽에 밀어 붙임	45	3.7
	떠밀고 움켜잡음	84	6.8
	던짐	31	2.5
	거꾸로 매닮	4	0.3
	물에 빠뜨림	6	0.5
	벌을 세움	94	7.7
	음식물/토사물 등 강제섭취	38	3.1
	계	1,226	100.0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 언어폭력	228	42.7
	잠을 재우지 않음	18	3.4
	벌거벗겨 내쫓음	22	4.1
정서학대	형제·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함	29	5.4
	가족 내에서 소외시킴	3	0.6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함	49	9.2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쫓음	11	2.1

	구분	빈도	비율(%)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데리고 다님	1	0.2
	감금	44	8.2
	약취 및 유인	6	1.1
	노동 착취	22	4.1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	17	3.2
	사물이나 음식물 등을 던지거나 위협	84	15.7
	Л	534	100.0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79	25.6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방치	69	22.4
	출생신고 하지 않음	5	1.6
	아동을 가정에 두고 가출	9	2.9
방임	시설 근처, 친족집 근처에 두고 사라짐	9	2.9
5 1	학교에 보내지 않음	45	14.6
	무단결석 방치	10	3.2
	의료적 처치나 개입을 하지 않음	43	14.0
	방치	39	12.7
	Л	308	100.0
	보호하지 않고 버림	24	72.7
071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짐	5	15.2
유기	시설 근처에 버림	4	12.1
	계	33	100.0

^{*} 중복응답

이번에는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여 학대도구를 살펴보면, 칼과 같은 흉기에서 부터 악기, 가전제품 등 매우 다양한 일상용품들이 학대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체적 학대 도구는 '빗자루, 효자손, 쇠파이프 등 막대기, 몽둥이'로 37.9%를 차지하며, '사무용품(자 등), 플라스틱'이 12.0%로 두 번째로 많다. 세 번째로는 '스타킹, 허리띠 등 줄, 끈'이 6.6%, 네 번째로는 '음식, 토사물, 용변 등'이 5.6%로 이는 음식물이나 대소변을 강제로 섭취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섯 번째로 는 '가전제품(리모컨, 안마기, 다리미, 세탁기 등)'이 4.8%이다. 그 외에도 '칼, 도끼 등 흉기', '유리병', '운동용품(검도 칼, 골프채, 야구방망이 등)', '악기(단소 등)', '물(뜨 거운, 찬, 고춧물 등)' 등이 신체학대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진다.

〈표 3-35〉 신체적 학대의 학대도구

구분	빈도	비율(%)
	230	37.9
사무용품(자 등), 플라스틱	73	12.0
스타킹, 허리띠 등 줄, 끈	40	6.6
음식, 토사물, 용변 등	34	5.6
가전제품(리모컨, 안마기, 다리미, 세탁기 등)	29	4.8
칼, 도끼 등 흉기	23	3.8
유리병, 젖병	21	3.5
운동용품(검도 칼, 골프채, 야구방망이 등)	20	3.3
악기(단소 등)	17	2.8
물(뜨거운, 찬, 고춧물 등)	16	2.6
베개, 이불, 의류	15	2.5
의자 등 가구	14	2.3
돌, 벽 등 자연물	13	2.1
장난감	6	1.0
바늘과 같은 뾰족한 물건	5	0.8
불	4	0.7
그 외 생활용품	47	7.7
계	607	100.0

^{*} 중복응답

라. 학대 동기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학대동기를 분류하여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가장 비율이 높은 학대동기는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이며(50.3%), 그 다음은 '가해자 개인특성'(20.4%), 세 번째는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9.3%), 네 번째는 '부부 문제'(7.2%), 다섯 번째는 '경제적 문제'(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로는 '적대적·통제적 양육태도, 과도한 훈육', '부모 역할과 양육에 관한 기술 부족 및 지나친 기대'가 해당된다. 가해자 개인특성으로는 '폭력적 성향', '알코올 중독', '어린 시절 학대 경험', '불안, 우울 등 심리적 문제' 등이 포함되면,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및 사회적 지지부족', '장애아동약육 부담', '원치않는 자녀'에 대한 부담이 해당된다. 부부 문제는 가정 내 부부문제로 갈등,

별거 혹은 이혼 등을 의미하며, 경제적 문제는 경제능력 부족을 의미한다(〈표 3-36〉).

〈표 3-36〉 학대 동기

	구분	빈도	비율(%)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	적대적·통제적 양육태도 및 과도한 훈육	482	40.5
스러스에	부모 역할과 양육에 관한 기술 부족 및 지나친 기대	116	9.8
	평소 폭력적 성향이 아동에게 적용	83	7.0
フレモリエレ	알코올 중독	60	5.0
가해자 개인특성	어릴 적 학대 경험	7	0.6
	가해자의 불안, 우울, 기타 정신질환/ 산후우울증/ 충동이나 감정 조절 불능	92	7.8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및 사회적 지지부족	45	3.8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	장애아동 부모로서의 스트레스	12	1.0
	원치 않는 아동이거나 아동에 대한 온정 결핍	53	4.5
부부문제	가정 내 부부문제로 갈등, 별거 혹은 이혼 등	86	7.2
경제적 문제	경제능력 부족	65	5.5
기타	세상에 대한 원망과 혐오/ 미신, 종교	20	1.7
	미상	69	5.8
계 1,190 100.0			

^{*} 중복응답

학대 당시 가해자의 음주 및 약물 복용 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음주의 경우 23.9%의 가해자들이 학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70.1%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신 사례 중에서도 많은 술는 취했으나 의식은 있는 경우가 (14.1%)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경우(5.4%)와 약간 마셨으나 취하지 않은 경우(4.4%)보 다 훨씬 많았다. 미상은 5.9%이다.

약물복용의 경우에는 극히 소수인 0.7%만이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 비율은 3.7%이다(〈표 3-37〉).

	구분		비율(%)
	전혀 마시지 않음	570	70.1
	약간 마셨으나 취하지 않음	36	4.4
기체기이 오지어비	취했으나 의식은 있음	115	14.1
가해자의 음주여부	만취하여 의식 없음	44	5.4
	미상	48	5.9
	계	813	100.0
가해자의 약물여부	미복용	777	95.6
	복용	6	0.7
	미상	30	3.7
		813	100.0

〈표 3-37〉 학대 당시 가해자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마. 학대 결과

아동학대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의 결과 역시 복합적인 경우도 많다.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중에서 후유증이 없었던 경우는 21.2% 였으며, 62.8%는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유증 혹은 학대결과를 신체적 결과, 정서적 결과, 사회적 결과로 나누어 살펴보 면, 45.4%는 한 가지 유형의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결과가 40.1%로 가장 많고, 사회적 결과가 4.1%, 정서적 결과가 1.2%이다.

그러나 많은 수는 복합적인 후유증 내지 학대결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체적+사회적 결과' 5.8%,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결과' 4.9%, '신체적+정서적 결 과' 3.6%, '정서적+사회적 결과' 3.2%의 순이다.

〈 표 3−38 〉	하내	겨마 및	ᅵㅎㅇ즈	ㅇ혀
(TT 0 00)	극네	크시 첫	- πο	ТО

구분		빈도	비율(%)
학대결과 유형	신체적 결과	326	40.1
	정서적 결과	10	1.2
	사회적 결과	33	4.1
	신체+정서	29	3.6
	신체+사회	47	5.8

구분		빈도	비율(%)
	신체+정서+사회	40	4.9
	정서+사회	26	3.2
	후유증 없음		21.2
	미상	130	16.0
	계	813	100.0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학대결과를 살펴보면 〈표 3-39〉와 같다.

먼저 신체적 결과의 경우 '멍, 부어오름, 타박상, 찰과상과 같은 신체적 손상', '도구 흔이 있는 상처',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설명이 어려운 상흔' 등이 많았다. 정서적 결과의 경우 '공격적 혹은 위축된 극단적 행동 표출',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우울증상 및 부모 간 갈등을 더 많이 지각'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결과의 경우 '부모에 대한 두려움', '부모 이외의 성인에 대한 두려 움', '어른과의 접촉회피', '잦은 결석'이 많았다.

〈표 3-39〉 구체적인 학대후유증

구분		빈도	비율(%)
	설명이 어려운 상흔	85	10.7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92	11.6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 상처	38	4.8
	도구흔이 있는 상처	124	15.6
	담배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등 다양한 화상자국	11	1.4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48	6.0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26	3.3
신체적 결과	손목,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되는 붉게 긁힌 상처	14	1.8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8	1.0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17	2.1
	대뇌, 망막,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긴 두피 등 복잡한 두부손상	55	6.9
	고막천공이나 귓불상처와 같은 귀 손상	13	1.6
	골격계 손상 시간차 골절, 복합 골절	18	2.3

	구분	빈도	비율(%)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등 복부손상	8	1.0
	폐좌상, 기흉, 흉막 손상	3	0.4
	예방접종 및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15	1.9
	지속적 악취	2	0.3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40	5.0
	언어장애	1	0.1
	극단 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11	1.4
	멍, 부어오름, 타박상, 찰과상과 같은 신체적 손상	167	21.0
	계	796	100.0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 표출	14	7.3
	공격적 혹은 위축된 극단적 행동 표출	48	25.0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13	6.8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5	2.6
정서적·심리적 후유증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5	2.6
TIIO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53	27.6
	우울증상 및 부모 간 갈등을 더 많이 지각	35	18.2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19	9.9
	계	192	100.0
	비위생적 성장장애	16	7.1
	부모와 접촉회피 (특히 분노를 포함하여 어머니에 대한 접촉회피)	17	7.5
	어른과의 접촉회피	23	10.2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6	2.7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2	0.9
	비행이나 도벽	15	6.6
사회적 후유증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3	1.3
	잦은 결석	23	10.2
	부모에 대한 두려움	54	23.9
	부모 이외의 성인에 대한 두려움	25	11.1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21	9.3
	교육기관 내 부적응	21	9.3
	계	226	100.0

5. 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제공된 서비 스 제공유무와 서비스 유형을 살펴보았다.

먼저 학대 가해자에게 제공된 상담, 치료 등 서비스 수혜 유무를 보면 가해자의 28.7%가 서비스를 받았고, 35.2%는 받지 못했다. 기록조사 특성상 미상 비율이 높아 36.1%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으로는 상담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47.2%), 그 다음이 교육이며(35.4%), 그 외 서비스들은 비율이 낮아서 의료서비스, 심리치료 서비스, 가족기능강화 서비스가 모두 각각 5.8%이다.

	+				
/エっ	_////	SFLII	가해자에게	제고되	HHIA
$\sqrt{\pi}$	-4U/	꼭네	7 [0][/[0][/]	제공원	시비스

구분		빈도	비율(%)
	서비스 받음	189	28.7
나비 시 레고어터	서비스 받지 않음	232	35.2
서비스 제공여부	미상	238	36.1
	계	659	100.0
	상담서비스	97	47.2
	의료서비스	12	5.8
서비스 유형	심리치료서비스	12	5.8
	가족기능강화서비스	12	5.8
	교육	73	35.4
	계	206	100.0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비율이 보다 높다. 피해아동의 57.8%가 서비스를 받은 반면, 25.8%는 받지 못했고, 미상 비율은 16.4%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 면에서는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아 38.1%이고, 의료서비스가 9.4%, 심리치료 서비스가 9.1%,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 1.8%이다.

	구분		비율(%)
	서비스 받음	470	57.8
나비 시 레고어터	서비스 받지 않음	210	25.8
서비스 제공여부	미상	133	16.4
	계	813	100.0
	상담서비스	275	38.1
	심리치료서비스	66	9.1
서비스 유형	가족기능 강화서비스	13	1.8
	의료서비스	68	9.4
	기타 서비스	137	41.6
	계	722	100.0

〈표 3-41〉 학대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제3절 분석결과 요약

아동학대의 특성과 처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0-2015.5)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를 실시하였다.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은 2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17일간 본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 총 572개 사건이 표본으로 확보되었다.

이 장에서는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 분석결과 나타난 아동학대의 일반적 특성을 처분특성, 가해자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행위 특성으로 나누어 빈도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나타난 아동학대 사건의 처분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아동학대는 97.0%가 『아동복지법』으로 처벌되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사건은 약3.0%에 불과하다. 특례법은 2013년 12월 제정되고, 2014년 9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둘째. 아동학대의 경합비율은 64.5%이며, 이종경합보다는 동종경합이 많다. 이종

경합의 경우 주로 상해, 치상, 폭행 등 폭력범죄와 경합된다.

셋째, 아동학대 피의자들은 주로 신고에 의해 검거되는데(93.4%), 그 중에서도 신고 의무자 이외의 '제3자 신고'가 55.5%,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24.4%이다. '피해 자 본인이 신고'도 13.5%에 이른다. 반면 다른 범죄와 달리 인지수사나 현행범 체포 등은 적다.

넷째, 전체 신고사건 533개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은 30.2%이고 비신고 의무자 신고 사건은 66.4%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이 더 적다. 신고자는 '부모'가 47.6%로 가장 많은데(모 37.1%, 부 10.5%), 부 혹은 모가 학대가해자일 때 비가해 부 혹은 비가해 모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내 학대의 경우 대부분 부모가 신고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11.8%, '교육 및 보육시설 종사자'(교원, 보육교직원, 유치원종사자)가 10.9%로 신고 비율이 높다.

주목할 점은 친인척(조부모, 형제자매, 친인척)(4.8%)보다는 이웃사람(6.0%)과 모르 는 사람(7.1%)이 신고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핵가족화로 인하여 확대가족 구성원 들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으며, 특히 부모가 학대가해자일 때 아동들을 학대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지역공동체가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다섯째, 아동학대 가해자의 구속율은 11.7%로 2014년 기준 전체범죄 구속율 1.4%, 강력범죄(폭력) 구속율 0.8% 보다는 높고, 강력범죄(흉악) 구속율 16.1%보다는 낮다. 또한 검찰 처분결과 '구공판'이 32.2%, '구약식'이 12.7%, '기소중지'가 0.6%, '기소유 예'가 30.3%이며, 그 외 '혐의 없음'이 13.4%, '공소권 없음'이 1.4% 등이다. 아동학대 의 구공판 비율은 2014년 기준 전체범죄 구공판 비율 7.8%, 강력범죄(폭력)의 구공판 비율 5.9% 보다는 높고, 강력범죄(흉악) 구속율 40.0%보다는 낮다.

구공판과 구약식 처분을 받은 피의자들만을 대상으로 구형량을 분석하면. '유기징 역'을 구형한 경우가 가장 많아 34.9%에 이르고, 그 다음이 '벌금'으로 28.5%로 아직 까지 벌금을 구형하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유기징역 형기는 대체로 '1-12개월' 이 가장 많고(37.5%), 집행유예기간은 '13-24개월'(75.5%), 벌금액은 '201-300만원' 이 가장 많다(39.7%). 또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가 34.6%로 사선변호인 보다는 국선변호인이 더 많다.

여섯째, 가해자들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경우가 많아('일부만 시인' 41.9%, '전적으로 시인' 38.0%). 범행을 부인한 경우는 20.1%였다. 반면 피해아동들은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55.4%), 일부는 처벌을 원치 않기도 하고 (36.6%), 또한 일부는 양가감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0%), 수사과정에서 고소 취하가 이루어진 사건은 19.8%에 불과하고, 88.5%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석에 포함된 659명의 아동학대 가해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아동학대 가해자는 남성 45.4%. 여성 54.6%로 여성가해자의 비율이 다소 높다.

둘째, 아동학대 가해자는 20세 미만에서 70대 까지 전 연령층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30대(31.4%)와 40대(37.6%)가 가장 많고, 20대(15.9%), 50대(11.5%)이 다. 평균 연령은 39.4세이다

셋째,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은 내국인이며, 극히 일부만이 외국인이다(0.8%). 넷째, 가해자의 교육수준은 84.5%만이 파악되었는데, '고졸자'가 가장 많아서 33.8%이고, '대졸'이 30.5%, '중졸'이 11.5%의 순이다.

다섯째, 혼인상태는 결혼(초혼)이 38.5%로 가장 많고, 이혼 15.6%, 미혼이 11.2%, 재혼이 9.0%의 순이다. 특징적으로 1)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많기 때문에 미혼보다는(11.2%) 동거, 초혼, 재혼 등 유배우자의 비율이 높다(57.8%). 미혼은 시설 내 학대 가해자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아동학대는 재혼 가정 비율보다는(9.0%) 초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38.5%). 3) 별거, 이혼, 사별 후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에 의한 학대의 비율 역시 24.2%로 높은 편이다.

여섯째, 가해자의 직업은 어린이 집 등 교사에 의한 학대의 영향으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가장 많고(32.3%), 단순노무 노동자(13.4%), 사무종사자(7.6%)와 주부 (7.6%)가 많다. 미취업자의 비율은 19.1%이다.

일곱째,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평균 총 체포횟수는 4.7회이다. 전과가 있는 사람은 43.9%이고 초범은 43.9%이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평균 전과는 4.3범이다. 14.3% 가 실형전과가 있고, 평균 실형전과는 2.0범이다. 2.7%가 본 건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체포된 적이 있다

여덟째, 가해자의 31.3%는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이 있으며, 우울장애(30.4%), 신체장애 (17.4%). 물질 및 중독 장애(17.4%)가 많다. 장애나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적응이나 행동 문제 가 있는 가해자는 31.0%로 폭력행동(31.6%), 음주(29.8%), 우울(11.6%), 반항/충동/공격성 (6.1%), 불안(2.7%), 인터넷·게임중독(2.4%), 성문제(2.4%) 등이 많다.

분석에 포함된 813명의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학대 피해아동은 여아가 56.9%. 남아가 42.2%로 여아가 다소 많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다.

둘째. 피해아동 연령은 미취학 아동(6세 이하)이 가장 많아 42.9%이고. 학령기 아동 (7-12세)과 청소년(13세 이상)은 그 비율이 28.9%와 28.0%로 유사하다. 피해아동의 평균연령은 7.7세이다

셋째, 교육수준은 어린이 집 및 유치원 재원이 33.7%, 초등학교 재학이 29.0%, 중학교 재학이 16.4%, 고등학교 재학이 5.9%이다. 이는 피해자들의 연령분포와 유사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피해자들의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82.9%이고. 10.6%는 '읍면 지역' 거주자 이다.

다섯째. 피해아동의 11.2%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이고 '비수급권자'가 35.2%이다. 다만 미상 비율이 53.6%로 매우 높다

여섯째, 75.4%의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이 '1명'이고, 나머지 24.6%는 피해 아동이 다수인데, 이 경우 피해자들의 관계는 거의 대부분이 형제자매(58.1%)이거나 친구(39.5%)이다.

일곱째.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모든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분석결 과 아동학대는 아는 사람, 특히 보호자의 위치에 있는 성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로 98.0%가 면식범이다.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친부모로 48.8%이고, 여기에 계부모(7.5%), 부모의 동거인(2.7%)을 모두 합하면 실질적인 부모의 위치에 있는 자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가 59.0%에 이른다. 친부가 30.9%, 친모가 17.9%로 친아버지가 친어머

니보다 많고, 계부 2.1%, 계모 5.4%로 계모가 계부보다 많다.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가해자 집단은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종사자'로 전체 가해자 중 23.4%를 차지하며, '복지시설종 사자(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역시 6.9%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학원강사'가 3.1% '교원' 이 1.2%, '베이비시터'가 1.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덟째, 59.0%의 피해아동은 학대 가해자와 동거하며, 38.3%만이 동거하지 않는다. 아홉째,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1) 아동학대는 '친부모 가족'에서 발생하 는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 피해자의 35.8%를 차지한다. 2) 재혼가정이거나 친부모이 지만 법률적인 결혼상태가 아닌 가정인 '동거가정'(7.0%), '재혼가정'(7.1%), '미혼부 모 가정'(0.4%)는 14.5%이다. 3) '부자(부녀)가정'이 14.4%, '모자(모녀) 가정'이 10.3% 로 한부모 가정의 비율은 24.7%로 한 부모 가정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나 양육 부담 등의 문제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4) 그 외 '친인척보호 가정'. '조손가정'. '가정위탁'. '입양가정' 등의 경우 비율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이를 합하면 7.4%이다.

열 번째.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가족특 성은 매우 중요한 보호요인이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정 외 학대의 경우에도 학대사실의 발견과 피해아동 보호의 면에서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가족특성은 아동학대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피해아동의 동거가족 수를 살펴보면 '3인' 혹은 '4인'과 함께 사는 경우가 가장 많아, 각각 25.8%와 24.4%를 차지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핵가족의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피해아동의 약10%는 사회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가족인 것으로 파악되었 으며, 미상을 제외하고 비율은 계산할 경우 16.2%에 이른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 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있는 경우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사회적 혹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가족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학대사실의 발견이 어려워 피해가 장기화되고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열한 번째, 학대피해아동 중에서 신체장애나 질환이 있는 가해자 비율이 8.7%이며, 없는 경우가 45.6%, 미상 비율은 45.6%이다. 앞에서 분석한 가해자들의 장애 및 질환

비율 12.6%보다 낮은 수치로, 피해아동보다는 가해자들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문제 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경발달 장애(54.1%), 신체장애(10.6%), 언어 장애(8.2%). 우울장애(7.1%).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장애(4.7%). 급식 및 섭식장애 (3.5%)가 많다.

장애나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적응이나 행동 문제가 있는 피해아동은 39.9%로 미상 비율은 36.4%로 미상을 제외하고 비율을 계산하면 62.7%이다. 반항, 충동, 공격성 (12.7%)과 거짓말(11.4%), 주의산만(8.7%), 도벽(7.2%), 성격 및 기질문제(6.9%), 학습 문제'(6.7%), 가출(6.4%), 인터넷(게임) 중독(5.2%)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아동학대의 범행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주로 실내 그리고 주거지에서 발생하며, 실외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학대공간은 '가해자 주거지/피해자 주거지/공동주거지'로 45.2%이고, 두 번째로 유치원(20.1%), 학교 (1.5%), 학원(2.8%)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 24.4%이다. 그 외 복지시설(4.6%), 숙박 업소(1.5%), 병원0.9%), 이웃집/친척집(0.5%), 종교시설(0.4%) 등이 학대 장소로 조사 되었다.

둘째, 아동학대의 피해 기간은 일회 발생한 경우부터 10년 이상 지속된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다. 1회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고(46.1%), '1개월 미만'이 5.5%, '1-5개월' 이 11.9%, '6-12개월'이 8.7%, '1년-2년'이 7.1%이며, '10년 이상' 지속된 사례도 1.4%이다.

셋째, 학대 빈도는 일회성 학대가 가장 많지만(50.8%), 15.6%는 '거의 매일' 학대를 당했고, '2-3일에 한번'(5.5%), '일주일에 한번'(4.2%), '2주일에 한번'(2.7%), '1개월에 한번'(3.6%) 등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다는 특성 상 학대빈도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넷째, 아동학대는 공범이 있는 경우가 25.9%이고, 나머지 73.8%는 단독범이다. 공범간의 관계는 어린이집 등 시설내 학대의 영향으로 직장동료가 가장 많고(46.6%), 가정내 학대의 영향으로 '부부'(27.3%)나 '동거인 및 애인'(10.9%)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 외 '가족 및 친척'이 6.2%, '친구 및 선후배'가 6.2%이다.

다섯째, 범행시 가해자의 역할은 주도적 역할이 가장 많아 63.7%이고, 보조적 역할 과 단순가담은 각각 12.9%이다. 미상 비율은 10.5%이다.

여섯째, 아동학대는 단일한 유형의 학대형태도 발생하기도 하기만,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학대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학대유형 은 증가하게 된다. 하나의 유형의 학대만 발생한 '단일학대'는 51.7%, 여러 유형의 학대가 함께 발생한 '복합 학대'는 48.3%이다. 단일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만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아서 35.4%, '정서적 학대' 7.6%, '방임' 5.7%, '유기' 3.0%이다. 복합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26.6%).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12.7%). '신체 적 학대+방임'(5.8%). '정서적 학대+방임'(2.0%)의 순으로 많다.

일곱째, 다양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분석되었다. '손 발 등으로 때림'(33.1%), '도구 로 때림'(25.0%), '벌을 세움'(7.7%), '떠밀고 움켜잡음'(6.8%), '꼬집거나 물어뜯 음'(4.6%), '벽에 밀어붙임'(3.7%), '음식물/토사물 등 강제섭취'(3.1%), '조르거나 비틀 었음'(3.0%)의 순으로 발생비율이 높다. 그 외 할큄, 흉기나 뾰족한 도구로 찌름, '화학 물질이나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 '강하게 흔듦', '신체를 묶음', '던짐', '거꾸로 매닮', '물에 빠뜨림' 등 상상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덟째, 정서적 학대 역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언어 폭력'으로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42.7%), '사물이나 음식물 등을 던지거나 위협'(15.7%),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함'(9.2%), '감금'(8.2%) 등의 발생율이 높다.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잠을 재우지 않음', '벌거벗겨 내쫓음', '형제·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함', '가족 내에서 소외시킴',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쫓음',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데리고 다님', '약취 및 유인', '노동 착취',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 등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분석되었다.

아홉째, 방임의 대표적인 학대행위는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25.6%)과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방치'(22.4%)이다. 또한 '학교에 보내지 않음'14.6%), '의료적 처치나 개입을 하지 않음'(14.0%), '방치'(12.7) 역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방임행위 형태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출생신고 하지 않음', '아동을 가정에 두고 가출', '시설 근처, 친족집 근처에 두고 사라짐', '무단결석 방치' 등이 방임행위에

속하다.

열 번째, 유기행위 중 가장 발생비율이 높은 학대행위는 '보호하지 않고 버림'으로 전체 유기 중 72.7%를 차지한다. 그 외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짐'이 15.2%. '시설 근처에 버림'이 12.1%이다.

열한 번째, 신체적 학대에는 칼과 같은 흉기에서 부터 악기, 가전제품 등 매우 다양한 일상용품들이 학대도구로 사용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체적 학대 도구는 '빗자루, 효자손, 쇠파이프 등 막대기, 몽둥이'(37.9%), '사무용품(자 등), 플라스 틱'(12.0%), '스타킹, 허리띠 등 줄, 끈'(6.6%), '음식, 토사물, 용변 등'(5.6%), '가전제 품(리모컨, 안마기, 다리미, 세탁기 등)'(4.8%)이다. 그 외에도 '칼, 도끼 등 흉기', '유리 병', '운동용품(검도 칼, 골프채, 야구방망이 등)', '악기(단소 등)', '물(뜨거운, 찬, 고춧 물 등)' 등이 신체학대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진다.

열두 번째, 가해자의 학대동기는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50.3%), '가해자 개인특 성'(20.4%),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9.3%), '부부 문제'(7.2%), '경제적 문제'(5.5%)의 순으로 비율이 높다.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로는 '적대적·통제적 양육태도, 과도한 훈육', '부모 역할과 양육에 관한 기술 부족 및 지나친 기대'가 해당된다. 가해자 개인 특성으로는 '폭력적 성향', '알코올 중독', '어린 시절 학대 경험', '불안, 우울 등 심리적 문제' 등이 포함되면,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및 사회적 지지부족', '장애아동양육 부담', '원치않는 자녀'에 대한 부담이 해당된다. 부부 문제 는 가정 내 부부문제로 갈등, 별거 혹은 이혼 등을 의미하며, 경제적 문제는 경제능력 부족을 의미한다.

열세 번째, 23.9%의 가해자들이 학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70.1%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이며, 미상은 5.9%이다. 극소수인 0.7%만이 학대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 미상 비율은 3.7%이다.

열네 번째, 아동학대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의 결과 역시 복합적인 경우도 많다.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중에서 후유증이 없었던 경우는 21.2%였으며, 62.8%는 후유증을 경험했다.

피해아동의 45.4%는 한 가지 유형의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결과 가 40.1%로 가장 많고, 사회적 결과가 4.1%. 정서적 결과가. 1.2%이다. 그러나 많은

수는 복합적인 후유증 내지 학대결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체적+사회적 결과' 5.8%,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결과' 4.9%, '신체적+정서적 결과' 3.6%, '정서적 +사회적 결과' 3.2%의 순이다.

신체적 후유증으로는 '멍, 부어오름, 타박상, 찰과상과 같은 신체적 손상', '도구흔 이 있는 상처',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설명이 어려운 상흔' 등이 많았 다. 정서적 후유증으로는 '공격적 혹은 위축된 극단적 행동 표출', '정신신경성 반응(히 스테리, 강박, 공포)', '우울증상 및 부모 간 갈등을 더 많이 지각'이 많았다. 사회적 후유증으로는 '부모에 대한 두려움'. '부모 이외의 성인에 대한 두려움'. '어른과의 접촉회피'. '잦은 결석'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제공유무와 서비스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아동학대 가해자의 28.7%는 상담, 치료 등 서비스를 받았고, 35.2%는 받지 못했다. 기록조사 특성상 미상 비율이 높아 36.1%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으로는 상담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47.2%), 그 다음이 교육이며(35.4%), 그 외 서비스들은 비율이 낮아서 의료서비스, 심리치료 서비스, 가족기능강화 서비스가 모 두 각각 5.8%이다.

둘째,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비율이 보다 높다. 피해아동의 57.8% 가 서비스를 받은 반면, 25.8%는 받지 못했고, 미상 비율은 16.4%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 면에서는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아 38.1%이고, 의료서비스가 9.4%, 심리 치료 서비스가 9.1%,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 1.8%이다.

제4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아동학대의 유형별 특성

강 은 영

아동학대의 유형별 특성

아동학대는 가해자-피해자 관계, 피해자 연령, 학대 유형 등에 따라 몇 개의 차별화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몇 개의 아동학대 유형을 대상으로그 특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가해자-피해자 관계별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내 학대'와 보육시설, 유치원, 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시설내 학대'가 대표적이며, 가정내 학대 중에는 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부모 학대', 그리고 친부모에 의한 '친부모 학대'가 차별화된 특성을 지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아동학대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만6세 이하), 초등학생 아동(만7-12세), 청소년(만13세 이상-19세 미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본연구에서는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로 명명하였다.

셋째, 가정내학대의 유형분류 기준 중 하나는 '중복학대'여부이다. 가정내 학대는 여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가정폭력과 결합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가해부가 비가해모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아동학 대와 가정폭력이 결합하는 것이다. 중복학대는 가족역동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피해아동에게도 보다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아동학대 살인'은 범죄내용과 결과 자체만으로도 별도로 구분될 수 있는 학대유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 유형을 구분하고, 그 특성과 차이점을 집단차이검증을 통해 비교하여 보았다.

-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
- '학령전 아동학대', '학령기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
-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
- '친부모 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
- '아동학대살인'

제1절 가정내 아동학대와 시설내 아동학대

1. 처분 특성 비교

가. 죄명 특성 비교

아동학대는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따라 몇몇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동학대 유형은 부모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가정내 학대'와 어린이집 교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내 학대'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가정내 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장애아동 관람, 구걸강요, 이용행위'(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74.3%, '상습'(아동학대특 례법 제6조) 18.6%, '그외 아동복지법 위반' 4.4%의 순이며, 시설내 학대 역시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이용행위'(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73.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아동학대특례법 제7조) 17.6%, '그외 아동복지법 위반' 5.3%의 순이다.

집단차이 검증으로 통해 가해자 처분 죄명을 비교하여 보면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학대 여부에 따라 가해자 죄명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학대 모두 대체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이용행위'로 처벌되었다. 다만 아동학대 특례법 실행기간이 현재보다 길어질 경우 시설내 학대의 경우 제7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표 4-1〉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죄명 비교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제71조 제1항 제1호(아동매매)	5 (1.1)	3 (1.6)	8 (1.3)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4 (0.9)	2 (1.1)	6 (1.0)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이용행위)	324 (74.3)	138 (73.4)	462 (74.0)	
	제71조 제1항 제3호(양육알선금품취득, 아동금품유용)	3 (0.7)	_	3 (0.5)	$\chi^2 = 6.519$
	그 외 아동복지법 위반	19 (4.4)	10 (5.3)	29 (4.9)	df=6 n.s
특례법	제6조(상습)	81 (18.6)	33 (17.6)	114 (18.3)	
제7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_	2 (1.1)	2 (0.3)	
	계	436 (100.0)	188 (100.0)	624 (100.0)	

이어서 경합여부를 살펴보면, 가정내 학대는 '경합이 아닌 경우'가 32.9%, '동종경 합' 32.7%, '동종+이종경합' 18.4%, '이종경합' 16.0%의 순이고, 시설내 학대는 '동종 경합' 46.8%, '경합아님' 41.7%, '동종+이종경합' 6.4%, '이종경합' 5.1%의 순이다. t-test 결과 경합여부 면에서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두 유형의 학대 모두 가해자 처분 죄명은 경합이 아니거나 경합이더라도 동종경합인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비율의 차이 면에서 차이점이 나타났다. 첫째, 가정내 학대는 경합이 아닌 경우와 동종경합이 32.9%와 32.7%로 유사한데 반해, 시설내 학대 가해자 죄명은 동종경합(46.8%) 경합이 아닌 경우(41.7%)보다 많다. 둘째, 시설내 학대의 처분죄명은 이종경합인 경우가 훨씬 적다. 가정내 학대의 경우 이종경합도 16.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시설내 학대의 경우 5.1%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설내 학대는 가정내 학대에 비하여 동종경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종경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경합아님	134(32.9)	65(41.7)	199(32.9)
이종경합	65(16.0)	8(5.1)	73(13.0)
동종경합	133(32.7)	73(46.8)	206(36.6)
동종+이종	75(18.4)	10(6.4)	85(15.1)
 계	407(100.0)	156(100.0)	563(100.0)

〈표 4-2〉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경합여부 비교

 χ^2 =29.593, df=3, P \langle 0.001

나. 검거 특성 비교

가정내 학대의 가해자 검거경위는 '비신고의무자 신고'(48.9%), '신고의무자 신 고'(29.1%), '피해자 신고'(14.3%), '기타'(7.7%)의 순으로 많고, 시설내 학대는 '비신고 의무자 신고'(72.4%), '신고의무자 신고'(17.3%), '피해자 신고'(8.3%), '기타'(1.9%)의 순이다.

첫째, 다른 범죄와 달리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 모두 경찰의 인지, 현행범 체포 등에 의한 검거의 비율은 매우 낮다. 둘째, 구체적인 비율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 나. 공통적으로 두 학대 유형 모두 비신고의무자 신고가 가장 많고. 신고의무자 신고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피해자 신고가 각각 14.3%와 8.3%로 일반적인 예상보다 높다는 점, 특히 부모가 주 가해자인 가정내 학대의 경우 약15%가 피해아동 스스로가 신고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학교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 결과 아동의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아동 스스로 학대에 대처하는 방법을 인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결과일 수 있다.

집단차이검증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 따라 아동학대 가해자의 검거경위가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시설내 학대는 가정내 학대에 비하여 '제3자 신고', 특히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도 '부모'에 의해 신고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72.4%). 시설 내 학대는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동료교사나 관리자(원장)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많은 수는 부모에 의해 발견되고 신고되 기 때문이다. 반면 가정내 학대의 경우 절반 정도는 제3자 신고에 의해 가해자가 검거되고(48.9%), 29.1%는 신고의무자 신고에 의해 검거되어 검거경위가 분산되어

있다. 둘째, 가정내 학대는 시설내 학대에 비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4-3〉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검거경위 비교

단위: 명(%)

	가정내	시설내	계
 신고의무자 신고	118(29.1)	27(17.3)	145(25.8)
비신고의무자 신고	198(48.9)	113(72.4)	311(55.4)
피해자 신고	58(14.3)	13(8.3)	71(12.7)
기타(자수, 현행범체포 등)	31(7.7)	3(1.9)	34(6.1)
	405(100.0)	156(100.0)	561(100.0)

 $[\]chi^2$ =26.654, df=3, P(0.001

이번에는 신고에 의해 검거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최초신고자를 살펴보자.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 모두 신고의무자 보다는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가 훨씬 많고, '부/ 모/위탁부모'가 신고한 경우가 가장 많다. 가정내 학대는 신고자는 '부/모/위탁부모' (35.4%),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17.7%), '교원/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자' (12.8%), '낯선 사람'(10.2%)의 순이고, 시설내 학대의 신고자는 '부/모/위탁부모'(77.4%), '교원 /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자'(8.8%), '사회복지전담공무원'(5.1%),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4.4%)의 순이다.

집단차이검증 결과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최초 신고자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두 유형의 학대 모두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가 더 많지만, 비율 면에서 시설내 학대는 비신고의무자 신고가 무려 80.3%를 차지한다. 둘째, 최초신고 자가 누구인지를 상세히 살펴보면, 두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아동의 '부/모/위탁부모' 가 신고한 경우가 가장 많지만, 가정내 학대는 그 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교원 /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자'등 다양한 신고자 유형이 있는 반면, 시설내 학대는 '부/ 모/위탁부모' 신고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신고자 유형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 다. 셋째, 가정내 학대는 모르는 사람이 신고하는 비율이, 시설내 학대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신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성을 가진다.

〈표 4-4〉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최초신고자 비교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1 =	신고의무자	118(38.7)	27(19.7)	145(32.8)	2
최초 신고자	비신고의무자	187(61.3)	110(80.3)	297(67.2)	χ ² =
	계	305(100.0)	137(100.0)	442(100.0)	15.450***
	아동보호전문기관	54(17.7)	6(4.4)	60(13.6)	
	교원/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자	39(12.8)	12(8.8)	51(11.5)	
	의료인/소방구급대원	14(4.6)	1(0.7)	15(3.4)	
최초	아동복지/장애인복지/사회복지/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10(3.3)	1(0.7)	11(2.5)	0
신고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3)	7(5.1)	8(1.8)	χ ² =
(상세)	부/모/위탁부모	108(35.4)	106(77.4)	214(48.4)	94.395***
	조부모/친인척/형제자매	19(6.2)	3(2.2)	22(5.0)	
	이웃	29(9.5)	1(0.7)	30(6.8)	
	낯선사람	31(10.2)	_	31(7.0)	
	계	305(100.0)	137(100.0)	442(100.0)	

*** P(0.001

다. 검찰 및 법원 처분 특성 비교

처분특성은 가해자 구속 여부와 검찰처분 결과, 최종심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는 가해자 구속 여부와 검찰처분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구형량이나 최종심 유형에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먼저 구속여부를 보면, 가정내 학대 가해자의 15.8%가 구속되었고, 84.2%는 불구 속 수사를 받았다. 시설내 학대는 3.9%가 구속수사, 96.1%는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집단차이검증 결과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 가해자의 구속율은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가정내 학대 가해자의 구속율이 15.8%로 시설내 학대 가해자 구속율 3.9%보 다 약4.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 의한 가정내 학대가 시설내 학대보 다 장기화되고, 학대 정도나 피해아동에 미치는 후유증 등의 면에서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표 4-5〉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구속여부 비교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구속	63(15.8)	6(3.9)	69(12.5)
불구속	337(84.2)	147(96.1)	484(87.5)
계	400(100.0)	153(100.0)	553(100.0)

 χ^2 =14.179, df=1, P(0.001

검찰처분 결과는 가정내 학대의 경우 '구공판'(35.6%), '기소유예'(33.9%), '불기소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죄가안됨)'(11.3%)의 순이고, 시설내 학대는 '기소유예'(27.6%). '구공판'과 '불기소(혐의 없음/공소권 없음/죄가안됨)'(각각 23.7%)의 순으로 비율이 높다.

집단차이검증 결과,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에 대한 검찰처분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내 학대는 구공판, 기소유예, 타관송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설내 학대는 구약식, 불기소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다. 이는 이미 구속여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부모학대가 시설내 학대보다 훨 씬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정내 학대는 구공판과 교육이수 혹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비율이 각각 약1/3을 차지하여, 이 둘을 합하면 약 70% 에 이른다.

〈표 4-6〉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검찰처분결과 비교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구공판	145(35.6)	37(23.7)	182(32.3)
구약식	30(7.4)	31(19.9)	61(10.8)
기소유예	138(33.9)	43(27.6)	181(32.1)
불기소(혐의 없음/공소권 없음/죄가 안됨)	46(11.3)	37(23.7)	83(14.7)
타관송치	29(7.1)	1(0.6)	30(5.3)
기소중지/기타	19(4.7)	7(4.5)	26(4.6)
Ä	407(100.0)	156(100.0)	563(100.0)

 χ^2 =43.322, df=5, P \langle 0.001

집단차이검증 결과, 구형량 면에서는 유기징역형기, 집행유예 기간, 벌금액 수 모두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기징역 형기'는 가정내 학대는 평균 27.87개월. 시설내 학대는 평균 20.00개월로 가정내 학대가 더 길다. '집행유예 기간'은 가정내 학대는 24.14개월, 시설내 학대는 22.67개월로 가정내 학대가 더 길다. '벌금 총액'은 가정내 학대는 226.58원, 시설내 학대 는 257.88원으로 시설내 학대가 더 많다. 그러나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표 4-7〉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구형량 비교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1-12개월	11(36.7)	2(50.0)	13(38.2)	
	13-24개월	9(30.0)	1(25.0)	10(29.4)	χ^2 =1.321,
유기징역	25-36개월	4(13.3)	1(25.0)	5(14.7)	df=3,
형기	37개월 이상	6(20.0)	_	6(17.6)	n.s
	계	30(100.0)	4(100.0)	34(100.0)	
	평균(표준편차)	27.87(24.35)	20.00(12.65)		t=.629
	1-12개월	3(8.1)	2(22.2)	5(10.9)	
집행유예 기간	13-24개월	29(78.4)	6(66.7)	35(76.1)	$\chi^2 = 1.489$,
	25-36개월	5(13.5)	1(11.1)	6(13.0)	df=2, n.s
. 12	계	37(100.0)	9(100.0)	46(100.0)	
	평균(표준편차)	24.14(7.05)	22.67(7.21)		t=.558
	30-50만원	1(5.3)	4(12.1)	5(9.6)	
	51-100만원	3(15.8)	4(12.1)	7(13.5)	
	101-200만원	6(31.6)	7(21.2)	13(25.0)	
	201-300만원	8(42.1)	14(42.4)	22(42.3)	$\chi^2 = 2.394$,
벌금총액수	400만원	_	1(3.0)	1(1.9)	df=6, n.s
-	500만원	1(5.3)	2(6.1)	3(5.8)	
	1000만원	_	1(3.0)	1(1.9)	
	계	19(100.0)	33(100.0)	52(100.0)	
	평균(표준편차)	226.58(112.94)	257.88(178.95)		t=.686

법원 처분결과는 최종심 유형만을 비교하여 보았다. 가정내 학대의 경우 '1심'이 66.1%, '2심'이 28.0%, '3심'이 5.8%이며, 시설내 학대는 '1심'이 71.4%, '2심'이

21.4%, '3심'이 7.1%이다. 두 학대 유형 모두 1심이 가장 많고, 2심, 3심으로 갈수록 비율이 낮아진다.

시설내 학대가 가정내 학대보다 1심 비율이 높기는 하나(약5%). 집단차이검증 결과 두 학대 유형간에 최종심 유형에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8〉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최종심유형 비교

단위: 명(%)

	가정내	시설내	계
1심	125(66.1)	60(71.4)	185(67.8)
2심	53(28.0)	18(21.4)	71(26.0)
3심	11(5.8)	6(7.1)	17(6.2)
계	189(100.0)	84(100.0)	273(100.0)

 χ^2 =1.382, df=2, n.s

변호인 유무를 살펴보면, 가정내 학대는 62.0%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가 28.6%.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가 9.4%이다. 시설내 학대 는 변호인이 없는 사례가 57.7%이고, 국선변호인이 16.2%, 사선변호인이 26.1%이다.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 모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비율이 50-60% 대로 높은 편이다.

집단차이검증 결과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첫째,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보다 변호인을 선임한 비율이 다소 높다(각각 62.0%와 57.7%). 둘째, 그러나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많은 수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데 반해(28.6%).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의 경우 사선변호인 선임 비율이 국선변호인 보다 훨씬 높다 (26.1%). 이는 두 학대 유형 가해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교직원이므로, 기초생활 수급권자도 많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대적으로 경우가 많은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많다.

〈표 4-9〉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변호인유무 비교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변호인 없음	217(62.0)	82(57.7)	299(60.8)
국선 변호인	100(28.6)	23(16.2)	123(25.0)
사선 변호인	33(9.4)	37(26.1)	70(14.0)
계	350(100.0)	142(100.0)	492(100.0)

 χ^2 =26.118, df=2, P(0.001

라.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 비교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는 가해자의 범행시인 정도와 피해자의 가해자 처벌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가해자들의 범행시인 정도를 보면. 가정내 학대 가해자의 42.0%는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41.0%는 '전적으로 시인'하였으며, 17.0%만이 범행을 '부인'하였다.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42.9%가 '일부 시인', 31.8%가 '전적으로 시인', 25.3%가 '부인'하였다. 따라서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일부 시인'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적으로 시인'하는 가해자, '부인'하는 가해자 슈으로 비율이 높다.

집단차이검증 결과 가정내와 학대와 시설내 학대는 가해자의 범행시인 정도가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일부 시인하는 비율은 40%대 초반으로 유사하나,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시설내 학대 가해자에 비하여 범행을 '전적으로 시인'하는 비윸이 훨씬 높고(각각 41.0%와 31.8%).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에 비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각각 25.3%와 17.0%).

이번에는 피해자들의 가해자 처벌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자. 가정내 학대 피해자들 은 45.6%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고', 44.3%는 '처벌을 원하며', 10.1%는 '양가감정' 을 보인다. 시설내 학대 피해자들은 68.9%가 '처벌을 워하고'. 26.5%는 '처벌을 워하 지 않으며'. 4.5%는 '양가감정'을 가진다.

집단차이검증 결과 첫째. 가정내 학대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을 워하는 비율'과 '처벌을 워치 않는 비윸'이 유사한 반면(각각 44.3%와 45.6%). 시설내 학대 피해자들 은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비율'이 '원치 않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각각 68.9%와 26.5%). 둘째, 가정내 학대 피해자들은 시설내 학대 피해자들보다 가해자에 대해 '양 가감정'을 가지는 비율이 더 높다(각각 10.1%와 4.5%).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가정내 학대 피해아동의 많은 수는 부모에 의한 학대이므로 피해아동은 자신의 부모를 처벌하고 싶은 비율과 처벌하고 싶지 않은 비율이 유사하며, 이 때문에 양가감정 역시 많이 가진다. 그러나 시설내 학대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학생(원생)과 교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양가감정을 가지는 비율도 낮다.

〈표 4-10〉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 비교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전적으로 시인	162(41.0)	49(31.8)	211(38.4)	_
가해자의	일부시인	166(42.0)	66(42.9)	232(42.3)	$\chi^2 =$
범행시인 정도	부인	67(17.0)	39(25.3)	106(19.3)	6.459* df=2
	계	395(100.0)	154(100.0)	549(100.0)	ui-2
피해자의 태도	처벌을 원함	127(44.3)	91(68.9)	218(52.0)	x ² =
	처벌을 원치 않음	131(45.6)	35(26.5)	166(39.6)	χ = 22.289
	양가감정을 보임	29(10.1)	6(4.5)	35(8.4)	***
	계	287(100.0)	132(100.0)	419(100.0)	df=2

^{*} P(0.05, *** P(0.001

가정내 학대는 '고소가 취하'된 경우가 19.5%, '취하되지 않은 경우'가 80.5%이고, 시설내 학대는 각각 26.1%와 73.9%이다. 또한 가정내 학대는 70.7%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29.3%는 합의가 되었으며, 시설내 학대는 각각 그 비율이 63.4%와 36.6%이다. 따라서 두 학대 유형 모두 고소취하를 하지 않은 비율이 70-80%대로 고소취하 비율보다 높고. 합의가 되지 않은 비율이 60-70%로 합의된 비율보다 높다. 시설내 학대가 가정내 학대보다 고소를 취하한 비율이나 합의한 비율이 높은데. 이는 부모와 피해아동이 고소취하나 합의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차

이검증 결과 이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고소취하안함 235(80.5) 99(73.9) 334(78.4) 고소 $x^2 = 2.362$ 취하 고소취하함 57(19.5) 35(26.1) 92(21.6) n.s 여부 df=1 계 134(100.0) 426(100.0) 292(100.0) 합의안함 188(70.7) 85(63.4) 273(68.2)

49(36.6)

134(100.0)

127(31.8)

400(100.0)

 $x^2 = 2.158$

n.s

df=1

〈표 4-11〉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고소취하 및 합의 여부 비교

78(29.3)

266(100.0)

2. 가해자 특성 비교

합의

여부

가.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합의함

계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따라 구분되는 대표적인 아동학대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가정 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 표에는 가해자 성별, 연령, 국적,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업, 종교를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가해자 성별을 살펴보면.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남성'이 59.2%. '여성'이 40.8%이며,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여성'이 82.7%, '남성'이 17.3%이다. 따라서 가정내 학대 가해자는 남녀 비율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남성이 더 많은 반면, 시설내 학대는 여성 비율이 훨씬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다시 말해서 가정내 학대의 경우 부모 모두 가해자가 되나 아버지의 비율이 다소 높은 반면, 보육시설 학대의 경우 교직원들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가해자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정내 학대 가해자 평균연령은 39.9세. 시설내 학대는 37.9세로 가정내학대 가해 자의 연령이 높다.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40대'가 43.1%, '30대'가 33.7%, '20대'가 11.7%, '50대'가 10.0%, '60대 이상'이 1.4%의 순으로 많고,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40대'가 30.1%, '30대'가 28.2%, '20대'가 26.9%, '50대'가 13.5%, '60대 이상'이 1.2%이다. 따라서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30, 40대에 76.8%가 집중되어있고 20대는 11.7%인데 비해.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30. 40대가 58.3%이고 상대적으로 20대가 많아서 26.9%이다.

국적 면에서는 가정내, 시설내 학대 가해자 모두 대부분 '국내 국적자'로 '국외 국적자' 비율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가정내 학대 가해자의 1.2%가 국외 국적을 가지고 있고, 시설내 학대 가해자는 국외 국적자가 없었다.

교육수준 면에서는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고졸'이 50.6%, '중졸'이 19.3%, '대졸' 이 17.8%의 순인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대졸'이 76.9%, '고졸'이 14.2%이며 그 이하 학력을 가진 가해자는 없다. 즉 가정내 학대 가해자에 비하여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의 교육수준이 훨씬 높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혼인상태를 보면,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결혼' 33.5%, '동거' 15.1%, '재혼' 12.8%로 유배우자 상태의 사람이 61.4%, '별거/이혼/사별'이 34.3%, '미혼'이 4.3%로 무배우자 상태의 사람이 38.6%이며,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결혼' 62.9%, '재혼' 1.5%로 유배우자 상태가 64.4%이고, '미혼'이 27.3%, '별거/이혼/사별'이 8.3%로 무 배우자 비율은 35.6%이다. 집단차이검증 결과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는데, 첫째, 유배 우자 비율은 두 집단이 유사한 수준이나, 구성을 보면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동거' 나 '재혼'의 비율이 시설내 학대 가해자보다 높고, 시설내 학대 가해자는 '초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무배우자 비율은 두 집단이 유사하나, 가정내 학대 가해자는 '별거/이혼/사별'의 비율이,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미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해자 직업 면에서는 매우 뚜렷한 차이가 보이는데 이는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모두 직업이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로 전문·관리직이기 때문이다. 반면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미취업'이 26.5%로 가장 많고, 그 외 다양한 직업을 가진 가해자들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율 순으로 '사무직 종사자' 11.0%, '전문·관리직' 10.7%, '서비스·판매직' 10.7%, '가정주부' 10.5%, '숙련 기능공' 8.4%이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종교 유무를 보면,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종교가 있는 경우가 49.0인데 반해,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그 비율이 70.5%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가해자 국적을 제외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혼인상태, 직업, 종교 유무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 차이를 요약하면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고, 3,40대 비율이

더 높으며, 상대적으로 저학력이고, 동거와 재혼, 별거/이혼/사별의 비율이 높고, 상대 적으로 미취업자 비율이 높고, 무종교 비율이 높다.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 20대 비율, 고학력 비율, 초혼과 미혼비율이 높고, 전문관리직 에 집중되어 있고, 종교가 있는 비율이 높다.

〈표 4-12〉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남자	241(59.2)	27(17.3)	268(47.6)	χ 2=
가해자 성별	여자	166(40.8)	129(82.7)	295(52.4)	79.401***
	계	407(100.0)	156(100.0)	563(100.0)	df=1
	20대	47(11.7)	42(26.9)	89(16.0)	
	30대	135(33.7)	44(28.2)	179(32.1)	
	40대	173(43.1)	47(30.1)	220(39.5)	χ ² =
	50대	40(10.0)	21(13.5)	61(11.0)	24.211***
가해자 연령	60대	5(1.2)	1(0.6)	6(1.1)	df=5
	70대	1(0.2)	1(0.6)	2(0.4)	
	계	401(100.0)	156(100.0)	557(100.0)	
	평균 (표준편차)	39.9 (8.70)	37.9 (10.67)		t=2.227*
	국내	402(98.8)	156(100.0)	558(99.1)	χ ² =1.934, df=1 n.s
가해자 국적	국외	5(1.2)	-	5(0.9)	
	계	407(100.0)	156(100.0)	563(100.0)	
	초졸	33(9.6)	2(1.5)	35(7.4)	
	중졸	66(19.3)	_	66(13.9)	
가해자의	고졸	173(50.6)	19(14.2)	192(40.3)	χ ² =
교육수준	대졸	61(17.8)	103(76.9)	164(34.5)	169.205*** df=4
	대학원 이상	9(2.6)	10(7.5)	19(4.0)	u '
	계	342(100.0)	134(100.0)	476(100.0)	
	미혼	17(4.3)	36(27.3)	53(10.1)	
	동거	59(15.1)	-	59(11.3)	_
가해자의	결혼(초혼)	131(33.5)	83(62.9)	214(40.9)	X ² = 128.467*** df=4
혼인상태	재혼	50(12.8)	2(1.5)	52(9.9)	
	별거/이혼/사별	134(34.3)	11(8.3)	145(27.7)	J 4
	계	391(100.0)	132(100.0)	523(100.0)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미취업	104(26.5)	-	104(19.4)	
	전문관리직	42(10.7)	153(100.0)	195(35.2)	
	사무직	43(11.0)	-	43(7.9)	
	서비스판매직	42(10.7)	-	42(7.7)	
가해자의 검거 당시 직업	농림어업	5(1.3)	-	5(0.9)	χ ² =
	숙련기능원	33(8.4)	-	33(6.1)	367.947*** df=8
. –	단순노무직				ui-o
	가정주부	41(10.5)	-	41(7.7)	
	기타	2(0.5)	-	2(0.4)	
	계	392(100.0)	153(100.0)	545(100.0)	
가해자 종교	유	141(49.0)	74(70.5)	215(54.7)	χ 2=
	무	147(51.0)	31(29.5)	178(45.3)	14.379***
	계	288(100.0)	105(100.0)	393(100.0)	df=1

^{*} P(0.05, *** P(0.001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10.3%가 '읍면 지역 거주자'이고, 7.1%가 '주거가 일정하 지 않다'.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7.1%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집단차이검증 결과 시설내 학대 보다 가정내 학대 가해자가 읍면지역 거주자가 다소 많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거주지역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 대도시에 거주한다.

그러나 주거안정성 면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시설내 학대 거주자에 비하여 가정 내 학대 거주자들은 주거 부정 비율이 높다.

〈표 4-13〉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거주지역 및 주거안정성 비교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1-1-1	대도시	358(89.7)	145(92.9)	503(90.6)	χ ² =1.373,
가해자 주거지역	읍면지역	41(10.3)	11(7.1)	52(9.4)	df=1
	계	399(100.0)	156(100.0)	555(100.0)	n.s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가해자	주거일정	369(92.9)	149(100.0)	518(94.9)	v ² =
주거 안정성	주거부정	28(7.1)	-	28(5.1)	7. – 11.077**
	계	397(100.0)	149(100.0)	546(100.0)	df=1

나. 가해자의 전과 특성 비교

가정내 학대 가해자와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전과 특성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이 시설내 학대 가해자 보다 범죄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시설내 학대 가해자에 비하여 총체포 횟수, 총전 과 횟수, 실형전과 횟수 모두 많고, 전과자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총체포 횟수'를 보면 가정내 학대 가해자는 평균 5.16회이나 시설내 학대 가해자는 1.89회로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의 체포횟수가 훨씬 많다.

'전과 유무'면에서는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62.1%가 전과가 있는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18.2%만이 전과가 있으며, '총전과 횟수' 면에서도 가정내 학대 가해 자는 4.61범인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평균 1.74범이다.

'실형 전과' 역시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0.45범인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는 0.02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동학대 체포 면에서는 가정내 학대 가해자의 3.7%. 시설내 학대 가해자의 0.6%만이 이전에도 체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율이 매우 낮고 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4-14〉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의 전과특성 비교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총 체포횟수	평균 (표준편차)	5.16 (5.36)	1.89 (1.49)		t=8.042***
	전과 있음	242(62.1)	27(18.2)	267(50.0)	χ 2=
전과유무	전과 없음	148(37.9)	121(81.8)	269(50.0)	82.359***
	계	390(100.0)	148(100.0)	538(100.0)	df=1
총 전과횟수	평균 (표준편차)	4.61 (4.69)	1.74 (1.32)		t=7.283***

-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실형전과	평균 (표준편차)	0.45 (1.23)	0.02 (0.14)		t=6.758***
015-1-115-01-1	있음	15(3.7)	1(0.6)	16(2.9)	$\chi^2 = 3.778$,
아동학대로 인한 체포	없음	390(96.3)	154(99.4)	544(97.1)	df=1
	계	405(100.0)	155(100.0)	560(100.0)	n.s

^{***} P(0.001

다. 가해자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가해자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은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유무와 적응 행동 문제 유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의 27.6%는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시설 내 학대 가해자들은 모두 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의 73.0%는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17.0%만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이 시설내 학대 가해자에 비하여 신체장애 및 정신질 환이나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두 가지 특성의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가지거나 혹은 장애를 가진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며, 가정내 학대의 경우 피해 아동이 원가정 복귀되는 경우 가해 부모와 피해 자녀가 함께 거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만이 아니라 교 육,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표 4−15〉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L 11: 0(,0)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유무	유	78(27.6)	-	78(20.2)	9
	무	205(72.4)	104(100.0)	309(79.8)	χ ² =35.900*
	계	283(100.0)	104(100.0)	387(100.0)	df=1

1	7	1
1	_ /	1

구	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10 -11 - D -11	유	187(73.0)	8(17.0)	195(64.6)	x ² =54.337
적응·행동문제 유무	무	69(27.0)	39(83.0)	108(35.6)	***
11 1	계	256(100.0)	47(100.0)	303(100.0)	df=1

^{*} P(0.05, *** P(0.001

3. 피해자 특성 비교

가.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국민기초생활 수급권 대상 여부로 나누어 비교하여 보았다.

피해자 성별을 보면, 가정내 학대 피해자들은 남아가 52.3%, 여아가 47.7%이며, 시설내 학대 피해자들은 남아가 66.7%, 여아가 33.3%로 두 학대 유형 모두 남자 아동의 피해비율이 여자 아동에 비하여 높다.

피해아동의 연령의 경우 가정내 학대 피해아동은 학령기 아동(만7-12세)이 가장 많아 38.8%, 청소년(만13세 이상)이 34.3%, 미취학 아동(만6세 이하)이 26.9%의 순으 로 많고, 시설내 학대 피해아동은 미취학아동이 73.0%이고, 청소년이 14.2%, 학령기 아동이 12.8%의 순이다. 따라서 가정내 학대는 학령전 아동부터 청소년 까지 골고루 분포하는 반면, 시설내 학대는 학령전 어린 아동에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평균차이 검증을 통해 비교하여 보면 가정내 학대 피해아동의 평균 연령은 8.89세이 며, 시설내 학대 피해아동의 평균연령은 5.21세로 시설내 학대 피해아동의 연령이 훨씬 어리다.

피해아동의 거주지역은 가정내 학대의 경우 읍면 거주자가 10.9%. 시설내 학대의 경우 12.4%로 유사하며, 집단차이검증 결과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대상 여부를 보면, 가정내 학대의 경우 28.6% 의 피해아동이 수급권자이며, 시설내 학대의 경우 7.9%의 아동이 수급권자로 가정내 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의 경제적 수준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도 유의미하다.

〈표 4-16〉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여자	232(47.7)	92(33.3)	324(42.5)	χ ² =	
성별	남자	254(52.3)	184(66.7)	438(57.5)	14.942***	
	계	486(100.0)	276(100.0)	762(100.0)	df=1	
	미취학 아동(6세 이하)	131(26.9)	206(73.0)	337(43.8)		
Halelil	학령기 아동(7세-12세)	189(38.8)	36(12.8)	225(29.3)	χ^2 = 155.017*** df=2	
사건당시 피해자의 연령	청소년(13세 이상)	167(34.3)	40(14.2)	207(26.9)		
	계	487(100.0)	282(100.0)	769(100.0)	ui-Z	
	평균(표준편차)	8.89(4.937)	5.21(4.385)		t=10.697***	
#I=II T O	대도시	424(89.1)	212(87.6)	636(88.6)	χ ² =0.344,	
피해자의 주거지역	읍면지역	52(10.9)	30(12.4)	82(11.4)	df=1	
ナババゴ	계	476(100.0)	242(100.0)	718(100.0)	n.s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대상	수급권	86(28.3)	5(7.9)	91(24.8)	χ ² =	
	비수급권	218(71.7)	58(92.1)	276(75.2)	11.593**	
-018290	계	304(100.0)	63(100.0)	367(100.0)	df=1	

^{**} P(0.01. *** P(0.001

나.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 간의 관계 비교

피해자 수와 피해자들간의 관계 면에서도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가정내 학대의 피해자 수는 평균 1.30명이고, 시설내 학대의 피해아동 수는 2.40명 으로 시설내 학대가 피해아동 수가 많다.

피해자들간의 관계를 보면 가정내 학대는 96.8%가 형제자매이고, 시설내 학대는 98.1%가 같은 시설 이용자 혹은 친구 관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표 4-17〉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간의 관계 비교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피해자의 수	평균(표준편차)	1.30(0.616)	2.40(2.884)		t=4.691***
	형제자매	92(96.8)	1(1.9)	93(62.4)	x 2=
피해자들간의 과계	같은 시설 이용자 및 친구	3(3.2)	53(98.1)	56(37.6)	132.431***
관계	계	95(100.0)	54(100.0)	149(100.0)	df=1

^{***} P(0.001

다. 가해자-피해자 관계 특성 비교

가정내학대 가해자들은 부모가 대부분이고(92.6%), 대리양육자(5.3%), 친인척 (1.6%)의 순이다.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는 교육/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자/학원강 사가 대부분이고(86.4%) 나머지는 복지시설종사자이다(13.6%).

〈표 4-18〉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가해자 동거여부 비교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교육/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자/학원강사	-	247(86.4)	247(32.0)	
복지시설종사자	_	39(13.6)	39(5.0)	
부모	451(92.6)	_	451(58.3)	x. 2=
대리양육자	26(5.3)	_	26(3.4)	773.000***
친조부모/형제·자매/친인척	8(1.6)	-	8(1.0)	df=5
기타 아는사람	2(0.4)	-	2(0.3)	
계	487(100.0)	286(100.0)	773(100.0)	

^{***}P(0.001

가정내 학대의 경우 무려 93.4%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동거 비율은 6.6%에 불과하다. 반면 시설내 학대의 경우에는 93.5%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동거 비율은 6.5%에 불과하다.

이같은 차이는 집단차이검증 결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19〉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가해자 동거여부 비교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동거	454(93.4)	17(6.5)	471(62.9)
비동거	32(6.6)	246(93.5)	278(37.1)
계	486(100.0)	263(100.0)	749(100.0)

 $[\]chi^2$ =552.796, df=1, P \langle 0.001

라. 피해자의 가족 특성

가정내 학대의 피해아동 가족 유형은 '친부모가족 외 가족'이 64.2%. '친부모 가족'

이 32.6%, '대리양육 가족'이 3.1%이다. 반면 시설내 학대 피해아동 가족유형은 '친부 모 가족'이 72.2%로 가장 많고, '대리양육가족'이 19.8%이며, '친부모가족 외 가족'이 8.0%로 가장 적다.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따라서 시설내 학대는 어린이 집 학대의 경우 피해아동 가족은 친부모 가족이 많은 반면, 가정내 학대의 경우 친부모 가족에서도 발생하지만(약1/3), 상대적으로 친부모 가족 외 가족형태가 많다(약2/3).

또한 피해아동의 동거가족수는 가정내 학대의 경우 평균 3.73명, 시설내 학대의 경우 평균 3.75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20〉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 가족유형 및 동거가족수 비교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가족유형	친부모가족	157(32.6)	117(72.2)	274(42.6)	
	친부모가족 외	308(64.2)	13(8.0)	322(50.1)	χ ² =
	대리양육가족	15(3.1)	32(19.8)	47(7.3)	166.909*** df=2
	계	481(100.0)	162(100.0)	643(100.0)	ui-z
피해아동의 동거가족수	평균 (표준편차)	3.73 (1.259)	3.75 (1.577)		t=.168

^{***} P(0.001

가정내 학대의 피해아동 가족의 경우 지리적 혹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판단되 는 비율은 20.6%이며, 시설내 가족은 6.8%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가족의 지리적 고립이나 사회적 고립은 가정내 학대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 시설내 학대는 고립여부와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집단차이검증 결과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표 4-21〉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의 사회적·지리적 고립여부 비교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예	70(20.6)	9(6.8)	79(16.7)
아니요	270(79.4)	124(93.2)	394(83.3)
계	340(100.0)	133(100.0)	473(100.0)

χ²=13.127, df=1, P(0.001

마. 피해자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역시 신체장애 및 정신질 환 유무와 적응 행동 문제 유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정내 학대 피해자들의 16.5%,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의 17.2%는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의 36.8%,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 의 38.0%는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다. 집단차이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가정내 혹은 시설내 학대 여부에 따라 피해자들의 장애 및 정신·심리 적 특성은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서 가해자들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쟁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첫째,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의 27.6%가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73.0%가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점과 비교할 때 가정내 학대 피해아동은 16.5%가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36.8%가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해자들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가해자들의 경우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이 시설내 학대 가해자에 비하여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이나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진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았던 반면, 피해아동은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 모두 장애 및 정신·심리적 문제를 가진 비율이 유사하였다. 결국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가해자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의 문제임을 유추할 수 있다.

〈표 4-22〉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여부	유	47(16.5)	23(17.2)	70(16.7)	χ ² =.030
	무	238(83.5)	111(82.8)	349(83.3)	df=1
	계	285(100.0)	134(100.0)	419(100.0)	n.s
적응·행동문제 여부	유	121(36.8)	62(38.0)	183(37.2)	χ ² =.074
	무	208(63.2)	101(62.0)	309(62.8)	df=1
-11	계	329(100.0)	163(100.0)	492(100.0)	n.s

4. 범죄행위 특성 비교

가. 학대 장소 및 기간 비교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는 학대 장소가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내 학대의 학대 장소는 많은 경우가 '공동주거지/아동 혹은 가해자 주거지'이고 (86.7%). 그 외에는 '실외 공간'(7.5%). '기타 공간'(4.4%)의 순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설내 학대의 경우 어린이집 등 학대가 대부분이므로 '유치원 어린이집/학교/학원/ 복지시설'이 99.6%로 가장 많다.

〈표 4-23〉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학대장소 비교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공동거주지/아동 혹은 학대가해자 주거지	358(86.7)	-	358(55.9)
유치원·어린이집/학교/학원/복지시설	6(1.5)	227(99.6)	233(36.3)
기타	18(4.4)	_	18(2.8)
실외공간	31(7.5)	1(0.4)	32(5.0)
Ä	413(100.0)	228(100.0)	641(100.0)

x ²=611.266. df=3. P(0.001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는 학대 기간 면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내 학대의 학대기간은 평균 512.59일인 반면, 시설내 학대의 경우 평균 79.52일로 가정내 학대가 훨씬 학대기간이 길다(약 6.4배).

이러한 가정내 학대의 '학대 장기화'는 보다 심각한 학대피해가 발생하게 만들고. 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심각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따라서 가정내 학대의 경우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표 4-24〉).

가정내 학대의 학대 빈도는 '일회성'이 45.5%, '거의 매일'이 19.1%, '2-3일에 한번' 이 9.0%, '일주일에 한번'이 7.3%, '1개월에 한번'이 5.7%, '2주일에 한번'이 5.0%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다. 시설내 학대는 '일회성'이 76.7%로 가장 많고, '거의 매일'이 15.1%로 그 다음 순위이다(〈표 4-25〉).

집단차이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첫째, 시설내 학대는 가정내 학대

에 비하여 일회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각각 76.7%와 45.5%). 둘째,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는 가정내 학대가 19.1%, 시설내 학대가 15.1%로 큰 차이는 없으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설내 학대는 지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가정내 학대에 비하여 아동피해는 덜 심각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4-24〉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학대피해기간 비교

구분	가정내	시설내	t
평균(일)	512.59	79.52	9 826***
(표준편차)	(880.477)	(204.398)	9.020

^{***} P(0.001

〈표 4-25〉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학대빈도 비교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거의 매일	81(19.1)	37(15.1)	118(17.6)
2~3일에 한 번	38(9.0)	6(2.4)	44(6.6)
일주일에 한 번	31(7.3)	3(1.2)	34(5.1)
2주일에 한 번	21(5.0)	1(0.4)	22(3.3)
1개월에 한 번	24(5.7)	5(2.0)	29(4.3)
2~3개월에 한 번	13(3.1)	5(2.0)	18(2.7)
6개월에 한 번	13(3.1)	-	13(1.9)
1년에 한 번	10(2.4)	-	10(1.5)
일회성	193(45.5)	188(76.7)	381(57.0)
계	424(100.0)	245(100.0)	669(100.0)

 $[\]chi^2$ =77.655, df=8, P(0.001

나. 공범 특성 비교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공범특성은 공범여부, 공범수, 공범자관계, 가해자 역할의 네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보았는데, 네 변인 모두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가정내 학대보다는(19.6%) 시설내 학대가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고(39.4%), 그 결과 공범 수 역시 가정내 학대에 비하여(평균 1.27명) 시설내 학대가 많다(1.52명).

공범자간의 관계를 보면 가정내 학대는 대부분 부부/동거인/애인인 반면(74.1%). 시설내 학대는 대부분 동료/친구/선후배였다(97.2%).

가해자의 역할은 가정내 학대의 경우 주도적 역할이 77.9%이고 보조적 역할이 18.2%인 반면, 시설내 학대는 주도적 역할이 64.1%로 가장 많기는 하나 단순가담 역시 28.1%로 많아서, 가정내 학대 가해자가 시설내 학대가해자에 비하여 범행당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6〉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공범 특성 비교

단위: 명(%)

	구분		시설내	계	검증치
	공범 없음	349(80.4)	114(60.6)	436(74.4)	x 2=
공범여부	공범 있음	85(19.6)	74(39.4)	159(25.6)	26.962***
	계	434(100.0)	188(100.0)	622(100.0)	df=1,
공범수	평균(표준편차)	1.27(0.49)	1.52(0.63)		t=4.568***
	부부/동거인/애인	60(74.1)	2(2.8)	62(40.5)	χ ² = 116.414***
	가족 및 친척	8(9.9)	_	8(5.2)	
공범자관계	동료/친구/선후배	8(9.9)	70(97.2)	78(51.0)	
	모르는 사이	5(6.2)	_	5(3.3)	df=3
	계	81(100.0)	72(100.0)	153(100.0)	
	주도적역할	60(77.9)	41(64.1)	101(71.6)	_
가해자의 역할	보조적역할	14(18.2)	5(7.8)	19(13.5)	χ ² =
	단순가담	3(3.9)	18(28.1)	21(14.9)	17.502*** df=2
	계	77(100.0)	64(100.0)	141(100.0)	G1 Z

^{***} P(0.001

다. 학대 유형 비교

학대 유형은 복합학대 여부와 구체적인 학대유형 차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복합학대 여부를 보면 가정내 학대는 54.5%가 복합학대이고, 45.5%는 단일 학대인 반면, 시설내 학대는 41.5%가 복합학대이고, 58.5%는 단일학대이다. 즉 가정 내 학대는 시설내 학대에 비하여 2개 유형 이상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이 높으며,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표 4-27〉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학대유형 비교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단일학대	222(45.6)	165(58.5)	387(50.3)	χ ² =
복합학대 여부	복합학대	265(54.4)	117(41.5)	382(49.7)	11.935**
	계	487(100.0)	282(100.0)	769(100.0)	df=1
	신체적 학대	142(29.2)	133(47.2)	275(35.8)	
	정서적 학대	14(2.9)	31(11.0)	45(5.9)	_
하대이허	방임	44(9.0)	1(0.4)	45(5.9)	χ ² =
학대유형	유기	22(4.5)	-	22(2.9)	78.043*** df=4
	복합학대	265(54.4)	117(41.5)	382(49.7)	ui 4
	계	487(100.0)	282(100.0)	769(100.0)	

^{**} P(0.01. *** P(0.001

구체적인 학대 유형 면에서는 가정내 학대는 복합학대가 54.4%로 가장 많고 신체적 학대 29.2%, 방임 9.0%, 유기 4.5%, 정서적 학대 2.9%의 순이며, 시설내 학대는 신체 적 학대가 가장 많아 47.2%이고, 복합학대 41.5%, 정서적 학대 11.0%, 방임 0.4%의 순이며 유기는 없다.

몇 가지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첫째, 가정내 학대는 여러 개의 학대유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학대가 많은 반면, 시설내 학대는 오히려 신체적 학대만 발생하 는 비율이 높다. 둘째, 시설내 학대는 가정내 학대에 비하여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훨씬 높다. 셋째, 가정내 학대는 시설내 학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방임과 유기 발생비 율이 높다.

라. 학대 동기 비교

가정내 학대 가해자의 학대동기는 '양육태도 혹은 훈육문제'(41.1%), '가해자 개인 특성'(26.0%),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12.7%), '부부문제'(10.7%), '경제적 문제' (7.1%)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다. 시설내 학대의 학대동기는 '양육태도 혹은 훈육문 제'(89.9%), '가해자 개인 특성'(7.6%),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1.6%)의 순이다.

학대동기는 중복응답으로 측정되어 집단차이검증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빈도분포 상의 특성을 볼 때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 모두 '양육태도 혹은 훈육문제'가 가장 주된 동기이기는 하나, 비율 면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가정내 학대는 '양육태도 혹은 훈육문제', '가해자 개인 특성',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학대동기가 나타난 반면, 시설내 학대는 대부분의 사례가 '양육태도 혹은 훈육문제'가 동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8〉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학대동기 비교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양육태도 혹은 훈육문제	태도 혹은 훈육문제 324(41.1)		599(54.8)
가해자 개인특성	가해자 개인특성 205(26.0)		228(20.8)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 100(12.7)		5(1.6)	105(9.6)
부부문제	84(10.7)	1(0.3)	85(7.8)
경제적 문제	56(7.1)	1(0.3)	57(5.2)
기타	19(2.4)	1(0.3)	20(1.8)
계	788(100.0)	306(100.0)	1,094(100.0)

^{*} 중복응답

가해자의 범행당시 음주 및 약물 복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음주여부 면에서만 뚜렷 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가정내 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40.0%가 범행당시 음주 상태였던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는 2.6%만이 음주상태였다. 즉 가정내 학대의 경우 가해자 음주 혹은 알코올 남용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다.

약물 복용 면에서는 가정내 학대 가해자의 1.1%만이 범행당시 약물 복용 상태였고. 시설내 학대 가해자의 경우에는 한 명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약물복용 비율이 매우 낮아, 약물 문제는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9〉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비교

구분		가정내	시설	계	검증치
=1-11=1-01	비음주	273(60.0)	262(97.4)	535(73.9)	v ² =
가해자의 음주여부	음주	182(40.0)	7(2.6)	189(26.1)	122.568***
	계	455(100.0)	269(100.0)	724(100.0)	df=1

Ŧ	분	가정내	시설	계	검증치
가해자의 약물여부	미복용	460(98.9)	275(100.0)	735(99.3)	x ² =2.977
	복용	5(1.1)	_	5(0.7)	df=1
	계	465(100.0)	275(100.0)	740(100.0)	ns

^{***} P(0.001

마. 학대 결과

가정내 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의 79.5%가 후유증이 있고, 20.5%는 별다른 후유증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내 학대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65.0%가 후유증 이 나타났고, 35.0%는 후유증이 없었다. 따라서 시설내 학대보다는 가정내 학대의 피해아동이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 미하다. 다만 일회성에 그치는 시설내 학대의 경우에도 무려 65.0%의 아동이 후유증 을 경험했다는 점은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결코 가볍 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겠다.

〈표 4-30〉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학대피해아동 후유증 비교

단위: 명(%)

		가정내	시설	계	검증치
후유증 유무	후유증 있음	349(79.5)	139(65.0)	488(74.7)	x 2=
	후유증 없음	90(20.5)	75(35.0)	165(25.3)	16.119***
	계	439(100.0)	214(100.0)	653(100.0)	df=1
	신체적 결과	230(65.9)	79(56.8)	309(63.3)	
	정서적 결과	4(1.1)	4(2.9)	8(1.6)	χ ² =4.679
후유증 유형	사회적 결과	22(6.3)	10(7.2)	32(6.6)	df=3
	복합 후유증	93(26.6)	46(33.1)	139(28.5)	ns
	계	349(100.0)	139(100.0)	488(100.0)	

^{***} P(0.001

후유증의 유형 면에서는 가정내 학대는 '신체적 후유증'(65.9%), '복합후유 증'(26.6%), '사회적 후유증'(6.3%), '정서적 후유증'(1.1%)의 순이며, 시설내 학대 역 시 '신체적 후유증'(56.8%), '복합 후유증'(33.1%), '사회적 후유증'(7.2%), '정서적 후 유증'(2,9%)의 순이다. 집단차이검증 결과 후유증의 유형 면에서는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간의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5. 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 비교

아동학대 발견 이후 수사 및 처우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문제를 살펴본 결과 가정내 학대인지 시설내 학대인지에 따라 서비 스 제공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가해자 대상 서비스 제공 면에서 가정내 학대 가해자의 절반 정도인 51.4%가 서비스를 받은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는 27.5%만이 서비스를 받았다. 피해자 대상 서비스 제공 면에서도 가정내 학대의 경우 78.5%의 피해자가 서비스를 받은 반면. 시설내 학대의 경우 58.0%의 피해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가정내 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피해자보다 상담 등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해자 및 피해자 대상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시설내 학대 가해자 보다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 훨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만큼이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집단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가정내 학대 가해자의 절반 정도만이 서비스 수혜자이고 나머지 절반은 교육이나 상담과 무관한 처우를 받는다는 사실은 재범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가정내 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의 79.5%가 후유증이 있고. 서비스 수혜비율은 78.5%이며, 시설내 학대의 경우 65.0%의 아동이 후유증을 경험하고, 서비스 제공 비율은 58.0%로 두 집단 모두 후유증비율에 비하여 서비스 수혜율이 다소 못미치는 수준이다. 실제로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후유증 유무와 관계없이 제공되어야 하 는 것이므로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서비스가 현재 수준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표 4-31〉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서비스 받음	163(51.4)	36(27.5)	317(44.4)
서비스 받지 않음	154(48.6)	95(72.5)	300(55.6)
계	317(100.0)	249(100.0)	448(100.0)

x ²=21.516. df=1. P(0.001

〈표 4-32〉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의 피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시설내	계
서비스 받음	329(78.5)	134(58.0)	463(71.2)
서비스 받지 않음	90(21.5)	97(42.0)	187(28.8)
계	419(100.0)	231(100.0)	650(100.0)

x ²=30.572. df=1. P(0.001

제2절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

1. 처분 특성 비교

가. 죄명 특성 비교

학령전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위반이 75.7%, '아동학대 특례법 제6조' 17.8%, '그외 아동복지법 위반' 3.1%의 순이며, 학령기 아동학대는 그 비율이 70.1%, 21.4%, 5.5%이고, 청소년 학대는 74.1%, 16.3%, 7.2%이다.

따라서 세 학대 유형 가해자의 죄명은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이용행위', '상습', '그외 아동복지법' 순으로 많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구체적인 비율 면에서,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이용행위' 는 학령전 아동학대와 청소년 학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습'은 학령기 아동학 대가, 기타 아동복지법 위반은 청소년 학대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4-33〉 학령전 아동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죄명 비교

단위: 명(%)

	구분		학령기 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제71조 제1항 제1호(아동매매)		3 (1.5)	-	8 (1.2)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4 (1.4)	-	2 (1.2)	6 (0.9)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이용행위)	221 (75.7)	141 (70.1)	123 (74.1)	485 (73.6)	
	제71조 제1항 제3호(양육알선금품취득, 아동금품유용)	1 (0.3)	3 (1.5)	-	4 (0.6)	χ ² =
	그 외 아동복지법 위반	9 (3.1)	11 (5.5)	12 (7.2)	32 (4.9)	21.196* df=12
ENIH	제6조(상습)	52 (17.8)	43 (21.4)	27 (16.3)	122 (18.5)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_	_	2 (1.2)	2 (0.3)	
	계	292 (100.0)	201 (100.0)	166 (100.0)	659 (100.0)	

^{*}P(0.05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연령에 따라 가해자 죄명의 경합여부를 살펴보면,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경합이 아닌 비율'은 보면 학령전 아동 대상 아동학대의 경우 40.1%, 청소년 대상 아동학대가 32.5%, 학령기 아동 대상 아동학대가 31.3%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가 이루어진 경우 경합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동종경합' 비율은 피해자가 가장 어린 학령전 아동학대가 가장 높고(44.5%). '이종 경합'은 피해자가 가장 나이가 많은 청소년 대상 학대가 가장 높다(32.5%). '동종+이 종 경합'비율은 학령기 아동 대상 학대가 가장 많았다(18.4%)

〈표 4-34〉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경합여부 비교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117(40.1)	63(31.3)	54(32.5)	234(35.5)
이종경합	19(6.5)	37(18.4)	54(32.5)	244(37.0)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동종경합	130(44.5)	60(29.9)	31(18.7)	83(12.6)
동종+이종	26(8.9)	41(20.4)	27(16.3)	98(14.9)
계	292(100.0)	201(100.0)	166(100.0)	659(100.0)

 χ^2 = 39.734, df = 6, P(0.001

나. 검거 특성 비교

검거경위를 살펴보면, 학령전 아동 대상 학대는 비신고의무자 신고(67.7%)와 신고 의자 신고(23.4%) 순으로 많고, 학령기 아동 대상 학대 역시 비신고의무자 신고 (56.5%)와 신고의무자 신고(26.5%)가 많은 반면, 청소년 대상 학대는 피해자 신고 (35.5%)와 비신고의무자 신고(33.7%)가 많다.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부모 등의 비신고의무자 신고에 의해 가해자가 검거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표 4-35〉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검거경위 비교

단위: 명(%)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신고의무자 신고	68(23.4)	53(26.5)	40(24.1)	161(24.5)
비신고의무자 신고	197(67.7)	113(56.5)	56(33.7)	366(55.7)
피해자 신고	6(2.1)	24(12.0)	59(35.5)	89(13.5)
기타	20(6.9)	10(5.0)	11(6.6)	41(6.2)
계	291(100.0)	200(100.0)	166(100.0)	657(100.0)

χ²=111.101, df=6, P(0.001

이번에는 신고에 의해 가해자가 검거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최초신고자를 다시 분석 하여 보았다. 피해아동의 연령과 무관하게 모두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보다는 부모 등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가 훨씬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그 비율은 학령전 아동학대의 경우 74.2%, 학령기 아동학대의 경우 71.2%, 청소년 학대는 73.7%에 이른다.

다만 최초신고자를 보다 상세히 분류하여 비교하여 집단차이검증을 하였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령전 아동은 '부모나 위탁부모'가 신고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60.5%), 학령기 아동학대는 '부모와 위탁부모'의 신고비율이 40.0%로 학령 전 아동학대보다 낮고. '아동보호전문기관'(14.4%)이나 '교원/보육교직원/유치원종 사자'(13.1%), '모르는 사람'(11.2%), '이웃'(10.0%)의 신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청소년 학대의 경우에는 '부모 및 위탁부모' 신고가 38.3%로 가장 많으나, '의료 인 및 소방구급대원'이 22.1%로 높은 편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19.1%)이나 '교원/ 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자'(18.1%)이 다음 순위이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5.3%)과 '이웃'(5.3%)의 신고비율은 높지 않다.

따라서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 및 위탁부모' 신고비율이 높은 반면,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교원/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자'에 의한 신고 비중 이 늘어나며, 특히 학령기 아동은 '이웃'과 '모르는 사람'의 비중이, 청소년 학대는 '의료인 및 소방구급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성을 보인다.

〈표 4-36〉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최초신고자 비교

	구분	학령전 아동	학령기 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신고의무자	68 (25.8)	53 (28.8)	40 (26.3)	161 (26.8)	9
최초 신고자	비신고의무자	196 (74.2)	131 (71.2)	112 (73.7)	439 (73.2)	χ^2 =.540 df=2
	계	264 (100.0)	184 (100.0)	152 (100.0)	600 (100.0)	n.s
	아동보호전문기관	22 (8.4)	23 (14.4)	18 (19.1)	63 (12.2)	
	교원/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자	20 (7.7)	21 (13.1)	17 (18.1)	58 (11.3)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13 (5.0)	4 (2.5)	2 (22.1)	19 (3.7)	
최초 신고자	아동복지/장애인복지/사회복지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4 (1.5)	5 (3.1)	3 (32)	12 (2.3)	χ ² =62.793
선고시 (상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9 (3.4)	_	_	9 (1.7)	*** df=16,
_	부/모/위탁부모	158 (60.5)	64 (40.0)	36 (38.3)	258 (50.1)	
	조부모/친인척/형제자매	9 (3.4)	9 (5.6)	8 (8.5)	26 (5.0)	
	이웃	11 (4.2)	16 (10.0)	5 (5.3)	32 (6.2)	

구분	학령전 아동	학령기 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모르는 사람	15 (5.7)	18 (11.2)	5 (5.3)	38 (7.4)	
 Й	261 (100.0)	160 (100.0)	94 (100.0)	515 (100.0)	

^{***} P(0.001

다. 검찰 및 법원 처분 특성 비교

피해아동의 연령에 따라 가해자 구속 불구속 여부가 상이하지는 않다. 세 학대 유형 모두 불구속 비율이 구속 비율보다 훨씬 높으며, 구속 비율은 학령전 아동학대 11.6%, 학령기 아동학대 13.9%, 청소년 학대 10.1%로, 10% 초반 대에 머물고 있다.

〈표 4-37〉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구속여부 비교

단위: 명(%)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구속	33(11.6)	28(13.9)	16(10.1)	77(11.9)
불구속	252(88.4)	173(86.1)	143(89.9)	568(88.1)
계	285(100.0)	201(100.0)	159(100.0)	645(100.0)

 $[\]chi^2$ = 1.326, df = 2, n.s

검찰처분 결과는 피해아동의 연령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전 아동 학대는 구공판(30.8%), 기소유예(26.4%), 불기소(혐의없음/공소권없 음/죄가안됨)(19.2%), 구약식(18.2%)의 순이고, 학령기 아동 학대는 구공판(36.8%), 기소유예(30.3%), 불기소(11.9%), 구약식(9.0%)의 순으로 비율이 높으나, 청소년 학대 는 기소유예(37.3%), 구공판(28.9%), 불기소(14.5%), 구약식(7.8%)의 순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검찰 처분은 대체로 구공판과 기소유예가 많아 두 비율의 합이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학령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의 경우 구공판이 가장 많은 반면, 청소년 학대는 구공판보다 기소유예의 비율이 더 높다. 또한 학령전 아동의 경우 구약식 처분이 많은데, 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의 경우 가해자가 벌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4-38〉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검찰처분결과 비교

단위: 명(%)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구공판	90(30.8)	74(36.8)	48(28.9)	212(32.2)
구약식	53(18.2)	18(9.0)	13(7.8)	84(12.7)
기소유예	77(26.4)	61(30.3)	62(37.3)	200(30.3)
불기소 (혐의 없음 / 공소권 없음/죄가 안됨)	56(19.2)	24(11.9)	24(14.5)	104(15.8)
타관송치	6(2.1)	14(7.0)	11(6.6)	31(4.7)
기소중지/기타	10(3.4)	10(5.0)	8(4.8)	28(4.2)
계	292(100.0)	201(100.0)	166(100.0)	659(100.0)

 $[\]chi^2$ =31.254, df=10, P \langle 0.01

아래 표는 구약식과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건만을 대상으로 구형량의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피해아동 연령에 따라 구형 유형을 제외한 구형량에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의 구형유형을 보면 구약식 혹은 구공판 처분을 내린 경우, 학령기 아동대상 학대 가해자는 벌금 처분이 가장 많은 반면(53.0%),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유기징역이 가장 많고(46.9%), 학령기 아동 대상 가해자는 유기징역과 집행유예 처분(각각 39.2% 와 36.7%) 비율이 높다.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그러나 유기징역 형기, 집행유예 기간, 벌금 액수 면에서는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동일한 처분유형을 구형한 경우 구형량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4-39〉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구형량 비교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유기징역	41(31.1)	31(39.2)	23(46.9)	95(36.5)	
구형	집행유예/보호관찰/수강명령	21(15.9)	29(36.7)	12(24.5)	62(23.8)	x ² =
	벌금	70(53.0)	19(24.1)	14(28.6)	103(39.6)	24.005*** df=4
	계	132(100.0)	79(100.0)	49(100.0)	260(100.0)	u1-4
	1-12개월	5(31.2)	7(53.8)	3(27.3)	15(37.5)	χ ² =5.28
유기징역 형기	13-24개월	4(25.0)	3(23.1)	4(36.4)	11(27.5)	2
	25-36개월	2(12.5)	1(7.7)	3(27.3)	6(15.0)	df=6
	37개월 이상	5(31.2)	2(15.4)	1(9.1)	8(20.0)	n.s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계	16(100.0)	13(100.0)	11(100.0)	40(100.0)	
	평균 (표준편차)	30.63 (21.83)	22.00 (16.43)	30.73 (31.23)	27.85 (23.10)	F=.605 n.s
	1-12개월	4(18.2)	1(6.7)	-	5(10.2)	
	13-24개월	15(68.2)	11(73.3)	11(91.7)	37(75.5)	χ ² =8.68
집행유예	25-36개월	3(13.6)	3(20.0)	-	6(12.2)	6
기간	48개월	-	-	1(8.3)	1(2.0)	df=6 n.s
	계	22(100.0)	15(100.0)	12(100.0)	49(100.0)	
	평균 (표준편차)	3.07 (8.38)	3.23 (8.80)	2.97 (8.61)	3.09 (8.55)	F=.026 n.s
	30-50만원	5(11.6)	1(14.3)	-	6(10.3)	
	51-100만원	5(11.6)	_	2(25.0)	7(12.1)	
	101-200만원	11(25.6)	1(14.3)	3(37.5)	15(25.9)	χ^{2} =8.73
	201-300만원	17(39.5)	4(57.1)	2(25.0)	23(39.7)	χ =8.73 1
벌금총액	400만원	1(2.3)	1(14.3)	-	2(3.4)	df=12
수	500만원	3(7.0)	-	1(12.5)	4(6.9)	n.s
	1000만원	1(2.3)	-	-	1(1.7)	
	계	43(100.0)	7(100.0)	8(100.0)	58(100.0)	
	평균 (표준편차)	249.19 (169.33)	261.43 (117.25)	237.50 (130.25)	249.05 (157.15)	F=.042 n.s

^{***} P(0.001

최종심 유형을 기준으로 법원 처분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피해자의 연령에 상관없 이 1심이 가장 많고, 2심, 3심의 순으로 비율이 낮아진다.

학령전 아동 학대가 학령기 아동학대나 청소년 학대에 비하여 1심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4-40〉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최종심유형 비교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1심	115(73.2)	66(66.0)	49(67.1)	230(69.7)
2심	31(19.7)	28(28.0)	20(27.4)	79(23.9)
3심	11(7.0)	6(6.0)	4(5.5)	21(6.4)
계	157(100.0)	100(100.0)	73(100.0)	330(100.0)

 $[\]chi$ ²=2.969, df=4, n.s

변호인 유무 및 유형 역시 피해자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유형의 학대 모두 변호인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아 대체 60% 수준에 이르지만(학 령전 아동학대 58.6%, 학령기 아동 학대 61.2%, 청소년 학대, 63.2%, 변호인이 있는 경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는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였는지 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학령기 아동학대와 청소년 학대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율이 더 높은데 반하 여(각각 27.3%와 29.3%), 학령전 아동 학대 가해자들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율이 더 높다(21.5%). 이같은 차이는 학령전 아동 학대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내 학대가 많아 가해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표 4-41〉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변호인유무 비교

단위: 명(%)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변호인 없음	153(58.6)	112(61.2)	84(63.2)	349(60.5)
국선 변호인	52(19.9)	50(27.3)	39(29.3)	141(24.4)
사선 변호인	56(21.5)	21(11.5)	10(7.5)	87(15.1)
계	261(100.0)	183(100.0)	133(100.0)	577(100.0)

 χ^2 = 18.078, df = 4, P(0.01

라.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 비교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의 연령과 상관없이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비율을 보면, 학령전 아동 학대의 가해자들은 22.9%,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의 경우 16.2%, 청소년 학대 가해자의 20.1%로 유사한 수준이다.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가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나 청소년 학대 가해자 에 비하여 일부 시인 비율보다는 전적으로 시인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나, 이같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아동들의 가해자 처벌에 대한 태도 면에서는 피해아동의 연령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피해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처벌을 원치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구체적인 비율을

보면 학령전 피해아동의 68.7%가 처벌을 원한 반면, 학령기 피해아동은 그 비율이 49.3%, 청소년 피해자는 43.2%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처벌을 원치 않는 비율은 학령전 아동 25.3%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42.0%, 46.8%로 점차 증가한다. 둘째, 특히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는 비율보다(43.2%) 처벌을 원치 않는 비율이 오히려 높으며(46.8%), 양가감정을 느끼는 피해자 역시 10.1%로 다른 연령대 피해자에 비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태도 비교

단위: 명(%)

	구분	학령전 아동	학령기 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전적으로 시인	101(35.6)	88(44.7)	54(34.0)	243(38.0)	$\chi^2 =$
가해자의	일부시인	118(41.5)	77(39.1)	73(45.9)	268(41.9)	6.974
범행 시인 정도	부인	65(22.9)	32(16.2)	32(20.1)	129(20.2)	df=4
	계	284(100.0)	197(100.0)	159(100.0)	640(100.0)	n.s
	처벌을 원함	136(68.7)	74(49.3)	60(43.2)	270(55.4)	$\chi^2 =$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음	50(25.3)	63(42.0)	65(46.8)	178(36.6)	24.911
태도	양가감정을 보임	12(6.1)	13(8.7)	14(10.1)	39(8.0)	***
	계	198(100.0)	150(100.0)	139(100.0)	487(100.0)	df=4

^{***} P(0.001

피해아동 연령과 고소취하 여부나 합의 여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고소취하 여부를 보면, 고소를 취하한 비율은 학령전 아동은 21.1%. 학령기 아동학대는 15.0%, 청소년 학대는 22.7%로 학령기 아동의 경우 다른 두 학대에 비하 여 다소 낮기는 하지만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합의 여부를 보면, 합의를 한 비율은 학령전 아동학대의 경우 28.4%, 학령기 아동학 대는 25.6%, 청소년 학대는 36.8%로 청소년 학대가 가장 높고 학령기 아동학대가 가장 높기는 하나 이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470(100.0)

단위: 명(%) 구분 학령전 아동 학령기 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고소 취하안함 176(75.9) 119(85.0) 109(77.3) 404(80.2) $x^2 = 2.999$ 고소 취하 고소 취하함 47(21.1) 21(15.0) 32(22.7) 100(19.8 n.s 여부 df=2 계 140(100.0) 141(100.0) 504(100.0) 223(100.0) 합의안함 149(71.6) 96(74.4) 84(63.2) 329(70.0) $x^2 = 4.429$ 합의 합의함 59(28.4) 33(25.6) 49(36.8) 141(30.0) n.s 여부 df=2

129(100.0)

133(100.0)

〈표 4-43〉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고소취하 및 합의 여부 비교

2. 가해자 특성 비교

계

가.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208(100.0)

이번에는 피해자 연령에 따라 가해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집단차이검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해자 국적과 종교 이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업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가해자 성별 면에서는 피해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여성 가해자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학령전 아동학대의 72.9%, 학령기 아동학대의 47.3%, 청소년 학대의 31.3%가 여자가 가해자이다. 특히 학령기 아동학대와 청소년 학대는 남자 가해자 비윸이 여자보다 높은데 비해. 학령전 아동학대는 여자 가해자 비윸이 더 높다. 이는 학령전 아동학대는 어린이집 등 학대 비율이 높고, 보육교사의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해자 연령을 보면, 피해자 연령이 많을수록 가해자 연령 역시 높아진다.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5.81세.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는 40.49세.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44.42세로.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학령전 학대 가해자보다 약8.6세나 나이가 더 많다. 비율 면에서는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는 30대가 가장 많고(34.9%).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와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40대 비율이 가장 높다(각각 41.5% 와 55.8%). 이같은 현상은 가해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나이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학령전 아동학대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연령이 높지 않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가해자 국적 면에서는 세 유형의 학대 모두 가해자의 국외 국적자 비율은 1% 이하로 큰 차이가 없다.

가해자의 교육수준 역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학령전 아동 학대와 나머지 두 학대가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대졸이 가장 많은 반면 (46.1%),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와 청소년 학대 가해자들은 고졸자 비율이 가장 높다 (각각 48.8%와 42.9%).

혼인상태를 보면, 세 유형의 학대 가해자들이 모두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는 결혼(초혼)이 50.9%, 미혼이 19.5%, 별거/이혼 /사별이 15.4%이며,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는 결혼(초혼(35.6%), 별거/이혼/사별 29.8%. 동거(14.4%). 재혼(13.3%)의 순이고.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별거/이혼/사별 (39.2%), 결혼(초혼)(32.3%), 재혼(12.0%), 동거(10.8%)이다. 다시 말해서 학령전 아동 학대 가해자들은 많은 수가 초혼이거나, 미혼인 반면, 학령기 아동학대와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초혼과 별거/이혼/사별이 많고, 동거나 재혼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초혼 비율보다 별거/이혼/사별 비율이 더 높다.

직업 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미취업 비율 면에서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의 미취업 비율이(16.2%) 다른 두 학대 유형 가해자보다 낮아(각각 22.6%). 또한 취업한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교사 및 교원이 많은 영향으로 전문관리직 비율이 높은데 비해(55.3%),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는 전문관리직 (24.1%)이 많고, 청소년 학대 가해자들은 단순노무직(20.1%)이 가장 많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종교 유무 면에서는 세 집단 모두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많았고. 비율 면에서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44〉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단위: 명(%)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21-11-1	남자	79(27.1)	106(52.7)	114(68.7)	299(45.4)	x 2=
가해자 성별	여자	213(72.9)	95(47.3)	52(31.3)	360(54.6)	80.293***
02	계	292(100.0)	201(100.0)	166(100.0)	659(100.0)	df=1
 가해자	20세 미만	2(0.7)	-	2(1.2)	4(0.6)	x 2=
연령	20대	84(29.1)	15(7.5)	6(3.7)	105(16.1)	107.339***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30대	101(34.9)	76(38.0)	30(18.4)	207(31.7)	
	40대	74(25.6)	83(41.5)	91(55.8)	248(38.0)	
	50대	25(8.7)	22(11.0)	29(17.8)	76(11.7)	Jr. 10
	60대	2(0.7)	3(1.5)	2(1.2)	7(1.1)	df=12
	70대	1(0.3)	1(0.5)	3(1.8)	5(0.8)	
	계	289(100.0)	200(100.0)	163(100.0)	652(100.0)	
	평균 (표준편차)	35.81 (10.01)	40.49 (8.44)	44.42 (8.54)	39.40 (9.83)	F=47.630***
フレモリエレ	국내	290(99.3)	199(99.0)	165(99.4)	654(99.2)	$\chi^2 = .224$,
가해자 국적	국외	2(0.7)	2(1.0)	1(0.6)	5(0.8)	df=2
	계	292(100.)	201(100.0)	166(100.0)	659(100.0)	n.s
	초졸 이하	12(4.7)	15(8.9)	10(7.5)	37(6.6)	
	중졸	30(11.7)	19(11.3)	27(20.3)	76(13.6)	
가해자의	고졸	84(32.8)	82(48.8)	57(42.9)	223(40.0)	χ ² =
교육수준	대졸	118(46.1)	48(28.6)	35(26.3)	201(36.1)	30.386*** df=8
	대학원 이상	12(4.7)	4(2.4)	4(3.0)	20(3.6)	ui-o
	계	256(100.0)	168(100.0	133(100.0)	557(100.0)	
	미혼	52(19.5)	13(6.9)	9(5.7)	74(12.1)	x ² =
	동거	23(8.6)	27(14.4)	17(10.8)	67(10.9)	
가해자의	결혼	136(50.9)	67(35.6)	51(32.3)	254(41.4)	
혼인상태	재혼	15(5.6)	25(13.3)	19(12.0)	59(9.6)	66.880*** df=8
	별거/이혼/사별	41(15.4)	56(29.8)	62(39.2)	159(25.9)	ui-o
	계	267(100.0)	188(100.0)	158(100.0)	613(100.0)	
	미취업	46(16.2)	44(22.6)	36(22.6)	126(19.7)	
	전문관리직	157(55.3)	47(24.1)	28(17.6)	232(36.4)	
	사무직	12(4.2)	21(10.8)	17(10.7)	50(7.8)	
	서비스판매직	13(4.6)	16(8.2)	20(12.6)	49(7.7)	
가해자의 검거 당시	농림어업	2(0.7)	-	3(1.9)	5(0.8)	χ ² =
심기 당시 직업	숙련기능원	8(2.8)	14(7.2)	12(7.5)	34(5.3)	99.694*** df=16
	단순노무 종사자	20(7.0)	36(18.5)	32(20.1)	88(13.8)	ui-10
	가정주부	24(8.5)	16(8.2)	10(6.3)	50(7.8)	
	기타	2(0.7)	1(0.5)	1(0.6)	4(0.6)	
	계	284(100.0)	195(100.0)	159(100.0)	638(100.0)	
	유	284(100.0)	195(100.0)	159(100.0)	638(100.0)	χ 2=
가해자 종교	무	121(59.6)	81(56.6)	53(46.5)	255(55.4)	5.205
	계	82(40.4)	62(43.4)	61(53.5)	205(44.6)	df=2 n.s

^{***} P(0.001

집단차이검증 결과 가해자 주거지역이나 가해자의 주거안정성에 따라 학대 피해아 동 연령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건 가해자가 대도시 거주자이고 주거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5⟩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거주지역 및 주거안정성 비교

단위: 명(%)

구	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21-01-1	대도시	264(91.7)	178(89.4)	148(90.8)	590(90.8)	χ ² =.692
가해자 주거지역	읍면지역	24(8.3)	21(10.6)	15(9.2)	60(9.2)	df=2
1 - 1 - 1	계	288(100.0)	199(100.0)	163(100.0)	650(100.0)	n.s
	주거일정	263(92.9)	186(96.9)	155(95.7)	604(94.8)	χ ² =3.946
가해자 주거 안정성	주거부정	20(7.1)	6(3.1)	7(4.3)	33(5.2)	df=2
7.0.0	계	283(100.0)	192(100.0)	162(100.0)	637(100.0)	n.s

나. 가해자의 전과 특성 비교

학대 피해아동의 연령에 따라 가해자의 전과 특성이 상이한지를 분석한 결과 전과 유무와 실형전과 횟수 면에서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총체포횟수, 총전과횟수, 아동학 대 체포 경험 유무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총 체포횟수는 청소년 학대 가해자가 가장 많고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가 가장 적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전과유무를 살펴보면,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전과가 없는 비율이 있는 비율 보다 높은 반면(전과자 비율 31.0%),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와 청소년 학대 가해자들 은 전과가 있는 비율이 더 높다(각각 55.2%와 59.2%). 또한 피해아동의 연령이 높아질 수록 가해자의 전과자 비율 역시 증가한다.

⟨표 4-46⟩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전과특성 비교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총 체포횟수	평균 (표준편차)	4.28 (4.77)	4.77 (5.07)	5.10 (5.60)	4.72 (5.15)	F=.681 n.s
저기이미	전과 있음	85(31.0)	107(55.2)	97(59.5)	289(45.8)	x. 2=
전과유무	전과 없음	189(69.0)	87(44.8)	66(40.5)	342(54.2)	43.286***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계	274(100.0)	194(100.0)	163(100.0)	631(100.0)	df=2
총 전과횟수	평균 (표준편차)	3.89 (3.96)	4.33 (4.14)	4.63 (5.38)	4.30 (4.54)	F=.594 n.s
실형전과	평균 (표준편차)	0.17 (0.61)	0.38 (1.27)	0.42 (1.12)	0.30 (1.00)	F=4.290*
아동학대로 인한 체포	있음	5(1.7)	9(4.5)	4(2.4)	18(2.7)	X ² =3.511 df=2 n.s
	없음	285(98.3)	191(95.5)	162(97.6)	638(97.3)	
	계	290(100.0)	200(100.0)	166(100.0)	656(100.0)	

^{*} P(0.05, *** P(0.001

전과유무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총전과횟수에는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형전과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형전과 평균은 0.17, 학령기 학대 가해자는 0.38,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0.42로 피해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해자의 실형횟수가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체포 경험 유무를 보면 학령전 아동 학대 가해자의 1.7%,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의 4.5%, 청소년 학대 가해자의 2.4%가 체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다. 가해자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가해자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유무를 분석한 결과, 학령전 아동 가해자와 나머지 두 학대 유형 가해자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10.1%만이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는 그 비율이 23.6%,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24.6%에 이른다.

또한 가해자의 적응 및 행동문제 유무 면에서도 학령전 아동학대와 다른 두 학대 가해 자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적응 및 행동문제가 없는 비율이 있는 비율보다 더 높은 반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학대 가해자들은 문제가 있는 비율이 더 높다. 구체적인 비율을 보면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의 47.8%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 자의 69.4%, 청소년 학대 가해자의 67.0%가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다.

ਹπ. ਲ(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유	21(10.1)	34(23.6)	28(24.6)	83(17.8)	χ ² =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유무	무	186(89.9)	110(76.4)	86(75.4)	382(82.2)	15.142***	
0020111	계	207(100.0)	144(100.0)	114(100.0)	465(100.0)	df=2	
	유	64(47.8)	77(69.4)	65(67.0)	206(60.2)	x 2=	
적응·행동문제 유무	무	70(52.2)	34(30.6)	32(33.0)	136(39.8)	14.420***	
	계	134(100.0)	111(100.0)	97(100.0)	342(100.0)	df=2	

〈표 4-47〉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3. 피해자 특성 비교

가.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이번에는 피해자 연령별 아동학대 유형에 따라 피해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집단차이검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피해자 성별을 보면, 학령전 아동학대와 학령기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많은 반면(각각 남자 아동 비율 61.9%와 59.0%). 청소년 학대 피해자의 경우에는 남녀 비율이 49.1%와 50.9%로 유사하다. 따라서 어린 아동일수록 남자아동이 학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이 되면 남녀 청소년의 피해 가능성이 유사해진다.

학대유형을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집단차검증 결과 세 학대 유형의 피해자 연령이 상이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만, 세 학대 유형별로 사건 당시 피해자 연령의 평균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면, 학령전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 평균 연령은 2.67세이고, 학령기 아동학대 피해자동은 8.83세, 청소년 학대 피해자 평균연령은 14.11세이다. 전체 피해자 평균 연령은 7.66세이다.

피해자 거주지역은 피해아동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세 유형의 학대 모두 피해자들은 대도시 거주비율이 높았다.

피해아동 가족의 국민생황보장수급권 대상자 여부를 보면 학령전 아동학대 피해자 의 16.4%, 학령기 아동학대 피해자의 26.2%, 청소년 학대 피해자의 30.3%가 수급권자로 나타나, 학대 피해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소득층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P(0.001

⟨표 4-48⟩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단위: 명(%)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여자	131(38.1)	96(41.0)	116(50.9)	343(42.6)	χ ² =
성별	남자	213(61.9)	138(59.0)	112(49.1)	463(57.4)	9.500**
	계	344(100.0)	234(100.0)	228(100.0)	806(100.0)	df=2
사건당시 피해자의 연령	평균 (표준편차)	2.67 (1.64)	8.83 (2.30)	14.11 (1.61)	7.66 (5.12)	F=2720.752 ***
#1-11-101	대도시	277(90.2)	204(87.9)	193(87.3)	674(88.7)	χ ² =1.264
피해자의 주거지역	읍면지역	30(9.8)	28(12.1)	28(12.7)	86(11.3)	df=2
1 * 1 * 1	계	307(100.0)	232(100.0)	221(100.0)	760(100.0)	n.s
국민기초생활보	수급권	21(16.4)	34(26.2)	36(30.3)	91(24.1)	χ ² =
장수급권	비수급권	107(83.6)	96(73.8)	83(69.7)	286(75.9)	6.897*
대상	계	128(100.0)	130(100.0)	119(100.0)	377(100.0)	df=2

^{*} P(0.05, ** P(0.01, ***P(0.001

나.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 간의 관계 비교

피해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피해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전 아동 학대의 피해자 수는 평균 1.71명이고, 학령기 아동학대는 1.54명, 청소년 학대는 평균 1.30명이다. 이 중에서 학령전 아동학대와 청소년 학대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9〉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간의 관계 비교

	구분	학령전아동a	학령기아동b	청소년c	계	검증치
피해자 수	평균(표준편차)	1.71(1.96)	1.54(1.38)	1.30(0.84)	1.55(1.57)	F=3.638* a>c
	형제자매	27(37.0)	50(84.7)	17(56.7)	94(58.0)	
피해자들 강의 광계	같은 시설 이용자 및 친구	46(63.0)	8(13.6)	10(33.3)	64(39.5)	χ ² = 42.229***
간의 관계	기타	_	1(1.7)	3(10.0)	4(2.5)	df=4
	계	73(100.0)	59(100.0)	30(100.0)	162(100.0)	

^{*} P(0.05, ***P(0.001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피해자들 간의 관계 역시 피해자 연령별 학대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령전 아동학대의 경우 어린이집 등 시설내 학대의 영향으로 같은 시설 이용자나 친구가 가장 많은 반면(63.0%), 학령기 아동학대는 형제 자매가 대다수를 차지하며(84.7%), 청소년 학대는 형제자매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56,7%), 같은 시설 이용자 및 친구의 비율(33.3%) 역시 높은 편이다.

다. 가해자-피해자 관계 특성 비교

피해자 연령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관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전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는 '교원/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자/학원강사'가 가 장 많고(59.1%), 그 다음이 부모(33.4%)인 반면, 학령기 아동학대와 청소년 학대 가해 자는 많은 수가 부모이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아동은 부모(73.1%)와 교원/보육교직원 /유치원종사자/학원강사(11.5%)가 많고,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부모와(71.7%) 복지 시설 종사자(11.9%)가 많다.

피해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비율이 높고, 아동연령이 높을 수록 모르는 사람이 학대 가해자인 비율이 높다.

〈표 4-50〉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피해자 관계 비교

구분	학령전 아동	학령기 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교원/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 자/학원강사	207(59.1)	27(11.5)	13(5.8)	247(30.5)	
복지시설종사자	2(0.6)	10(4.3)	27(11.9)	39(4.8)	
부모	117(33.4)	172(73.1)	162(71.7)	450(55.6)	x 2=
대리양육자	20(5.7)	13(5.5)	3(1.3)	36(4.4)	χ -= 297.170***
친조부모/형제·자매/친인척	_	5(2.1)	3(1.3)	8(1.0)	df=12
기타 아는 사람	2(0.6)	6(2.6)	5(2.2)	13(1.6)	
모르는 사람	2(0.6)	2(0.9)	13(5.8)	17(2.1)	
계	350(100.0)	235(100.0)	225(100.0)	810(100.0)	

^{***}P(0.001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거 여부를 보면, 학령전 아동학대의 경우 시설내 학대의 영향 으로 비동거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동거비율 37.4%), 학령기 아동학대와 청소년 학대 의 경우에는 함께 동거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각각 79.6%와 75.7%).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표 4-51〉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가해자 동거여부 비교

단위: 명(%)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동거	125(37.4)	187(79.6)	168(75.7)	480(60.7)
비동거	209(62.6)	48(20.4)	54(24.3)	311(39.3)
계	334(100.0)	235(100.0)	222(100.0)	791(100.0)

 χ^2 =131.792, df=2, P(0.001

라. 피해자의 가족 특성

피해아동의 가족특성은 가정유형과 피해아동의 동거가족수로 나누어 살펴보았는 데, 집단차이검증 결과 두 변인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보면, 학령전 아동학대는 친부모가족이 가장 많고 (65.6%). 친부모가족 외 가족(29.5%). 대리양육가족(4.9%)의 순인 반면, 학령기 아동 학대의 피해아동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족 외 가족(62.2%), 친부모가족(33.3%), 대리양 육가족(4.5%)의 순이고, 청소년 학대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친부모가족 외 가족 (58.8%), 친부모가족(27.9%), 대리양육가족(7.3%)의 순으로 많다. 따라서 시설내 학대 가 많은 학령전 아동학대를 제외하면 초등학교이상의 아동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는 가족은 친부모가족보다는 친부모가족 외 가족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특히 초등학생 피해자에 비하여 중고등학생(청소년) 피해자는 친부모가족 비율이 더 적고 대리양육 가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피해아동 연령별 학대 유형에 따라 피해아동의 사회적 혹은 지리적 고립 비율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세 유형 모두 고립 비윸은 10%-20%이하 수준으로 유사하다.

							단위. 명(%)
구분		구분	학령전 아동a	학령기 아동b	청소년c	계	검증치
		친부모가족	160(65.6)	74(33.3)	57(27.9)	291(43.4)	
	기조유형	친부모가족 외	72(29.5)	138(62.2)	120(58.8)	330(49.3)	χ ² =
	가족유형	대리양육 가족	12(4.9)	10(4.5)	27(13.2)	49(7.3)	88.735*** df=4
		계	244(100.0)	222(100.0)	204(100.0)	670(100.0)	ui 4
	피해아동의	평균	3.57	3.88	3.65	3.70	F=3.267*
	동거가족수	(표준편차)	(1.03)	(1.31)	(1.62)	(1.33)	a⟨b

〈표 4-52〉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 가족유형 및 동거가족수 비교 다의 : 며(%)

〈표 4-53〉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의 사회적·지리적 고립여부 비교 단위: 명(%)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예	27(12.9)	26(16.9)	28(20.3)	81(16.2)
아니요	182(87.1)	128(83.1)	110(79.7)	420(83.8)
계	209(100.0)	154(100.0)	138(100.0)	501(100.0)

 $[\]chi^2$ =3.416, df=2, n.s

마. 피해자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피해자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을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유무와 적응 및 행동문 제 유무로 나누어 집단차이검증을 한 결과 두 항목 모두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는 데, 피해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유무의 경우 학령기 학대 피해자의 경우 7.8만이 문제가 있었으나, 학령기 학대 피해아동은 그 비율이 17.9%, 청소년 피해자는 무려 25.8%로 나타났다.

적응 및 행동문제 유무의 경우에도 학령기 학대 피해자의 경우 54.1%가 문제가 발견되었으나, 학령기 피해아동은 그 비율이 62.5%, 청소년 피해자는 72.3%에 이른 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학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같은 결과는 학대가 오래 지속될수록 피해아동이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피해자의 신체장애나 정신질 환, 적응 및 문제행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조사자료가

^{*} P(0.05, ***P(0.001

기록조사를 통해 수집되었기 때문에 그 한계상 이에 대한 분명한 분석은 어렵다.

〈표 4-54〉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단위: 명(%)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유	14(7.8)	24(17.9)	33(25.8)	71(16.1)	χ ² =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유무	무	166(92.2)	110(82.1)	95(74.2)	371(83.9)	18.469***
0020111	계	180(100.0)	134(100.0)	128(100.0)	442(100.0)	df=2
	유	99(54.1)	105(62.5)	120(72.3)	324(62.7)	χ ² =
적응·행동문제 유무	무	84(45.9)	63(37.5)	46(27.7)	193(37.3)	12.315***
11 1	계	183(100.0)	168(100.0)	166(100.0)	517(100.0)	df=2

^{***}P(0.001

4. 범행 특성 비교

가. 학대 장소 및 기간 비교

피해아동 연령에 따라 학대장소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전 아동은 '유치원·어린이집/학교/학원/복지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60.1%), 학령기 아동학대와 청소년 학대의 경우에는 모두 '공동거주지/아동 혹은 학대가해자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각각 73.3%와 71.2%).

〈표 4-55〉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학대장소 비교

				<u> </u>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공동거주지/ 아동 혹은 학대가해자 주거지	88(30.2)	143(73.3)	136(71.2)	367(54.2)
유치원·어린이집/학교/학원/ 복지시설	175(60.1)	30(15.4)	31(16.2)	236(34.9)
기타	14(4.8)	7(3.6)	5(2.6)	26(3.8)
실외공간	14(4.8)	15(7.7)	19(9.9)	48(7.1)
계	291(100.0)	195(100.0)	191(100.0)	677(100.0)

 $[\]chi^2$ =153.663, df=6, P(0.001

학대 지속기간을 비교하여 보면 학령전 아동학대의 평균 지속기간은 113.79일이 고, 학령기 아동학대는 391.98일, 청소년 학대는 615.13일로 피해아동의 연령이 많을 수록 지속기간도 길다. 특히 학령전 아동학대의 지속기간은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학대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령기 아동학대 역시 청소년 학대와 차이가 나타나. 세 유형의 학대지속기간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다.

⟨표 4-56⟩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학대피해기간 비교

	학령전아동a	학령기아동b	청소년c	계	F
평균(일) (표준편차)	113.79 (340.75)	391.98 (658.06)	615.13 (1046.15)	336.14 (727.76)	34.113*** a\langle b*** a\langle c\text{***} b\langle c\text{**}

^{**} P(0.01, ***P(0.001

피해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대가 자주 발생한다.

먼저 학대행위가 일회성으로 발생한 비율을 보면 학령전 아동학대의 경우 무려 70.1%에 이르나, 학령기 아동학대는 52,7%이고, 청소년 학대는 44.3%로 뚜렷한 차이 를 보인다.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한 비율 역시 피해자 연령이 가장 많은 청소년 학대의 경우에 는 25.5%를 차지하나, 학령전 아동학대(15.6%)와 학령기 아동학대의 경우(14.1%) 이보다 훨씬 비율이 낮다.

〈표 4-57〉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학대빈도 비교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거의 매일	49(15.6)	29(14.1)	49(25.5)	127(17.9)
2~3일에 한 번	12(3.8)	20(9.8)	13(6.8)	45(6.3)
일주일에 한 번	12(3.8)	13(6.3)	9(4.7)	34(4.8)
2주일에 한 번	5(1.6)	15(7.3)	2(1.0)	22(3.1)
1개월에 한 번	9(2.9	6(2.9)	14(7.3)	29(4.1)
2~3개월에 한 번	6(1.9)	6(2.9)	6(3.1)	18(2.5)
6개월에 한 번	1(0.3)	8(3.9)	4(2.1)	13(1.8)
1년에 한 번	-	_	10(5.2)	10(1.4)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일회성	220(70.1)	108(52.7)	85(44.3)	413(58.1)
계	314(100.0)	205(100.0)	192(100.0)	711(100.0)

 $[\]chi^2$ =92.598, df=16, P \langle 0.001

나. 공범 특성 비교

피해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의 공범 특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범유무를 보면, 학령전 아동학대(34.6%), 학령기 아동학대(20.5%), 청소년 학대(17.6%)의 순으로 공범이 있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아동 연령이 많을수록 단독범일 가능성이 높다.

공범유무를 반영하여 공범수 역시 차이를 보여서 학령전 아동학대의 평균공범수는 1.49명, 학령기 아동학대는 1.28명, 청소년 학대는 1.22명으로 분석되었다.

공범간의 관계 역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세 유형의 학대 모두 부부/동거인/애인 과 동료/친구/선후배 사이인 경우가 많았는데. 다만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는 주로 동료/친구/선후배(67.0%)가 가장 많은 반면,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와 청소년 학대 가해자들은 부부/동거인/애인 관계가 가장 많다(각각 68.3%와 51.9%). 또한 청소년 가해자들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는 비율이 다른 두 유형의 학대보 다 상대적으로 높다(14.8%).

〈표 4-58〉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공범 특성 비교

	구분	학령전아동a	학령기아동b	청소년c	계	검증치
	공범 없음	191(65.4)	159(79.5)	136(82.4)	486(74.0)	x 2=
공범유부	공범 있음	101(34.6)	41(20.5)	29(17.6)	171(26.0)	20.413***
	계	292(100.0)	200(100.0)	165(100.0)	657(100.0)	df=2
공범수	평균 (표준편차)	1.49 (0.62)	1.28 (0.51)	1.22 (0.44)	1.36 (0.56)	F= 13.238*** a>b a>c
	부부/동거인/애인	21(21.6)	28(68.3)	14(51.9)	63(38.2)	
	가족 및 친척	6(6.2)	-	4(14.8)	10(6.1)	χ ² =
공범간 관계	동료/친구/선후배	65(67.0)	13(31.7)	9(33.3)	87(52.7)	36.522***
L/11	모르는 사이	5(5.2)	-	-	5(3.0)	df=6
	계	97(100.0)	41(100.0)	27(100.0)	165(100.0)	

	구분	학령전아동a	학령기아동b	청소년c	계	검증치
	주도적역할	58(65.9)	30(78.9)	21(77.8)	109(71.2)	
가해자의	보조적역할	13(14.8)	4(10.5)	5(18.5)	22(14.4)	χ ² =5.579
역할	단순가담	17(19.3)	4(10.5)	1(3.7)	22(14.4)	df=4, n.s
	계	88(100.0)	38(100.0)	27(100.0)	153(100.0)	11.0

^{*}P(0.001

다. 학대 유형 비교

학대 유형면에서도 피해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먼저 학대 유형을 복합학대와 단일 학대로 구분하여 차이점을 살펴보면, 학령전 아동은 한가지 유형의 학대행위만 발생한 단일 학대가 더 많은 반면(복합학대 비율 36.6%), 학령기 아동학대는 단일학대와 복합학대의 비율이 절반 정도씩으로 유사하고 (복합학대 비율 51.9%). 청소년 학대는 단일학대보다는 여러 유형의 학대가 함께 발생 하는 복합학대가 더 많다(62.7%). 다시 말해 피해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여러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보다 심각한 형태의 학대가 발생한다.

이어서 학대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집단차이검증을 해보면, 학령기 아동학대의 경우 신체적 학대만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고(42.6%), 복합학대(36.6%), 정서적 학대 (10.3%)의 순이고, 학령기 아동학대는 복합학대(51.9%), 신체적 학대(38.3%), 방임 (5.1%)의 순이며. 청소년 학대는 복합학대(62.7%). 신체적 학대(21.5%). 정서적 학대 (8.8%)의 순으로 발생 비율이 높다.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4-59〉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학대유형 비교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단일학대	222(63.4)	113(48.1)	85(37.3)	420(51.7)	x. 2=
복합학대 여부	복합학대	128(36.6)	122(51.9)	143(62.7)	393(48.3)	34.492***
-11	계	350(100.0)	235(100.0)	228(100.0)	813(100.0)	df=2
	신체적학대	149(42.6)	90(38.3)	49(21.5)	228(35.4)	
후[대 () 취	정서적학대	36(10.3)	6(2.6)	20(8.8)	62(7.6)	χ ² =
학대유형	방임	20(5.7)	12(5.1)	14(6.1)	46(5.7)	58.451*** df=8
	유기	17(4.9)	5(2.1)	2(0.9)	24(3.0)	<u> </u>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복합학대	128(36.6)	122(51.9)	143(62.7)	393(48.3)	
계	350(100.0)	235(100.0)	228(100.0)	813(100.0)	

^{***}P(0.001

라. 학대 동기 비교

학대동기는 중복응답으로 조사되어 집단차이검증은 할 수 없으나 빈도분포를 통해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았다.

세 학대 유형 모두 '양육태도 혹은 훈육문제'가 가장 많고. '가해자 개인특성'이 두 번째로 많은 동기이다. 다만 학령전 아동학대와 학령기 아동학대의 경우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가 세 번째로 비율이 높은 반면 청소년 학대는 '부부문제'가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다.

〈표 4-60〉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학대동기 비교

단위: 명(%)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양육태도 혹은 훈육문제	221(55.7)	149(48.4)	140(52.0)	510(52.4)
가해자 개인특성	70(17.6)	72(23.4)	53(19.7)	195(20.0)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	42(10.6)	35(11.4)	21(7.8)	98(10.1)
부부문제	30(7.6)	28(9.1)	28(10.4)	86(8.8)
경제적 문제	29(7.3)	18(5.8)	18(6.7)	65(6.7)
기타	5(1.3)	6(1.9)	9(3.3)	20(2.1)
계	397(100.0)	308(100.0)	269(100.0)	974(100.0)

^{*} 중복응답

범행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를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가해자가 술을 마신상태에서 학대행위를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령전 아동학대의 경우 13.1%의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던 반면,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의 음주비율은 32.1%,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38.2%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약물복용 유무 면에서는 세 학대 유형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고 모두 약물복용 비율이 1%대 이하이다.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비음주 291(86.9) 148(67.9) 131(61.8) 570(74.5) $\chi^2 =$ 가해자의 음주 44(13.1) 70(32.1) 81(38.2) 195(25.5) 50.011*** 음주여부 df=2 계 335(100.0) 218(100.0) 212(100.0) 765(100.0) 미복용 227(99.1) 215(98.6) 777(99.2) 335(99.7) $\chi^2 = 2.071$ 가해자의 복용 1(0.3) 2(0.9) 3(1.4) 6(0.8) df=2 약물여부 n.s 계 336(100.0) 229(100.0) 218(100.0) 783(100.0)

〈표 4-61〉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비교 단위: 명(%)

마. 학대 결과

학대의 결과 피해아동들이 후유증을 경험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의 연령에 따라 후유증 유무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후유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학령기 즉 초등학생 아동대상 학대로 85.4%가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피해자의 후유증 경험율은 74.8%로 학령기 아동피해자보다 약 10%정도 더 적다. 반면 학령전 아동학대 피해자 의 경우 64.7%가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비율이 가장 낮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연령은 학대 후유증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며, 피해아동 중에서도 초등학생이 가장 학대 후유증에 가장 취약하다.

그러나 학대유형 면에서는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 집단 모두 신체 적 결과가 가장 많고, 복합후유증, 사회적 후유증, 정서적 후유증의 순서로 비율이 높다.

〈표 4-62〉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학대피해아동 후유증 비교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후유증 있음	187(64.7)	176(85.4)	148(78.7)	511(74.8)	x. 2=
후유증 유무	후유증 없음	102(35.3)	30(14.6)	40(21.3)	172(25.2)	29.535***
11 1	계	289(100.0)	206(100.0)	188(100.0)	683(100.0)	df=2
	신체적 결과	108(57.8)	117(66.5)	101(68.2)	326(63.8)	χ ² =7.562
후유증 유형	정서적 결과	6(3.2)	3(1.7)	1(0.7)	10(2.0)	df=6
11 0	사회적 결과	12(6.4)	10(5.7)	11(7.4)	33(6.5)	n.s

^{***}P(0.001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검증치
복합 후유증	61(32.6)	46(26.1)	35(23.6)	142(27.8)	
 계	187(100.0)	176(100.0)	148(100.0)	511(100.0)	

^{***}P(0.001

5. 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 비교

학대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해자에 개한 서비스 차이를 보면,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는 35.1%만이 서비스를 받은 반면,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는 51.5%,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49.2% 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달리 말하면,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가해자의 많은 수는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는 반면,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학대를 한 가해자들은 절반 정도가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살펴보면. 첫째. 서비스 제공비율이 가장 높은 피해자 집단은 학령기 아동으로(77.7%),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령기 아동이 학대 후유증이 가장 많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하겠다. 둘째, 그 다음으로 서비스 수혜율이 높은 집단은 학령전 아동이며(67.1%), 청소년 학대피해아동이 가장 적다(62.7%). 따라 서 학대 후유증 분석 결과 학령전 아동보다 청소년 피해자가 후유증이 더 많음에도 상담 등 서비스는 오히려 더 적게 받고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 4-63〉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서비스 받음	73(35.1)	69(51.5)	62(49.2)	204(43.6)
서비스 받지 않음	135(64.9)	65(48.5)	64(50.8)	264(56.4)
계	208(100.0)	134(100.0)	126(100.0)	468(100.0)

 $[\]chi^2$ =11.122. df=2. P $\langle 0.001$

〈표 4-64〉 학령전 아동 학대, 학령기 아동 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단위: 명(%)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청소년	계
서비스 받음	194(67.1)	160(77.7)	116(62.7)	470(69.1)
서비스 받지 않음	95(35.9)	46(22.3)	69(37.3)	210(30.9)
계	289(100.0)	206(100.0)	185(100.0)	680(100.0)

 χ^2 =11.161, df=2, P(0.01

제3절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 학대

1. 처분 특성 비교

가. 죄명 특성 비교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 가해자의 죄명은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장애아 동관람, 구걸강요, 이용행위'(각각 78.2%와 72.4%), '상습'(각각 19.7%와 18.0%) 순으 로 많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율 면에서,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이용행위'는 중복학대의 경우 78.2%이나 비중복학대 는 이보다 적은 72.4%이다. 또한 '양육알선금품취득 및 아동금품유용'은 비중복학대 에만 있고,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비율은 중복이 더 높다.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4-65〉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죄명 비교

	구분	중복	비중복	계	검증치
	제71조 제1항 제1호(아동매매)	-	-	-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아동에 대한	3	1	4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2.1)	(0.3)	(0.9)	2
아동	제71조 제1항 제2호(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111	213	324	χ =
식 복지법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이용행위)	(78.2)	(72.4)	(74.3)	16.889**
7/16	제71조 제1항 제3호(양육알선금품취득,		3	3	df=5
	아동금품유용)	_	(1.0)	(0.7)	
			19	19	
	그 외 아동복지법 위반	_	(6.5)	(4.4)	

	구분	중복	비중복	계	검증치
특례법	제6조(상습)	28 (19.7)	53 (18.0)	81 (18.6)	
	Ä	142 (100.0)	294 (100.0)	436 (100.0)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 가해자 죄명의 경합여부를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경합비율이 높고 동종경합보다 이종경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 경합비율은 72.5%이고, 이종경합이 27.1%, 동종경합이 18.8%, 동종+이 종경합이 25.7%이다. 비중복학대 경합비율은 이보다 적은 63.0%이고, 이종경합이 35.0%, 동종경합이 14.1%, 동종+이종경합이 13.8%이다.

〈표 4-66〉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경합여부 비교

단위: 명(%)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경합아님	41(28.5)	110(37.0)	151(34.2)
이종경합	39(27.1)	104(35.0)	143(32.4)
동종경합	27(18.8)	42(14.1)	69(15.6)
동종+이종	37(25.7)	41(13.8)	78(17.7)
계	144(100.0)	297(100.0)	441(100.0)

 $[\]chi^2$ =13.028, df=3, P(0.01

나. 검거 특성 비교

가해자 검거경위 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복학대는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검거된 비율이 63.6%에 이르며, 신고의무 자 신고가 18.9%, 피해자 신고가 9.8% 등이다. 반면 비중복학대는 상대적으로 검거경 위가 여러 경로로 분산되어 있는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로 검거된 사례가 가장 많기는 하나 그 비율이 40.9%이고, 그 외 신고의무자 신고 33.8%, 피해자 신고 17.2% 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표 4-67〉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검거경위 비교

단위: 명(%)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신고의무자 신고	27(18.9)	100(33.8)	127(28.9)
비신고의무자 신고	91(63.6)	121(40.9)	212(48.3)
피해자 신고	14(9.8)	51(17.2)	65(14.8)
기타(자수, 현행범체포 등)	11(7.7)	24(8.1)	35(8.0)
계	143(100.0)	296(100.0)	439(100.0)

 χ ²=21.368, df=3, P(0.001

신고에 의해 가해자가 검거된 사례만을 대상으로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최초신 고자가 누구인지를 비교하여 보아도 집단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신고의무자 여부를 보면, 중복학대는 79.1%가, 비중복학대는 62.1%가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중복학대가 비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이 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중복학대는 상대적으로 가족 신고비율이 높고, 비중복학대는 비가족 신고비율이 높은 경향이 관찰된다. 중복학대의 경우부모 혹은 위탁부모가 신고한 비율이 56.4%로 매우 높고, 아동보호전문기관(15.4%), 조부모/친인척/형제자매(7.7%)의 순으로 대체로 가족이 신고한 비율이 높은 반면, 비중복학대의 경우에는 부모 혹은 위탁부모가 신고한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하나 비율면에서 22.5% 수준이고, 그 외 아동보호전문기관(18.3%), 교원/보육교직원/유치원(17.4%), 모르는 사람(14.1%), 이웃(11.3%)과 같이 가족 이외 사람이 신고한 비율이 매우 높고, 신고자 유형도 다양하다.

〈표 4-68〉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최초신고자 비교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검증치
	신고의무자	27(20.9)	100(37.9)	127(32.3)	
최초 신고자	비신고의무자	102(79.1)	164(62.1)	266(67.7)	χ ² = 11.381***
근고시	계	129(100.0)	264(100.0)	393(100.0)	11.301***
최초	아동보호전문기관	18(15.4)	39(18.3)	57(17.3)	x 2=
.— 신고자	교원/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자	5(4.3)	37(17.4)	42(12.7)	51.937***
(상세)	의료인/소방구급대원	3(2.6)	13(6.1)	16(4.8)	df=8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검증치
아동복지/장애인복지/사회복지/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_	11(5.2)	11(3.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9)	-	1(0.3)	
부/모/위탁부모	66(56.4)	48(22.5)	114(34.5)	
조부모/친인척/형제자매	9(7.7)	11(5.2)	20(6.1)	
이웃	7(6.0)	24(11.3)	31(9.4)	
낯선사람	8(6.8)	30(14.1)	38(11.5)	
계	117(100.0)	213(100.0)	330(100.0)	

**** P(0.001

다. 검찰 및 법원 처분 특성 비교

가정내 중복학대는 1인 피해자 학대에 비하여 구속되는 비율이 높다. 중복학대 가해자 구속 비율은 25.2%로 비중복학대 10.7%에 비하여 약2.4배 이상 높다. 이같은 구속율의 차이를 보더라도 중복학대의 학대 정도가 비중복학대에 비하여 훨씬 중하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69〉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구속여부 비교

단위: 명(%)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구속	36(25.2)	31(10.7)	67(15.5)
불구속	107(74.8)	259(89.3)	366(84.5)
계	143(100.0)	290(100.0)	433(100.0)

 χ^2 =15.364, df=1, P(0.001

검찰처분 결과 면에서도 중복학대와 1인 피해자 학대의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중복 학대가 비중복학대에 비하여 구공판, 구약식 등 더 중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는 구공판(44.4%), 기소유예(23.6%), 불기소(11.8%), 구약식(8.3%)의 순인 데 비하여, 비중복학대는 기소유예(37.0%), 구공판(31.0%), 불기소(13.8%), 타관송치 (7.1%)의 순이다. 중복학대의 처분유형은 구공판이 가장 많고, 비중복학대는 기소유예 가 가장 많다. 특히 중복학대는 비중복학대에 비하여 구공판과 구약식 처분을 받은 비율이 각각 44.4%와 8.3%로 비중복학대의 비율 31.0%와 6.7%보다 훨씬 높다. 반면. 비중복학대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비율이 각각 37.0%와 13.8%로 중복학대의 비율 23.6%, 11.8% 보다 높다.

〈표 4-70〉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검찰처분결과 비교

단위: 명(%)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구공판	64(44.4)	92(31.0)	156(35.4)
구약식	12(8.3)	20(6.7)	32(7.3)
기소유예	34(23.6)	110(37.0)	144(32.7)
불기소(혐의 없음/공소권 없음/죄가안됨)	17(11.8)	41(13.8)	58(13.2)
타관송치	9(6.3)	21(7.1)	30(6.8)
기소중지/기타	8(5.6)	13(4.4)	21(4.8)
계	144(100.0)	297(100.0)	441(100.0)

 $[\]chi^2$ = 11.342, df=5, P(0.05

집단차이검증을 통하여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 가해자에 대한 검찰 구형량을 비교한 결과, 유기징역형기, 집행유예기간, 벌금총액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중복학대라고 해서 비중복학대에 비하여형량이 더 높지는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71〉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구형량 비교

단위: 평균(표준편차)

7	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1-12개월	9(40.9)	2(25.0)	11(36.7)	
	13-24개월	6(27.3)	3(37.5)	9(30.0)	$\chi^2 = .752,$
오기지여 허기	25-36개월	3(13.6)	1(12.5)	4(13.3)	df=3,
유기징역 형기	37개월 이상	4(18.2)	2(25.0)	6(20.0)	n.s
	계	22(100.0)	8(100.0)	30(100.0)	
	평균(표준편차)	27.18(25.95)	29.75(20.77)		t=.251
	1-12개월	_	3(14.3)	3(8.1)	
TI-11001	13-24개월	14(87.5)	15(71.4)	29(78.4)	χ^2 =2.606,
집행유예 기간	25-36개월	2(12.5)	3(!4.3)	5(13.5)	df=2, n.s
	계	16(!00.0)	21(100.0)	37(100.0)	
	평균(표준편차)	25.50(4.10)	23.10(8.61)		t=1.029

Ŧ	분	가정내	시설내	계	검증치
	30-50만원	-	1(10.0)	1(5.3)	
	51-100만원	2(22.2)	1(10.0)	3(15.8)	
	101-200만원	4(44.4)	2(20.0)	6(31.6)	_
	201-300만원	3(33.3)	5(50.0)	8(42.1)	χ ² =3.457, df=4, n.s
벌금총액수	400만원	_	1(10.0)	1(5.3)	
	500만원	9(100.0)	10(100.0)	19(100.0)	11.0
	1000만원	200.00(82.92)	250.50(134.38)		
	계				
	평균(표준편차)	20.0(78.58)	79.8(170.19)		t=3.644
	02(-22 1)	2010(70100)	7 0.0(17 0.10)		n.s

최종심유형을 통하여 법원처분 결과를 비교한 결과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 는 최종심 유형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중복학대와 비중복 학대 모두 1심이 가장 많아 각각 49.4%와 77.2%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복학대는 2심(40.3%), 3심(10.4%)의 비율이 비중복학대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훨씬 높다. 비중독학대는 대부분 1심에 그치고 있고 그 이상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2심 20.5%, 3심 2.4%).

〈표 4-72〉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최종심유형 비교

단위: 명(%)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1심	38(49.4)	98(77.2)	136(666.7)
2심	31(40.3)	26(20.5)	57(27.9)
3심	8(10.4)	3(2.4)	11(5.4)
계	77(100.0)	127(100.0)	204(100.0)

 $[\]chi^2$ = 18.009 df = 2, P(0.001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는 변호인 유무와 변호인 유형 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중복학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심과 3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비율 면에서는 비중복학대 보다 높아서, 중복학대의 변호인 선임율은 49.6%, 비중복학대의 변호인 선임율은 31.1%이다.

변호인 유형 면에서는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 모두 사선변호인보다는 국선 변호인

을 선임하는 비율이 더 높기는 하나 구체적인 비율 면에서 중복학대는 비중복학대에 비하여 국선변호인 선임비율이, 비중복학대는 중복학대에 비하여 사선변호인 선임비 율이 높다. 중복학대 가해자의 경우 비중복학대 가해자에 비하여 사선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4-73〉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변호인유무 비교

단위: 명(%)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변호인 없음	64(50.4)	175(68.9)	239(62.7)
국선 변호인	46(36.2)	60(23.6)	106(27.8)
사선 변호인	17(13.4)	19(7.5)	36(9.4)
계	127(100.0)	254(100.0)	381(100.0)

 $[\]chi^2$ = 12.577, df = 2, P(0.01

라.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 비교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 태도와 피해자 태도가 중복학대 여부에 따라 상이한지를 집단차이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두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가해자의 범행시인 정도를 보면, 중복학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비율은 21.0%, 비중복학대의 경우 16.9%로 중복학대가 다소 높으나 큰 차이는 아니다. 그러 나 시인하는 가해자들 중에 어느 정도 시인하는가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명확한데, 중복학대는 일부만 시인하는 가해자들이 훨씬 많고(50.7%), 비중복학대는 전적으로 시인하는 가해자의 비율이 더 높다(45.5%).

피해자들의 가해자 처벌에 대한 태도를 보면,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비율이 중복학 대는 57.7%인데 비해, 비중복학대는 38.5%로 훨씬 낮다. 양가감정은 중복학대와 비중 복학대 모두 약10% 정도로 유사한 수준이다.

〈표 4-74〉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태도 비교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검증치
 가해자의	전적으로 시인	39(28.3)	132(45.5)	171(40.0)	x. 2=
범행시인 정도	일부시인	70(50.7)	109(37.6)	179(41.8)	11.699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검증치
	부인	29(21.0)	49(16.9)	78(18.2)	***
	계	138(100.0)	290(100.0)	428(100.0)	df=2
피해자의 태도	처벌을 원함	64(57.7)	74(38.5)	138(45.5)	χ ² =
	처벌을 원치 않음	35(31.5)	99(51.6)	134(44.2)	
	양가감정을 보임	12(10.8)	19(9.9)	31(10.2)	***
	계	111(100.0)	192(100.0)	303(100.0)	df=2

^{***}P(0.001

그러나 고소취하 여부와 합의 여부 면에서는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두 유형의 학대 모두 고소취하를 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고 70% 후반-80% 초반 수준이다. 합의의 경우에도 두 유형 모두 합의를 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고, 60% 후반-70% 초반 수준이다.

〈표 4-75〉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고소취하 및 합의 여부 비교

단위: 명(%)

Ŧ	¹ 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검증치
 고소	고소 취하안함	90(78.9)	168(83.6)	258(81.9)	χ ² =1.054
취하	고소 취하함	24(21.1)	33(16.4)	57(18.1)	n.s
여부	계	114(100.0)	201(100.0)	315(100.0)	df=1
	합의안함	69(67.6)	136(73.9)	205(71.7)	x ² =1.169
합의 여부	합의함	33(32.4)	48(26.1)	81(28.3)	n.s
~17	계	102(100.0)	184(100.0)	286(100.0)	df=1

2. 가해자 특성 비교

가.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집단차이검증을 통해 비교한 결과 가해자의 성별과 직업 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 되었으며 나머지 연령, 국적, 교육수준, 혼인상태, 종교는 중복학대 여부에 따라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해자의 특성 중 가해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직업이 무엇인지는 중복학대 위험 예측요인이라 할 수 있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만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중복학대의 경우 가해자 가 남성인 경우가 훨씬 많고(69.4%), 여성은 적은 반면(30.6%), 비중복학대의 경우에 는 남성이 다소 많기는 하나 남녀 비율이 유사한 수준이다(남성 52.2%, 여성 47.8%). 중복학대의 경우 아버지가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을 하거나, 다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해자 직업 면에서는 중복학대는 비중복학대에 비하여 가해자가 직업이 없는 비율 이 높아서, 중복학대 가해자의 미취업율은 32.6%, 비중복학대는 24.6%이다. 그러나 중복학대는 저소득층의 문제만은 아니어서, 중복학대는 비중복학대에 비하여 전문관 리직 비율과 숙련기능공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비중복학대는 중복학대에 비하여 사무 직, 서비스판매직,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더 높다.

〈표 4-76〉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검증치
	남자	100(69.4)	155(52.2)	255(57.8)	χ ² =
가해자 성별	여자	44(30.6)	142(47.8)	186(42.2)	11.841***
	계	144(100.0)	297(100.0)	441(100.0)	df=1
	20대 미만	_	2(0.7)	2(0.5)	
	20대	15(10.5)	42(14.4)	57(13.1)	
	30대	48(33.6)	98(33.6)	146(33.6)	
	40대	62(43.4)	115(39.4)	177(40.7)	$\chi^2 = 4.780$
가해자 연령	50대	16(11.2)	28(9.6)	44(10.1)	df=6 n.s
	60대	2(1.4)	3(1.0)	5(1.1)	
	70대	_	4(1.4)	4(0.9)	
	계	143(100.0)	292(100.0)	435(100.0)	
	평균(표준편차)	40.57(8.66)	39.31(9.72)		t=1.310
	국내	143(99.3)	293(98.7)	436(98.9)	χ^2 =.368,
가해자 국적	국외	1(0.7)	4(1.3)	5(1.1)	df=1
	계	144(100.0)	297(100.0)	441(100.0)	n.s
	초졸	12(9.8)	22(8.8)	34(9.2)	
71-11-101	중졸	23(18.9)	46(18.5)	69(18.6)	$\chi^2 = 2.782$
가해자의 교육수준	고졸	62(50.8)	127(51.0)	189(50.9)	df=4
业本下正	대졸	20(16.4)	50(20.1)	70(18.9)	n.s
	대학원 이상	5(4.1)	4(1.6)	9(2.4)	

=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검증치
	계	122(100.0)	249(100.0)	371(100.0)	
	미혼	4(2.9)	20(7.0)	24(5.7)	
	동거	24(17.1)	41(14.4)	65(15.3)	_
가해자의	결혼(초혼)	45(32.1)	95(33.5)	140(33.0)	χ ² =4.305
혼인상태	재혼	17(12.1)	40(14.1)	57(13.4)	df=4 n.s
	별거/이혼/사별	50(35.7)	88(31.0)	138(32.5)	11.5
	계	140(100.0)	284(100.0)	424(100.0)	
	미취업	45(32.6)	70(24.6)	115(27.2)	
	전문관리직	20(14.5)	24(8.4)	44(10.4)	
	사무직	13(9.4)	36(12.6)	49(11.6)	
	서비스판매직	12(8.7)	34(11.9)	46(10.9)	
가해자의 검거	농림어업	3(2.2)	2(0.7)	5(1.2)	χ ² =
당시 직업	숙련기능원	14(10.1)	20(7.0)	34(8.0)	15.858* df=8
	단순노무종사자	22(15.9)	60(21.1)	82(19.4)	ui o
	가정주부	9(6.5)	37(13.0)	46(10.9)	
	기타	_	2(0.7)	2(0.5)	
	계	138(100.0)	285(100.0)	423(100.0)	
	유	47(47.5)	108(49.5)	155(48.9)	χ ² =.116
가해자 종교	무	52(52.5)	110(50.5)	162(51.1)	df=1
	계	99(100.0)	218(100.0)	317(100.0)	n.s

^{*} P(0.05, ***P(0.001

중복학대 여부와 학대 가해자의 거주지역과 주거안정성은 상관관계가 미약한 것으 로 나타났다. 중복학대 가해자와 비중복학대 가해자 모두 대도시에 약90%가 거주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주거가 일정하다.

〈표 4-77〉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거주지역 및 주거안정성 비교

					E 11 O(14)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검증치
가해자 주거지역	대도시	124(89.2)	262(89.1)	386(89.1)	x ² =.001,
	읍면지역	15(10.8)	32(10.9)	47(10.9)	df=1
	계	139(100.0)	294(100.0)	433(100.0)	n.s
가해자 주거 안정성	주거일정	132(95.0)	266(92.0)	398(93.0)	χ ² =1.230
	주거부정	7(5.0)	23(8.0)	30(7.0)	df=1
	계	139(100.0)	289(100.0)	428(100.0)	n.s

나. 가해자의 전과 특성 비교

중복학대 가해자와 비중복학대 가해자는 전과 특성 면에서는 일부 변인에서만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총 체포횟수, 전과 유무, 총전과 횟수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실형전과와 아동학대 체포 여부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78〉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전과특성 비교

단위: 명(%)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검증치
총 체포횟수	평균(표준편차)	6.52(5.80)	4.18(4.85)		t=3.472**
	전과 있음	91(66.9)	155(54.0)	246(58.2)	x 2=
전과유무	전과 없음	45(33.1)	132(46.0)	177(41.8)	6.315* df=1
	계	136(100.0)	287(100.0)	423(100.0)	
총 전과횟수	평균(표준편차)	5.77(5.00)	3.84(4.34)		t=3.183**
실형전과	평균(표준편차)	0.55(1.16)	0.35(1.19)		t=1.686
아동학대로 인한 체포	있음	3(2.1)	12(4.0)	15(3.4)	χ ² =1.082,
	없음	139(97.9)	285(96.0)	424(96.6)	df=1
	계	142(100.0)	297(100.0)	439(100.0)	n.s

^{*} P(0.05, ** P(0.01

총 체포횟수를 보면, 중복학대 가해자들은 평균 6.52회 체포된 적이 있고, 비중복학 대 가해자들은 평균 4.18회로 중복학대 가해자가 약 2.34회 더 많다.

전과유무 면에서는, 중복학대 가해자의 66.9%, 비중복학대 가해자의 54.0%가 전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복학대 가해자의 전과자 비율이 약13% 더 높다.

총 전과횟수 역시 중복학대 가해자는 5.77회, 비중복학대 가해자는 3.84회로 중복 학대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전과가 더 많다.

따라서 전과나 체포경력의 면에서 중복학대 가해자가 비중복학대 가해자에 비하여 범죄경력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실형전과나 아동학대 관련 체포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 가해자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가해자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을 집단차이검증을 통해 비교한 결과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에서는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가 차이가 없었고, 적응 및 행동 문제에서 만 차이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가해자의 적응 및 행동문제 여부가 중복학대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4-79〉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단위: 명(%)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검증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유무	유	28(28.0)	54(25.5)	82(26.3)	x ² =.224
	무	72(72.0)	158(74.5)	230(73.7)	n.s
	계	100(100.0)	212(100.0)	312(100.0)	df=1
적응·행동문제 유무	유	91(82.7)	100(61.3)	191(70.0)	χ ² =14.283
	무	19(17.3)	63(38.7)	82(30.0)	***
	계	110(100.0)	163(100.0)	273(100.0)	df=1

^{*} P(0.05, *** P(0.001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 가해자 모두 신체 장애나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대로 유사하다. 적응 및 행동 문제의 경우에는 중복학대 가해자들은 무려 82.7% 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중복학대의 경우에도 61.3%이다.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3. 피해자 특성 비교

가.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에 따라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여부 모두에 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중복학대는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표 4-80〉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단위: 명(%)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검증치
	여자	100(45.7)	132(49.4)	232(47.7)	χ ² =.688
성별	남자	119(54.3)	135(50.6)	254(52.3)	df=1
	계	219(100.0)	267(100.0)	486(100.0)	n.s
	미취학 아동(6세 이하)	55(25.0)	75(28.1)	130(26.7)	
	학령기 아동(7세-12세)	94(42.7)	96(36.0)	190(39.0)	$\chi^2 = 2.326$
사건당시 피해자의 연령	청소년(13세 이상)	71(32.3)	96(36.0)	167(34.3)	df=2 n.s
- v r - L 0	계	220(100.0)	267(100.0)	487(100.0)	0
	평균(표준편차)	8.98(4.65)	8.88(5.14)		t=.219
	대도시	193(88.9)	231(89.2)	424(89.1)	χ ² =.008,
피해자의 주거지역	읍면지역	24(11.1)	28(10.8)	52(10.9)	df=1
十/1/1月	계	217(100.0)	259(100.0)	476(100.0)	n.s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권대상	수급권	49(36.0)	37(22.6)	86(28.7)	x 2=
	비수급권	87(64.0)	127(77.4)	214(71.3)	6.595*
	계	136(100.0)	164(100.0)	300(100.0)	df=1

^{*} P(0.05

나.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 간의 관계 비교

가정내 중복학대는 그 개념 상 비중복학대에 비하여 피해자 수가 많은 것이 당연하나, 실제 중복학대의 피해자 수가 몇 명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중복학대의 피해자 수는 평균 2.78명이다.

피해자들간의 관계는 대부분이 형제자매이다(98.9%).

⟨표 4-81⟩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간의 관계 비교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검증치
피해자의 수	평균(표준편차)	2.78(0.75)	1.00(0.30)		t=11.431***
피해자들간의 관계	형제자매	87(98.9)	5(62.5)	92(95.8)	x ² = 24.285***
	같은 시설 이용자 및 친구	1(1.1)	3(37.5)	4(4.2)	
	계	88(100.0)	8(100.0)	96(100.0)	df=1

^{***}P(0.001

다. 가해자-피해자 관계 특성 비교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어떻게 상이한지 비교한 결과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가정내 중복학대의 91.8%, 비중복학대의 93.9%가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부모자녀 사이이다. 그 다음으로는 대리양육자, 친조부모/형제·자매/친인척 순으로 비율이 높 다. 따라서 가정내 학대는 중복학대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모-자녀관 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항목별 비율의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표 4-82〉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피해자 관계 비교

단위: 명(%)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부모	202(91.8)	249(93.9)	451(92.6)
대리양육자	16(7.3)	10(3.7)	26(5.4)
친조부모/형제·자매/친인척	2(0.9)	6(2.2)	8(1.6)
기타 아는사람	_	2(0.7)	2(0.4)
계	220(100.0)	267(100.0)	487(100.0)

 $[\]chi^2$ =5.801, df=3, n.s

중복학대 여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동거하는지 여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 모두 대부분의 가정내 학대는 가해자와 피해 자가 동거하고 있다.

〈표 4-83〉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가해자 동거여부 비교

단위: 명(%)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동거	210(95.5)	244(91.7)	454(93.4)
비동거	10(4.5)	22(8.3)	32(6.6)
계	220(100.0)	266(100.0)	486(100.0)

 $[\]chi^2$ =2.717, df=1, n.s

라. 피해자의 가족 특성

피해자의 가족특성에 대한 집단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정내 중복학대 여부에

따라 피해자 가족유형의 차이는 없으나 피해아동의 동거가족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 모두 친부모 외 가족유형인 경우가 60%대로 가장 많았고, 친부모 가족이 약30%이고, 대리양육가족은 5% 미만이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동거가족수가 많을수록 중복학대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복학대의 동거가 족수는 평균 4.01명인데 비해, 비중복학대는 평균 3.48명이다.

〈표 4-84〉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 가족유형 및 동거가족수 비교

단위: 명(%)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검증치
가족유형	친부모가족	75(34.7)	78(29.5)	153(31.9)	χ^2 =4.247 df=2
	친부모가족 외	138(63.9)	175(66.3)	313(65.2)	
	대리양육가족	3(1.4)	11(4.2)	14(2.9)	
	계	216(100.0)	264(100.0)	480(100.0)	11.5
피해아동의 동거가족수	평균 (표준편차)	4.01 (1.060)	3.48 (1.37)		t=4.735***

^{***}P(0.001

가정내 중복학대 여부에 따라 피해자 가족의 사회적 지리적 고립 여부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 가족의 사회적 혹은 지리적 고립은 학대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중복학대로 발전하는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아동 가족의 사회적, 지리적 고립은 학대 위험요인이기는 하나, 중복학대 위험요인은 아니다. 〈표 4-85〉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의 사회적·지리적 고립여부 비교

단위: 명(%)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예	38(22.9)	33(18.8)	71(20.8)
아니요	128(77.1)	143(81.3)	271(79.2)
계	166(100.0)	176(100.0)	342(100.0)

 $[\]chi$ ²=.891, df=1, n.s

마. 피해자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피해아동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화 유무를 보면. 중복학대 피해아동의 10.8%가 신체

장애 및 정신질환이 있는데 비해, 비중복학대 피해아동은 그 비율이 이보다 많은 21.0%에 이른다.

〈표 4-86〉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단위: 명(%)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검증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여부	유	14(10.8)	33(21.0)	47(16.4)	9
	무	116(89.2)	124(79.0)	240(83.6)	$\chi^2 = 5.456*$
	계	130(100.0)	157(100.0)	287(100.0)	df=1
적응·행동문제 여부	유	75(54.3)	49(25.8)	124(37.8)	x ² =27.728
	무	63(45.7)	141(74.2)	204(62.2)	***
	계	138(100.0)	190(100.0)	328(100.0)	df=1

^{*} P(0.05, *** P(0.001

그러나 피해아동의 적응 및 행동문제에서는 오히려 중복학대의 경우 비율이 높아서 비중복학대 피해아동의 25.8%가 적응 및 행동 문제가 있는 반면, 중복학대 피해아동 은 그 비율이 54.8%로 훨씬 높다.

따라서 중복학대는 피해아동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여부보다는 적응 및 행동문제 와 연관됨을 알 수 있다.

4. 범행 특성 비교

가. 학대 장소 및 기간 비교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는 학대 발생장소가 상이하다.

가정내 중복학대는 거의 대부분이 가해자 피해자의 공동주거지 혹은 가해자 주거지 나 피해자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92.3%). 비중복학대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82.7%이고 나머지는 실외공간(10.4%), 기타 공간(5.2%) 등에서 발생한다.

〈표 4-87〉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학대장소 비교

단위: 명(%)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공동거주지/아동 혹은 학대가해자 주거지	168(92.3)	191(82.7)	359(86.9)
유치원・어린이집/학교/학원/복지시설	-	4(1.7)	4(1.0)
기타	7(3.8)	12(5.2)	19(4.6)
실외공간	7(3.8)	24(10.4)	31(7.5)
Ä	182(100.0)	231(100.0)	413(100.0)

 $[\]chi^2$ =10.445, df=3, P(0.05

중복학대는 비중복학대 보다 학대피해기간이 길다. 중복학대의 평균 학대지속기간 은 694.81일이나, 비중복학대는 이보다 짧은 374.39일이다. 이러한 중복학대의 장기 화는 피해아동이 더 많은 후유증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4-88〉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학대피해기간 비교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t
평균(일)(표준편차)	694.81(1021.34)	374.39(729.15)	3.644***

가정내 중복학대는 비중복학대에 비하여 학대 빈도가 더 높다. 따라서 중복학대는 학대기간이 길뿐 아니라 학대빈도 역시 높다.

우선 일회성 학대 비율 면에서 비중복학대가 57.8%인데 비하여 중복학대는 31.0% 에 불과하고,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한 비율은 비중복학대는 14.3%인 반면, 중복학대 는 24.1%이다.

〈표 4-89〉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학대빈도 비교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거의 매일	45(24.1)	34(14.3)	79(18.6)
2~3일에 한 번	20(10.7)	18(7.6)	38(9.0)
일주일에 한 번	13(7.0)	18(7.6)	31(7.3)
2주일에 한 번	17(9.1)	4(1.7)	21(5.0)
1개월에 한 번	15(8.0)	9(3.8)	24(5.7)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2~3개월에 한 번	8(4.3)	5(2.1)	13(3.1)
6개월에 한 번	8(4.3)	5(2.1)	13(3.1)
1년에 한 번	3(1.6)	7(3.0)	10(2.1)
일회성	58(31.0)	137(57.8)	195(46.0)
계	87(100.0)	237(100.0)	424(100.0)

χ²=41.664, df=8, P(0.001

나. 공범 특성 비교

가정내 중복학대 여부에 따라 공범특성이 상이한기를 분석한 결과 공범유무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중복학대의 12.0%만이 공범이 있는 반면, 비중복학대는 23.3%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복학대가 오히려 단독범 형태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공범수, 공범자관계, 가해자 역할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4-90〉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공범 특성 비교

Ŧ	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검증치
	공범 없음	125(88.0)	224(76.7)	349(80.4)	x. ² =
공범유부	공범 있음	17(12.0)	68(23.3)	85(19.6)	7.768**,
	계	142(100.0)	292(100.0)	434(100.0)	df=1
공범수	평균(표준편차)	1.19(0.47)	1.30(0.50)		t=1.895
	부부/동거인/애인	17(100.0)	43(67.2)	60(74.1)	
	가족 및 친척	-	8(12.5)	8(9.9)	χ ² =7.530, df=3, n.s
공범자관계	동료/친구/선후배	-	8(12.5)	8(9.9)	
	모르는 사이	-	5(7.8)	5(6.2)	
	계	17(100.0)	64(100.0)	81(100.0)	
	주도적역할	13(76.5)	74(78.3)	60(77.9)	
가해자의 역할	보조적역할	4(23.5)	10(16.7)	14(18.2)	χ ² =1.199,
	단순가담	-	3(5.0)	3(3.9)	df=2, n.s
	계	17(100.0)	60(100.0)	77(100.0)	11.5

^{**} P(0.01

다. 학대 유형 비교

학대 유형이 중복학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학대 유형은 단일 학대와 복합학대로 나누어 집단차이검 증을 실시한 결과, 중복학대는 단일학대보다(36.4%), 복합학대가 많은 반면(63.6%), 비중복학대는 단일학대(54.3%)가 복합학대(45.7%)보다 많다.

구체적인 학대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아도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중복학대의 경우 복합학대(63.6%). 신체적 학대(20.0%). 방임(9.5%). 유기(3.6%). 정서적 학대 (3.2%)의 순이고, 비중복학대의 경우에는 복합학대(45.7%), 신체적 학대(37.1%), 방임 (8.6%), 유기(5.6%), 정서적 학대(3.0%)의 순으로 순위는 유사하나, 구체적인 비율 면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중복학대는 비중복학대에 비하여 복합학대, 방임이 많고, 비중복학대는 중복학대에 비하여 신체적 학대, 유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4-91〉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학대유형 비교

단위: 명(%)

7	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검증치
	단일학대	80(36.4)	145(54.3)	225(46.2)	χ ² =
복합학대 여부	복합학대	140(63.6)	122(45.7)	262(53.8)	15.624***
	계	220(100.0)	267(100.0)	487(100.0)	df=1
	신체적 학대	44(20.0)	99(37.1)	143(29.4)	
	정서적 학대	7(3.2)	8(3.0)	8(3.0) 15(3.1)	
하네이허	방임	21(9.5)	23(8.6)	44(9.0)	χ 2=
학대유형	유기	8(3.6)	15(5.6)	23(4.7)	20.332*** df=4
	복합학대	140(63.6)	122(45.7)	262(53.8)	u
	계	220(100.0)	267(100.0)	487(100.0)	

^{***}P(0.001

라. 학대 동기 비교

학대 동기는 중복응답으로 측정되어 빈도표만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검증치를 구할 수는 없으나, 빈도의 차이만으로도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 간의 차이가 명확하 게 관찰된다. 가정내 중복학대 가해자들은 양육부담과 양육 스트레스 때문에 아동을 학대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비중복학대 가해자들은 그보다는 양육 방식. 태도나 휴육 문제 차원에서 학대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구체적인 비율을 보면 중복학대의 학대동기는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42.9%), '가 해자 개인 특성'(20.3%),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18.9%)의 순으로 많지만, 비중복학대 의 경우에는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49.7%), '가해자 개인 특성'(17.2%),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13.0%)의 순이다.

〈표 4-92〉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학대동기 비교

단위: 명(%)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양육태도 혹은 훈육문제	97(18.9)	168(49.7)	265(31.1)
가해자 개인특성	104(20.3)	58(17.2)	162(19.0)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	220(42.9)	44(13.0)	264(31.0)
부부문제	57(11.1)	27(8.0)	84(9.9)
경제적 문제	26(5.1)	31(9.2)	57(6.7)
기타	9(1.8)	10(3.0)	19(2.2)
계	513(100.0)	338(100.0)	851(100.0)

^{*} 중복응답

중복학대 여부에 따라 학대행위시 가해자의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면, 음주 여부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내 중복학대 가해자들은 52.2%가 술을 마신 상태로 학대행위를 한 반면, 비중 복학대 가해자의 경우에는 30.2%만이 음주상태였다. 이는 중복학대 가해자들이 알코 올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점을 의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 약물복용 여부 면에서는 비중복학대 가해자의 2.0%만이 약물을 복용한 상태 로 학대행위를 하였고, 중복학대 가해자는 약물복용을 한 경우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4-93〉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비교

Ŧ	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검증치
가해자의	비음주	100(47.8)	171(69.8)	271(59.7)	χ ² =
음주여부	음주	109(52.2)	74(30.2)	183(40.3)	22.583***

Ŧ	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검증치
	계	209(100.0)	245(100.0)	454(100.0)	df=1
	미복용	208(100.0)	251(98.0)	459(98.9)	χ ² =4.107
가해자의 약물여부	복용	_	5(2.0)	5(1.1)	df=1
ㄱㄹળㅜ	계	208(100.0)	256(100.0)	464(100.0)	n.s

^{***}P(0.001

마. 학대 결과

중복학대 학대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후유증 유무와 후유증 유형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록조사의 한계상 피해자 후유증의 심각도를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복학대가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는지는 논의하 기 어렵다.

먼저 후유증 유무 면에서 중복학대 피해자의 81.4%가 후유증을 겪었고, 비중복학대 피해자 역시 그 비율이 76.8%로 큰 차이가 없다.

후유증 유형 면에서도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 모두 신체적 후유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복합후유증이 많다.

후유증 유무 면에서 중복학대가 아니더라도 비중복학대 역시 후유증이 나타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나타내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4-94〉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학대피해아동 후유증 비교

Ŧ	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검증치
	후유증 있음	158(81.4)	189(76.8)	347(78.9)	χ ² =1.385
후유증 유무	후유증 없음	36(18.6)	57(23.2)	93(21.1)	df=1
	계	194(100.0)	246(100.0)	440(100.0)	n.s
	신체적 결과	94(59.5)	136(72.0)	230(66.3)	
	정서적 결과	3(1.9)	1(0.5)	4(1.2)	χ ² =6.674
후유증 유형	사회적 결과	12(7.6)	10(5.3)	22(6.3)	df=3
	복합 후유증	49(31.0)	42(22.2)	91(26.2)	n.s
	계	158(100.0)	189(100.0)	347(100.0)	

5. 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 비교

가정내 중복학대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은 비율 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서비스 제공 비율은 중복학대는 55.3%, 비중복학대는 49.5%이고, 피해자 서비스 제공 비율은 중복학대는 79.2%, 비중복학대는 78.0%로 서로 유사한 수준이다.

〈표 4-95〉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단위: 명(%)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서비스 받음	57(55.3)	106(49.5)	163(51.4)
서비스 받지 않음	46(44.7)	108(50.5)	154(48.6)
계	103(100.0)	214(100.0)	317(100.0)

 $[\]chi^2$ =0.939, df=1, n.s

〈표 4-96〉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구분	중복학대	비중복학대	계
서비스 받음	152(79.2)	177(78.0)	329(78.5)
서비스 받지 않음	40(20.8)	50(22.0)	90(21.5)
계	192(100.0)	227(100.0)	419(100.0)

 $[\]chi$ ²=.088, df=1, n.s

제4절 친부모 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

1. 처분 특성 비교

가, 죄명 특성 비교

친부모 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 가해자의 죄명은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장애아 동관람, 구걸강요, 이용행위'(각각 74.7%와 71.9%), '상습'(각각 18.3%와 20.3%), '그 외 아동복지법' 위반(각각 3.8%와 7.8%) 순으로 많고, 구체적인 비율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표 4-97〉 친부모 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죄명 비교

단위: 명(%)

구분		친부모	그 외	계	검증치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아동매매)	5 (1.3)	_	5 (1.1)	x ² =4.300 df=5 n.s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4 (1.1)	_	4 (0.9)	
	제71조 제1항 제2호(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이용행위)	278 (74.7)	46 (71.9)	324 (74.3)	
	제71조 제1항 제3호 (양육알선금품취득, 아동금품유용)	3 (0.8)	_	3 (0.7)	
	그 외 아동복지법 위반	14 (3.8)	5 (7.8)	19 (4.4)	11.5
특례법	제6조(상습)	68 (18.3)	13 (20.3)	81 (18.6)	
계		372 (100.0)	64 (100.0)	436 (100.0)	

가정내 학대 중에서 가해자가 친부모인지. 친부모 이외 사람인지에 따라 가해자 죄명의 경합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친부모 학대는 경합이 아닌 비율이 35.6%이고, 친부모 이외 가족학대는 27.1%로 친부모 학대가 경합이 적다. 경합 죄명 중에서는 친부모 학대와 친부모 이외 가족학대 모두 동종경합이 가장 많았다(각각 32.6%와 31.4%). 그러나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4-98〉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경합여부 비교

단위: 명(%)

구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경합아님	132(35.6)	19(27.1)	151(34.2)	
이종경합	56(15.1)	13(18.6)	69(15.6)	
동종경합	121(32.6)	22(31.4)	143(32.4)	
동종+이종	62(16.7)	16(22.9)	78(17.7)	
계	371(100.0)	70(100.0)	441(100.0)	

 χ ²=2.962, df=3, n.s

나. 검거 특성 비교

친부모 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 모두 비신고의무자 신고에 의해 가해자가 검거 된 경우가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신고의무자 신고, 이어 피해자 신고 순이다. 순위 뿐만 아니라 두 학대 유형의 범주별 비율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4-99〉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검거경위 비교

단위: 명(%)

구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신고의무자 신고	107(29.0)	20(28.6)	127(28.9)	
비신고의무자 신고	172(46.6)	40(57.1)	212(48.3)	
피해자 신고	59(16.0)	6(8.6)	65(14.8)	
기타(자수, 현행범체포 등)	31(8.4)	4(5.7)	35(8.0)	
계	369(100.0)	70(100.0)	439(100.0)	

 χ^2 =4.074, df=3, n.s

이번에는 신고에 의해 가해자가 검거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러나 최초신고자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나누어 비교하 였을 때나, 9가지 신고자 유형별로 상세히 비교하여보았을 때 모두 친부모 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표 4-100⟩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최초신고자 비교

단위: 명(%)

	구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검증치
	신고의무자	107(32.6)	20(30.8)	127(32.3)	χ ² =.085
최초 신고자	비신고의무자	221(67.4)	45(69.2)	266(67.7)	df=1
2274	계	328(100.0)	65(100.0)	393(100.0)	n.s
	아동보호전문기관	54(17.7)	6(4.4)	60(13.6)	
	교원/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자	39(12.8)	12(8.8)	51(11.5)	
-1-	의료인/소방구급대원	14(4.6)	1(0.7)	15(3.4)	
	아동복지/장애인복지/사회복지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10(3.3)	1(0.7)	11(2.5)	χ ² =
최초 신고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3)	7(5.1)	8(1.8)	13.143
(상세)	부/모/위탁부모	108(35.4)	106(77.4)	214(48.4)	df=8 n.s
	조부모/친인척/형제자매	19(6.2)	3(2.2)	22(5.0)	11.5
	이웃	29(9.5)	1(0.7)	30(6.8)	
	낯선사람	31(10.2)	-	31(7.0)	
	계	305(100.0)	137(100.0)	442(100.0)	

다. 검찰 및 법원 처분 특성 비교

검찰 처분특성은 가해자 구속여부와 검찰 처분결과로 나누어 비교하여 보았다. 집단차이검증 결과 친부모 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는 구속여부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검찰 구형 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속율을 보면, 친부모 학대는 14.8%, 그 외 가족학대는 18.8%로 그 외 가족학대가 다소 높기는 하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그러나 검찰 처분결과를 보면 친부모학대는 기소유예가 가장 많고(35.8%), 구공판 (33.4%), 부리소(12.7%)의 순인 반면, 친부모 외 가족학대는 구공판이 가장 많고 (45.7%), 기소유예와 불기소가 비율이 동일하다(각각 15.7%). 따라서 친부모 학대보다 친무보 외 가족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 중하다고 할 수 있고, 친부모 가해자에 대해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다.

〈표 4-101〉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구속여부 비교

단위: 명(%)

구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구속	54(14.8)	13(18.8)	67(15.5)
불구속	310(85.2)	56(81.2)	366(84.5)
계	364(100.0)	69(100.0)	433(100.0)

 $[\]chi$ ²=.712, df=1, n.s

〈표 4-102〉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검찰처분결과 비교

단위: 명(%)

구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구공판	124(33.4)	32(45.7)	156(35.4)
구약식	25(6.7)	7(10.0)	32(7.3)
기소유예	133(35.8)	11(15.7)	144(32.7)
불기소(혐의 없음/공소권 없음/죄가안됨)	47(12.7)	11(15.7)	58(13.2)
타관송치	23(6.2)	7(10.0)	30(6.8)
기소중지/기타 19(5.1)		2(2.9)	21(4.8)
계	371(100.0)	70(100.0)	441(100.0)

x ²=12.989. df=5. P(0.05

검찰 구형량을 비교하여 본 결과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 가해자에 대한 구형, 유기징역형기, 집행유예기간의 면에서 차이가 없었고, 다만 벌금 액수 면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는데, t test 결과 친부모학대 가해자 보다(평균 217만원) 친부모 외 가족학대 가해자의 벌금이 더 많았다(평균 300만원).

〈표 4-103〉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구형량 비교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친부모	그 외	계	검증치
구형	유기징역	59(46.1)	15(46.9)	74(46.2)	
	집행유예/보호관찰/ 수강명령	40(31.2)	12(37.5)	52(32.5)	χ^2 =.907, df=2,
	벌금	29(22.7)	5(15.6)	34(21.2)	n.s
	계	128(100.0)	32(100.0)	160(100.0)	

	구분	친부모	그 외	계	검증치
	1-12개월	8(34.8)	3(42.9)	11(3.7)	χ ² =1.189,
	13-24개월	8(34.8)	1(14.3)	9(30.0)	
유기징역	25-36개월	3(13.0)	1(14.3)	4(13.3)	df=3,
형기	37개월 이상	4(17.4)	2(28.6)	6(20.0)	n.s
	계	23(100.0)	7(100.0)	30(100.0)	
	평균 (표준편차)	27.04 (24.17)	30.57 (26.73)		t=.313
	1-12개월	2(6.7)	1(14.3)	3(8.1)	x ² =1.632, df=2, n.s
	13-24개월	23(76.7)	6(85.7)	29(78.4)	
집행유예기간	25-36개월	5(16.7)	-	5(13.5)	
2011 11 12	계	30(100.0)	7(100.0)	37(100.0)	
	평균 (표준편차)	24.57 (7.51)	22.29 (4.54)		t=.767
	30-50만원	1(5.9)	_	1(5.3)	
	51-100만원	3(17.6)	_	3(15.8)	
	101-200만원	6(35.3)	_	6(31.6)	$\chi^2 = 3.074$,
벌금	201-300만원	6(35.3)	2(100.0)	8(42.1)	df=4, n.s
총액수	500만원	1(5.9)	-	1(5.3)	
	계	17(100.0)	2(100.0)	19(100.0)	
	평균 (표준편차)	217.94 (116.61)	300.00 (0.00)		t=2.902*

^{*} P(0.05

최종심 유형 역시 친부모가 가해자인지 그 외 가족이 가해자인지에 따라서는 차이 가 없다. 두 유형의 학대 모두 60-70%가 1심, 20%대가 2심이고, 3심은 10% 미만이다.

〈표 4-104〉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최종심유형 비교

구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1심	104(64.6)	32(74.4)	136(66.7)
2심	47(29.2)	10(23.3)	57(27.9)
3심	10(6.2)	1(2.3)	11(5.4)
계	161(100.0)	43(100.0)	204(100.0)

 $[\]chi$ ²=1.869 df=2, n.s

변호인 유무 역시 친부모가 가해자인지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친부모 학대와 그 외 가족 학대 모두 변호인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아 50-60%를 차지하며, 변호인 있는 경우에는 국선이 가장 많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표 4-105〉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변호인유무 비교

단위: 명(%)

구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변호인 없음	205(64.3)	34(54.8)	239(62.7)
국선 변호인	87(27.3)	19(30.6)	106(27.8)
사선 변호인	27(8.5)	9(14.5)	36(9.4)
계	319(100.0)	62(100.0)	381(100.0)

 $[\]chi^2$ =2.960, df=2, n.s

라.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 비교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의 범행시인정도와 피해자의 가해자 처별에 대한 태도 역시 친무보 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친부모가 아닌 경우보다 시인하는 비율이 다소 높고. 피해 자들은 친부모가 가해자일 때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다소 높기는 하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4-106〉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태도 비교

구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검증치
가해자의 범행시인 정도	전적으로 시인	148(41.0)	23(34.3)	171(40.0)	
	일부시인	151(41.8)	28(41.8)	179(41.8)	$\chi^2 = 2.024$
	부인	62(17.2)	16(23.9)	78(18.2)	df=2 n.s
	계	361(100.0)	67(100.0)	428(100.0)	11.5
	처벌을 원함	112(43.6)	26(56.5)	138(45.5)	χ ² =3.588
TITLOI CUL	처벌을 원치 않음	116(45.1)	18(39.1)	134(44.2)	
피해자의 태도	양가감정을 보임	29(11.3)	2(4.3)	31(10.2)	df=2 n.s
	계	257(100.0)	46(100.0)	303(100.0)	11.0

고소취하 여부와 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친부모 가족학대인지, 친부모가 아닌자의 가족학대인지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친부모가 가해자 라고 해서 고소취하율이 더 높다거나. 합의비율이 더 높지 않다. 구체적인 비율을 비교하여 보며 오히려 친부모가 아닌 가족학대의 고소취하율과 합의율이 더 높다. 다만 이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표 4-107〉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고소취하 및 합의 여부 비교

단위: 명(%)

	구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검증치
고소 취하 여부	고소 취하안함	47(17.9)	10(18.9)	57(18.1)	x ² =.026
	고소 취하함	215(82.1)	43(81.1)	258(81.9)	df=1
	계	262(100.0)	53(100.0)	315(100.0)	n.s
합의 여부	합의안함	169(73.2)	36(65.5)	205(71.7)	x ² =1.299
	합의함	62(268)	19(34.5)	81(28.3)	n.s
	계	231(100.0)	55(100.0)	286(100.0)	df=1

2. 가해자 특성 비교

가.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친부모 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는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여러 면에서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가정내 학대 중에서도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와 아닌 경우 가해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직업이 다르다. 다만 가해자의 국적과 교육수준, 종교는 차이가 없었다.

먼저 가해자 성별을 살펴보면, 친부모 학대의 가해자는 남성의 비율이 더 높고 (60.1%), 친부모 외 가족학대는 남녀 비율이 유사한데,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다 (54.3%). 다시 말해서 친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버지일 가능성 이 더 높고, 친부모가 아닌 가족이 학대를 하는 경우는 어느 한쪽의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남녀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유사하다.

가해자 연령 면에서는 t-test 결과 친부모 학대의 가해자 평균 연령은 39.56세인 반면, 그 외 가족학대는 40.59세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카이검증을 통해 연령구간별 비율분포를 비교한 결과로는 친부모 학대는 40대가, 그 외 가족학대는 30대가 가장 많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국적은 두 유형 모두 대부분이 국내 국적자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가해자 교육수준 역시 친부모 학대는 고졸, 중졸, 대졸의 순이고, 그 외 가족학대는 고졸, 대졸, 중졸 및 초졸의 순으로 순위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가해자 혼인상태 면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관찰된다. 친부모 학대의 가해자들은 별거/이혼/사별(37.2%)와 초혼(34.7%)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그 외 가족학대는 동거 (35.9%)와 재혼(25.0%). 초혼(23.4%)이 많다. 이같은 결과는 친부모와 비친부모로 학 대유형을 나누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가해자 직업을 보면, 먼저 미취업비율은 친부모 외 가족학대 가해자가 더 높아서 37.5%이고, 친부모 학대의 경우 25.3%이다. 직종 면에서는 친부모 학대는 단순노무직 (19.8%), 사무직종사자(12.5%), 가정주부(11.4%)의 순인 반면, 그 외 가족학대는 전문 관리직(18.8%), 단순노무직(17.2%), 서비스판매직(10.9%)의 순이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종교여부 면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08〉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Ŧ	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검증치
	남자	223(60.1)	32(45.7)	255(57.8)	0
가해자 성별	여자	148(39.9)	38(54.3)	186(42.2)	$\chi^2 = 5.003*$
	계	371(100.0)	70(100.0)	441(100.0)	ui-i
	20대 미만	2(0.5)	_	2(0.5)	
	20대	45(12.3)	12(17.6)	57(13.1)	
	30대	122(33.2)	24(35.3)	146(33.6)	
	40대	158(43.1)	19(27.9)	177(40.7)	χ 2=
가해자 연령	50대	37(10.1)	7(10.3)	44(10.1)	24.224*** df=6
	60대	1(0.3)	4(5.9)	5(1.1)	ui o
	70대 이상	2(0.5)	2(2.9)	4(0.9)	
	계	367(100.0)	68(100.0)	435(100.0)	
	평균(표준편차)	39.56(8.92)	40.59(11.68)		t=.687

Ŧ	¹ 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검증치	
	국내	367(98.9)	69(98.6)	436(98.9)		
가해자 국적	국외	4(1.1)	1(1.4)	5(1.1)	χ^2 =.065, df=1	
	계	371(100.0)	70(100.0)	441(100.0)	n.s	
	초졸 이하	29(9.2)	5(8.9)	34(9.2)		
	중졸	64(20.3)	5(8.9)	69(18.6)		
가해자의	고졸	154(48.9)	35(62.5)	189(50.9)	χ ² =6.670	
교육수준	대졸	59(18.7)	11(19.6)	70(18.9)	df=4 n.s	
	대학원 이상	9(2.9)	-	9(2.4)	11.5	
	계	315(100.0)	56(100.0)	371(100.0)		
	미혼	18(5.0)	6(9.4)	24(5.7)		
	동거	42(11.7)	23(35.9)	65(15.3)	x ² = 48.318*** df=4	
가해자의	결혼(초혼)	125(34.7)	15(23.4)	140(33.0)		
혼인상태	재혼	41(11.4)	16(25.0)	57(13.4)		
	별거/이혼/사별	134(37.2)	4(6.2)	138(32.5)		
	계	360(100.0)	64(100.0)	424(100.0)		
	미취업	91(25.3)	24(37.5)	115(27.2)		
	전문관리직	32(8.9)	12(18.8)	44(10.4)		
	사무직	45(12.5)	4(6.2)	49(11.6)		
	서비스판매직	39(10.9)	7(10.9)	46(10.9)		
가해자의 검거	농림어업	5(1.4)	_	5(1.2)	χ ² =	
당시 직업	숙련기능원	33(9.2)	1(1.6)	34(8.0)	15.875* df=8	
	단순노무직	71(19.8)	11(17.2)	82(19.4)	.	
	가정주부	41(11.4)	5(7.8)	46(10.9)		
	기타	2(0.6)	_	2(0.5)		
	계	359(100.0)	64(100.0)	423(100.0)		
	유	132(48.5)	23(51.1)	155(48.9)	x ² =.103	
가해자 종교	무	140(51.5)	22(48.9)	162(51.1)	df=1	
	계	272(100.0)	45(100.0)	317(100.0)	n.s	

^{*} P(0.05, ***P(0.001

가정내 학대 중 가해자가 친부모 학대인지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주거지역이나 주거안정성이 상이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내 학대의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대도시에 거주하고, 주거가 일정하다.

〈표 4-109〉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거주지역 및 주거안정성 비교

단위: 명(%)

구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검증치
가해자 주거지역	대도시	328(89.4)	58(87.9)	386(89.1)	χ ² =.129,
	읍면지역	39(10.6)	8(12.1)	47(10.9)	df=1
	계	367(100.0)	66(100.0)	433(100.0)	n.s
가해자 주거 안정성	주거일정	338(92.9)	60(93.8)	398(93.0)	χ ² =.067
	주거부정	26(7.1)	4(6.2)	30(7.0)	df=1
	계	364(100.0)	64(100.0)	428(100.0)	n.s

나. 가해자의 전과 특성 비교

가해자의 전과특성은 가정내 학대의 가해자가 친부모인지 그 외 가족인지에 따라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포횟수, 전과유무, 총 전과횟수, 실형전과 횟수, 아동학대로 인한 체포경험 여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110〉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전과특성 비교

Ŧ	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검증치
총 체포횟수	평균 (표준편차)	5.01 (5.24)	5.18 (5.90)		t=.179
	전과 있음	211(59.3)	35(52.2)	246(58.2)	χ ² =1.145
전과유무	전과 없음	145(40.7)	32(47.8)	177(41.8)	df=1
	계	356(100.0)	67(100.0)	423(100.0)	n.s
총 전과횟수	평균 (표준편차)	4.62 (4.79)	4.17 (3.94)		t=.520
실형전과	평균 (표준편차)	0.42 (1.25)	0.36 (0.77)		t=.408
01 = -1-11	있음	12(3.3)	3(4.3)	15(3.4)	0
아동학대로 인한 체포	없음	357(96.7)	67(95.7)	424(96.6)	χ^2 =.191, df=1
	계	369(100.0)	70(100.0)	439(100.0)	n.s

다. 가해자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집단차이검증 결과 가해자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유무와 적응 및 행동문제 유무역시 가해자가 친부모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친부모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 모두 가해자의 20%대가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약70% 정도가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11〉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단위: 명(%)

구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검증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유무	유	73(26.6)	9(23.7)	82(26.3)	χ ² =.151
	무	201(73.4)	29(76.3)	230(73.7)	df=1
	계	274(100.0)	38(100.0)	312(100.0)	n.s
적응·행동문제 유무	유	165(69.6)	26(72.2)	191(70.0)	χ ² =.101
	무	72(30.4)	10(27.8)	82(30.0)	df=1
	계	237(100.0)	36(100.0)	273(100.0)	n.s

3. 피해자 특성 비교

가.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학대 피해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역시 가해자가 친부모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가 친부모인가, 친부모가 아닌가에 따라 가해자가 선택하는 피해아동이 다르지 않으며, 아동학대는 학대아동의 성별, 연령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거주지역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12〉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Ŧ	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검증치
	여자	203(49.5)	29(38.2)	232(47.7)	x ² =3.313
성별	남자	207(50.5)	47(61.8)	254(52.3)	df=1
	계	410(100.0)	76(100.0)	486(100.0)	n.s

7	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검증치
	미취학 아동 (6세 이하)	114(27.7)	16(21.1)	130(26.7)	
	학령기 아동 (7세-12세)	152(37.0)	38(50.0)	190(39.0)	χ^2 =4.609 df=2
사건당시 피해자의 연령	청소년 (13세 이상)	145(35.3)	22(28.9)	167(34.3)	n.s
	계	411(100.0)	76(100.0)	487(100.0)	
	평균 (표준편차)	8.92 (5.08)	8.93 (3.92)		t=.023
-1-U-101	대도시	359(89.3)	65(87.8)	424(89.1)	χ ² =.138,
피해자의 주거지역	읍면지역	43(10.7)	9(12.2)	52(10.9)	df=1,
ナハハゴ	계	402(100.0)	74(100.0)	476(100.0)	n.s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권대상	수급권	80(30.7)	6(15.4)	89(28.7)	χ ² =3.867
	비수급권	181(69.3)	33(84.6)	214(71.3)	df=1,
018290	계	261(100.0)	39(100.0)	300(100.0)	n.s

나.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 간의 관계 비교

가해자가 친부모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정내 학대의 피해자 수와 피해자들간의 관계 가 상이하지 않다.

〈표 4−113〉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 수 및 피해자들간의 관계 비교

단위: 명(%)

=	P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검증치
피해자의 수	평균(표준편차)	1.30(0.63)	1.20(0.40)		t=1.748
	형제자매	79(96.3)	13(92.9)	92(95.8)	9
피해자들간의 관계	같은 시설 이용자 및 친구	3(3.7)	1(7.1)	4(4.2)	χ^2 =.364 df=1,
	계	82(100.0)	14(100.0)	96(100.0)	n.s

다. 가해자-피해자 관계 특성 비교

가해자가 친부모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거비율이 상이하지는 않다. 친부모 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 모두 90% 이상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4〉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가해자 동거여부 비교

단위: 명(%)

구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동거	382(93.2)	72(94.7)	454(93.4)
비동거	28(6.8)	4(5.3)	32(6.6)
계	410(100.0)	76(100.0)	486(100.0)

 $[\]chi$ ²=.256, df=1, n.s

라. 피해자의 가족 특성

피해자의 가족특성은 피해자 동거가족수와 피해자 가족의 사회적 및 지리적 고립여 부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이 중에서 피해자 동거가족 수 면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사회적 및 지리적 고립 여부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피해아동들의 동거가족수를 살펴보면, 친부모 학대의 경우에는 평균 3.66명이 나, 그 외 가족학대의 경우 4.05명으로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동거가족수가 더 많다.

〈표 4-115〉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 가족유형 및 동거가족수 비교

단위: 명(%)

T	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검증치
 피해아동의 동거가족수	평균 (표준편차)	3.66 (1.27)	4.05 (1.21)		t=2.445*

^{*} P(0.05

친부모 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 모두 피해자 가족이 사회적,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비율은 20%대로 차이가 없다.

〈표 4-116〉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의 사회적·지리적 고립여부 비교

구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예	58(20.4)	13(22.4)	71(20.8)
아니요	226(79.6)	45(77.6)	271(79.2)
계	284(100.0)	58(100.0)	342(100.0)

 $[\]chi^2$ =.116, df=1, n.s

마. 피해자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친부모 학대 피해아동의 15.0%가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친부모 외 가족학대는 그 비율이 25.0%로 약 10%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또한 친부모 가족 피해아동의 59.4%가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친부 모 외 가족학대 피해아동은 그 비율이 무려 74.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친부모가족이 아닌 경우 피해아동의 적응 및 행동문제가 학대 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4-117〉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비교

단위: 명(%)

구는	<u> </u>	친부모	친부모 외	계	검증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여부	유	37(15.0)	10(25.0)	47(16.4)	χ ² =2.524
	무	210(85.0)	30(75.0)	240(83.6)	df=1
	계	247(100.0)	40(100.0)	287(100.0)	n.s
적응·행동문제 여부	유	158(59.4)	46(74.2)	204(62.2)	9
	무	108(40.6)	16(25.8)	124(37.8)	$\chi^2 = 4.681*$
-11	계	266(100.0)	62(100.0)	328(100.0)	ui=1

^{*} P(0.05

4. 범행 특성 비교

가. 학대 장소 및 기간 비교

학대장소, 학대 피해기간, 학대빈도를 비교하여 본 결과, 친부모 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간에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친부모 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 모두 80%대가 가해자와 피해자 공동주거지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하였다. 피해지속기간은 친부모 학대는 529.80일, 그 외 가족학대는 419.12일로 친부모 학대가 더 길기는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학대 빈도는 두 유형의 학대 모두 40% 정도가 일회성 학대이고. 10%대가 거의 매일 학대행위가 이루어졌다.

〈표 4-118〉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학대장소 비교

단위: 명(%)

구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공동거주지/아동ㆍ가해자 주거지	299(86.4)	60(89.6)	359(85.9)
유치원·어린이집/학교/학원/복지시설	3(0.90	1(1.5)	4(1.0)
기타	15(4.3)	4(6.0)	19(4.6)
실외공간	29(8.4)	2(3.0)	31(7.5)
계	346(100.0)	67(100.0)	413(100.0)

 $[\]chi$ ²=2.794, df=3, n.s

〈표 4-119〉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학대피해기간 비교

	친부모	친부모 외	t
평균(일)	529.80	419.12	1.188
(표준편차)	(915.53)	(658.96)	

〈표 4-120〉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학대빈도 비교

단위: 명(%)

구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거의 매일	70(19.4)	9(14.3)	79(18.6)
2~3일에 한 번	31(8.6)	7(11.1)	38(9.0)
일주일에 한 번	23(6.4)	8(12.7)	31(7.3)
2주일에 한 번	18(5.0)	3(4.8)	21(5.0)
1개월에 한 번	21(5.8)	3(4.8)	24(5.7)
2~3개월에 한 번	12(3.3)	1(1.6)	13(3.1)
6개월에 한 번	10(2.8)	3(4.8)	13(3.1)
1년에 한 번	9(2.5)	1(1.6)	10(2.4)
일회성	167(46.3)	28(44.4)	195(46.0)
계	361(100.0)	63(100.0)	424(100.0)

 $[\]chi$ ²=5.626, df=8, n.s

나. 공범 특성 비교

친부모가 가해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공범여부와 공범수는 차이가 없었다. 친부모 학대의 경우 공범이 있는 비율은 21.1% 공범수는 1.27명, 그 외 가족학대는 10.9%, 1.24명이며,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그러나 공범자관계와 가해자 역할 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 학대 가해자들간의 관계는 부부/동거인/애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75.7%). 그 외 가족학대의 공범들은 부부/동거인/애인(57.1%)과 동료/친구/후배(42.9%)의 두 집단 으로 양분되어 있다.

범행시 가해자의 역할을 보면 친부모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 모두 대부분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각각 78.6%, 71.4%), 친부모 학대는 보조적 역할의 비중이 (20.0%). 그 외 가족학대 가해자는 단순가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28.6%).

〈표 4-121〉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공범 특성 비교

단위: 명(%)

-	구분		그 외	계	검증치
	공범 없음	292(78.9)	57(89.1)	349(80.4)	χ ² =3.565
공범여부	공범 있음	78(21.1)	7(10.9)	85(19.5)	df=1,
	계	370(100.0)	64(100.0)	434(100.0)	n.s
공범수	평균(표준편차)	1.27(0.48)	1.24(0.58)		t=.430
	부부/동거인/애인	56(75.7)	4(57.1)	60(74.1)	
	가족 및 친척	8(10.8)	_	8(9.9)	$\chi^2 =$
공범자관계	동료/친구/선후배	5(6.8)	3(42.9)	8(9.9)	9.965*,
	모르는 사이	5(6.8)	-	5(6.2)	df=3,
	계	74(100.0)	7(100.0)	81(100.0)	
	주도적역할	55(78.6)	5(71.4)	60(77.9)	
가해자의 역할	보조적역할	14(20.0)	_	14(18.2)	χ ² =
	단순가담	1(1.4)	2(28.6)	3(3.9)	13.475**, df=2,
	계	70(100.0)	7(100.0)	77(100.0)	ui 2,

^{*} P(0.05, ** P(0.01

다. 학대 유형 비교

학대 유형 면에서도 친부모 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친부모 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 모두 50%대가 복합학대이고 나머지 40%대는 단일학대이다. 또한 구체적인 학대 유형 면에서는 친부모 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 모두 복합학대, 신체적 학대, 방인, 유기, 정서적 학대 순으로 많다.

〈표 4-122〉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학대유형 비교

단위: 명(%)

7	구분		친부모 외	계	검증치
	단일학대	189(46.0)	36(47.4)	225(46.2)	χ ² =.049,
복합학대 여부	복합학대	222(54.0)	40(52.6)	562(53.8)	df=1,
	계	411(100.0)	76(100.0)	487(100.0)	n.s
	신체적 학대	113(27.5)	30(39.5)	143(29.4)	
	정서적 학대	14(3.4)	1(1.3)	15(3.1)	
하네이허	방임	41(10.0)	3(3.9)	44(9.0)	χ ² =7.481,
학대유형	유기	21(5.1)	2(2.6)	23(4.7)	df=4, n.s
	복합학대	222(54.0)	40(52.6)	262(53.8)	11.0
	계	411(100.0)	76(100.0)	487(100.0)	

라. 학대 동기 비교

학대 동기는 중복응답으로 측정되어 빈도분포만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친부모 학대는 가해자 개인특성 때문에 학대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30.7%), 이어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28.6%), 경제적 문제(16.8%)의 순이나, 친부모 외 가족학 대의 학대동기는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가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고(49.7%), 가해자 개인 특성(17.2%),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13.0%)의 순이다. 검증치를 구할 수는 없으 나 두 학대 유형간의 학대동기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표 4-123〉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학대동기 비교

구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양육태도 혹은 훈육문제	97(28.6)	168(49.7)	265(39.1)
가해자 개인특성	104(30.7)	58(17.2)	162(23.9)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	46(13.6)	44(13.0)	90(13.3)
부부문제	26(7.7)	31(9.2)	57(88.4)
경제적 문제	57(16.8)	27(8.0)	84(12.4)
기타	9(2.7)	10(3.0)	19(2.8)
계	339(100.0)	338(100.0)	677(100.0)

^{*} 중복응답

가해자가 학대 당시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비교한 결과 역시 친부 모 가족과 그 외 가족학대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표 4-124〉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비교

단위: 명(%)

Ŧ	구분		친부모 외	계	검증치	
	비음주	225(58.3)	46(67.6)	271(59.7)	$\chi^2 = 2.104$,	
가해자의 음주여부	음주	161(41.7)	22(32.4)	183(40.3)	df=1,	
ㅁㅜጣㅜ	계	386(100.0)	68(100.0)	454(100.0)	n.s	
=1-11=101	미복용	390(99.0)	69(98.6)	459(98.9)	χ ² =.095,	
가해자의 약물여부	복용	4(1.0)	1(1.4)	5(1.1)	df=1,	
그르이구	계	394(100.0)	70(100.0)	464(100.0)	n.s	

마. 학대 결과

피해아동이 경험하는 후유증의 면에서도 친부모 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가 친부모인지 아닌지에 따라 학대피해 아동이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다르지 않으며, 후유증을 경험하는 경우에도 특정 유형의 후유증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상이하지 않다. 가해자가 친부모이든 아니 든 피해아동들의 많은 수가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친부모 학대 772.%, 그 외 가족학대 88.2%), 신체적 후유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복합 후유증, 사회적 후유증, 정서적 후유증의 순으로 많다.

〈표 4-125〉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학대피해아동 후유증 비교

구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검증치	
	후유증 있음	287(77.2)	60(88.2)	347(78.9)	χ ² =4.238	
후유증 유무	후유증 없음	85(22.8)	8(11.8)	93(21.1)	df=1	
	계	372(100.0)	68(100.0)	440(100.0)	n.s	
	신체적 결과	184(64.1)	46(76.7)	230(66.3)		
	정서적 결과	4(1.4)	-	4(1.2)	$\chi^2 = 5.090,$	
후유증 유형	사회적 결과	21(7.3)	1(1.7)	22(6.3)	df=3	
	복합 후유증	78(27.2)	13(21.7)	91(26.2)	n.s	
	계	287(100.0)	60(100.0)	347(100.0)		

5. 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 비교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학대 가해자와 피해아동들이 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받았는지 를 비교한 결과, 가해자 서비스 수혜여부 면에서만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친부모 학대 가해자의 54.3%가 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반면,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31.7%이다. 이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친부모 학대의 경우 검찰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면에서는 친부모 학대 피해아동의 77.1%, 그 외 가족 학대 피해아동의 86.4%가 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받아. 친부모 외 가족학대 피해자의 수혜율이 다소 높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표 4-126〉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단위: 명(%)

			<u></u>
구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서비스 받음	150(54.3)	13(31.7)	163(51.4)
서비스 받지 않음	126(45.7)	28(68.3)	154(48.6)
계	276(100.0)	41(100.0)	317(100.0)

 $[\]chi^2 = 7.325$, df=1, P(0.01

〈표 4-127〉 친부모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 서비스 제공여부 비교

구분	친부모	친부모 외	계
서비스 받음	272(77.1)	57(86.4)	329(78.5)
서비스 받지 않음	81(22.9)	9(13.6)	90(21.5)
계	353(100.0)	66(100.0)	419(100.0)

 x^2 = 2.857, df = 1, n.s

제5절 아동학대 살인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17일까지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한 모든 신문기사를 검색하고, 총75건의 아동학대살인 사건기사를 수집하였다. 기사검 색은 1) 21개의 일간지 및 주간·월간지%의 2) 네이버, 구글, 야후 검색, 3) SBS, 뉴스,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검색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신문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변인을 추출하였으며, 이때 앞서 분석한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의 변인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능한 변인 측정방법을 동일하게 하였다.

1. 아동학대살인사건 신문보도 현황

최근 11년 9개월 동안(2004-2015. 9) 신문 및 뉴스에 보도된 아동학대 살인사건은 총 75사례이다. 〈표 하단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망아동수와 비교하여 보면 동일 기간동안 총134명의 아동이 사망하였는데, 따라서 아동보호전문 기관 통계와 비교할 때 약56% 정도의 사건이 보도된 셈이다.

보도건수와 관련통계를 검토한 결과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살인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문보도 건수를 보면 해마다 보도 건수가 상이하기는 하나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6건 이하였던 것이 2012년을 기점으로 폭증하여 매년 10건 이상의 아동학대살인 사건이 보도되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 사망아동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2013년에는 22명이 사망 하여 최근 11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⁹⁶⁾ 카인즈(http://www.kinds.or.kr/)를 통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 경상일보, 세계 일보, 부산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영남일보, 한국일보, 헤럴드 경제, 강원일보, 대전일보, 데일리안, 수원일보, 머니투데이, 로이슈 경북매일, 전민일보를 분석하였고, 중앙일보, 동아일 보, 조선일보 신문기사는 별도로 검색함.

⟨표 4-128⟩ 아동학대 살인사건 신문보도 현황

단위: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기사로 보도된 사망 아동 수	6	6	-	6	1	3	4	6	14	13	10	6	75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망 아동 수	11	16	7	7	8	8	3	13	10	22	17	12	134

^{*} 출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04-2015.6)

^{**} 신문기사(2005-2015.9)



[그림 4-1] 아동학대 살인사건 현황

2. 아동학대살인의 일반적 특성

가. 처분 특성

1) 신고특성

아동학대 살인 사건의 신고자는 일반 아동학대와 달리, 가해자 본인이 가장 많다 (25.7%). 가해자 본인이 아동을 살해한 후 직접 자수하는 경우가 전체 사건의 1/4인 셈이다. 신문기사 분석의 특성상 신고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건이 많아서 미상 비율이 48.1%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해자 본인의 자수가 차비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신고자 유형은 타인(9.3%), 친부모(5.3%), 친인척(5.3%)의 순이다.

또한 신고자의 면식 여부를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의 사건이 아는 사람에 의해 신고

되며(90.7%), 모르는 사람에 의한 신고는 10% 미만이다.

/TT 4 100\		A FOLL I 74 OI	
〈毌 4-129〉	아놀악대	실인사건의	신보사

신고자	빈도	%
가해자 본인	20	26.7
친부모	4	5.3
친인척	4	5.3
의료인	2	2.7
기타(이웃, 친부의 지인)	2	2.6
타인	7	9.3
미상	36	48.1
계	75	100

신고자에 이어 신고기관을 보면,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30.7%로 가장 많고, 119가 17.3%, 병원이 4.0%,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7%이다. 다만 미상이 45.3%로 상당히 많다.

〈표 4-130〉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신고기관

신고기관	빈도	%
경찰	23	30.7
119	13	17.3
병원	3	4.0
아동보호전문기관	2	2.7
미상	34	45.3
계	75	100

2) 법원 처분 특성

아동학대살인 가해자에 대한 법원 처분 현황을 보면 유기징역이 22.6%이며, 미상 비율이 69.8%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약75%가 유기징역형을 받는 셈이다. 형기는 1년6 월에서 3년 사이가 가장 많고, 4-6년이 7.5% 수준이며, 12년 이상은 3.8%이다.

그러나 주범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8사례 있었다.

구	분	빈도	%
	1년6월-3년	9	8.5
OZITICI	4-6년	8	7.5
유기징역	7-10년	3	2.8
	12-20년	4	3.8
집행유예	2년-4년	6	5.7
벌금500만원-700만원		2	1.9
미상		74	69.8

106

100

⟨표 4-131⟩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가해자 형량

나. 아동학대살인 가해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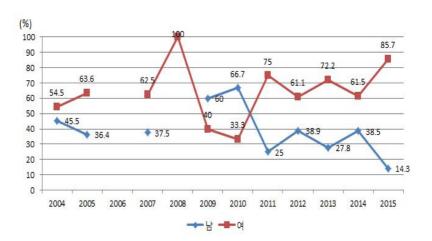
계

75개 아동학대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106명이었다.

이들 가해자의 성별은 남자가 35.8% 여자가 64.2%로 여성가해자가 훨씬 많다((〈표 4-132〉 참고). 지난 12년간(2004-2015.9)의 추이를 보아도,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여성가해자 비율이 항상 높았다(〈그림 4-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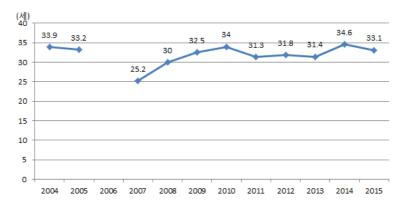
〈표 4−132〉	아농학다	살인사건	가해자의	성별과 '	연령
-----------	------	------	------	-------	----

구	분	빈도	%
	남	38	35.8
성별	Ф	68	64.2
	계	106	100
	10대	7	6.6
연령	20대	30	28.3
	30대	44	41.5
	40대	14	13.2
	50대	2	1.9
	미상	9	8.5
	계	106	100
	평균연령 (표준편차)	32.22세 (8.57)	



[그림 4-2] 아동학대살인 가해자 성별 추이

가해자 연령 면에서는 30대가 가장 많고(41.5%), 그 다음은 20대(28.3%), 40대 (13.2%)의 순이다. 미상 비율은 8.5%이다(〈표 4-132〉 참고).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가해자 평균 연령은 2007년도를 제외하고는 30대 초반으로 대체로 31-34세 정도이 며, 지난 12년간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그림 4-3〉 참고).



[그림 4-3] 아동학대살인 가해자 평균연령 추이

다. 아동학대살인 피해자 특성

1)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75개의 아동학대살인 보도사건의 피해아동은 총 75명으로 한 사건에서 두명 이상 의 아동이 살해당한 사건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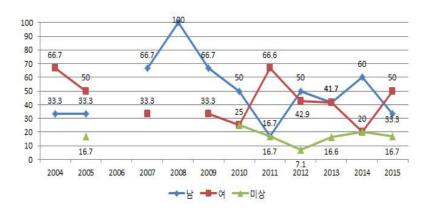
75명의 학대살인 피해아동들은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유사하다. 남자아동이 46.7% 이고, 여자아동이 41.3%이다. 이는 아동학대 살인 가해자가 여성 비율이 훨씬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표 4-133〉 참고). 그러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해마다 상이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2007년부터 2010년, 2012년, 2014년의 여섯 해는 남자아동 비율 이 높았고, 2004년, 2005년, 2011년, 2015년의 네 해는 여자아동 비율이 높았다. 다만 12년 동안의 평균 성별 비율 면에서는 남녀 비율이 유사하다(〈그림 4-4〉 참고).

〈표 4-133〉 아동학대 살인사건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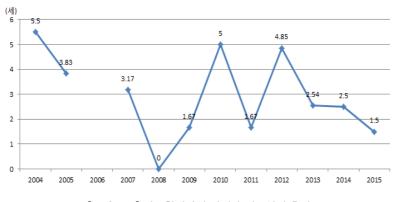
	구분	빈도	%
	남	35	46.7
성별	여	31	41.3
성될	미상	9	12.0
	계	75	100
	1세 미만	32	42.7
	만1~3세	13	17.3
	만4~6세	13	17.3
	만7~9세	10	13.3
연령	만10~12세	5	6.8
	만13~15세	1	1.3
	미상	1	1.3
	계	75	100
	평균 연령(표준편차)	3.24세(3.80)	

피해아동의 연령을 보면 1세 미만의 영아가 가장 많았고(42.7%), 1-3세와 4-6세가 각각 17.3%이다. 또한 7-9세가 13.3%, 10-12세가 6.8%, 13-15세가 1.3%이다. 75명 아동의 평균 연령은 3.24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살인의 피해자는 많은 수가 영유아 임을 알 수 있다(77.3%)(〈표 4-133〉 참고). 이어서 최근 12년간 피해아동의 평균연령

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비교하여보면, 연도별로 변화가 큰 편인데, 2004년과 2010년, 2012년에는 약5세 정도로 상대적으로 평균연령이 높았고, 2009년, 2011년, 2013년부터 2015년에는 약2세 이하로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이 많다(〈그림 4-5〉 참고).



[그림 4-4] 아동학대살인 피해자 성별 추이



[그림 4-5] 아동학대살인 피해자 평균연령 추이

2) 가해자-피해자 관계 특성

보도된 아동학대사건 가해자 106명을 대상으로 피해아동과 어떤 관계인지를 분석 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친모가 가장 많아 39.6%이고, 친부가 23.7로 친부모가 전체 가해자의 63.3%에 이른다. 여기에 계모(11.3%), 부모의 동거인(4.7%), 양부모 (3.8%) 까지를 합하면 아동의 부모 혹은 양육자가 아동을 살해한 비율이 무려 83.1%에 이른다. 그 외 위탁모(3.8%), 친인척(3.8%), 친모의 지인(1.9%) 등은 비율이 낮다. 미상 비율은 4.5%이다.

구분	빈도	%
친모	42	39.6
친부	25	23.7
계모	12	11.3
부모의 동거인	5	4.7
양부모	4	3.8
위탁모	4	3.8
친인척	4	3.8
친모의 지인	2	1.9
기타	5	4.5
미상	3	2.9
계	106	100

이번에는 75개의 사건기준으로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살펴보았다. 1개 사건에 가 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에는 복수의 가해자들의 구성을 제시하였다.

아동학대 살인은 다양한 관계의 가해자들이 함께 공범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친부 혹은 친모 혹은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는 전체 사건의 60.1%이고, 친부모 가 그 외 가족 혹은 복수의 그 외 가족들이 함께 범행을 한 비율이 34.7%이며, 기타가 2.6%이다.

친모 단독 범행이 38.8%, 친부모 공동범행이 12.0%, 친부 단독범행이 9.3%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그 외 다양한 가해자 구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친부와 계모(10.7%), 편부모와 동거 인(6.8%), 친모와 친인척(1.3%), 친부모와 친인척(1.3%), 친모와 친모의 지인(1.3%), 외조부의 내연녀와 내연녀의 딸(1.3%) 등 아동을 둘러싼 가족과 친인척들이 여러 형태로 가해자로 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35〉 아동학대살인 사건의 가해자-피해자 관계(2)

구분		빈도	%
	친모	29	38.8
친부모	친부모	9	12.0
신구보	친부	7	9.3
	소계	45	60.1
	친부+계모	8	10.7
	편부모+동거인	5	6.8
	친모+친인척	1	1.3
	친부모+친인척	1	1.3
	친인척	1	1.3
그 외 가족	친모+친모의 지인	1	1.3
	계모/계부모	3	4.0
	양모/양부모/계모+양부	3	4.0
	위탁부모	2	2.7
	외조부의 내연녀와 내연녀 딸	1	1.3
	소계	26	34.7
	어린이집원장/부원장	1	1.3
기타	초등학교 교직원	1	1.3
	소계	2	2.6
	미상	2	2.6
	계	75	100

이번에는 아동학대살인 가해자와 피해아동이 동거상태였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대 부분의 경우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88.0%), 비동거 상태는 소수에 불과하 였다(6.7%).

〈표 4-136〉 아동학대살인 사건의 가해자-피해자 동거유무

구분	빈도	%
동거	66	88.0
비동거	5	6.7
미상	4	5.3
계	75	100

3) 피해아동의 가족 특성

아동학대살인 피해아동의 가족형태는 초혼 친부모 가족(25.3%)과 재혼가족/동거 (22.7%). 미혼부모가정(20.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외 모자가정(6.7%). 입 양가정(4.0%). 부자가정(2.7%). 가정위탁(2.7%). 친인척보호(1.3%) 등의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첫째. 초혼 치부모가족에서도 아동학대 살인이 많이 발생하며(약 1/4), 둘째 동거가족이나 미혼부모, 모자, 혹은 부자가정 등의 비율이 절대 낮지 않아, 가족해체가 양육부담을 가중시키고, 아동학대살인으로 이어지는 위험요인을 작용하 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37\	아도하대산이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五 4-13//	이중역내급간	피에이하의 기속표원	

구분	빈도	%
친부모가족(초혼)	19	25.3
재혼가정/동거(사실혼 포함)	17	22.7
미혼부모가정	15	20.0
모자가정	5	6.7
입양가정	3	4.0
부자가정	2	2.7
가정위탁	2	2.7
친인척보호	1	1.3
미상	11	14.6
계	75	100

라. 아동학대살인 범행특성

1) 학대장소 및 학대기간

아동학대살인 사건의 장소는 가정 내가 70.7%, 가정 외가 29.3%로 많은 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가정 외 장소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숙박업소(8.1%), PC방/주유소/공원(5.4%), 어린이집(1.3%), 주차장(1.3%), 기숙사(1.3%), 병원(1.3%), 고시원(1.3%) 등이 있다. 학대 지속기간은 평균 173일에 이른다. 평균값은 극단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간별 비율은 보면, 1-24일이 가장 많아 10.7%, 2-4개월이 9.3%, 8개월-1년이 4.0% 등이다.

〈표 4-138〉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학대장소

구분	빈도	%
 가정 내	53	70.7
숙박업소	6	8.1
PC방, 주유소, 공원 화장실	4	5.4
어린이집	1	1.3
주차장	1	1.3
기숙사	1	1.3
 병원	1	1.3
고시원	1	1.3
미상	7	9.3
Ä	75	100

⟨표 4-139⟩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학대지속기간

구분	빈도	%
1~24일	8	10.7
2-4개월	7	9.3
8개월-1년	3	4.0
1년 4개월-3년	3	4.0
미상	54	72.0
계	75	100

2) 공범특성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54.7%는 가해자가 1명이고, 40.0%는 2명, 1.3%는 3명, 1.3% 는 4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7%는 미상이다.

공범특성을 보면, 공범이 있는 경우가 42.7%이고, 54.7%는 단독범이며, 공범이 있는 사건 중에서 공범이 1명인 경우가 93.8%로 거의 대부분이고, 2명과 3명이 각각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들간의 관계는 부부가 가장 많았고(73.5%), 그 외에는 동거인(14.7%), 가족 및 친인척(8,8%), 지인(3.0%)의 순으로 비율이 높다.

구분	빈도	%
 1명	41	54.7
 2명	30	40.0
 3명	1	1.3

1

2

75

1.3

2.7

100

〈표 4-140〉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가해자 수

/ 17	4 4 4 4 4 \		삭인사건의	그씨는 다
< ***	4-141)	UL포인내	직인사건의	동민들장

4명

미상

계

	구분	빈도	%
71110.0	없음	41	54.7
	있음	32	42.7
공범유무	미상	2	2.7
	계	75	100
	1명	30	93.8
7 H A	2명	1	3.1
공범수	3명	1	3.1
	계	32	100
공범자 관계a	부부	25	73.5
	동거인	5	14.7
	가족 및 친인척	3	8.8
	지인	1	3.0
	계	34	100

a. 중복응답

3) 학대유형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학대유형을 분석한 결과 단일학대가 72.0%가 단일학대이고, 25.3%는 복합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학대 중에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고(49.3%), 방임(12.0%), 유기(10.7%)의 순이다. 복합학대 중에는 신체적 학대+방임이 가장 많고(13.3%), 그 외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6.7%), 신체적학대+정서적 학대+방임(5.3%)의 순이다.

〈표 4−142〉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학대유형
----------------------	------

	구분	빈도	%
	신체학대	37	49.3
단일	방임	9	12.0
학대	유기	8	10.7
	소계	54	72.0
복합 학대	신체+정서	5	6.7
	신체+방임	10	13.3
	신체+정서+방임	4	5.3
	소계	19	25.3
미상		2	2.7
계		75	100

4) 학대동기

가해자들의 아동학대살인은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양한 이유 중에서 양육기술부족이 가장 많았고(35.3%), 원치않은 아동이거나 아동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탓에 발생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다(16.4%).

⟨표 4-143⟩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학대이유

구분	빈도	%
	30	35.3
원치 않는 아동이거나 아동에 대한 온정 결핍	14	16.5
생활고	8	9.4
가해자의 불안, 우울, 기타 정신질환	8	9.4
자녀양육부담	6	7.1
부부문제로 갈등, 별거, 이혼 등	4	4.7
게임중독	2	2.4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	1	1.2
미상	12	14.0
계	85	100

^{*} 중복응답

또한 아동학대살인은 생활고 때문에 발생하거나(9.4%), 가해자 개인의 불안, 우울, 혹은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9.4%). 그 외에도 자녀양육부담(7.1%), 부부갈등 이나 이혼. 별거 문제(4.7%). 가해자의 게임중독(2.4%).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1.2%) 등이 있었다. 미상 비율은 14.0%이다.

5) 학대 행위 및 학대 도구

아래 표는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기사내용에서 파악된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 행위는 중복응답으로 코딩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42개의 행위방식이 분석에 포 함되었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신체적 학대가 57.0%로 가장 많고. 방임이 22.6%. 정서적 학대가 6.3%, 유기가 5.6%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 중에는 도구로 때리거나(16.9%) 손. 발 등으로 때리는 경우가(13.5%) 가장 많았으나 그 외에도 다양한 신체적 행위가 발견되었는데, 화상, 꼬집거나 물어 뜯음, 벽이나 변기에 밀어붙임, 음식물이나 토사물을 강제로 먹임 등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행위가 있었다.

정서적 학대로는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거나(2.1%), 감금(1.4%)하는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그 외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나, 벌거벗겨 내쫓거나,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학대가 발견되었다.

방임 중에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가장 많았다(9.3%), 또한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거나(4.9%),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4.9%)가 흔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학교에 보내지 않거 나, 아동을 두고 가출을 하는 등의 방임행위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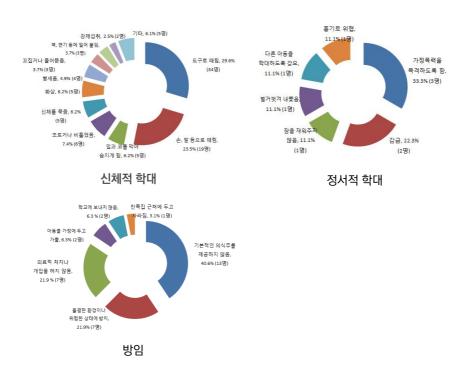
유기는 보호하지 않고 아동을 버리는 행위가 있었다(5.6%).

〈표 4-144〉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학대행위유형

	학대양상	빈도	%
	도구로 때림	24	16.9
	손, 발 등으로 때림	19	13.5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함	5	3.5
	조르거나 비틀었음	6	4.2
	신체를 묶음	5	3.5
115073	화상	5	3.5
신체적	벌세움(엎드려뻗쳐, 기마자세)	4	2.8
	꼬집거나 물어뜯음	3	2.1
	벽, 변기 등에 밀어 붙임	3	2.1
	음식, 토사물 등 강제섭취	2	1.4
	기타	5	3.5
	소계	81	57.0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함	3	2.1
	감금	2	1.4
	잠을 재주지 않음	1	0.7
정서적	벌거벗겨 내쫓음	1	0.7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	1	0.7
	흉기로 위협	1	0.7
	소계	9	6.3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13	9.3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방치	7	4.9
	의료적 처치나 개입을 하지 않음	7	4.9
방임	아동을 가정에 두고 가출	2	1.4
8 1	학교에 보내지 않음	2	1.4
	친족에게 알리지 않고 친족집 근처에 두고 사라짐	1	0.7
	소계	32	22.6
0.71	보호하지 않고 버림	8	5.6
유기	소계	8	5.6
	미상	12	8.5
	계	142	100

^{*}중복응답

^{**}신체적 기타-던짐, 도구로 찌름, 떠밀고 움켜잡음, 찬물을 얼굴과 몸에 뿌리기, 세탁기에 넣어 돌리기/화장실 못 가게 하기 각 1개씩응답



[그림 4-6] 아동학대살인의 구체적인 학대행위

한 개 사건에 여러 개의 학대도구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중복응답으로 측정되었는데 총 109개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별다른 도구 없이 손발 등 신체로 학대한 경우가 26.6%, 학대도구가 없는 경우가 10.1%이고, 54.1%는 학대도구가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학대도구로는 막대기나 몽둥이가 가장 많고(20.2%), 비닐봉지(6,4%), 가전제품(4.6%), 줄, 끈(4.6%), 운동용품(3.7%), 흉기나 뾰족한 도구(2.8%), 음식물이나 토사물(2.8%), 물(뜨거운 물, 고춧물)(1.8%), 사무용품(1.8%), 수건, 담요(1.8%) 등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였다.

〈표 4-145〉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학대도구
----------------------	------

구분	빈도	%
없음	11	10.1
신체	29	26.6
막대기, 몽동이	22	20.2
비닐봉지	7	6.4

구분	빈도	%
 가전제품	5	4.6
줄, 끈	5	4.6
흉기/뾰족한 도구	3	2.8
음식, 토사물	3	2.8
물(뜨거운 물, 고춧물)	2	1.8
 사무용품	2	1.8
 손수건/담요	2	1.8
기타	4	3.6
미상	10	9.2
	109	100

^{*} 중복응답

6) 학대결과

학대결과 아동의 신체에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피해아동의 신체에서는 온몸에 멍자국이 있거나(23.1%), 복잡한 두부손상(12.0%), 입, 눈 등 상처(10.2%)가 많고, 그 외 도구흔이 있는 상처(8.3%), 복부손상(6.5%), 화상자국(4.6%), 긁히거나 물린 자국(2.8%) 등 여러 형태의 상처유형이 발견되었다.

〈표 4-146〉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신체적 상처 유형

구분	빈도	%
온몸에 멍 자국	25	23.1
복잡한 두부손상	13	12.0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11	10.2
도구흔이 있는 상처	9	8.3
간혈종, 간열상 등 복부손상	7	6.5
다양한 화상 자국	5	4.6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3	2.8
기타	3	2.8
미상	32	29.7
	108	100

^{*} 중복응답

^{**}기타- 젖병, 장난감, 배게, 악기 각 1개씩 응답

^{**} 기타-욕창, 폐좌상, 겨드랑이/허벅지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 상처 각 1개씩 응답

아동의 사망사인은 외상성 쇼크(16.1%), 질식사(12.1%), 두부손상(105%)가 상대적 으로 많고, 그 외 간, 소장, 장 파열(6.7%), 패혈성 쇼크 및 패혈증(4.0%), 급성신부전 쇼크(4.0%), 아사(2.7%) 등이 있었다.

〈표 4-147〉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사망사인

구분	빈도	%
외상성(속발성) 쇼크	12	16.1
질식사	9	12.1
두부손상(두개골 파열, 뇌손상, 뇌출혈 등)	8	10.5
간, 소장, 장 파열	5	6.7
패혈성 쇼크, 패혈증	3	4.0
급성신부전 쇼크	3	4.0
아사	2	2.7
기타	4	5.2
미상	29	38.7
	75	100

^{*}기타-익사, 선천성 심기형, 저체온증, 전해질 이상 각 1개씩 응답

가해자가 아동을 살해한 후 사건을 은폐하는 방법으로는 시신유기가 가장 많고 (22.5%), 거짓진술(11.2%), 허위신고(5.0%), 지문, 혈흔, 상처, 멍자국 등을 없앰(2.5%) 등의 방법이 발견되었다.

⟨표 4-148⟩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살인 은폐방법

구분	빈도	%
시신유기	18	22.5
거짓진술	9	11.2
허위신고	4	5.0
지문, 혈흔, 상처, 멍자국 등을 없앰	2	2.5
- 화장	1	1.2
기타	5	6.3
미상	41	51.3
계	80	100

^{*}중복응답

3. 아동학대살인의 유형별 특성

이번에는 아동학대살인을 피해자 연령과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따라 몇 개의 유형 으로 나누고 그 특성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피해자 연령에 따라서는 '학령전 아동학대 살인'과 '학령기 아동학대 살인'으로 유형화하여 비교하였다. 아동학대살인 의 경우 청소년 피해자가 단 한명도 없었기 때문에 두 개의 유형으로만 구분하였다. 둘째,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따라서는 '친부모 아동학대살인'과 '그 외 가족의 아동학 대살인'으로 유형화하였다. 두 집단으로 구분한 이유는 아동학대 살인은 일반 아동학 대보다 가해자가 친부모인 비율이 매우 높고, 친부모와 가족 이외에 가해자 집단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 학령전 아동학대 살인과 학령기 아동학대 살인

1) 신고 특성 비교

신고자를 가해자 본인과 그 외 인물로 이분하여 피해자 연령에 따라 아동학대살인 의 신고자가 상이한지를 분석한 결과 뚜렷한 차이가 발겨되지 않았다. 학령전 아동학 대살인이나 학령기 아동학대살인 모두 가해자 본인이 신고한 비율이 높다.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계
가해자 본인	16(59.3)	8(72.7)	19(50.0)
그 외	11(40.7)	3(27.3)	19(50.0)
계	27(100)	11(100)	38(100)

〈표 4-149〉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신고자 비교

2) 가해자 특성 비교

이번에는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살인 피해아동 의 연령에 따라 가해자 성별이 상이하지는 않으나, 가해자 연령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해자 연령을 보면, 학령전 아동 가해자는 여자가 더 많으나, 학령기 아동

 $[\]chi^2$ =3.199, df=1, n.s

가해자는 남녀 비율이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가해자 연령 면에서는 학령전 아동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1.05세이고, 학령기 아동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7.7세로 학령기 아동 가해자가 나이가 더 많으며,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학령전 아동 가해자들은 20대와(38.7%) 30대에 (40.0%) 분산되어 있지만, 학령기 아동 가해자들은 30대에 70%가 집중되어 있다. 이같은 현상은 가해자의 많은 수가 부모이기 때문에 아동 연령이 많을수록 부모의 연령도 많아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4-150〉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가해자 특성 비교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 아동	계	검증치
-1-11-1	남	25(30.9)	11(50.0)	36(35.0)	χ ² =2.787,
가해자 성별	여	56(69.1)	11(50.0)	67(65.0)	
02	계	81(100)	22(100)	103(100)	df=1, n.s
	10대	6(8.0)	0(0.0)	6(6.3)	χ ² =15.221 df=4, p<.01
	20대	29(38.7)	0(0.0)	29(30.5)	
	30대	30(40.0)	14(70.0)	44(46.3)	
가해자	40대	9(12.0)	5(25.0)	14(14.7)	
연령	50대	1(1.3)	1(5.0)	2(2.1)	
	계	75(100)	20(100)	95(100)	
	평균(표준편차)	31.05(8.61)	37.7(5.57)		t=-4.159 ***

3) 피해자 특성 비교

아동학대살인 피해아동의 특성은 피해아동의 성별, 가해자 피해자 관계, 가해자-피 해자 동거여부, 가족유형의 면에서 비교하여 보았다. 집단차이검증 결과 네 가지 변인 모두 학령기 아동학대 살인인지, 혹은 학령전 아동학대살인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 다. 다시 말해서 아동학대살인은 피해아동의 연령이 학령전 아동이건, 학령기 아동이 건에 상관없이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이나, 가해자피해자 관계, 동거여부, 가족형태가 유사하다.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계
남	27(55.1)	7(43.8)	34(52.3)
여	22(44.9)	9(56.2)	31(47.7)
<u></u>	49(100)	16(100)	65(100)

〈표 4-151〉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피해자 특성 비교

⟨표 4-152⟩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가해자-피해자관계 비교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계
친부모	34(59.6)	10(76.9)	44(62.9)
그 외 가족	23(40.4)	3(23.0)	26(37.1)
계	57(100)	26(37.1)	70(100)

 $[\]chi$ ²=1.353, df=1, n.s

⟨표 4-153⟩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 동거여부 비교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계
동거	49(90.7)	16(100)	65(92.9)
비동거	5(9.3)	0(0.0)	5(7.1)
계	54(100)	16(100)	70(100)

 $[\]chi^2$ =1.595, df=1, n.s

〈표 4-154〉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가족유형 비교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 아동	계
친부모가정(초혼)	19(37.3)	5(45.5)	24(38.7)
미혼부모가정	11(21.5)	4(36.3)	15(24.2)
제혼/입양/가정위탁/친인척	21(41.2)	2(18.2)	23(37.1)
계	51(100)	11(100)	62(100)

 $[\]chi^2$ =2.266, df=2, n.s

4) 범행 특성 비교

아동학대살인이 범행특성은 학대장소, 학대지속기간, 공범유무, 학대유형의 네 가 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보았는데, 집단차이검증결과 학대유형 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

 $[\]chi^2$ =.623 df=1, n.s

점이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서 아동학대살인은 피해아동의 연령이 학령전 아동이건, 학령기 아동이건에 상관없이 학대장소와 학대지속기간, 그리고 공범유무가 유사하다.

〈표 4-155〉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학대장소 비교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계
가정 내	39(76.5)	13(81.3)	52(77.6)
가정 외	12(23.5)	3(18.7)	15(22.4)
계	51(100)	16(100)	67(100)

 $[\]chi$ ²=.160, df=1, n.s

〈표 4-156〉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공범유무 비교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계
공범없음	36(62.1)	5(35.7)	41(56.9)
공범있음	22(37.9)	9(64.3)	31(43.1)
계	58(100)	31(43.1)	72(100)

 $[\]chi$ ²=3.195, df=1, n.s

〈표 4-156〉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학대지속기간 비교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검증치	
평균(표준편차)	96.18(103.8)	279.44(362.5)	t=-1.468	

다만 학령기 아동대상 학대살인의 경우 피해아동이 한 가지 유형의 학대만을 경험하는 단일학대가 훨씬 많은 반면(82.1%), 학령기 아동 대상 학대살인은 복합학대와 (56.3%) 단일학대(43.8%) 비율이 유사하며, 오히려 복합학대 비율이 다소 높다. 따라서 피해아동연령이 많을수록 학대살인 가해자는 여러 개 유형의 학대를 복합적으로 행사함을 알 수 있다.

⟨표 4-158⟩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피해아동연령별 학대유형 비교

구분	학령전아동	학령기아동	계
단일학대	46(82.1)	7(43.8)	53(73.6)
복합학대	10(17.9)	9(56.3)	19(26.4)
계	56(100)	16(100)	72(100)

 $[\]chi^2$ =9.443, df=1, p<.01

나. 친부모학대 살인과 그 외 가족학대 살인

1) 신고특성

아동학대살인 사건의 신고자를 가해자 본인과 그 외 사람으로 나누고 학대 가해자 가 피해자의 친부모인지, 혹은 그 외 가족인지에 따라 아동학대살인 사건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여 본 결과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친부모 학대살인은 가해자 본인의 신고와 그 외 사람 신고가 각각 45.8%와 54.2%로 유사한 반면, 그 외 가족의 학대살인은 가해자 본인 신고가 64.3%로 그 외 사람의 신고보다 좀 더 많다. 그러나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4-159〉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	별 신고자 비교
-------------------------------	----------

구분	친부모학대	그외가족학대	계
가해자 본인	11(45.8)	9(64.3)	20(52.6)
그 외	13(54.2)	5(35.7)	18(47.4)
계	24(100)	14(100)	38(100)

x ²=1.208. df=1. n.s

2) 가해자 특성 비교

가해자 특성을 비교한 결과 가해자 성별은 차이가 없었다. 친부모 학대살인과 그 외 가족 학대살인 모두 여자 가해자 비율이 더 높다.

가해자 연령은 t-test 결과 차이가 발견되었다. 친부모 학대살인 가해자는 평균 35.30세인데 비해, 그 외 가족의 학대살인의 경우 30.45세로 친부모 학대살인 가해자 가 상대적으로 더 나이가 많다.

〈표 4-160〉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가해자 특성 비교

구분		친부모학대	그 외 가족학대	계	검증치
가해자 성별	남	26(38.8)	8(25.8)	34(34.7)	9
	Ф	41(61.2)	23(74.2)	64(65.3)	χ ² =1.581, df=1, n.s
	계	67(1000	31(100)	98(100)	
가해자 연령	10대	6(9.5)	1(3.3)	7(7.5)	χ ² =7.491,
	20대	24(38.1)	6(20.0)	30(32.3)	df=4, n.s

구분		친부모학대	그 외 가족학대	계	검증치
	30대	26(41.3)	14(46.7)	40(43.0)	
	40대	6(9.5)	8(26.7)	14(15.1)	
	50대	1(1.6)	1(3.3)	2(2.2)	
	계	63(100)	30(100)	93(100)	
	평균(표준편차)	35.30(8.50)	30.45(8.40)		t=2.585*

3) 피해자 특성 비교

피해자 특성 면에서는 피해자 성별과 연령을 비교하여 보았는데, 피해자 연령 면에서 친부모 학대살인과 그 외 가족의 학대살인간의 뚜렷한 차이점이 관찰되었다.

친부모학대살인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80세인데 비해 그 외 가족의 학대살인의 경우 평균 5.08세로 훨씬 높다. 다시 말해서 그 외 가족이 아동학대살인 가해자인 경우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 아동일수록 가해자가 친부모일 가능성이 높다.

〈표 4-161〉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피해자 특성 비교

Ŧ	1분	친부모학대	그 외 가족학대	계	검증치
피해자 성별	남	22(57.9)	10(41.7)	32(51.6)	χ^2 =1.551 df=1 n.s
	여	16(42.1)	14(58.3)	30(48.4)	
	계	38(100)	24(100)	62(100)	
피해자 연령	1세 미만	28(63.6)	4(15.4)	32(45.7)	χ^2 =15.445 df=2 p<.001
	1~6세	11(25.0)	14(53.8)	25(35.7)	
	7~15세	5(11.4)	8(30.8)	13(18.6)	
	계	44(100)	26(100)	70(100)	
	평균(표준편차)	1.80(3.39)	5.08(3.20)		t=-3.992***

가해자와 피해자 동거 여부 면에서는 친부모 학대살인과 그 외 가족 학대살인간의 차이점이 없었다. 두 집단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거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구분	친부모학대	그외가족학대	계
동거	37(88.1)	25(100)	62(92.5)
비동거	5(11.9)	0(0.0)	5(7.5)
계	42(100)	5(7.5)	67(100)

〈표 4-162〉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동거여부 비교

피해자의 가족유형 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점이 관찰되었다. 친부모 학대살인의 경우 초혼 친부모가정이 가장 많고(62.2%), 미혼부모가정(35.1%), 재혼/ 입양/가정위탁/친인척가정(2.7%)의 순이나, 그 외 가족의 학대살인의 경우 재혼/입양 /가정위탁/친인척가정이 가장 많고(84.6%), 친부모가정(7.7%)와 미혼부모가정(7.7%) 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표 4-163〉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가족유형 비교

구분	친부모학대	그 외 가족학대	계
친부모가정(초혼)	23(62.2)	2(7.7)	25(39.7)
미혼부모가정	13(35.1)	2(7.7)	15(23.8)
재혼/입양/가정위탁/친인척	1(2.7)	22(84.6)	23(36.5)
계	37(100)	26(100)	63(100)

 $[\]chi^2$ =44.311, df=2, p<.001

4) 범행 특성 비교

범행특성 면에서는 학대지속기간과 공범유무 면에서는 두 학대살인 유형간에 차이 점이 나타났으나, 학대장소와 학대유형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학대지속기간은 친부모 학대살인의 경우 51.86일, 그 외 가족의 학대살인은 평균 250.08일로 친부모학대살인이 상대적으로 지속기간이 더 짧다.

공범유무는 친부모 학대살인의 20.0%가 공범이 있으나, 그 외 가족의 학대살인은 84.6%가 공범이 있다. 친부모 학대살인은 단독범으로, 그 외 가족 학대살인은 비단독 범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친부모 학대살인에 비하여 그 외 가족의 학대살인 사건이 학대지속기간이 길고. 여러 명의 가해자들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x ²=3.216. df=1. n.s

276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표 4-164〉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학대장소 비교

구분	친부모학대	그외가족학대	계
가정 내	29(72.5)	22(91.7)	51(79.7)
가정 외	11(27.5)	2(8.3)	13(20.3)
 계	40(100)	24(100)	64(100)

 $[\]chi$ ²=3.404, df=1, n.s

⟨표 4-165⟩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학대지속기간 비교

구분	친부모학대	그외가족학대	검증치
평균(표준편차)	51.86(50.6)	250.08(305.4)	t=-2.282*

〈표 4-166〉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공범유무 비교

구분	친부모학대	그외가족학대	계
공범없음	36(80.0)	4(15.4)	40(56.3)
공범있음	9(20.0)	22(84.6)	31(43.7)
계	45(100)	26(100)	71(100)

 $[\]chi$ ²=27.970, df=1, p<.001

⟨표 4-167⟩ 아동학대살인사건의 가해자-피해자관계별 학대유형 비교

구분	친부모학대	그외가족학대	계
단일학대	35(81.4)	16(61.5)	51(73.9)
복합학대	8(18.6)	10(38.5)	18(26.1)
계	43(100)	26(100)	69(100)

 $[\]chi^2$ =3.313, df=1, n.s

제6절 분석결과 요약

아동학대는 가해자-피해자 관계, 피해자 연령, 학대 유형 등에 따라 몇 개의 차별화 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본 장에서는 가해자-피해자 관계, 피해자의 연령, 중복학대 여부. 친부모 여부를 기준으로 몇 개의 아동학대 유형을 대상으로 그 특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가해자-피해자 관계별 유형화: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

첫째,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사건의 '처분 특성'을 비교한 결과 죄명, 경합, 가해자 검거경위, 구속여부, 검찰처분 유형, 변호인선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죄명, 구형량이나 최종심 유형, 고소취하여부, 합의여부에는 차이 가 없었다.

- 시설내 학대는 가정내 학대에 비하여 동종경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종경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 따라 아동학대 가해자의 검거경위가 상이하다. 1) 시설내 학대는 가정내 학대에 비하여 '제3자 신고', 특히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도 '부모'에 의해 신고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72.4%). 시설내 학대는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동료교사나 관리자(원장)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많은 수는 부모에 의해 발겨되고 신고되기 때문이다. 반면 가정내 학대의 경우 절반 정도는 제3자 신고에 의해 가해자가 검거되고(48.9%), 29.1%는 신고의무자 신고에 의해 검거되어 검거경위가 분산되어있다. 2) 가정내 학대는 시설 내 학대에 비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각각 14.3%와 8.3%). 특히 부모가 주 가해자인 가정내 학대의 경우 약15%가 피해아동 스스로가 신고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학교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결과 아동의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아동 스스로 학대에 대처하는 방법을 인지하는 비율 이 높아진 결과일 수 있다.
- 가정내 학대 가해자의 구속율이 15.8%로 시설내 학대 가해자 구속율 3.9%보다 약4.1배나 높다. 이는 부모에 의한 가정내 학대가 시설내 학대보다 장기화되고,

학대 정도나 피해아동에 미치는 후유증 등의 면에서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 검찰처분 결과 면에서 가정내 학대는 구공판, 기소유예, 타관송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설내 학대는 구약식, 불기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이미구속여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부모학대가 시설내 학대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이기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정내 학대는 구공판과 교육이수 혹은 상담조건부기소유예의 비율이 각각 약1/3을 차지하여, 이 둘을 합하면 약70%에 이른다. 그러나 유기징역형기, 집행유예 기간, 벌금액수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 모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비율이 50-60% 대로 높은 편이나,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많은 수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데 반해 (28.6%),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의 경우 사선변호인 선임 비율이 국선변호인 보다 훨씬 높다(26.1%). 이는 두 학대 유형 가해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교직원이므로, 기초생활 수급권자도 많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대적으로 경우가 많은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많다.
- 가정내와 학대와 시설내 학대는 가해자의 범행시인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시설내 학대 가해자에 비하여 범행을 '전적으로 시인'하는 비율이 훨씬 높고(각각 41.0%와 31.8%),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가정내 학대가해자들에 비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각각 25.3%와 17.0%).

가정내 학대 피해아동의 많은 수는 부모에 의한 학대이므로 피해아동은 자신의 부모를 처벌하고 싶은 비율(44.3%)과 처벌하고 싶지 않은 비율(45.6%)이 유사하며, 이 때문에 양가감정 역시 많이 가진다(10.1%). 그러나 시설내 학대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학생(원생)과 교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68.9%) 양가감정을 가지는 비율도 낮다(4.5%).

둘째,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사건의 '가해자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종교, 전과,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이나 적응 및 행동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국적에는 차이가 없었다. 요약하면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고, 3,40대 비율이 더 높으며, 상대적으로 저학 력이고, 동거와 재혼, 별거/이혼/사별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미취업자 비율이 높고, 무종교 비율이 높고, 범죄전과가 많으며,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이나 적응 및 행동문제가 많다.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 20대 비율, 고학력 비율, 초혼과 미혼비율이 높고, 전문관리직에 집중되어 있고, 종교가 있는 비율이 높고, 범죄성이 약하고,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이나 적응 및 행동문제가 적다.

- 가정내 학대는 남성가해자 비율이 높고(59.2%), 시설내 학대는 여성가해자 비율이 높다(82.7%). 보육시설 학대의 경우 교직원들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 가정내 학대 가해자 평균연령은 39.9세, 시설내 학대는 37.9세로 가정내 학대 가해 자의 연령이 높다.
-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고졸'이 50.6%, '중졸'이 19.3%, '대졸'이 17.8%의 순인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대졸'이 76.9%, '고졸'이 14.2%로, 가정내 학대 가해 자에 비하여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의 교육수준이 훨씬 높다.
- 혼인상태를 보면, 유배우자 비율은 두 집단이 유사한 수준이나, 구성을 보면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동거'나 '재혼'의 비율이 시설내 학대 가해자보다 높고, 시설내 학대 가해자는 '초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무배우자 비율은 두 집단이 유사하나, 가정내 학대 가해자는 '별거/이혼/사별'의 비율이,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 은 '미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모두 직업이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로 전문·관리직 인 반면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미취업'이 26.5%로 가장 많고. 그 외 다양한 직업 을 가진 가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율 순으로 '사무직 종사자' 11.0%. '전문·관리직' 10.7%, '서비스·판매직' 10.7%, '가정주부' 10.5%, '숙련 기능공' 8.4%이다.
-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종교가 있는 경우가 49.0인데 반해,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 은 그 비율이 70.5%로 훨씬 높다.
-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이 시설내 학대 가해자 보다 범죄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시설내 학대 가해자에 비하여 총체포 횟수, 총전과 횟수, 실형전과 횟수 모두 많고, 전과자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총체포 횟수'를 보면 가정내 학대 가해자는 평균 5.16회이나 시설내 학대 가해자는 1.89회로 가정 내 학대 가해자들의 체포횟수가 훨씬 많다. '전과 유무' 면에서는 가정내 학대 가해 자들은 62.1%가 전과가 있는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18.2%만이 전과가 있으 며, '총전과 횟수' 면에서도 가정내 학대 가해자는 4.61범인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 자들은 평균 1.74범이다. '실형 전과' 역시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0.45범인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는 0.02%에 불과하다.

•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이 시설내 학대 가해자에 비하여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이나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의 27.6% 는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모두 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의 73.0%는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17.0%만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가지거나 혹은 장애를 가진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며. 가정내 학대의 경우 피해 아동이 워가정 복귀되는 경우 가해 부모와 피해 자녀가 함께 거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만이 아니라 교육,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사건의 '피해자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여부, 피해자수 및 피해자들간의 관계, 가해자-피해자 관계, 동거여부, 가족유형, 사회적 지리적 고립여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거주지역과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이나 적응 및 행동문제에는 차이가 없었다. 요약하면 가정내 학대 피해아동은 시설내 학대에 비하여 남아비율이 적고, 나이가 더 많고(학령기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비율이 높고, 피해자 수가 적고, 가해자-피해자 동거비율이 높고, 친부모가족 외 가족형태가 많고,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이다. 시설내학대 피해아동은 가정내 학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남아비율이 높 고, 나이가 어리고(미취학),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피해자 수가 많고, 가해자 -피해자 동거비율이 낮고. 친부모 가족비율이 높고. 가해자는 대부분 교육/보육교직 원/유치원종사자/학원강사이다.

- 가정내 학대 피해아동은 남아가 52.3%이나 시설내 학대 피해자들은 66.7%로 시설 내 학대가 남아비율이 좀 더 높다.
- 가정내 학대 피해아동의 평균 연령은 8.89세이며, 시설내 학대 피해아동의 평균연령 은 5.21세로 시설내 학대 피해아동의 연령이 더 어리다. 가정내 학대 피해아동은 학령기 아동(만7-12세)이 가장 많으나(38.8%) 학령전 아동부터 청소년 까지 골고루 분포하는 반면, 시설내 학대 피해아동은 학령전 어린 아동에 집중되어있다(73.0%).
- 가정내 학대의 경우 28.6%의 피해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며, 시설내 학대의 경우 7.9%로 가정내 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의 경제적 수준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 가정내 학대의 피해자 수는 평균 1.30명이고, 시설내 학대는 2.40명으로 시설내 학대가 피해아동 수가 많다. 가정내 학대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형제자매이지만 (96.8%), 시설내 학대는 같은 시설 이용자 혹은 친구이다(98.1%)
- 가정내학대 가해자들은 부모가 대부분이고(92.6%), 대리양육자(5.3%), 친인척 (1.6%)의 순이다.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는 교육/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자/학원 강사가 대부분이고(86.4%) 나머지는 복지시설종사자이다(13.6%).
- 가정내 학대의 경우 무려 93.4%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내 학대의 동거 비율은 6.5%에 불과하다.
- 시설내 학대의 피해아동 가족은 친부모 가족이 많은 반면(72.2%), 가정내 학대의 경우 친부모 가족에서도 발생하지만(약1/3, 32.6%), 상대적으로 친부모 가족 외 가족형태가 많다(약2/3, 64.2%).
- 가정내 학대의 피해아동 가족이 지리적 혹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비율은 20.6%이며. 시설내 가족은 6.8%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가족의 지리적 고립이나 사회 적 고립은 가정내 학대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 가정내 학대 피해자들의 16.5%,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의 17.2%는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의 36.8%,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의 38.0%는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정내 혹은 시설내 학대 여부에 따라 피해자들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 은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1)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의 27.6%가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73.0%가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점과 비교할 때 가정내 학대 피해아동은 16.5%가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36.8%가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해자들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2) 가해자들의 경우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이 시설내 학대 가해자에 비하여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이나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피해 아동은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 모두 장애 및 정신·심리적 문제를 가진 비율 이 유사하였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의 문제 라기 보다는 가해자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의 문제임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사건의 '범행 특성'을 비교한 결과 학대장소, 학대 기간, 학대빈도, 공범특성, 학대유형, 학대동기, 음주여부, 후유증 유무 에서는 유의미 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약물복용 여부, 후유증 유형에는 차이가 없었다. 요약하면, 가정내 학대는 시설내 학대에 비하여 학대기간이 길고, 학대빈도가 높으며, 공범이 적고, 공동주거지/아동 혹은 가해자 주거지에서 많이 발생한다. 복합학대가 많고, 양육태도 혹은 훈육문제/가해자 개인 특성/양육부담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 때문에 학대가 발생하고, 가해자가 범행당시 음주인 비율이 높고, 피해아동이 학대후유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시설내 학대는 가정내 학대에 비하여 학대기간 이 짧고, 학대빈도가 적으며, 공범수가 많고, 유치원·어린이집/학교/학원/복지시설에 서 발생한다. 단순 신체적 학대가 많고, 주로 양육태도 혹은 훈육문제 때문에 학대가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학대 후유증 발생 비율이 낮다.

- 가정내 학대의 학대 장소는 많은 경우가 '공동주거지/아동 혹은 가해자 주거지'이고 (86.7%), 그 외에는 '실외 공간'(7.5%), '기타 공간'(4.4%)의 순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설내 학대의 경우 어린이집 등 학대가 대부분이므로 '유치원·어린이집/학교/학원 /복지시설'이 99.6%로 가장 많다.
- 가정내 학대의 학대기간은 평균 512.59일인 반면, 시설내 학대의 경우 평균 79.52일 로 가정내 학대가 훨씬 학대기간이 길다(약 6.4배). 이러한 가정내 학대의 '학대 '장기화'는 보다 심각한 학대피해가 발생하게 만들고, 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심각하 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따라서 가정내 학대의 경우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학대빈도 역시 상이하다. 1) 시설내 학대는 가정내 학대에 비하여 일회적으로 발생 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각각 76.7%와 45.5%). 2)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는 가정내 학대가 19.1%, 시설내 학대가 15.1%로 큰 차이는 없으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설내 학대는 지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가정내 학대에 비하여 아동피해는 덜 심각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 가정내 학대보다는(19.6%) 시설내 학대가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고(39.4%). 그 결과 공범 수 역시 가정내 학대에 비하여(평균 1.27명) 시설내 학대가 많다(1.52명). 공범 자간의 관계를 보면 가정내 학대는 대부분 부부/동거인/애인인 반면(74.1%), 시설 내 학대는 대부분 동료/친구/선후배였다(97.2%). 가해자의 역할은 가정내 학대의 경우 주도적 역할이 77.9%이고 보조적 역하이 18.2%인 반면, 시설내 학대는 주도적 역할이 64.1%로 가장 많기는 하나 단순가담 역시 28.1%로 많아서, 가정내 학대 가해자가 시설내 학대가해자에 비하여 범행당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학대유형특성을 비교하면 1) 가정내 학대는 여러 개의 학대유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학대가 많은 반면(54.5%), 시설내 학대는 오히려 신체적 학대만 발생하는 비율 이 높다(47.2%). 2) 시설내 학대는 가정내 학대에 비하여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훨씬 높다(각각 11.0%, 2.9%). 3) 가정내 학대는 시설내 학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방임과 유기 발생비율이 높다(가정내 학대는 방임 9.0%, 유기 4.5%, 시설내 학대는 방임0.4%, 유기 없음).

- 학대동기를 보면 1)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 모두 '양육태도 혹은 훈육문제'가 가장 주된 동기이기는 하나, 비율 면에서 시설내 학대가 훨씬 높다(가정내 학대 41.1%, 시설내 학대 89.9%). 2) 가정내 학대는 '양육태도 혹은 훈육문제'(41.1%), '가해자 개인 특성'(26.0%),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12.7%), '부부문제'(10.7%), '경제적 문제'(7.1%) 등 다양한 학대동기가 나타난 반면, 시설내 학대는 대부분의 사례가 '양육태도 혹은 훈육문제'(89.9%)가 동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가정내 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40.0%가 범행당시 음주 상태였던 반면, 시설내 학대가해자는 2.6%만이 음주상태였다. 즉 가정내 학대의 경우 가해자 음주 혹은 알코올 남용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다.
- 시설내 학대보다는 가정내 학대의 피해아동이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가정내 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의 79.5%가 후유증이 있고, 20.5%는 별다른 후유증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내 학대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65.0%와 35.0%이다. 일회성에 그치는 시설내 학대의 경우에도 무려 65.0%의 아동이 후유증을 경험했다는 점은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하겠다.

다섯째, 가정내 학대와 시설내 학대사건의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제공유무와 서비스 유형'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 가정내 학대 가해자의 51.4%가 서비스를 받은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는 27.5%만이 서비스를 받았다. 피해자 대상 서비스 제공 면에서도 가정내 학대의 경우 78.5%의 피해자가 서비스를 받은 반면, 시설내 학대의 경우 58.0%의 피해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가정내 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시설내 학대의 가해자 피해자보다 상담 등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시설내 학대 가해자 보다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 훨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만큼 이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집단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가정내 학대 가해자의 절반 정도만이 서비스 수혜자이고 나머지 절반은 교육이나 상담과 무관한 처우를 받는다는 사실은 재범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2) 가정내 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의 79.5%가 후유증이 있고, 서비스 수혜비율은 78.5%이며, 시설내 학대의 경우 65.0%의 아동이 후유증을 경험하고, 서비스 제공 비율은 58.0%로 두 집단 모두 후유증비율에 비하여 서비스 수혜율이 다소 못미치는 수준이다. 실제로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후유증 유무와 관계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서비스가 현재 수준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연령별 유형화: '학령전 아동학대', '학령기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

첫째, 학령전 아동학대, 학령기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의 '처분 특성'을 비교한 결과 죄명, 경합여부, 검거경위, 검찰처분결과, 변호인 유무 및 유형, 피해아동들의 가해자 처벌에 대한 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구속여부, 구형량, 최종심 유형, 가해자 범행 시인 정도, 고소취하 여부나 합의 여부에는 차이가 없었다.

- 세 학대 유형 가해자의 죄명은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이용행위', '상습', '그외 아동복지법' 순으로 많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구체적인 비율 면에서,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이용행위'는 학령 전 아동학대와 청소년 학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습'은 학령기 아동학대가, 기타 아동복지법 위반은 청소년 학대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
- '경합이 아닌 비율'은 보면 학령전 아동 대상 아동학대의 경우 40.1%, 청소년 대상 아동학대가 32.5%, 학령기 아동 대상 아동학대가 31.3%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가 이루어진 경우 경합비율이 높다. '동종경합' 비율은 피해자 가 가장 어린 학령전 아동학대가 가장 높고(44.5%), '이종경합'은 피해자가 가장 나이가 많은 청소년 대상 학대가 가장 높다(32.5%). '동종+이종 경합' 비율은 학령기 아동 대상 학대가 가장 많았다(18.4%).
-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부모 등의 비신고의무자 신고에 의해 가해자가 검거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 는 비율이 높다. 구체적인 가해자 검거경위 비율은 보면 학령전 아동학대는 비신고 의무자 신고(67.7%)와 신고의자 신고(23.4%) 순으로 많고, 학령기 아동학대 역시 비신고의무자 신고(56.5%)와 신고의무자 신고(26.5%)가 많은 반면, 청소년 학대는

피해자 신고(35.5%)와 비신고의무자 신고(33.7%)가 많다.

• 피해아동이 어릴수록 '부모 및 위탁부모' 신고비율이 높은 반면, 아동 연령이 높아질 수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교원/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늘어나며, 특히 학령기 아동은 '이웃'과 '모르는 사람'의 비중이, 청소년 학대는 '의료인 및 소방구급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학령전 아동은 '부모나 위탁부모'가 신고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60.5%), 학령 기 아동학대는 '부모와 위탁부모'의 신고비율이 40.0%로 학령전 아동학대보다 낮고. '아동보호전문기관'(14.4%)이나 '교원/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자'(13.1%), '모르는 사 람'(11.2%), '이웃'(10.0%)의 신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청소년 학대의 경우에 는 '부모 및 위탁부모' 신고가 38.3%로 가장 많으나, '의료인 및 소방구급대원'이 22.1%로 높은 편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19.1%)이나 '교원/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 자'(18.1%)이 다음 순위이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5.3%)과 '이웃'(5.3%)의 신고비율 은 높지 않다.

•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검찰 처분은 대체로 구공판과 기소유예가 많아 두 비율의 합이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학령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의 경우 구공판이 가장 많은 반면, 청소년 학대는 구공판보다 기소유예의 비율이 더 높다. 또한 학령전 아동의 경우 구약식 처분이 많은데, 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의 경우 가해자가 벌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령전 아동학대는 구공판(30.8%), 기소유예(26.4%), 불기소(혐의없음/공소권없음 /죄가안됨)(19.2%), 구약식(18.2%)의 순이고, 학령기 아동학대는 구공판(36.8%), 기소 유예(30.3%), 불기소(11.9%), 구약식(9.0%)의 순으로 비율이 높으나, 청소년 학대는 기소유예(37.3%), 구공판(28.9%), 불기소(14.5%), 구약식(7.8%)의 순이다.

검찰의 구형유형을 보면 구약식 혹은 구공판 처분을 내린 경우,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는 벌금 처분이 가장 많은 반면(53.0%),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유기징역이 가장 많고(46.9%),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는 유기징역과 집행유예 처분(각각 39.2%와 36.7%) 비율이 높다.

- 세 유형의 학대 모두 변호인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아 대체 60% 수준에 이르지만(학 령전 아동학대 58.6%, 학령기 아동 학대 61.2%, 청소년 학대. 63.2%), 학령기 아동 학대와 청소년 학대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율이 더 높은데 반하여(각각 27.3%와 29.3%), 학령전 아동 학대 가해자들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율이 더 높다(21.5%). 이같은 차이는 학령전 아동 학대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내 학대가 많아 가해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정내 학대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 피해아동의 연령에 따라 가해자 처벌에 대한 태도가 상이하다. 1), 피해아동의 연령 이 어릴수록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처벌을 원치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구체적인 비율을 보면 학령전 피해아동의 68.7%가 처벌을 원한 반면, 학령기 피해아동은 그 비율이 49.3%, 청소년 피해자는 43.2%로 점차 감소하 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처벌을 원치 않는 비율은 학령전 아동 25.3%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42.0%, 46.8%로 점차 증가한다. 2) 특히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처벌 을 원하는 비율보다(43.2%) 처벌을 원치 않는 비율이 오히려 높으며(46.8%), 양가감 정을 느끼는 피해자 역시 10.1%로 다른 연령대 피해자에 비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령전 아동학대, 학령기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의 '가해자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업, 전과유무와 실형전과 횟수에서는 유의미 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가해자 국적과 종교, 총체포횟수, 총전과횟수, 아동 학대 체포 경험 유무에는 차이가 없었다.

- 피해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여성가해자 비율이 높아서, 학령전 아동학대의 72.9%, 학령기 아동학대의 47.3%. 청소년 학대의 31.3%가 여자가 가해자이다. 특히 학령기 아동학대와 청소년 학대는 남자 가해자 비율이 여자보다 높은데 비해. 학령전 아동 학대는 여자가해자 비율이 더 높다. 이는 학령전 아동학대는 어린이집 등 학대 비율 이 높고, 보육교사의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피해자 연령이 많을수록 가해자 연령 역시 높아진다.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5.81세,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는 40.49세,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44.42세로,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학령전 학대 가해자보다 약8.6세나 나이가 더

많다. 이같은 현상은 가해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나이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학령전 아동학대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연령이 높지 않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 가해자의 교육수준 학령전 아동 학대와 나머지 두 학대가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는 데,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대졸이 가장 많은 반면(46.1%),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와 청소년 학대 가해자들은 고졸자 비율이 가장 높다(각각 48.8%와 42.9%).
-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많은 수가 초혼이거나, 미혼인 반면, 학령기 아동학대 와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초혼과 별거/이혼/사별이 많고, 동거나 재혼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초혼 비율보다 별거/이혼/사별 비율이 더 높다.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는 결혼(초혼)이 50.9%, 미혼이 19.5%, 별거/이혼/ 사별이 15.4%이며,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는 결혼(초혼(35.6%), 별거/이혼/사별 29.8%, 동거(14.4%), 재혼(13.3%)의 순이고,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별거/이혼/사별 (39.2%), 결혼(초혼)(32.3%), 재혼(12.0%), 동거(10.8%)이다.
- 직업 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미취업 비율 면에서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의 미취업 비율이(16.2%) 다른 두 학대 유형 가해자보다 낮아(각각 22.6%). 또한 취업 한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교사 및 교원이 많은 영향으 로 전문관리직 비율이 높은데 비해(55.3%),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는 전문관리직 (24.1%)이 많고, 청소년 학대 가해자들은 단순노무직(20.1%)이 가장 많다.
- 피해아동 연령이 많을수록 가해자의 범죄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전과가 없는 비율이 있는 비율 보다 높은 반면(전과자 비율 31.0%),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와 청소년 학대 가해자들은 전과가 있는 비율이 더 높다(각각 55.2%와 59.2%). 또한 피해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해자의 전과 자 비율 역시 증가한다. 또한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형전과 평균은 0.17. 학령기 학대 가해자는 0.38,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0.42로 피해아동 연령이 증가할 수록 가해자의 실형횟수가 늘어난다.
- 가해자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유무와 적응 및 행동문제 유무 모두 학령전 아동 가해자와 나머지 두 학대 유형 가해자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10.1%만이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는 그 비율이 23.6%,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24.6%에 이른다. 또한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적응 및 행동문제가 없는 비율이 있는 비율보다 더 높은 반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학대 가해자들은 문제가 있는 비율이 더 높다. 구체적인 비율을 보면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의 47.8%,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의 69.4%, 청소년 학대 가해자의 67.0%가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다.

셋째, 학령전 아동학대, 학령기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의 '피해자 특성'을 비교한 결과 피해자 성별, 국민생활보장수급권 대상자 여부, 피해자 수, 가해자-피해자 관계, 가해자-피해자 동거여부, 가족유형, 피해자의 장애 및 정신·심리적 특성에서는 유의 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거주지역, 피해아동의 사회적 혹은 지리적 고립에 는 차이가 없었다. 요약하면, 피해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남아 비율이 높고, 피해자 수가 적고, 가해자가 면식범이나 교원/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자/학원강사일 비율이 높고, 친부모가족 비율이 높고, 피해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가해자가 비면식범이나 부모일 비율이 높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거하는 비율이 높 고. 친부모 외 가족 비율이 높고.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유무와 적응 및 행동문제가 있는 아동이 많다.

- 어린 아동일수록 남자아동이 학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이 되면 남녀 청소년의 피해 가능성이 유사하다. 학령전 아동학대와 학령기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많은 반면(각각 남자 아동 비율 61.9%와 59.0%), 청소년 학대 피해자의 경우에는 남녀 비율이 49.1%와 50.9%로 유사하다.
- 학령전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 평균 연령은 2.67세이고, 학령기 아동학대 피해자동 은 8.83세, 청소년 학대 피해자 평균연령은 14.11세이다. 전체 피해자 평균 연령은 7.66세이다.
- 피해아동 가족의 국민생활보장수급권 대상자 여부를 보면 학령전 아동학대 피해자 의 16.4%, 학령기 아동학대 피해자의 26.2%, 청소년 학대 피해자의 30.3%가 수급권 자로 나타나, 학대 피해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소득층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피해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피해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전 아동학 대의 피해자 수는 평균 1.71명이고, 학령기 아동학대는 1.54명, 청소년 학대는 평균 1.30명이다. 이 중에서 학령전 아동학대와 청소년 학대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피해자들 간의 관계 역시 피해자 연령별 학대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령전 아동학대의 경우 어린이집 등 시설내 학대의 영향으로 같은 시설 이용자나 친구가 가장 많은 반면(63.0%), 학령기 아동학대는 형제 자매가 대다수를 차지하며(84.7%), 청소년 학대는 형제자매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56,7%), 같은 시설 이용자 및 친구의 비율(33.3%) 역시 높은 편이다.

- 피해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비율이 높고. 아동연령이 높을수록 모르는 사람이 학대 가해자인 비율이 높다. 학령전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는 '교원/보 육교직원/유치원종사자/학원강사'가 가장 많고(59.1%). 그 다음이 부모(33.4%)인 반 면, 학령기 아동학대와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많은 수가 부모이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아동은 부모(73.1%)와 교원/보육교직원/유치원종사자/학원강사(11.5%)가 많고, 청소 년 학대 가해자는 부모와(71.7%) 복지시설 종사자(11.9%)가 많다.
- 학령전 아동학대의 경우 시설내 학대의 영향으로 비동거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동 거비율 37.4%), 학령기 아동학대와 청소년 학대의 경우에는 함께 동거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각각 79.6%와 75.7%).
- 학령전 아동학대를 제외하면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는 가족은 친부모가족보다는 친부모가족 외 가족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특히 초등학생 피해자 에 비하여 중고등학생(청소년) 피해자는 친부모가족 비율이 더 적고 대리양육가족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학령전 아동학대는 친부모가족이 가장 많고(65.6%), 친부모가족 외 가족(29.5%), 대리양육가족(4.9%)의 순인 반면, 학령기 아동학대의 피해아동 가족유형은 친부모가 족 외 가족(62.2%), 친부모가족(33.3%), 대리양육가족(4.5%)의 순이고, 청소년 학대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친부모가족 외 가족(58.8%), 친부모가족(27.9%), 대리양육가

족(7.3%)의 순으로 많다. 따라서

•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유무의 경우 학령기 학대 피해자의 경우 7.8만이 문제가 있었으나, 학령기 학대 피해아동은 그 비율이 17.9%. 청소년 피해자는 무려 25.8% 로 나타났다. 또한 적응 및 행동문제 유무의 경우에도 학령기 학대 피해자의 경우 54.1%가 문제가 발견되었으나, 학령기 피해아동은 그 비율이 62.5%, 청소년 피해자 는 72.3%에 이른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유무와 적응 및 행동문 제가 많다. 즉 피해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학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같은 결과는 학대가 오래 지속될수록 피해아동이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피해자의 신체장애나 정신질 환, 적응 및 문제행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넷째, 학령전 아동학대, 학령기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의 '범행 특성'을 비교한 결과 학대장소, 학대지속기간, 학대빈도, 공범특성, 학대유형, 가해자 음주여부, 피해자 후유증 유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가해자 약물복용 여부, 후유증 유형에는 차이가 없었다. 요약하면, 학대피해아동 연령이 어릴수록 유치원 어 린이집/학교/학원/복지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단일학대 비율이 높다. 반면 학대피해아동 연령이 많을수록 가해자 피해자 공동 거주지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학대지속기간이 길고, 학대빈도가 높고, 단독범일 가능성이 높고, 복합학대 비율이 높고, 범행당시 가해자 음주비율이 높다.

- 피해아동 연령에 따라 학대장소가 상이하다. 학령전 아동은 '유치원·어린이집/학교 /학원/복지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60.1%), 학령기 아동학대와 청소년 학대 의 경우에는 모두 '공동거주지/아동 혹은 학대가해자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각각 73.3%와 71.2%).
- 학령전 아동학대의 평균 지속기간은 113.79일이고, 학령기 아동학대는 391.98일, 청소년 학대는 615.13일로 피해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지속기간도 길다. 특히 학령전 아동학대의 지속기간은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학대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 며, 학령기 아동학대 역시 청소년 학대와 차이가 나타나. 세 유형의 학대지속기간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피해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대가 자주 발생한다. 1) 학대행위가 일회성으로 발생한 비율을 보면 학령전 아동학대의 경우 무려 70.1%에 이르나, 학령기 아동학 대는 52.7%이고, 청소년 학대는 44.3%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2) 거의 매일 학대 가 발생한 비율 역시 피해자 연령이 가장 많은 청소년 학대의 경우에는 25.5%를 차지하나, 학령전 아동학대(15.6%)와 학령기 아동학대의 경우14.1%) 이보다 훨씬 비율이 낮다.
- 학령전 아동학대(34.6%), 학령기 아동학대(20.5%), 청소년 학대(17.6%)의 순으로 공범이 있는 비율이 높다. 즉 피해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아동 연령이 많을수록 단독범일 가능성이 높다 학령전 아동학대의 평균공범수는 1.49명, 학령기 아동학대는 1.28명, 청소년 학대는 1.22명이다. 세 유형의 학대 모두 공범관계는 부부/동거인/애인과 동료/친구/선후 배 사이인 경우가 많았는데, 다만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는 주로 동료/친구/선후배 (67.0%)가 가장 많은 반면,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와 청소년 학대 가해자들은 부부 /동거인/애인 관계가 가장 많다(각각 68.3%와 51.9%). 또한 청소년 가해자들은 가 족이나 친척들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는 비율이 다른 두 유형의 학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14.8%).
- 피해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여러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보다 심각한 형태의 학대가 발생한다. 학령전 아동은 한가지 유형의 학대행위만 발생한 단일 학대가 더 많은 반면(복합학대 비율 36.6%), 학령기 아동학대는 단일학대와 복합학대의 비율이 절반 정도씩으로 유사하고(복합학대 비율 51.9%), 청소년 학대는 단일학대 보다는 여러 유형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복합학대가 더 많다(62.7%).
- 세 학대 유형 모두 '양육태도 혹은 후육문제'가 가장 많고. '가해자 개인특성'이 두 번째로 많은 동기이다. 다만 학령전 아동학대와 학령기 아동학대의 경우 '양육부 담 및 스트레스'가 세 번째로 비율이 높은 반면 청소년 학대는 '부부문제'가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다.
- 피해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가해자가 술을 마신상태에서 학대행위를 한 비율이 높다. 학령전 아동학대의 경우 13.1%의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던 반면,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의 음주비율은 32.1%,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38.2%이다.

• 피해아동의 연령은 학대 후유증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며, 피해아동 중에서도 초등학생이 가장 학대 후유증에 가장 취약하다. 후유증 경험비율은 학령기 피해자 (85.4%), 청소년 피해자(74.8%), 학령전 피해자(64.7%)의 순이다.

다섯째, 학령전 아동학대, 학령기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의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 에게 제공된 서비스 제공유무와 서비스 유형'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 되었다.

-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가해자의 많은 수는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는 반면,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대를 한 가해자들은 절반 정도가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 서비스 수혜율은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35.1%), 학령 기 아동학대 가해자(51.5%), 청소년 학대 가해자(49.2%)의 순이다.
- 피해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살펴보면. 1) 서비스 제공비율이 가장 높은 피해자 집단은 학령기 아동으로(77.7%),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령기 아동이 학대 후유증이 가장 많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하겠다. 2) 그 다음으로 서비스 수혜율이 높은 집단은 학령전 아동이며(67.1%), 청소년 학대피해아동이 가장 적다(62.7%). 따라서 학대 후유증 분석 결과 학령전 아동보다 청소년 피해자가 후유증이 더 많음 에도 상담 등 서비스는 오히려 더 적게 받고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중복학대 여부에 따른 가정내학대 유형화: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

첫째,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처분 특성'을 비교한 결과 죄명, 경합여부, 검거경위, 최초신고자, 구속여부, 검찰처분유형, 최종심유형, 변호사 선임 유무 및 유형,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 태도와 피해자 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 다. 그러나 구형량, 고소취하 여부와 합의 여부에는 차이가 없었다. 요약하면, 중복학 대는 경합비율이 높고, 부모 등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이 높고, 구속율이 높고, 구공판 및 구약식 비율이 높고, 2심 3심 비율이 높고, 변호사선임비율이 높고, 국선선 임비율이 높고, 일부만 범행을 시인하는 비율이 높고,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 는 비율이 높다. 반면 비중복학대는 경합비율이 낮고,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고, 구속율이 낮고, 기소유예 비율이 높고, 사선선임비율이 높고, 범행을 전적 으로 시인하는 비율이 높다.

-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 가해자의 죄명은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장애아 동관람, 구걸강요. 이용행위'(각각 78.2%와 72.4%), '상습'(각각 19.7%와 18.0%) 순으로 많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율 면에서, '아동학대, 아동유 기 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이용행위'는 중복학대의 경우 78.2%이나 비중복 학대는 이보다 적은 72.4%이다. 또한 '양육알선금품취득 및 아동금품유용'은 비중 복학대에만 있고,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비율은 중복학대가 더 높다.
- 중복학대가 경합비율이 높고 동종경합보다 이종경합 비율이 높다. 중복학대 경합비 율은 72.5%이고, 이종경합이 27.1%, 동종경합이 18.8%, 동종+이종경합이 25.7%이 다. 비중복학대 경합비율은 이보다 적은 63.0%이고, 이종경합이 35.0%, 동종경합이 14.1%, 동종+이종경합이 13.8%이다.
- 중복학대는 79.1%가, 비중복학대는 62.1%가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중복학대가 비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복학대는 상대 적으로 가족 신고비율이 높고, 비중복학대는 비가족 신고비율이 높다.
- 중복학대의 경우 부모 혹은 위탁부모가 신고한 비율이 56.4%로 매우 높고, 아동보호 전문기관(15.4%), 조부모/친인척/형제자매(7.7%)의 순으로 대체로 가족이 신고한 비율이 높은 반면, 비중복학대의 경우에는 부모 혹은 위탁부모가 신고한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하나 비율 면에서 22.5% 수준이고, 그 외 아동보호전문기관(18.3%), 교원/보육교직원/유치원(17.4%), 모르는 사람(14.1%), 이웃(11.3%)과 같이 가족 이 외 사람이 신고한 비율이 매우 높고, 신고자 유형도 다양하다
- 가정내 중복학대 가해자 구속 비율은 25.2%로 비중복학대 10.7%에 비하여 약2.4배 이상 높다. 또한 검찰처분 결과 면에서도 중복학대가 비중복학대에 비하여 구공판, 구약식 등 더 중한 처분을 받는 비율이 높다. 중복학대는 구공판(44.4%), 기소유예 (23.6%), 불기소(11.8%), 구약식(8.3%)의 순인데 비하여, 비중복학대는 기소유예 (37.0%), 구공판(31.0%), 불기소(13.8%), 타관송치(7.1%)의 순이다. 중복학대의 처 분유형은 구공판이 가장 많고, 비중복학대는 기소유예가 가장 많다.

- 최종심유형 중복학대는 2심(40.3%), 3심(10.4%)의 비율이 비중복학대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훨씬 높다. 비중독학대는 대부분 1심에 그치고 있고 그 이상 재판이 진행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2심 20.5%, 3심 2.4%).
- 중복학대의 변호인 선임율은 49.6%, 비중복학대는 31.1%로 중복학대의 선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국선선임 비율이 높다.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 모두 사선변호인보 다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율이 더 높기는 하나 구체적인 비율 면에서 중복학 대는 비중복학대에 비하여 국선변호인 선임비율이, 비중복학대는 중복학대에 비하 여 사선변호인 선임비율이 높다. 이는 중복학대 가해자가 비중복학대 가해자에 비 하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중복학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비율은 21.0%. 비중복학대의 경우 16.9%로 중복학대가 다소 높으나 큰 차이는 아니다. 그러나 시인하는 가해자들 중에 어느 정도 시인하는가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명확한데, 중복학대는 일부만 시 인하는 가해자들이 훨씬 많고(50.7%), 비중복학대는 전적으로 시인하는 가해자의 비율이 더 높다(45.5%).

또한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비율은 중복학대는 57.7%인데 비해. 비중복 학대는 38.5%로 훨씬 낮다. 양가감정은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 모두 약10% 정도로 유사한 수준이다.

둘째,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가해자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별, 직업, 체포횟수, 전과 유무, 총전과 횟수, 가해자의 적응 및 행동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 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연령, 국적, 교육수준, 혼인상태, 종교, 실형전과와 아동학대 체포 여부, 신체 장애나 정신질환 에는 차이가 없었다. 요약하면, 중복학대는 비중복학 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남성가해자가 많고, 무직 비율이 높고, 범죄경력이 많고, 가해자의 적응 및 행동문제가 많다.

• 중복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훨씬 많고(69.4%), 여성은 적은 반면 (30.6%), 비중복학대의 경우에는 남성이 다소 많기는 하나 남녀 비율이 유사한 수준 이다(남성 52.2%, 여성 47.8%). 중복학대의 경우 아버지가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정 폭력을 하거나, 다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중복학대는 비중복학대에 비하여 가해자가 직업이 없는 비율이 높아서, 중복학대 가해자의 미취업율은 32.6%, 비중복학대는 24.6%이다. 그러나 중복학대는 저소득 층의 문제만은 아니어서, 중복학대는 비중복학대에 비하여 전문관리직 비율과 숙련 기능공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비중복학대는 중복학대에 비하여 사무직, 서비스판매 직,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더 높다.
- 전과나 체포경력의 면에서 중복학대 가해자가 비중복학대 가해자에 비하여 범죄경 력이 많다. 중복학대 가해자들은 평균 6.52회 체포된 적이 있고, 비중복학대 가해자 들은 평균 4.18회로 중복학대 가해자가 약 2.34회 더 많다. 또한 중복학대 가해자의 66.9%, 비중복학대 가해자의 54.0%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복학대 가해자 의 전과자 비율이 약13% 더 높다. 총 전과횟수 역시 중복학대 가해자는 5.77회, 비중복학대 가해자는 3.84회로 중복학대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전과가 더 많다.
- 가해자의 적응 및 행동문제 여부가 중복학대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다.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 가해자 모두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대로 유사하다. 적응 및 행동 문제의 경우에는 중복학대 가해자들은 무려 82.7%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중복학대의 경우에도 61.3%이다.

넷째,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피해자 특성'을 비교한 결과 피해아동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피해아동의 적응 및 행동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 되었다. 그러나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여부, 가해자-피해자 관계, 가해자-피해자 동거여부, 가족유형, 피해자 가족의 사회적 지리적 고립 여부에 는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가해자 피해자 관계. 가족특성 등은 학대 위험요인이기는 하나, 중복학대 위험요인은 아니다.

- 중복학대의 피해자 수는 평균 2.78명이고, 피해자들간의 관계는 대부분이 형제자매 이다(98.9%).
- 중복학대는 피해아동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여부보다는 적응 및 행동문제와 연관 된다. 중복학대 피해아동의 10.8%가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이 있는데 비해, 비중복 학대 피해아동은 그 비윸이 이보다 많은 21.0%에 이른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적은

및 행동문제에서는 오히려 중복학대의 경우 비율이 높아서 비중복학대 피해아동의 25.8%가 적응 및 행동 문제가 있는 반면, 중복학대 피해아동은 그 비율이 54.8%로 훨씬 높다.

넷째,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범행 특성'을 비교한 결과 학대장소, 학대 지속기간, 학대빈도, 공범특성, 학대유형, 학대동기, 가해자 음주여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가해자 약물복용 여부. 피해자의 후유증 유무와 후유증 유형에는 차이가 없었다. 요약하면, 중복학대는 가해자-피해자 공동주거지에서 발생 할 가능성이 높고, 학대지속기간이 길며, 학대빈도가 높고, 단독범비율이 높고, 복합 학대 비율이 높고. 양육부담과 양육 스트레스 때문에 학대를 하며. 가해자가 음주상태 에서 범행을 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비중복학대는 중복학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대장소가 보다 다양하고, 학대지속기간이 짧고, 학대빈도가 낮으며, 공범이 있는 비율이 높고, 단일 학대 비율이 높고, 양육 방식, 태도나 훈육문제 차원에서 학대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는 학대 발생장소가 상이하다. 가정내 중복학대는 거의 대부 분이 가해자 피해자의 공동주거지 혹은 가해자 주거지나 피해자 주거지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92.3%), 비중복학대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82.7%이고 나머지 는 실외공간(10.4%), 기타 공간(5.2%) 등에서 발생한다.
- 중복학대의 평균 학대지속기간은 694.81일이나, 비중복학대는 이보다 짧은 374.39 일로, 비중복학대 보다 학대피해기간이 길다. 이러한 중복학대의 장기화는 피해아 동이 더 많은 후유증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가정내 중복학대는 학대기간이 장기화될 뿐 아니라 학대빈도 역시 높다. 일회성 학대 비율 면에서 비중복학대가 57.8%인데 비하여 중복학대는 31.0%에 불과하고,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한 비율은 비중복학대는 14.3%인 반면, 중복학대는 24.1%이다.
- 가정내 중복학대의 12.0%만이 공범이 있는 반면, 비중복학대는 23.3%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복학대가 오히려 단독범 형태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
- 학중복학대는 단일학대보다(36.4%), 복합학대가 많은 반면(63.6%), 비중복학대는 단일학대(54.3%)가 복합학대(45.7%)보다 많다. 구체적으로는 중복학대는 비중복학

대에 비하여 복합학대, 방임이 많고, 비중복학대는 중복학대에 비하여 신체적 학대, 유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가정내 중복학대 가해자들은 양육부담과 양육 스트레스 때문에 아동을 학대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비중복학대 가해자들은 그보다는 양육 방식, 태도나 훈육문제 차원에서 학대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복학대의 학대동기는 '양육부담 및 스트레 스'(42.9%), '가해자 개인 특성'(20.3%),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18.9%)의 순으로 많지만, 비중복학대의 경우에는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49.7%), '가해자 개인 특성' (17.2%),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13.0%)의 순이다.
- 가정내 중복학대 가해자들은 52.2%가 술을 마신 상태로 학대행위를 한 반면. 비중복 학대 가해자의 경우에는 30.2%만이 음주상태였다. 이는 중복학대 가해자들이 알코 올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점을 의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 그러나 중복학대 학대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후유증 유무와 후유증 유형에는 차이가 없다.

다섯째,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의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제공된 서비 스 제공유무와 서비스 유형'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 가해자 서비스 제공 비율은 중복학대는 55.3%, 비중복학대는 49.5%이고, 피해자 서비 스 제공 비율은 중복학대는 79.2%, 비중복학대는 78.0%로 서로 유사한 수준이다.

친부모 여부에 따른 가정내 학대 유형화: '친부모 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 첫째, 친부모 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처분 특성'을 비교한 결과 죄명, 경합여 부, 가해자 검거경위, 최초신고자, 검찰처분유형, 구형량, 최종심유형, 변호인 선임, 수사과정에서의 가해자의 범행시인정도와 피해자의 가해자 처별에 대한 태도, 고소취 하여부와 합의여부의 모든 측면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가 친부모인지 아닌지가 아동학대의 가해자에 대한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친부모 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가해자 특성'을 비교한 결과 가해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직업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국적, 교육 수준, 종교, 전과특성, 가해자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유무와 적응 및 행동문제 유무 에는 차이가 없었다. 요약하면, 친부모학대는 남성가해자 비율이 높고, 40대가 많으 며, 혼인상태는 별거/이혼/사별 혹은 초혼인 경우가 많고, 단순노무직/사무직/가정주 부 비율이 높다. 그러나 친부모학대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신체장애나 정신 적, 심리적 문제가 더 많거나, 교육수준이 낮거나, 범죄경력이 더 많은 것은 아니다.

- 친부모 학대 가해자는 남성 비율이 더 높고(60.1%), 친부모 외 가족학대는 남녀 비율이 유사한데,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다(54.3%). 다시 말해서 친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버지일 가능성이 더 높고, 친부모가 아닌 가족이 학대를 하는 경우는 어느 한쪽의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남녀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 이 유사하다.
- 친부모 학대는 40대가, 그 외 가족학대는 30대가 가장 많다
- 친부모 학대의 가해자들은 별거/이혼/사별(37.2%)와 초혼(34.7%)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그 외 가족학대는 동거(35.9%)와 재혼(25.0%), 초혼(23.4%)이 많다.
- 미취업비율은 친부모 외 가족학대 가해자가 더 높아서 37.5%이고, 친부모 학대의 경우 25.3%이다. 직종 면에서는 친부모 학대는 단순노무직(19.8%), 사무직종사자 (12.5%), 가정주부(11.4%)의 순인 반면, 그 외 가족학대는 전문관리직(18.8%), 단순 노무직(17.2%), 서비스판매직(10.9%)의 순이다.

셋째, 친부모 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피해자 특성'을 비교한 결과 동거가족 수. 피해아동의 적응 및 행동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피해 자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여부, 피해자 수와 피해자들간의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거여부, 사회적 및 지리적 고립 여부, 피해자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시말해 친부모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 피해자는 크게 다르지 않다.

- 친부모 학대의 경우에는 평균 3.66명이나, 그 외 가족학대의 경우 4.05명으로 친부 모 외 가족학대의 동거가족수가 더 많다.
- 친부모 학대 피해아동의 15.0%가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친부모

외 가족학대는 그 비율이 25.0%로 약 10%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그러나 친부모 가족 피해아동의 59.4%가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친부모 외 가족학대 피해아동은 그 비율이 무려 74.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친부모가족이 아닌 경우 피해아동의 적응 및 행동 문제가 학대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친부모 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범행 특성'을 비교한 결과 공범자관계 와 가해자 역할, 학대동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학대장소, 학대 피해기간, 학대빈도, 공범여부와 공범수, 학대유형,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후유 증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 친부모학대의 범행특성은 많은 면에서 다른 학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공범자관계와 가해자 역할 면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친부모 학대 가해자들간의 관계 는 부부/동거인/애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75.7%), 그 외 가족학대의 공범들은 부부 /동거인/애인(57.1%)과 동료/친구/후배(42.9%)의 두 집단으로 양분되어 있다. 또한 범행시 가해자의 역할을 보면 친부모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 모두 대부분 주도 적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각각 78.6%, 71.4%), 친부모 학대는 보조적 역할의 비중이 (20.0%), 그 외 가족학대 가해자는 단순가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28.6%).
- 친부모 학대는 가해자 개인특성 때문에 학대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30.7%). 이어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28.6%), 경제적 문제(16.8%)의 순이나,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학대동기는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가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고(49.7%), 가해자 개인 특성(17.2%),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13.0%)의 순이다. 검증치를 구할 수는 없으나 두 학대 유형간의 학대동기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 가해자가 친부모인지 아닌지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이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다르 지 않으며, 후유증을 경험하는 경우에도 특정 유형의 후유증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 성이 상이하지 않다. 가해자가 친부모이든 아니든 피해아동들의 많은 수가 후유증 을 겪고 있으며(친부모 학대 772.%, 그 외 가족학대 88.2%), 신체적 후유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복합 후유증, 사회적 후유증, 정서적 후유증의 순으로 많다.

다섯째. 친부모 학대와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제공유무와 서비스 유형'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가해자 서비스 수혜여부 면에서만 차이점이 발견되었는데, 친부모 학대 가해자의 54.3%가 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반면, 친부모 외 가족학대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31.7%이다. 이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친부모 학대의 경우 검찰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학대살인'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17일까지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한 모든 신문기사를 검색하고, 총75건의 아동학대살인 사건기사를 수집하였다. 기사검 색은 1) 21개의 일간지 및 주간·월간지97)와 2) 네이버, 구글, 야후 검색, 3) SBS, 뉴스,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검색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11년 9개월 동안(2004-2015. 9) 신문 및 뉴스에 보도된 아동학대 살인사건은 총 75사례이다. 표 하단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망아동수와 비교하여 보면 동일 기간동안 총134명의 아동이 사망하였는데. 따라서 아동보호전문 기관 통계와 비교할 때 약56%정도의 사건이 보도된 셈이다.

아동학대살인의 '처분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아동학대 살인 사건의 신고자는 일반 아동학대와 달리, 가해자 본인이 아동을 살해한 후 직접 신고한는 경우가 가장 많다(25.7%). 그 다음으로 타인(9.3%). 친부모 (5.3%). 친인척(5.3%)이 주요 신고자이다.

둘째. 아동학대살인 가해자에 대한 법원 처분 현황을 보면 유기징역이 22.6%이며. 미상 비율이 69.8%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약75%가 유기징역형을 받는 셈이다.

아동학대살인의 '가해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⁹⁷⁾ 카인즈(http://www.kinds.or.kr/)를 통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 경상일보, 세계 일보, 부산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영남일보, 한국일보, 헤럴드 경제, 강원일보, 대전일보, 데일리안, 수원일보, 머니투데이, 로이슈 경북매일, 전민일보를 분석하였고, 중앙일보, 동아일 보, 조선일보 신문기사는 별도로 검색함.

- 75개 아동학대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106명이었다. 이들 가해자의 성별은 남자가 35.8% 여자가 64.2%로 여성가해자가 훨씬 많다. 지난 12년간(2004-2015.9)의 추이 를 보아도,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여성가해자 비율이 항상 높았다.
- 가해자 연령 면에서는 30대가 가장 많고(41.5%), 그 다음은 20대(28.3%), 40대 (13.2%)의 순이다. 미상 비율은 8.5%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가해자 평균 연령은 2007년도를 제외하고는 30대 초반으로 대체로 31-34세 정도이며, 지난 12년간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아동학대살인의 '피해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75개의 아동학대살인 보도사건의 피해아동은 총 75명으로 한 사건에서 두명 이상의 아동이 살해당한 사건은 없었다.
- 75명의 학대살인 피해아동들은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유사하다. 남자아동이 46.7% 이고, 여자아동이 41.3%이다. 그러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해마다 상이한 양상 이 나타나는데, 2007년부터 2010년, 2012년, 2014년의 여섯 해는 남자아동 비율이 높았고, 2004년, 2005년, 2011년, 2015년의 네 해는 여자아동 비율이 높았다.
- 피해아동의 연령을 보면 1세 미만의 영아가 가장 많았고(42.7%), 1-3세와 4-6세가 각각 17.3%이다. 또한 7-9세가 13.3%, 10-12세가 6.8%, 13-15세가 1.3%이다. 75 명 아동의 평균 연령은 3.24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살인의 피해자는 많은 수가 영유아임을 알 수 있다(77.3%)
- 아동학대살인의 가해자는 친모가 가장 많아 39.6%이고, 친부가 23.7%로 친부모가 전체 가해자의 63.3%에 이른다. 여기에 계모(11.3%), 부모의 동거인(4.7%), 양부모 (3.8%) 까지를 합하면 아동의 부모 혹은 양육자가 아동을 살해한 비율이 무려 83.1% 에 이른다. 그 외 위탁모(3.8%), 친인척(3.8%), 친모의 지인(1.9%) 등은 비율이 낮다. 미상비율은 4.5%이다.
- 아동학대살인 피해아동의 가족형태는 초혼 친부모 가족(25.3%)과 재혼가족/동거 (22.7%), 미혼부모가정(20.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외 모자가정(6.7%), 입양가정(4.0%), 부자가정(2.7%), 가정위탁(2.7%), 친인척보호(1.3%) 등의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첫째, 초혼 친부모가족에서도 아동학대 살인이 많이 발생 하며(약1/4), 둘째 동거가족이나 미혼부모, 모자, 혹은 부자가정 등의 비율이 절대 낮지 않아. 가족해체가 양육부담을 가중시키고. 아동학대살인으로 이어지는 위험요 인을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살인의 '범행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아동학대살인 사건의 장소는 가정 내가 70.7%, 가정 외가 29.3%로 많은 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가정 외 장소는 숙박업소(8.1%), PC방/주유소/공원(5.4%), 어린이 집(1.3%), 주차장(1.3%), 기숙사(1.3%), 병원(1.3%), 고시원(1.3%) 등이 있다.
- 학대 지속기간은 평균 173일에 이른다. 구간별 비율은 보면, 1-24일이 가장 많아 10.7%, 2-4개월이 9.3%, 8개월-1년이 4.0% 등이다.
-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54.7%는 단독범이며, 공범들간의 관계는 부부가 가장 많았고 (73.5%), 그 외에는 동거인(14.7%), 가족 및 친인척(8.8%), 지인(3.0%)의 순으로 비 율이 높다.
- 아동학대살인사건의 학대유형을 분석한 결과 72.0%가 단일학대이고, 25.3%는 복합 학대이다. 단일학대 중에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고(49.3%), 방임(12.0%), 유기 (10.7%)의 순이다. 복합학대 중에는 신체적 학대+방임이 가장 많고(13.3%), 그 외에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6.7%), 신체적학대+정서적 학대+방임(5.3%)의 순이다.
- 가해자들의 아동학대살인은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양한 이유 중에서 양육기술부족이 가장 많았고(35.3%), 원치않은 아동이거나 아동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탓에 발생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다(16.4%). 또한 아동학대살인은 생활고 때문에 발생하거나(9.4%), 가해자 개인의 불안, 우울, 혹은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9.4%). 그 외에도 자녀양육부담(7.1%). 부부갈등이 나 이혼, 별거 문제(4.7%), 가해자의 게임중독(2.4%),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1.2%) 등이 있었다. 미상 비율은 14.0%이다.
- 신체적 학대 중에는 도구로 때리거나(16.9%) 손, 발 등으로 때리는 경우가(13.5%) 가장 많았으나 그 외에도 다양한 신체적 행위가 발견되었는데, 화상, 꼬집거나 물어 뜯음, 벽이나 변기에 밀어붙임, 음식물이나 토사물을 강제로 먹임 등 상상하기 어려

운 학대행위가 있었다. 구체적인 학대도구로는 막대기나 몽둥이가 가장 많고 (20.2%), 비닐봉지(6,4%), 가전제품(4.6%), 줄, 끈(4.6%), 운동용품(3.7%), 흉기나 뾰족한 도구(2.8%). 음식물이나 토사물(2.8%). 물(뜨거운 물. 고춧물)(1.8%). 사무용 품(1.8%), 수건, 담요(1.8%) 등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였다.

정서적 학대로는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거나(2.1%), 감금(1.4%)하는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그 외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나, 벌거벗겨 내쫓거나,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학대가 발견되었다.

방임 중에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가장 많았다(9.3%). 또한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거나(4.9%),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4.9%)가 흔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학교에 보내지 않거 나, 아동을 두고 가출을 하는 등의 방임행위가 발견되었다.

유기는 보호하지 않고 아동을 버리는 행위가 있었다(5.6%).

- 피해아동의 신체에서는 온몸에 멍자국이 있거나(23.1%), 복잡한 두부손상(12.0%), 입, 눈 등 상처(10.2%)가 많고, 그 외 도구흔이 있는 상처(8.3%), 복부손상(6.5%), 화상자국(4.6%). 긁히거나 물린 자국(2.8%) 등 여러 형태의 상처유형이 발견되었다.
- 아동의 사망사인은 외상성 쇼크(16.1%), 질식사(12.1%), 두부손상(105%)가 상대적 으로 많고, 그 외 간, 소장, 장 파열(6.7%), 패혈성 쇼크 및 패혈증(4.0%), 급성신부전 쇼크(4.0%), 아사(2.7%) 등이 있었다.
- 가해자가 아동을 살해한 후 사건을 은폐하는 방법으로는 시신유기가 가장 많고 (22.5%), 거짓진술(11.2%), 허위신고(5.0%), 지문, 혈흔, 상처, 멍자국 등을 없앰 (2.5%) 등의 방법이 발견되었다.

학령전 아동학대 살인과 학령기 아동학대 살인의 특성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학령전 아동학대 살인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1.05세이고, 학령기 아동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7.7세로 학령기 아동 가해자가 나이가 더 많다. 학령전 아동 가해자들 은 20대(38.7%)와 30대(40.0%)에 분되어있지만, 학령기 아동 가해자들은 30대에 70%가 집중되어있다. 이같은 현상은 가해자의 많은 수가 부모이기 때문에 아동 연령이 많을수록 부모의 연령도 많아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아동학대살인은 피해아동의 연령이 학령전 아동이건, 학령기 아동이건에 상관없이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이나, 가해자피해자 관계, 동거여부, 가족형태가 유사하다.
- 아동학대살인은 피해아동의 연령이 학령전 아동이건, 학령기 아동이건에 상관없이 학대장소와 학대지속기간, 그리고 공범유무가 유사하다. 다만 학령기 아동대상 학 대살인의 경우 피해아동이 한 가지 유형의 학대만을 경험하는 단일학대가 훨씬 많은 반면(82.1%), 학령기 아동 대상 학대살인은 복합학대(56.3%)와 단일학대 (43.8%) 비율이 유사하며, 오히려 복합학대 비율이 다소 높다. 따라서 피해아동연령 이 많을수록 학대살인 가해자는 여러 개 유형의 학대를 복합적으로 행사함을 알 수 있다.

친부모학대 살인과 그 외 가족학대 살인의 특성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친부모 학대살인과 그 외 가족 학대살인 모두 여자 가해자 비율이 더 높다. 다만 친부모 학대살인 가해자는 평균 35.30세인데 비해, 그 외 가족의 학대살인의 경우 30.45세로 친부모 학대살인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더 나이가 많다.
- 친부모학대살인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80세인데 비해 그 외 가족의 학대살인의 경우 평균 5.08세로 훨씬 높다. 친부모 외 가족이 아동학대살인 가해자인 경우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어린 아동일수록 가해자가 친부모일 가능성이 높다.
- 친부모 학대살인의 경우 초혼 친부모가정이 가장 많고(62.2%), 미혼부모가정 (35.1%), 재혼/입양/가정위탁/친인척가정(2.7%)의 순이나, 그 외 가족의 학대살인 의 경우 재혼/입양/가정위탁/친인척가정이 가장 많고(84.6%). 친부모가정(7.7%)와 미혼부모가정(7.7%)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 학대지속기간은 친부모 학대살인의 경우 51.86일. 그 외 가족의 학대살인은 평균 250.08일로 친부모학대살인이 상대적으로 지속기간이 더 짧다. 공범유무는 친부모 학대살인의 20.0%가 공범이 있으나. 그 외 가족의 학대살인은 84.6%가 공범이 있 다. 친부모 학대살인은 단독범으로, 그 외 가족 학대살인은 비단독범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친부모 학대살인에 비하여 그 외 가족의 학대살인 사건이 학대지속기간이 길고, 여러 명의 가해자들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5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김 희 균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제1절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미국의 경우 1690년대에 형사법정에 아동학대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건이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 1692년에는 학대 받는 아동을 정부기관에서 보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 다. 1696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parens patriae, 즉, '국가후견인'이라는 개념이 확립되 고 나서부터는 아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원칙이 미국에도 소개되기에 이르렀다.

1825년 미연방 내 각주들은 사회복지기관을 만들어 학대되거나 유기된 아이들을 부모나 거리로부터 구출해서 고아원이나 복지시설, 다른 가정에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1835년에는 아동구출위원회(National Federation of Child Rescue)가 설립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활동이 시작되었다. 19세기 말에는 여러 개의 사설기관들이 아동학대 문제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기소하였으며, 학대행위자 처벌법 제정을 시도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움직임들이 포착되었다.

1853년 뉴욕에서는 '아동보호기구(Children's Aid Society)'가 설립되어 뉴욕 내에 거주하는 유기 아동을 시설에 격리하거나 거리에 방치하는 대신 이들을 대신 양육해줄 가정을 찾아 연결시키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연결된 아이들은 주로 농장일을 돌보면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1874년 아동학대로 인하여 처음으로 형사 처벌된 사건, 즉, "메리 앨런 케이스"가 보고되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09년 루즈벨트 대통 령은 백악관 내 특별회의를 통해 아동보호를 책임질 자원봉사단체의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져서 1930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안에 '범죄 위험에 노출된 유기아동 지원'을 위한 기금 규정이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1912년에는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할 연방 아동보호국(Children's Bureau)이 만들 어졌고, 1958년 개정 사회보장법은 아동보호를 위하여 각주가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삽입했다. 1950년대와 60년대 각종 미디어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되었고, 1960년대 중반 연방법에 아동학대 신고의 무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1974년 『아동학대의 방지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즉. CAPTA(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의 제정과 아동보호소(Child Protection Services)의 신설로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1. 아동보호제도의 역사98)

가. 개요

미국 아동보호의 역사는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시기는 식민지 시대부터 1875년까지로 이 시기의 특징은 조직화된 아동보호 제도가 없었다는 점이 다. 조직화된 아동보호 제도는 제2기부터 나오는데 바로 1875년부터 1962년까지이 다. 이때는 정부기관이 아닌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agency)가 아동보호의 책무를 담당했고. 1962년을 기점으로 드디어 국가가 아동보호의 역할을 맡게 되는 진정한 의미의 아동보호의 시대가 개막된다.

나. 1875년 이전의 아동보호 제도

전 세계적으로 아동보호만 전담하는 기구가 나온 것은 1875년의 일로, 뉴욕에 본부 를 둔 '아동에 대한 잔혹행위 방지 기구'(New York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가 그것이었다. 이 기구가 나오기 전 미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아동보호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가령, 1810년 세넥타디(Shenectady)라는 곳에서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잡혀 온 한 여자가 본인 스스로 살해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상의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방면된 바 있다. 또, 1869년에는 일리노이 주에 살던 한 아버지가 추운 겨울에 앞도 안 보이는 아이를 추운 창고에

^{98) &#}x27;미국의 아동보호제도의 역사'는 John E.B. Mayers, "A Short History of Child Protection in America," 42 Fam. L.Q. 449, 2008의 요지를 번역한 것임.

가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아버지는 자신의 방식대로 아이를 훈육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친권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행위를 일삼을 경우에 는 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한다"99)고 설시하였다. 또, 1856년에는 캘리포니아 역사 상 최초로 아동에 대한 강간 범죄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피해자의 나이는 당시 13세였다.

하지만 1875년 이전까지는 형사처벌만이 유일한 아동보호 수단은 아니었다. 일찍 이 1642년부터 메사추세츠 법은 치안판사에게 아이를 정상적으로 훈육하지 못하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빼앗아 올 권리를 인정했고, 1735년에는 조지아 주에 사는 한 고아 소녀가 성적으로 학대 받아 온 집에서 실제로 구출된 적도 있다. 또, 1886년 메사추세츠 주법은 "부모의 학대나 유기, 범죄, 마약 등으로 인하여 아이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100) 판사가 가정 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법에서 그런 권리를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개입이 판사의 임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아동보호 제도는 조직적인 전담기구가 나온 후의 아동보호 제도 에 비해 치밀하지 못했고,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개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다. 1875년부터 1962년까지의 아동보호 제도

조직적인 아동보호 제도의 태동이 된 것은 메리 엘렌(Mary Ellen)이라는 9살 난 소녀 아이의 덕이었다. 메리는 뉴욕 안에서도 최악의 거주지로 꼽히는 '헬스 키친 (Hell's Kitchen)'이라는 곳에 살면서 부모에게 폭행과 유기 피해를 당했다. 이런 이야 기를 들은 에타 휠러(Etta Wheeler)라는 사람이 메리를 구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먼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자신들에게 수사권이 없다고 개입을 거절했다. 휠 러는 자선단체에도 찾아갔는데, 자선단체 역시 가족 내부의 일에는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당시는 소년법원(juvenile court)이 창설되기 전이라서 법원에

⁹⁹⁾ Fletcher v. People, 52 Ill. 395 (1869).

¹⁰⁰⁾ An Act Concerning the Care and Education of Neglected Children, 1866 Mass. Acts ch. 283.

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할 수 없이 휠러는 최후 수단으로 '동물보호 협회(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의 창시자인 헨리 버그(Henry Bergh)를 찾아갔고, 버그와 그 변호인인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의 도움을 받아 인신보호영장 등을 청구한 끝에 메리를 구할 수 있었다.

메리의 구출을 계기로 동물보다 못한 처지에 놓여 있는 아동들을 위한 보호단체 하나 없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버그와 변호사 게리는 동물에서 아동으로 이름만 바꾸 어 '뉴욕 아동보호협회(New York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 상 최초의 아동보호단체였다. 게리는 이 단체의 회장으로 20세기까지 아동보호 사업에 전념하게 된다.

아동보호협회에 관한 소식이 점점 전국으로 퍼져 나가면서 1922년에는 미국 전역 에 300개가 넘는 아동보호단체가 생겨났다. 하지만 수만 많았지 실제로는 20세기에 생긴 것이 대부분이고, 웬만큼 큰 도시가 아니고서는 아동보호단체의 보호를 받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도 아니었다. 즉. 당시까지만 해도 이웃의 불행을 나 몰라라 하지 않는 몇몇 시민들이나 경찰관, 법원의 도움으로 아동보호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지나 지 않았다.

아동보호 제도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동보호단체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기구는 바로 '소년법원(Juvenile Court)'이었다. 1899년 시카고에서 세계 최초로 소년 전담법원이 생겼고,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1919년에는 3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소년법원의 창설을 목격하게 되었다. 물론 소년법원이라는 것은 비행청소년의 범죄나 일탈행위를 제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그 관할에 속하는 소년에 대한 유기, 학대의 문제를 담당하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오늘날 아동보호 제도 의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울러 종래 시민사회에 맡겨졌던 아동보호 업무가 정부 주도의 기구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다. 가령, 더글라스 팔코너(Douglas Falconer)는 1935년에

"너무 오랫동안 아동보호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어 온 바람에 대부분의 아동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그 수준이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만약 우리 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 서비스는 당연히 국가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101)

고 적고 있다.

사람들은 국가가 아동보호에 나선다면 그 역할은 당연히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사회 보호국(social services)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20세기 이전과 이후가 다른 점은 이중에서도 주정부의 역할 변화이다. 20세기 이전에는 정부가 나선다고 해도 그 주체는 주가 아니라 카운티였는데 20세기 들어서면서 주정부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가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즉, 주정부 내에 건강과 사회복지, 노동, 아동 등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연방정부에 관해서 보면 사실 1935년 이전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한 연방정부 가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다. 물론 1912년에 '연방아동국(Federal Children's Bureau)'이 생기고 『셰퍼드-타우너 법(Sheppard-Towner)』에 따라 연방기금이 엄마 와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쓰이도록 규정했지만 본격적인 연방정부의 개입은 1930년대 대공황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사회복지에서 연방이 차지하는 역할이 처음 으로 인지된 게 바로 대공황 때였기 때문이다. 경제적 위기에서 국가를 구하기 위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국회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을 통과시켰다. 원래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은 고령연금과 고용보험, 직업안정 등에 있었지만 여기 덧붙여 상당한 규모의 연방기금이 가난한 가정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쓰이도록 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사회보장법』에 의하면 비록 뭉뚱그리기는 했지만 "연방아동국이 주정부와 힘을 합쳐 특히 도시지역에서 학대 받는 아이들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고,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 이 범죄자로 자라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바로 이런 발상의 전환으 로 인하여 아동보호 문제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그 흐름이 계속 이어 져 1970년대에는 연방정부가 아동보호 정책의 총괄부서가 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대공황은 경제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활황을 이루던 시민단 체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많은 단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통합되 거나 없어졌다. 그러면서 아동보호단체의 판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일부는 독자적으 로 생존할 방법이 없어서 다른 유사단체와 통합하는 길로 갔고, 또 일부는 지역경찰이

¹⁰¹⁾ Douglas P. Falconer, Child and Youth Protection, in 3 Social Work Yearbook 63, 65 (Fred S. Hall ed., 1935).

나 소년법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1956년 미국 '인도주의단체 아동보호국(Children's Division of the American Humane Association)' 국장인 빈센트 드 프란시스(Vincent De Francis)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세기 초에는 300개가 넘던 아동보호단체가 84개로 줄었고, 그마저도 3분의 2의 주에는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 주에는 아동보호 업무가 시민단체에서 주정부로 옮겨진 것이다. 빈센트는 약 10년 후인 1967년에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벌였는데, 여기서는 겨우 10개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빈센트 는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보고서에 "오늘날 아동보호 업무는 늙은 군인들이 근근이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마저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사실 1967년 당시를 회고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주가 법령에 아동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법령이 요구하는 정도로 학대아동과 유기아동을 조사하고 관리하고 지원할 만한 아동보호프로그램(Child Protection Services)을 주정부나 카운티가 가지고 있 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보다 몇 년 앞서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에 수백 개의 카운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찰청이 담당하는 곳 외에 제대로 된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가지고 있는 카운티는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 고 규모가 훨씬 큰 대도시에서조차 아동보호 업무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민간단체 에 맡겨져 있는 게 미국의 현실이었다. 196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캘리포니아 카운티 에는 아동보호부서가 아예 없었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역시 전체 주 중 한 군데도 없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1960년대까지의 아동보호제도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었다.

라. 아동보호의 새로운 전기

국가적 이슈가 되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아동학대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된 배경에는 몇몇 의사들의 노력이 있었다. 사실 1960년대 이전만 해도 의사들조차 아동학대 문제를 크게다루지 않았고, 의대 교과서에도 아동학대를 다루는 파트가 없었으며, 심지어 소아과의사들조차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1946년에 나온 논문 하나가 이런기류를 바꾸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소아과 방사선전문의인 존 캐피(John

Caffey)는 다리와 팔이 부러지고 경막하혈종이 발견된 아이들에 대한 임상결과를 보고했는데, 직접 그 상처들이 아동학대의 결과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상처가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논문을 필두로 해서 특히 소아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연구가 촉발되었고. 1962 년 "매 맞는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블록버스터 급 논문의 출간으로 이어지게 되었 다. 헨리 켐프(Henry Kempe)를 주저자로 하는 이 논문은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이슈 를 부각시키는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학계가 움직이고 나니까 그 뒤를 미디어가 따라왔다. 지방지를 중심으로 매 맞아 죽은 아이들의 사례가 1면을 장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1960년대를 넘기면서 뉴스위크,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 페어런 츠 매거진, 타임, 라이프 등 전국 규모의 잡지들이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아동학대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매 맞는 아이 증후군'과 헨리 켐프의 이름을 인용하는 빈도도 훨씬 많아졌다. 가령 1962년 뉴스위크 기사는 "아버지가 화났을 때"라는 제목 으로 시작하는데 역시 전문가인 켐프의 이름을 인용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11월 말 어느 날 우리 소아과 병동에는 4명의 피학대아동이 있었다. 그런데 약 4주 후에 그 중 2명이 병원에서 죽었고 한 명은 집에서 죽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친 아이들 말고도 매 맞은 아이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 다만 의사들이 잡아내지 못하는 것뿐이다. 사실 아동폭 력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의사에게는 없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1962년 이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었다. 1962년 '매 맞는 아이 증후군'이라는 논문이 출간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마 그때와 다름없이 이 범죄가 병원 기록 속에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102)

이런 기사들이 대중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 덕에 의회는 1962년 『사회보장법』을 개정하면서 아동보호라는 주제를 강조하게 되었다. 빈센트 드 프란시스에 따르면 1962년 개정법을 통해서 처음으로 아동학대가 아동복지의 한 장으로 자리를 차지하 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개정작업과 더불어 1962년 『사회보장법』은 아주 중요한 의무 조항 하나를 삽입하는데, 1975년 7월 1일까지 모든 주정부가 아동복지부서를 만들어 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법 개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아동복지 부서 내 아동보호

¹⁰²⁾ When They're Angry, Newsweek, Apr. 16, 1962, at 74.

전담기구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1962년은 논문의 출간과 법 개정으로 기억되는 해였고, 또 연방정부의 아동 보호국이 주정부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연구모임을 연달아 연 해이기도 했다. 헨리 켐프, 빈센트 드 프란시스를 포함해서 연구모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96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정한 법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어 1967년에는 미국 내 모든 주가 이를 채택하게 된다.

사실 이 신고의무법이 아니었다면 또 다시 아동학대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 을지도 모른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본 의사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면서 1974년까지 총 60,000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1980년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백만을 넘었 다. 아동학대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미국 사회가 그제서 알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1990년에는 2백 만 건, 2000년에는 3백 만 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21세기 들어서 숫자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 기세가 꺾였다고는 아직 말할 수 없다.

아동학대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신고의무 법이지 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foster care, 위탁양육이다. 원래 19세기 이전만 해도 집을 떠난 아이들은 고아원 등 시설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찰스 로링 브레이스(Charles Loring Brace) 같은 개혁론자들이 아이들을 시설 에 보내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주장하고 나섰다. 그때부터 고아원이 좋으냐, 위탁양육이 좋으냐, 하는 문제가 수십 년에 걸쳐서 다투어졌고, 20세기 초에 이르러 위탁양육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면서 많은 수의 고아원들이 폐쇄 수순을 밟게 되었다.

초창기 위탁양육은 아주 중요한 진전으로 여겨졌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에 대한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 정확히 말하면 1975년 이후에는 위탁양육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다시 세를 얻었다. 거의 50만 명 가까운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남의 가정에 묶여 있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이다. 특히 위탁양육에 맡겨진 있는 아이들 가운데 흑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당시로서는 뾰족한 게 없어서 위탁양육에 기대고 있지만 최선의 해결책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마. 연방정부의 역할

1974년까지 아동보호 문제에 연방정부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미 1912년에 아동보호국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 아동보호국 자체가 1960년대까지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1935년 『사회보장법』이 시행되고 1962년 법 개정을 통해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경제적지원을 약속하면서 아동보호 문제가 연방정부의 중요사업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1973년 상원의원인 몬데일의 지적과 같이 "연방정부에는 아동학대를 전담해서다루는 단 한 명의 정규직 직원도 없"을 정도로 연방정부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런 현실을 바꿔 놓은 사람이 바로 먼데일 상원의원이었다. 먼데일 의원은 일찍이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방 차원에서의 대응방법을 고심하다가 근본적 인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는데 그 법이 바로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어로 CAPTA(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였다. CAPTA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아동학대 문제를 최일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정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정이다. 즉, 연방정부가 구체적인 사건에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 주정부에 기금을 나눠 줘서 주정부의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CAPTA는 또 기존에 있던 신고법을 강화하고 수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런 다음 이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아동학대 및 유기 대응 센터(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를 설립했다. 그동안 민간이 주도하던 아동학대 방지 활동을 연방의 임무로 규정하고,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주정부이지만 연방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CAPTA는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도 미국의 피학대아동 보호법제의 중심에 있다.

한편 학대 받는 아동의 문제에 관한 한 미국 원주민 자녀들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1978년 이전에는 전체 원주민 자녀의 25% 내지 35%가시설입주나 위탁양육, 입양 등 사유로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 1978년

미 의회가 『원주민 아동복지법(Indian Child Welfare Act)』을 통과시킨 이유도 이것 이었다. 약어로 ICWA라고 불리는 이 법의 취지는 아주 명확했다. 인디언 부족의 통합과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통한 인디언 문화의 전승 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많은 아이들이 인디언 부모가 아닌 다른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원주민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ICWA는 아동과 가족의 분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인디 언 보호구역에 사는 아이들이 학대 또는 유기 등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그 결정권을 부족법원(tribe courts)에게 주도록 했다. 다른 누구 도 아닌 부족의 뉴으로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양육 방법을 고르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보호구역 외에 사는 아이들의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소년법원이 결정하도 록 했으나 그 결정 취지를 부족에게 통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족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바로 '인종 간 입양'이다. 사실 1960년 대 이전, 즉, 인권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전에는 인종 간 입양이라는 현상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심지어 루이지애나나 텍사스 같은 주에서는 인종 간 입양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 백인 부부가 유색 인종 자녀를 위탁 받아 키우거나 입양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늘어나고, 이에 대해서 많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기왕이면 같은 인종 내에서 입양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법원은 계속 인종 간 입양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면서 인종 간 입양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1970년대로 들어오면서 많은 시민운동 단체들이 인종 간 입양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가령, '흑인 시민운동 단체 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Black Social Workers)'은 다음과 같은 공식 견해를 내 놓은 바 있다.

입양이 되거나 위탁이 되더라도 흑인 아이들은 흑인 가정으로 가야 한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흑인에 속하고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지하고 미래를 기획하기 위해서 는 흑인 부모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고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가치와 태도와 자의식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므로 백인 가정 안에서 흑인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103)

이런 의견들이 나오자마자 전국적으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흑인이든 원주민이든 자신들의 아이들을 같은 문화권에서 키울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모든 위탁 및 입양단체들이 같은 인종 간 입양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1960년대 인종 간 입양 경향이 하나의 잘못된 해프닝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보통 백인 아이들에 비해서 흑인 아이들이 입양 시장에 더 많이 나오고 같은 흑인 부모를 기다리는 줄이 더 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양 제한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입양의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94년 의회를 통과한 『다인종결합법(Multi-Ethnic Placement Act)』 은 입양기관들이 인종적인 이유를 들어서 입양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다인종결합법』에서도 인종이 여전히 고려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런 제한을 그대로 두어서는 현상태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잇따라 지적되었고, 결국 1996년 법 개정을 통해서 인종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의 수를 크게 제한하게 되었다. 즉, 인종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종 간 입양을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된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법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인해 피학대아동에 대한 개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위탁양육 아동의 증가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학대하는 부모로부터 떼어내 다른 가정에 보낸 아이들 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건 물론이고, 일단 다른 가정으로 가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길이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80년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 지원 및 아동복지법(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을 제정했다. 이 법의 골자는 가급적이면 학대한 부모와 다시 결합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과 그게 힘들면 아예 친권을 박탈하고 입양을 시키는 방향으로 위탁양육제도를 개선하라 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최선의 방책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입양을 독려해서 입양을 하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였다. 또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이들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규정해 놓고 있다.

¹⁰³⁾ Nat'l Ass'n of Black Social Workers, Position Paper (Apr. 4-9, 1972).

『입양 지원 및 아동복지법』은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양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가족재결합이었다. 사실 이 가족재 결합의 이념은 1980년대 정책 입안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비록 지금은 학대 받는 자와 학대하는 자로 나눠서 가정이 쪼개져 있지만 언젠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 이런 가족재결합의 위험 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가령, '데이비드 이야기: 가족재결합 때문에 아이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책을 쓴 리처드 겔스(Richard Gelles)는 이렇게 지적 하고 있다.

아이들이 살 만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복지 전문가들이 아동보호와 가족재결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아이들이 중심이 되지 않는 가정은 의미가 없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이미 1960년대에 우리는 아동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정책을 만들어 왔다. "아무리 좋은 위탁가정도 친부모보다 나을 수는 없다"는 허무맹랑한 얘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아이를 낳는 능력과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능력은 전혀 관계가 없다. 경제적으로 조금만 뒷받침해 주면 모든 친부모가 괜찮은 양부모 이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아이들은 또 다시 고생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104)

입양 지원 및 아동복지법에도 불구하고 위탁 입양된 아이들의 수는 크게 줄지 않았 다. 오히려 가족재결합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바람에 판사와 사회복지사들이 아이들 을 더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97년 의회는 『입양과 가족안전법』을 제정했는데, 여기서는 가족재결합이라는 목표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에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아이들이 위탁 입양되는 순간부터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안에 가족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친권을 영원히 박탈하든지 양자택일 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성적 학대나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린 경우에는 가족재결합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즉시 친권 박탈을 선고하도록 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¹⁰⁴⁾ Richard J. Gelles, The Book of David: How Preserving Families Can Cost Children's Lives (1996), 148-50면.

바. 아동성학대 센터

1970년 이전에도 성적으로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 만 육체적 학대에 비해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주제가 바로 아동 성학대였다. 전문가 들은 이미 이 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해 왔다.

"사회복지사들은 특히 아동성학대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다."(빈센트 드 프란시스, 1965)

"아동에 대한 성학대에 관한 한 특별히 볼 문헌이 없다."(데이비드 월터스, 1975) "뛰어난 전문기들과 열정에 찬 시민들이 아동학대 문제를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었지만 아동에 대한 성착취 문제만큼은 일종의 터부처럼 남겨 두고 있다."(수잔 스그로이, 1975)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학대 문제야말로 소아복지 분야에서 가려진 분야다."(헨리 켐프, 1977)

대략적으로 말해 1970년대 초는 아동성학대 문제가 사람들이 쉬쉬 하던 영역이었 다면 그 이후로는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 신고법을 포함해서 아동보호 제도가 1970년대에 많이 발전해 왔다는 점, 둘째, 성학대 의 만연 현상과 폐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다수 출간되었다는 점이 그것이었다.

1970년대 말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전세계에서 정부가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첫 번째 나라가 되었고 CAPTA도 성학대를 아동학대의 하나로 정의하게 되었 다. 1976년에는 모든 주법 상 신고제도에 성학대가 포함되면서 종래에는 숨겨져 온 현상인 아동성학대가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다.

1970년대 이전만 해도 성학대의 규모와 폐해에 대한 연구결과는 그다지 많지 않았 다. 1969년 빈센트 드 프란시스가 브루클린에서 일어난 250개의 아동학대 사례를 보고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작업이었다. 프란시스는 이 논문에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아동학대에 비해서 성학대는 그 규모가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성학대를 받는 아이들의 3분의 2는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프란시스는 "어른들에게 성적으로 학대받는 아이야말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고,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이들은 지역사회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프란시스의 선구적인 연구보고가 있은 지 약 10년 후에는 데이비드 핑클로어 (David Finkelor)가 '아동성범죄 피해자'라는 책을 출간했다. 프란시스가 사회적 관심이 너무 없다고 푸념했던 1969년에 비해서 이 책이 출간된 1979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전국에서 모인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최근 들어 아동 성학대 사례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수년 전만 해도 아이들을 때리고 고문하는 사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터뜨렸지만 이제는 그 분노가 성착취 문제로 옮겨간 것 같다. 특히 1977년과 1978년에는 성적으 로 학대받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싣지 않은 전국 규모의 잡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¹⁰⁵⁾

핑클로어의 연구 이후에 다이애나 러셀의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러셀의 연구에 따르면 900명의 여성을 조사한 결과 그 중 16%는 어린 시절에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학대를 받은 적이 있고, 31%는 친족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성학대를 받았다고 한다. 프란시스, 핑클로어, 러셀 등 일련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동에 대한 성학대는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별 것 아닐 거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사. 1962년 이후의 법제도 발전

1962년 이후에 아동보호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 작은 도시든 시골이든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아동보호소가 생겼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게 되면서 기존의 아동보호제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 신고가들어왔다. 아동학대의 홍수 속에 국가가 운영하는 아동보호제도가 겨우 물 밖으로고개를 내밀고 숨을 쉬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아. 결론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아동학대제도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란시스는 "아동

¹⁰⁵⁾ Vincent De Francis, Protecting the Child Victim of Sex Crimes Committed by Adults 5 (1969).

학대나 유기로 신고되는 모든 사건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주나 카운티 는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프란시스가 지금의 현실을 보고는 어떤 말을 할까? 아마도 1960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고 체계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전국 어디나 아동보호소가 있고, 아동복지에만 수조 원의 예산이 투여 되고 있으며, 아동학대를 감시하는 전문 인력만도 수천 명이 넘기 때문이다.

현재 수많은 아이들이 아동보호제도의 덕을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이 듣는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일 경우가 많다. 신문의 1면을 장식하는 것은 아동보호전문가들이 아이들을 미리 집에서 꺼내지 못해 아이가 죽었다 든가 반대로 집에서 꺼내지 말았어야 할 아이를 잘못 꺼낸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현행 제도의 실수나 허점에 대한 얘기만 주로 듣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은 우리가 가지 고 있는 제도에 대한 불신에 가득 차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우리 아동보호 제도는 위급한 생명을 구하고 있고, 아이들의 미래를 구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순간 에도 어딘가에서 아동보호 전문가가 한 아이의 목숨을 구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피학대아동 보호제도의 역사를 들춰 보면 최소한 실패한 역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점 발전해 왔고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완전한 제도도 아니고 아직 할 일이 많기는 하지만 해온 일 또한 적지않다.

2.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가. CAPTA: 제정 및 개정

아동학대와 유기 문제를 다루는 연방법으로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CAPTA, 즉,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와 입양 지원에 관한 법률(Child Abuse and Neglect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Adoption Reform Act)』(이하 "아동학대방지법")이다. 1974년 1월 31일 법률번호 93-247로 제정되었고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0년 12월 10일 『CAPTA Reauthorization Act of 2010』의 제정을 통한 개정이었다. CAPTA는 주정부가 아동학대의 방지, 인지, 수사, 처벌 및 치료 행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연방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그 외에 원주민 보호단체를 포함한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근거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

다. 또, 아동학대 관련 분야의 연구, 평가, 기술지원, 자료 수집 등 활동을 후원하고 '아동학대 및 유기 관리국(the Office on Child Abuse and Neglect)'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번호 93-247로 제정된 CAPTA는 1978년 개정을 통해서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와 입양 지원에 관한 법률(Child Abuse and Neglect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Adoption Reform Act)」로 바뀌었고, 다시 전면 개정을 거쳐 1988년에 『아동학 대 방지와 가족 지원, 입양에 관한 법률(Child Abuse Prevention, Adoption and Family Services Act) 로 개편되었다. 1992년에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입양 및 가족 지원법(Child Abuse, Domestic Violence, Adoption and Family Services Act)』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주된 내용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재제정되었고. 『소년사법 및 비행방 지법 개정법률(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Amendments of 1992)』의 제정과 더불어 일부 개정되었다. 이어 1993년에는 『구법률 조항 개정법률안 (Older American Act Technical Amendments of 1993)』, 1996년에는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 법률 개정법률안(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Amendments of 1996)』을 제정하면서 일부 개정되었다. 21세기 들어서는 두 번의 개정이 더 있었는데 하나는 『아동 및 가족 안전 보장법(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 of 2003)』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CAPTA Reauthorization Act of 2010)』이었다.

나. CAPTA: 제정 의도

CAPTA 제정의 근거가 된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1) 2008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72,000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 및 유기 피해자로 주 정부에 보고되었다.

2)

- A. 아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유기'이며 유기 피해만 입은 아동이 전체 아동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 B.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아동 가운데 71%는 유기, 16%는 신체 학대, 9%는 성학대, 7%는 정신적 학대, 2%는 치료 거부, 9%는 기타 부당한 대우의 피해자로 보고되었다.

3)

- A. 아동학대와 유기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할 수 있다.
- B. 2008년 기준으로 아동보호소에 신고된 사례 가운데 총 1,740명이 아동학대 및 유기의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
- C. 2008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및 유기의 결과 사망에 이른 아이들 가운데 45%는 1세 미만이고. 72%는 4세 미만이다.

4)

- A.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 중 많은 수와 그 가정은 적절한 지원과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B. 2008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피해 아동 중 37%는 수사 단계 이후에 적절한 조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 5) 아동학대 피해에 주로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아프리카 흑인, 인디언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기타 소수인종 출신들이다.
- 6) 아동학대 및 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 A. 사회복지, 법률, 보건, 정신의학, 가정폭력, 교육, 약물중독 전문가와 기타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대응
 - B. 모든 정부기구와 민간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전문가집단 및 자원봉사자 간의 협력
 - C. 이웃과의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및 유기의 방지, 신고, 수사, 기소, 치료
 - D. 자격을 갖추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투입
 - E. 문화, 종교, 인종, 전통의 차이로 인하여 양육 방식이 다룰 수 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와 유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한 합의
- 7) 아동학대와 유기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수천 명의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앞으로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8) 미국 사회 전체가 아동학대 및 유기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다.
- 9) 아동학대 및 유기의 방지와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준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 10) 아동학대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는 최대한 자제하며 분리된 아동이 가급적이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 11) 아동보호 제도는 아동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가족과 지역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재발 방지와 육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미 의회는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CAPTA를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CAPTA: 법제

1) 제1장 개요

(1) 아동학대 및 유기방지사무소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Secretary of Health Human Service)은 아동학대 및 유기방지사무소(Office on Child Abuse and Neglect)를 설치한다. 어차피 아동학대 및 유기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무에 속하고, 보건복지부 내 각종 조직 및 기구들이 이문제를 담당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일종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아동학대 및 유기문제에 전념하게 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의 협력, 각 조직 및 기구 간의협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동학대 및 유기방지사무소 설치의 목적이다.106)

(2) 자문위원회

둘째, 장관은 국회 내 관련위원회와 장관에게 아동학대 및 유기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해 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전문 가들을 망라하도록 한다.

- 법률 (법조 포함);
- 심리학 (아동발달심리학 포함);
- 사회복지 (아동보호전문가 포함);
- 건강복지 (소아과 전문의 포함);
- 주 및 카운티 정부;
- 장애인 지원 기관;
- 청소년 지원 기관;

¹⁰⁶⁾ 아동학대방지법 제5101조.

- 교사;
- 학부모 단체;
- 학부모 협회;
- 자원봉사기관;
- 가정보호단체;
- 아동인권변호사;
- 원주민 단체

자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위원회는 첫 모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활동을 개시하는데, 위원회의 임무는

- 1년 내에 장관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유기 문제를 다루는 연방 및 주정부의 각 기구 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고
- 연방 및 주정부의 법령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 관련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107)

(3) 아동학대정보센터

장관은 또 자문위원회 제도와는 달리 "아동학대정보센터(clearinghouse on child abuse)"를 운영한다. 아동학대정보센터는 장관이 보건복지부 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외부기관의 입찰을 받아 설치하며 활동영역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아동학대 프로그램 가운데 효과가 증명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해서 아동학대 대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고, 다른하나는 비슷한 성격의 연방기구들과 협력해서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108)

(4) 연구개발

한편 장관은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아동학대 문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시계열 분석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¹⁰⁷⁾ 아동학대방지법 제5102.

¹⁰⁸⁾ 아동학대방지법 제5104조.

- (A) 아동학대의 성격과 정도;
- (B) 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 특징, 처방, 사회경제적 함의, 그리고 아동학대가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
- (C)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부모들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방안;
- (D)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효과적인 사법제도 및 행정적 개입 방안; 등을 찾아내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아울러 2010년 12월 20일부터 4년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하원 교육위원회와 상원 교육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¹⁰⁹⁾

다만 아동학대와 유기에 관한 연구는 워낙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먼저 장관은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조회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연구해야 할 주제를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연구 수행은 자금을 지원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며, 특히,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에 대해서는 공청회 및 의견조회 결과 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연구를 실시하도록 한다. 110)

그 외 법률에서는 '연구개발 사업에서 장기프로젝트를 중시'할 것과 연구개발 성과 평가에 있어서는 '전문가 그룹의 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도 강조하고 있다.

(5) 기금 지원

장관은 공사단체와 지방정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기금을 지원해서

- 교육프로그램
- 신속대응절차
- 상호협조 프로그램
- 확대가족 보호
- 아동보호 전문기관 간 연계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시
-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가정폭력 전문기관 간의 협조체제

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장관의 재량에 따라 각종 지원기금(discretionary grants)을 아동학대 및 유기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기금을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를 통해서 추가 기금 제공의 기준으로 삼도록

¹⁰⁹⁾ 아동학대방지법 제5105조.

¹¹⁰⁾ 아동학대방지법 제5105(a)(4)조 참조.

하다.111)

사실 기금 제공은 CAPTA의 핵심 조항으로 일부 논자들은 CAPTA를 자금지원법으 로 이해할 만큼 정도로 지나치게 기금 제공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입장에서는 각 주나 카운티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고, 따라서 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아동학대 문제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6) 주정부 기금지원

CAPTA가 목적으로 하는 아동학대 및 유기 방지 프로그램의 핵심으로서, 장관은 각 주에 기금을 지원하여 주정부가 아동학대 및 방지 계획의 실행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먼저, 각 주는

-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
- 특별조사팀의 구성
- 사건 관리
- 아동보호 제도의 정비
- 아동보호 지원 기술의 발전
- 아동보호 관련 교육의 강화
- 아동보호 담당자의 대처능력 향상
- 아동보호 담당자에 대한 연수
- 결손가정 지원 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 강화
-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교육
- 부모와 아동학대 전문가 간 협업체계의 구축
- 아동보호제도와 소년사법제도 간의 협력
- 아동보호기관과 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의 강화
- 아동보호기관과 가정폭력 예방 기관 등과의 연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및 유기 방지계획(State Plan)을 제출하고, 계획의 입안 과 실행, 평가 과정에 주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 부 장관은 매년 175.000달러 이상의 기금을 받게 되는 주에 대해서는 최소한 3개의

¹¹¹⁾ 아동학대방지법 제5106조.

전문가패널에게 주 계획을 평가하도록 하며, 이 전문가패널은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이상은 모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 전문가 패널의 검토 보고서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여 주 정부에 제공된 기금이 아동학대 및 유기 방지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다.112)

한편 연방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은 주 정부는 매년 다음 통계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및 유기 피해자로 신고된 아동의 수
- 신고된 아동 가운데 피해의 정도가 심한 아동과 심하지 않은 아동, 허위 신고의 수
- 주 아동보호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아동의 수와 받지 못한 아동의 수, 사건 처리 결과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아동의 수
- 예방조치가 시행된 가정의 수
- 아동학대 및 유기로 숨진 아동의 수
- 아동보호기관에게 인계된 아동의 수와 아동보호 전문가 1인당 담당 아동의 수
-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주정부가 대응할 때까지 걸린 시간
-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정과 피해 아동에게 전문가가 파견되기까지 소요된 시간
- 아동보호 전문가의 교육 및 연수 기간, 자질, 업무부담
- 가족과 재결합한 아동의 수
- 법정대리인에게 인계된 아동의 수
- 전문가 패널의 주정부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보고서
- 아동보호소에서 소년사법기관으로 인계된 아동의 수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주 정부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전체 아동학대 및 유기방지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운영보고서를 국회관련위원회에 보내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113)

(7) 형사처리 비용 지원

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각 주가 아동학대 관련 사건을 형사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금 지원을 신청하는 주는 "사법담당자, 판사와 변호사, 피해 아동의 변호인, 건강의료 전문가, 아동보호소

¹¹²⁾ 아동학대방지법 제5106a조.

¹¹³⁾ 아동학대방지법 제5106a조.

를 대표하는 자, 장애아동 관련 전문가, 학부모, 학부모단체 대표, 아동학대 피해를 경험한 바 있는 성인, 가출 아동 전문가"114)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다.

특별위원회는 아동학대 및 유기 사건 처리에 관한 주 실무를 검증하고, 사법처리 각 단계별 주의사항 등을 권고하며, 주는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115)

(8) 건물 신축의 금지

아동학대 및 방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주에 제공한 기금으로 주는 건축물을 신축해서는 안 된다. 대신, 사무소 운영 등을 위한 장소가 없을 경우 "기존의 건물을 수리하거나, 임대할 수는 있다."116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미합중국 내의 모든 아동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 아동학대 및 유기 방지 목적으로 제공된 기금이 다른 용도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 정부는 매년 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17)

(9) 지원 금액

본 장에 정한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하는 기금의 총액은 2010년을 기준으로 1억 2천 만 달러로 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도 비슷한 금액을 예산으 로 책정하도록 한다.

이 가운데 장관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총액의 30%를 넘지 못하며,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총액의 40%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118)

¹¹⁴⁾ 아동학대방지법 제5106c(c)(1)조.

¹¹⁵⁾ 아동학대방지법 제5106c(d)조 내지 제5106c(e)조 참조.

¹¹⁶⁾ 아동학대방지법 제5106d(a)조.

¹¹⁷⁾ 아동학대방지법 제5106d조 참조.

¹¹⁸⁾ 아동학대방지법 제5106h조.

2) 입양 기회의 제공

(1) 의회의 인식과 본 장의 목적

"2009년 현재 총 424,000명의 아동들이 위탁보호가정이나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119) 이들은 주로 아동학대와 유기 피해자들이며, 이들을 집으로부터 분리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위탁 양육되는 아동들은 임신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이나 장애를 타고난 아동, 후천성면 역결핍증에 걸린 아동, 약물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아동에 비해서도 더 많은 지원과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을 임시 위탁 상태가 아니라 건전한 가정에 입양되도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120)

2009년 현재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 수는 115,000명으로, 대부분은 8세 이상이며, 실제로 입양되는 아이들의 연령대는 6세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2009년 통계를놓고 보면 입양된 아이들의 25%,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30%는 아프리칸-아메리카이다.

본 장의 목적은 입양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없애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과 양부모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게 하며, 하루라도 빨리 입양절차를 통해서 위탁 양육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정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121)

(2) 정보 및 서비스

장관은 보건복지부 내에 입양 및 위탁양육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두고 인력을 공급하여야 하며,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는 입양 이후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122)

장관은 법적으로 자유로운 상태가 된 위탁 보호 아동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아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주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¹¹⁹⁾ 아동학대방지법 제5111(a)(1)조.

¹²⁰⁾ 아동학대방지법 제5111조 참조.

¹²¹⁾ 아동학대방지법 제5111(b)조 참조.

¹²²⁾ 아동학대방지법 제5113(a)조.

1989년 회계연도로부터 시작된 이 자금은 각 주에 대해서 1,000,000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며, 지원된 자금 가운데 사용되지 않고 남은 게 있을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야 하다.123)

아울러 장관은 입양에 장애가 되는 사유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한 주와 각종 사회단 체 등에 대해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124)

(3) 각주 간 입양 연구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주 간 입양 실태와 입양의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여 2003년 6월 25일부터 18개월 이내에 국회 관련 위원회에 연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각주 간 입양과 각주 내 입양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125)

(4) 기금 규모

본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0년 기준으로 40.000.000달러의 예산을 배정 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도 비슷한 금액이 배정되도록 한다. 이 가운데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30% 이상은 입양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과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26)

3) 아동학대 및 유기 방지를 위한 지역 기금

(1) 목적

아동학대 및 유기의 방지를 위해 주정부가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주정부가 지정하는 "주관단체(lead entity)"에 기금을 지원해서 주관단체 주도로 지역사회 아동보호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27)

(2) 절차

주 정부가 이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지사가 공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¹²³⁾ 아동학대방지법 제5113(d)(3)조.

¹²⁴⁾ 아동학대방지법 제5113(e)조.

¹²⁵⁾ 아동학대방지법 제5114조.

¹²⁶⁾ 아동학대방지법 제5115조.

¹²⁷⁾ 아동학대방지법 제5116조.

가운데 하나를 주관단체로 지정하고, 주지사의 이름으로 주관단체가 아동하대 및 유기방지 서비스를 담당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증하여야 한다.¹²⁸⁾

(3) 기금 배당

2010년 지역기금으로 할당된 금액은 총 80,000,000달러인데, 이 중에서 1%는 반드 시 원주민 단체나 이민자 그룹에 할당되어야 한다. 129)

그걸 제외하고 남는 총액 가운데 70%는 각 주에, 그리고 나머지 30%는 각 주정부가 지원하는 단체에 배당하는데, 배당 비율은 전국에 있는 18세 미만 아동인구 중 각주 거주 아동의 비율에 따르며, 아무리 아동인구가 적은 주라고 해도 최소한 175,000 달러 이상은 할당하여야 한다. 또, 각 주에 배당되는 기금은 3년 단위로 편성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 주에 매년 배당금을 전달하는 식으로 집행된다.130)

(4) 신청

지역기금을 배당받기 위해 각 주는 다음 내용을 명시한 신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31)

- 주관단체 소개
- 지역 아동보호 프로그램 소개
-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 지역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용 예산 규모
- 기금의 적절한 활용에 대한 보증
- 주 정부의 아동보호 제도 실행 능력
- 주관단체의 기금 사용 기준
- 주관단체 및 지역프로그램의 기여도
- 지역 프로그램 지원 계획
- 신청 단체의 활동상황과 구성원
- 신청 단체가 주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의 내용, 기한 등

(5) 지역 프로그램의 내용

지역 기금은 아동학대 및 유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

¹²⁸⁾ 아동학대방지법 제5116a조.

¹²⁹⁾ 아동학대방지법 제5116b(a)조.

¹³⁰⁾ 아동학대방지법 제5116b조.

¹³¹⁾ 아동학대방지법 제5116d조.

회의 예방 노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각 지역은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예산은 나이 어린 아동이 있는 젊은 가정의 지원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132)

(6) 활동평가

기금을 받은 각 주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금 사용으로 인하여 아동보호 분야에서 달라진 점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33)

(7) 지역 프로그램 사이의 연계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관단체에게 제공된 기금 중 일부를 할애하여

- 전문가 평가 절차의 확립
-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 각 주의 경험을 나누는 연차 심포지엄의 개최
- 주관단체 간 네크워크 연결
- 주 간 기술지원 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다.134)

(8) 예산

본 장에 정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2010년 80,000,000달러로 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35)

4) 유기 아동의 보호

(1) 의회의 인식

의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한다.

- 부모가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살핌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버림받은 아이들에 대한 보호시설이 부족한 탓에 많은 아이들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실정이다.
- 이미 병원에서 나갔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어서 병원에 있는 아이들 숫자도

^{132) 5116}e

^{133) 5116}f

^{134) 5116}g

¹³⁵⁾ 아동학대방지법 제5116i조.

아주 많다.

- 이처럼 병원이 나가야 할 아이들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데 소홀할 수밖에 없다.
-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에이즈 환자처럼 특별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 병원에 반쯤 버려진 아이들일수록 입양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부모가 에이즈 환자라든가 약물중독자인 경우에는 아이들을 돌볼 상황이 되지 않아 아이들이 병원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
- 따라서 이런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보호를 서둘러야 한다.
- 이를 통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민간 자원 또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역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본장에 정한 지원 사업에 투여하고자 한다.¹³⁶⁾

(2) 지역 프로그램의 개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공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아동의 유기 방지
- 유기된 아동에게 필요한 사항 확인
- 유기된 아동이 원부모 혹은 입양부모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지원
- 유기된 아동을 위한 위탁 부모의 모집 및 교육
- 유기된 아동을 위한 주거 마련
- 위탁 부모를 위한 임시 위탁제도 마련
- 유기된 아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전문가 양성
- 아동 유기를 방지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137)

단,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이나 에이즈, 약물에 노출된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보살 피는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자금 지원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138)

¹³⁶⁾ 아동학대방지법 제5117aa조.

¹³⁷⁾ 아동학대방지법 제5117aa조.

¹³⁸⁾ 아동학대방지법 제5117aa(d)조.

(3) 평가, 연구 및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연구하여 2003년 6월 25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매년 유기되는 아동의 수
- 살인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아동의 수
- 생후 1년 이내에 아동을 유기하는 부모들에 관한 정보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유기된 아동의 보호와 주거 지원에 사용하는 비용

(4) 자금 지원

2010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본장에 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금은 45.000.000 달러로 하며, 2011년 내지 2015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한다. 이 가운데 라. 항에 정한 평가 및 보고를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은 5%를 넘을 수 없다. 139)

5) 아동학대 범죄정보와 이력 확인

(1) 아동학대 범죄정보의 보고

각 주의 사법담당자들은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정보를 분류해서 이를 전국범죄정보 확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모든 중범죄 및 죄질이 중한 경범죄로 인한 체포 기록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40)

법무부장관은 매년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범죄백서를 발간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신워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보고와 관련하여 각 주의 이행 정도를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41)

한편, 소년법원은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회 이상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수형자의 비율
- 2개 이상의 주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수형자의 비율
-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다른 범죄의 유죄판결에 가중요소가 되었는지 여부

¹³⁹⁾ 아동학대방지법 제5117aa-22조.

¹⁴⁰⁾ 아동학대방지법 제5119(a)조.

¹⁴¹⁾ 아동학대방지법 제5119(d)~(e)조.

(2) 이력 확인(background checks)

각 주는 특정기관을 정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범죄정보확인시스템의 협조하에 범죄자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해 주어야 한다. [42]

(3) 이력확인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금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다음 목적을 위해 쓰일 기금을 각 주에 제공하여야 한다.

- 본장에 정한 목적을 위한 범죄경력파일의 전산화
- 본장에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기존 전산시스템의 개선
- 본장에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범죄정보시스템에의 접속 개선
- 본장에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주 정부가 범죄정보를 국가정보에 전송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
- 범죄정보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143)

회계연도 1999, 2000, 2001, 2002년에 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은 매년 20,000,000달러로 한다.144)

3. 학대피해아동 보호 실무

가. 아동보호센터(Child Protective Services)

1) 의의

미국 내 거의 모든 주에 아동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피학대아동 보호 기구라고 하면 아동보호센터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각종 검색엔진에서도 '미국 의 피학대아동 보호'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아동보호센터'가 핵심어로 떠오른다. 아래에서는 피학대아동 보호기구의 하나인 아동보호센터를 둘러싼 실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¹⁴²⁾ 아동학대방지법 제5119a조 참조.

¹⁴³⁾ 아동학대방지법 제5119b조.

¹⁴⁴⁾ 아동학대방지법 제5119b(2)조.

2) 아동학대 신고를 반드시 아동보호센터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145)

사람들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자가 반드시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해 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많은 주가 아동보호소 신고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지 않고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 즉, 경찰이 나 보안관에게 신고할 수도 있고, 검찰이나 아동보호소 등 민간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아동보호소로의 신고가 필수가 아닌 것은 연혁적인 의미가 크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설립된 아동보호센터는 당시 법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당시에는 아동학대를 가정 내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는 게 보통이었고, 당장 매 맞는 아이를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지, 가정 내 가해자를 찾아서 처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례히 학대 문제가 발생하면 아동보 호센터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아동학대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가해자 처벌도 아동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법은 이런 경향에 맞춰 반드시 아동보호센터로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버렸다.

물론 소위 "교차 신고(cross report)"라고 해서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해도 아동보호 센터는 신고 내용을 경찰에 통지할 의무가 있고, 반대로 신고를 받은 경찰도 아동보호 센터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으로써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는 전부 아동보호센터 에 알려지는 게 당연한 수순처럼 되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최초로 신고를 받은 기관에 우선권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즉, 경찰에서 최초로 신고를 받은 거라면 아동보호센터에 범죄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만 경찰의 권한인 사법처리를 거르 고 아동보호센터로 바로 아동의 신병을 인계하는 것은 아니다.

3) 아동보호센터에는 사법권이 없다

아동보호센터는 특별사법경찰이 아니고 따라서 체포 권하을 비롯한 사법권이 없다. 가해자를 찾아서 벌하는 기관이 아니라 아동의 보호를 주로 하는 비사법적 기구에 불과하다. 아동보호센터에 소속된 직원도 특별사법경찰관 혹은 경찰리의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하는 복지담당직원(social service worker)에 불과하다. 이것 역시 아동보호센

¹⁴⁵⁾ 캘리포니아 형법 제11165.9조 참조.

터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동보호센터는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 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고, 증거 수집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 가령, 아버지가 딸을 강간한 경우에 아동보호센터 직원이 도착해도 그는 아버지를 처벌할 권한이 없고. 폭력행위를 저지할 책임도 없다. 오로지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만을 취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센터 웹사이트에 보면 '조사(investigation)'라는 단어 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조사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다. 학대 받는 아동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서의 조사를 말하고, 조사관이 가해자의 범죄 이력 등을 보고서에 적는다고 해서 그걸 증거로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다.

다만 몇몇 주에서 아동보호센터 직원에게 사법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가해자를 상담원에게 인계하거나 집에서 내쫓을 권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주에서조차 아동보호센터를 사법기관 혹은 준사법기관으로 보지는 않는다. 장래에 아동보호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에 회부하거나 집으로부터 내쫓는 것이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4) 아동보호센터의 유일한 권한은 격리권이다

아동보호센터는 앞에서 본 것처럼 사법기관이 아니고 사회복지단체에 불과하지만 다른 단체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권한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동에 대한 격리 권한이다. 이 권한을 부여한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아동을 장래의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물론 다른 면에서 보면 격리가 다른 어떤 형사처벌보 다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아동보호센터의 조사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해자인 부모로부터 아동을 격리하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가 아닌 부나 모와 같이 아동을 계속 같이 살게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만약 가해자 아닌 부모가 가해 사실을 알고도 아동을 구할 의지가 없었다면 아동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아동을 그 집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아동보호센터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아동을 집에서 격리할지 여부를 조사할 권한을 갖는 것이다.

아동보호센터의 지침에 보면 센터는 아동의 격리 권한 외에는 어떠한 권한도 아동 이 속한 가정에 행사할 수 없고, 센터는 원칙적으로 아동이 친부나 친모와 같이 사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아닌 부모가 아동의 안전을 책임 질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동보호센터는 아동의 입장에 서서 가해자 아닌 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5) 가장 낮은 입증책임의 정도에 따라 아동보호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안에서 입증책임의 정도는 '증거의 우월'이다. 즉, 50% 이상 의 증거만 있으면 아동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아닌 부모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권한을 아동보호센터가 행사한다. 이 때문에 아동보호센터나 소년법원의 결정 과정에 서 편견이나 차별, 선입견, 잘못된 상식 등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최소한 친권의 박탈을 위해서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아동보호센터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 18개월까지 아동을 시설에 격리하 거나 부모와의 접견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센터는 소년법원에 결정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아동보호센터의 결정이 잘못될 여지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 먼저 법적인 면에서 볼 때 아동보 호센터의 재량의 여지가 너무 많고, 재량의 당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증거의 우월 정도 라서 웬만하면 아동보호센터의 결정을 법원이 추인하기로 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다.

가령, 어떤 엄마가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해서 자신의 딸이 새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다고 치자. 신고 내용 중에 "자신이 주로 TV를 볼 때 아빠가 딸을 성추행해서 그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다고"고 진술한다면, 아동보호센터는 'TV를 보는 중에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엄마도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 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런 추론에 따는 격리 결정도 소년법원은 추인하는 게 일반적이다. 아동보호센터의 결정의 근거가 된 판단, 즉, 'TV를 보고 있었으면 성추행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판단이 충분히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증거의 우월이라는 입증 정도는 너무 낮은 거라서 웬만한 결정 은 다 통과되기 십상이라고 비판한다. 가령,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한두 가지만 적시하면 가정으로부터 아이를 격리하는 데 충분한 증거를 제시 한 것으로 본다. 또, 대립 당사자로 나온 아동보호센터의 전문가와 아동의 격리조치에 반대하는 엄마 사이에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아이들은 주로 아동보호센터의 상 냥하고 점잖은 전문가 편을 들기 마련이고 아동이 지내기에 아주 끔찍한 환경은 아니 라고 주장하는 엄마들은 주로 불법이민자나 가난한 계급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은 주로 아동보호센터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 는 것이 바로 증거의 우월이라는 입증 책임의 정도이다.

실제로 1978년 인디안 아동복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인디안 가정으로부터 아이들 을 격리시키는 비율이 25%에 육박했다고 한다. 인디안 부모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손쉬운 격리 결정으로 귀착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6) 더 심각한 것은 전문 인력의 남용이다

아동보호센터와 소년법원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높아진 이후에 아동보호센터와 소년법원이 그 기대에 부응할 만한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추가 인력을 소위 조정관, 평가원, 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양산하고, 이들에게 사실 판단의 대부분을 떠넘기려고 해 왔다. 가령, 아동의 안전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인 아동의 격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의 치밀한 조사에 기초하기보다는 익숙한 조사원들에게 사건 전체를 떠넘기고 그들이 얼기설기 만들어 온 보고서를 그냥 추인하는 역할만을 자임해 온 것이 소년법원의 행태였다. 따라서 이런 결정 과정에서는 증거법칙이나 증거능력 인정 법칙, 전문법칙 등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심지어는 떠도는 풍문이나 편견 등이 증거의 세계로 마구 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지기 도 했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아닌 부모의 권한이 충분히 보장될 만한 제도 속에서 아동보호센터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이 아주 큰 문제의 하나로 꾸준히 지적 되는 실정이다.

특히 소년법원의 사실인정과 결정의 많은 부분을 대리하고 있는 CASA 자원봉사자 의 경우는 겨우 30시간의 교육만 받고 현장에 투입되는 실정인데, 이들에게도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사건이 배당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7) 복지법의 허점이 너무 많다

아동보호센터와 소년법원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 및 연방복지법은 애매 모호한 법 규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동보호센터의 웬만한 결정은 다 추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 법처럼 보인다. 게다가 두 명의 부모가 있을 경우 가해 사실이 전혀 없는 쪽도 실제로는 한 통 속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어서 가해자 아닌 부모의 권리 보호 조항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복지법에는 또, 수많은 재량 조항이 들어 있다. 가령, 아동보호센터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영어로 된 설명을 들고, 영어로 권리 고지를 받고 있다. 또, 가족이 가능하면 함께 살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지만, 합리성의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조항들로 인해서 아동보호법 상 대부분의 결정이 위법한 결정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복지법은 또 부모를 따로 나눠서 취급하지 않는다. 가해 부모가 있고, 가해자 아닌 부모가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엄마의 경우에 는 가해자인 아버지와 더불어 한 몸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엄마도 똑같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로부터 다시 아이들을 빼앗는 결정을 자주 내리는 것도 복지법의 허점 탓이라고 할 수 있다.

8) 아동보호센터와 소년법원은 주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아동보호와 관련해서 기록을 잘 남기지 않는 이유는 크게 보면 아동의 사생활과 가정의 보호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로 인하여 보호받는 것이 가정인지 아니면 아동보호센터인지 실상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비공개파일과 비공개증거. 비공개기소. 비공개절차라는 말이 오히려 정부 측의 남용 행위를 부추길 소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몇몇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소년법원 절차에 관해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물론 부모들에게는 정보가 공개되지만 일반 대중이나 시민단체 등이 소년법원의 결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 방법은 없는 셈이다.

다행히 2005년 이후의 실무에서는 약간이나마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소년법원 및 가정법원 법관협의회가 공개변론을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까지는 법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전향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보호절차에서 아동이나 가해자 아닌 부모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개변론을 통해서 시민이 법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아동보호센터는 가정 내 폭력만 다룬다

아동보호센터에 전화를 거는 사람들 가운데 이웃이나 교회 목사, 낯선 사람 또는 가족구성원 이외의 자가 저지른 학대행위를 신고했다가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는 답을 듣게 되기 때문이다. 아동보호센터는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만 취급하기 때문에 조금만 여기서 벗어나면 신고 자체를 경찰로 해야 한다. 반대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아동보호센터로 가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이런 점에서는 경찰도 아동보호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해자인 부모가 아동을 키우는 상태라면 그 부모의 책임은 다른 가해자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아동에 대해서 성학대를 하는 경우에 도 외부인의 성학대보다는 낮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가령,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가족 내 성학대자에게는 다른 법이 적용되며,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는 법률 대신 보호관찰도 가능한 법률의 혜택을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통성학대자의 경우는 당연히 성범죄자 목록에 등재되어야 하지만 가족 내 성학대자인 경우에는 이를 피할 수도 있다.

우리는 보통 아동에 대한 학대사건이 벌어지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인다. 거의 죽일 놈 취급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 덕분에 아동의 바로 옆 자리에 누워서 아동학대를 일삼는 사람들을 오히려 자유롭게 풀어주는 이상한 법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실수로 그들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들을 풀어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법의 허점은 점점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 여전히 우려스럽다.

아이들과 여성들이 나서서 가정폭력의 종식을 외치고 있는 이때 제도는 점점 더 가정폭력에 너그러워지고 있다. '가정은 성과 같다'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아동보호센 터 자체가 빨리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의 아동보호의 앞날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나. 아동학대 사건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1) 아동학대의 신고

당신이 만약 신고의무자라면 아동보호센터보다는 경찰서나 보안관서 같은 사법기 관에 신고할 것을 권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찰은 아동학대를 범죄로 다룬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가해자 아닌 부모 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 또. 가해자를 가정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피해자인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과 가해자 아닌 부모의 권리 보호에 충실하다.

반면에 아동보호센터는 가해자인 부모보다는 가해자 아닌 부모에 대한 조사를 시작 하고, 아동을 격리시키겠다는 위협을 앞세워 가해자 아닌 부모의 책임을 추궁할 가능 성이 높다.

아동학대를 범죄로 다루는 형사사법제도 하에서는 피해자인 아동이나 가해자 아닌 부모가 원하지 않는 한 사회복지서비스나 상담서비스를 강제하지 않는다. 즉, 가해자 아닌 부모가 복지서비스라는 이름 아래 아동과 격리될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다.

반면에 아동보호센터에서는 아동학대의 발생 즉시 모든 서비스가 개시되고, 이 서비스의 주목적은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즉. 가해자 아닌 부모까지도 잠재적인 위험 인자로 파악해서 약간의 불리한 증거만 있어도 아동을 격리시키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는 형사사법제도 하에서는 피해 아동 및 가해자 아닌 부모와 가해자 사이의 접견, 조정, 재결합을 추구하지 않는다.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는 형사사법제도 하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가정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며. 범죄사실과 관련성 없는 문제를 파고들지도 않는다.

아동학대 사건의 30% 내지 50%에서 아동학대와 아내에 대한 폭력이 동시에 일어나 고, 그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한 사람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문제만 따로 떼서 아동 보호센터에 신고하기보다는 경찰서에 두 사건을 같이 신고해서 그 중 하나라도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아동학대 범죄는 살인이나 감금, 성범죄 등과 결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보호센터보다는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이유가 그것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사법기관 종사자 중에도 아직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즉. 아동학대를 별 것 아닌 범죄로 취급하거나 아동보호센터로 사건을 넘기려 드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해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른 언행이나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 들이 있다면 지체 없이 그 상급자에게 사정을 알려야 한다.

2) 아동보호센터의 절차가 시작된 경우

아동보호센터가 사건을 접수하고 절차를 시작한 경우에는 경찰 등 사법기관의 시각 에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는 행정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가해자 아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아동보호센터의 조치가 왜, 어떤 이유로 위험한 것인지, 사태 파악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센터가 아동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관인 건 맞지만 그렇다 고 해서 가해자 아닌 부모의 친구나 상담자. 변호인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으로 마주 앉아서 아동을 빼앗아 가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 한 마디라도 빌미가 될 만한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

셋째, 아동보호센터를 거쳐 소년법원으로 가는 절차는 일종의 대심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지 정확히 파악했다가 자신의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해야 한다.

넷째, 아동보호센터가 어떤 혐의를 두고 있고, 어떤 불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특히 아동보호센터나 소년법원이 보내는 서류, 그중에서도 아동보호센터의 보고서는 잘 읽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다섯째, 만약 영어를 잘 못 읽겠으면 모든 자료를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여섯째, 언제 어디를 가든 항상 노트를 준비해서 모든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일곱째, 이미 아동보호센터의 절차가 시작된 후라도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하고, 하나 라도 더 사법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덟째, 아동보호센터에서 집으로 보내거나 건네준 서류는 전부 다 읽고, 다음 번 미팅에서 아동보호센터 쪽 전문가, 자원봉사자, 조사원 등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 지 미리 짐작해 두어야 한다.

아홉째. 혼자서 아동보호센터나 소년법원에 가거나 변호인을 만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열 번째, 가능한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겨 두어 진술한 내용이 왜곡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여야 한다.

열한 번째,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엄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제2절 영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1. 아동보호제도의 역사

영국의 아동보호 제도 역시 1800년대와 1950년대 이후로 나뉜다. 대략 1880년대 까지 영국에는 아동학대만을 따로 다루는 법정이 없었고, 아동학대 및 유기 문제는 주로 아동에 대한 잔혹행위를 처벌하는 개별법의 규율을 받고 있었다. 그러다가 중요 한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서 아동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아동보호 제도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여러 명의 희생자가 더 필요했다.

1945년 양부에 의해 살해당한 12살 소년 데니스 오닐(Dennis O'Neil)의 사건을 계기로 커티스 위원회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이것은 아동의 살인사건을 다른 최초 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어 1973년에는 7살 소녀 마리아 콜웰(Maria Colwell)의 사망을 계기로 현대적인 아동보호제도가 마련되기에 이르렀고, 1984년에는 4살짜리 자스민 벡포드(Jasmine Beckford)를 포함한 여러 명의 아동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었다.

하지만 영국 아동보호 제도의 새 전기를 마련한 것은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의 제정이었다. 1989년 『아동법』은 본격적으로 아동학대 및 유기 문제 등에 국가가 조기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법으로, 이 법 이후 영국은 아동보호제도의 선구적인 역할을 나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영국의 아동보호제도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989년에 제정되어 이후 수차례 개정된 『아동법』이고. 『아동법』 을 통해서 아동보호에 관한 법제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아동법』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 공익 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지침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한 영국의 피학대 아동보호법제를 도드라지게 하는 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동보호 제도에 각 지역의 주도적인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 기 위하여 지역마다 설치된 지역아동보호위원회다.

아래에서는 이들 세 가지, 즉, 법률, 지침, 지역센터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기로 하다.

2.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가.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 of 1989)』

1) 의의

영국의 피학대아동 보호법제의 기틀이 된 1989년 『아동법』은 아동 관련 다양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총11편으로 된 아동 관련 조항 가운데 피학대아동의 보호에 대한 내용은 제5편 '아동의 보호'에 규정되어 있다. 아래 표는 1989년 『아동법』 전체 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피학대아동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굵은 글씨체로 강조 표시를 해 두었다.

Introductory Text.

Part I Introductory

Part II Orders With Respect To Children In Family Proceedings

Part III Local Authority Support for Children and Families

Part IV Care and Supervision

Part V Protection of Children

- 43. Child assessment orders...
- 44. Orders for emergency protection of children..
- 44A. Power to include exclusion requirement in emergency protection order..
- 44B. Undertakings relating to emergency protection orders..
- 45. Duration of emergency protection orders and other supplemental provisions..
- 46. Removal and accommodation of children by police in cases of emergency..
- 47. Local authority's duty to investigate..
- 48. Powers to assist in discovery of children who may be in need of emergency protection..
- 49. Abduction of children in care etc..
- 50. Recovery of abducted children etc..
- 51. Refuges for children at risk..
- 52. Rules and regulations..

Part VI Community Homes

Part VII Voluntary Homes and Voluntary Organisations

Part VIII Registered Children's Homes

PART IX PRIVATE ARRANGEMENTS FOR FOSTERING CHILDREN

Part X Child Minding and Day Care for Young Children

Part XI Secretary of State's Supervisory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Part XII Miscellaneous and General

2) 검사 명령(child assessment order)¹⁴⁶⁾

먼저 아동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 또는 신청권자의 신청 으로 법원에 아동에 대한 검사 명령을 발부받을 수 있다. 즉, 아동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대로 두면 더 큰 위험으로 발전될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병원 등에 유치하여 검사를 받게 하는 제도가 바로 검사 명령이다. 이 검사 명령과 별도로 법원은 긴급보호명령(emergency protective order) 을 발할 수도 있는데, 검사 명령은 이 긴급보호명령 발부를 위한 일종의 준비 명령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법 제43조는 "법원은 긴급보호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검사 명령을 발할 수 없다"고 해서, 긴급한 보호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중 한 가지 명령을 발할 권한을 법원에 주고 있다.

검사 명령이 발부되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친권자, 법정대리인 등으로부터 아동 을 강제로 분리하게 되므로, 검사 명령을 정한 제43조는 아동의 최대 격리기간, 보호 자 등에의 통지제도 등에 관한 규정도 아울러 둠으로써, 아동의 보호와 친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3) 긴급보호명령(emergency protection order)¹⁴⁷⁾

긴급보호명령은 검사 명령에 따른 검사 결과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할 때, 또는 친권자 등의 거부로 인하여 검사조차 할 수 없으나 그냥 둘 경우 아동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 또는 신청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긴급보호명령 역시 검사 명령과 같이 아동의 격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긴급보호명령의 경우에도 친권자,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4) 격리조치148)

검사명령에 이은 긴급보호명령은 피학대아동을 위험한 집으로부터 격리시켜 건강 상태에 대해 검사한 다음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조치이며 이로 인하여 피학대아

¹⁴⁶⁾ 아동법 제43조.

¹⁴⁷⁾ 아동법 제44조.

¹⁴⁸⁾ 아동법 제44A조.

동의 안전이 보장됨에는 의문이 없다. 하지만 아동이 종래 살던 곳으로부터 격리되는 대신 가해자인 특정인을 지목할 수 있다면 그를 오히려 집에서 내쫓는 것이 더 효과적 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동법』제45조는 격리조치(exclusion requirement)라는 제도를 긴급보호명령에 부가하여 특정인을 가정에서 내쫓음으로 써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게 한다. 또, 그 특정인 외에 다른 사람의 도움만 가지고 아동을 양육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기해 서 법원이 격리조치를 추가할 수도 있다.

격리조치에 처해진 자는 "아동의 거주지에서 나가야 하고. 아동의 거주지로 돌아올 수 없으며, 거주지 주변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법원은 격리조 치에 덧붙여 체포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경찰은 언제든지 격리조치를 받은 자가 나타날 경우 그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5) 긴급보호명령 등의 기간149)

긴급보호명령의 기간은 최대 8일로 하는데, 경찰력을 동원해서 아동의 신병을 인수 받는 시간으로부터 기산하며, 종료일이 국가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난 다음 첫날 낮 정오까지를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계자 등의 신청이 있고, 기간을 연장하 지 않으면 아동에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보호명령의 발부, 연장, 연장의 불허, 보호명령의 해제 등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6) 경찰의 긴급조치

검사 명령이나 긴급보호명령 등 법원의 명령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아동을 기존의 거주지에서 격리해서 보호시설에 수용하고 그 시설에 최대 72시간 동안 보호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보호조치라고 한다. 긴급보호조치는 경찰의 보호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긴급보호조치가 시작되다고 해서 아동을 보호하 고 있는 경찰이 친권이나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광범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아동을 대신해 서 법원에 긴급보호명령을 청구할 권한까지 갖는다. 이러한 긴급보호조치 역시 친권

¹⁴⁹⁾ 아동법 제45조.

의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긴급보호조치를 시행할 경우 경찰은 일정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친권자 등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며, 친권자 등과 보호조치에 처해진 아동과의 연락 또는 접견을 허가하여야 한다.150)

7)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의무

지역 내에 사는 아동이 법원의 긴급보호명령이나 경찰의 긴급조치의 대상이 되거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는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조사의 목적은 지자체가 법원에 어떤 조치를 신청할지 혹은 본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고, 이미 긴급보호명령이나 긴급조치가 내려진 아동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함이다. 지자체는 조사 결과 교육기관 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 내에 있는 학교 등과 협의하여 아동에 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51)

8) 정보공개 의무

법원이 어떤 아동에 대하여 신청권자의 신청에 기해 아동보호명령을 내리려고 하는 데, 현재 그 아동의 소재에 대해서 신청권자는 정보가 없는 반면에 다른 제3자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제3자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아동의 소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자신 혹은 배우자. 기타 공범의 범죄 혐의가 드러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도 그 진술은 향후 진술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 긴급보호명령을 발부하면서 신청권자가 명령문에 정한 주거에 들어가서 아동을 찾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그 아동 외에 다른 아동이 있을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명령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명령장에 특정한 주거에 들어가 그 아동을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에 들어가서 아동의 소재를 수색하는 행위를 방해한 자는 제48조 제8항에 따라 벌금형에 처한다.152)

¹⁵⁰⁾ 아동법 제46조.

¹⁵¹⁾ 아동법 제47조.

9) 보호 중인 아동의 납치 등

긴급보호명령이나 경찰의 긴급조치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아동 혹은 시설에 보호되 고 있는 아동을 정당한 보호자로부터 빼앗아 가거나 정당한 보호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행위를 돕는 경우에는 약식파결을 통해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제5급 벌금형에 처한다.153)

10) 수색 명령(recovery order)

보호 중인 아동이 납치 등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호자로부터 벗어나 있는 경우 법원 은 아동에 대한 수색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이 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집행권자에게 아동의 신병을 인계하여야 한다. 집행권자가 아동을 데려가는 것을 수인하여야 한다.

아동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자는 이를 묻는 경찰 또는 법원 직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경찰 등은 명령장에 기재된 주거에 들어가거나 아동의 수색을 위하여 필요하 유형 력을 행사할 수 있다.

수색 명령이 발부되어 집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 또는 공범자, 배우자의 형사책 임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명령에 따른 권한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자는 제3급 벌금형에 처한다.154)

11) 위험에 처한 아동의 보호

심각한 위험에 처한 아이를 임시로 다른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 국가는 그 사실을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지자체 또는 아동보호단체가 위험에 처한 아이를 임시로 다른 가정에 위탁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와 같이 국가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가정이나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로 인한 모든 형사책임 으로부터 면제된다.155)

¹⁵²⁾ 아동법 제48조.

¹⁵³⁾ 아동법 제49조.

¹⁵⁴⁾ 아동법 제50조.

¹⁵⁵⁾ 아동법 제51조.

12) 기타

본장에 정한 긴급보호명령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규칙으로 정한다.150

나. 2004년 『아동법』

2004년 『아동법』은 1989년 『아동법』을 조금 더 강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 아동보호관(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직의 신설
- 지자체의 아동보호담당관 지정 의무 명시
- 아동복지를 위하여 지자체와 기타 단체 간의 협력 의무 명시
- 합리적 처벌 조항의 삭제: 종래 아동에 대한 상해 또는 폭행 범죄가 자행된 경우 그 상해 또는 폭행은 아동의 훈육을 위해서 체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아동법 제59조를 개정하여 아동에 대한 처벌은 교육 목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함

다. 『블랙리스트 법(Safeguarding Vulnerable Groups Act of 2006)』

독립기구로서 블랙리스트 제정위원회(Independent Barring Board)를 만들어서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블랙리스트를 제정 관리하는 법을 블랙리스트 법이라고 한다.

라. 『자유수호법(Protection of Freedom Act 2012)』

2012년 『자유수호법』은 종래 두 개로 나눠져서 각각 Safeguard Authority와 Criminal Records Bureau라고 불렸던 기구를 합쳐서 비정부공익단체인 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즉, '공개제외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자유수호법』이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근무하길 원하는 교사, 요리사, 청소부, 경비 또는 양로원이나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보건 및 안전교육 등이 포함

¹⁵⁶⁾ 아동법 제52조.

된 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내무부 산하기관인 공개제외원 에서 범죄조회서를 받아서 학교나 양로원 등에 제출해야만 취업할 수 있다(2009년부터 범죄기 록국(Criminal Records Bureau)에서 하던 업무를 2012년부터 DBS로 기관의 위상을 승격시켰 다). 심지어 학교나 양로원, 종교시설에서 학생과 노인, 장애인들과 관계된 자원봉사를 원할 때도 DBS가 발행하는 범죄조회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157)

마. 『아동 및 가정법(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2014년 『아동 및 가정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개혁 작업이 이루어졌다.

- 법원에서 정식 입양 결정이 나기까지 임시로 아동을 위탁 양육할 사람들을 지정해서 'fostering for adoption(입양 전 위탁)' 제도를 도입
- 법원이 아동을 시설에 보호하기로 하는 경우 최장 26주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8주간 연장하도록 함
- 'Staying Put' 제로라고 해서 아동이 원하는 경우 위탁 양육하는 가정에서 21세까지 지낼 수 있도록 함. 이 제도 덕에 아동과 수탁부모 모두 위탁 양육제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함
- 각 시기마다 다른 보호제도를 두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25살까지 '교육, 건강 및 보호 계획(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을 세워 아동보호를 한 차원 높이는 제도를 도입함

바. 『교육법(Education Act 2002)』

2002년 『교육법』에는 교육청과 일선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이 협약을 맺어 아동보 호를 위해 공동대처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158)

사. 『입양 및 아동법(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

1989년 『아동법』을 개정해서 아동에 대한 "위해"에 가정폭력 상황을 목격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가령, 『입양 및 아동법』제12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989년『아동법』제31조 제9항에 정한 "위해"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학대행위를 보거나 들음 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를 포함한다.

¹⁵⁷⁾ 오마이뉴스, 2014. 4. 20. 자 "영국에선 '대형참사' 일으킨 사업주에 '중형'" 참조. 158) 교육법 제175조 참조.

(In section 31 of the 1989 Act(care and supervision orders), at the end of the definition of "harm" in subsection (9) there is inserted "including, for example, impairment suffered from seeing or hearing the ill-treatment of another."

아. 『입양 및 아동법(Children and Adoption Act 2006)』

2006년 『입양 및 아동법』을 통해서는 아동과 부모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 아동에 대한 접견을 수월하게 하고 접견명령 발부를 확대하는 등 법원의 접견에 관한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자. 『아동 및 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2008)』

2007년 캐어 매터스 보고서(Care Matters white paper)가 권고한 바에 따라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고품격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영국과 웨일즈 정부 등기소는 모든 아동의 사망 사실을 지역아동보호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차. 『출입국관리와 국적에 관한 법(Border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09)』

아동보호의 문제를 출입국관리에도 확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아동의 보호라 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아동보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카. 지침: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2015)

1) 의의

본 지침은 아동보호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지침으로서 2003년 제정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다. 2015년 3월 영국 교육부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바를 적어서 2015년 지침으로 공표하였다. 특히 2013년 지침과 관련해서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자의 비위사실의 신고: 종전 지침에 따르면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가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단순히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5년 개정판은 지자체가 아예 이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지정해서 사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의 처리를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담당하는 직원은 종래 아동보호 부서에서 일한 경력이 충분한 경우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159)
- 중범죄의 고지와 관련된 지자체의 의무조항 확대: 종래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아동학대 또는 유기 사건이 발생해야 지역아동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 하지 않은 점이 있었으나 2015년 개정판은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아동학대 또는 유기의 정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160)
- 중대한 위해의 의미 정의: 한편 지역아동보호위원회는 어느 정도의 사건을 중범죄로 분류해서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없었는데 2015년 지침은 아동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위해(serious harm)"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있다.

2) 아동 성착취 및 여성할례

제1장 제17절에서는 성착취 및 여성할례의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하여 지역아동보 호위원회와 지자체, 기타 단체들의 협력 감시 및 예방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3) 새로운 정의

2015년 지침이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개념은 다음 두 가지다. 먼저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사건(notifiable incident)"은

- 아동학대 또는 유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 아동이 사망하였거나 자살한 경우
- 아동학대 또는 유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 아동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아동학대 또는 유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해서 보살핌을 받던 아동이 사망한 경우
- 아동학대 또는 유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해서 보호 또는 보호조치 대상이 된 아동이 사망한 경우

이며, "심각한 위해(seriously harmed)"라 함은

-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상해
- 아동의 신체, 정신, 감정, 사회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long-term)의 손상을 말한다.

¹⁵⁹⁾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ch. 5, sec. 2, 참조.

¹⁶⁰⁾ 위의 글, ch. 4, sec. 13~16, 참조.

3. 학대피해아동 보호실무

가. 통계로 본 영국의 아동학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영국 내에서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숫자는 93,000명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도 50,000명 이상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부터 고통을 받고 있고, 작년 한해만도 학대를 이유로 긴급전화를 건 아동 혹은 청소년 들의 숫자가 29,000명에 이른다.





작년 한 해 동안 경찰기록에 올라온 아동에 대한 학대 또는 잔혹행위는 8,000건에 이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의 예상에 의하면 실제 아동학대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한 명이라면 그보다 8배 정도 되는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 또, 아래 우측에서 보는 그림과 같이 아동복지에 관련된 문제로 국립아동학대예방협회(NSPCC,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에 오는 신고전화가 작년 한 해 5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나. 아동학대 실무: 서식스 지역아동보호위원회

1) 의의

서식스 아동보호위원회는 2004년 『아동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관으로 『아동법』 의 입법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아동보호위원회를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 다. 그 결과 현재 각 지역아동보호위원회가 주축이 되고 기타 단체들이 위원회와 협력해서 아동복지의 증진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2) 중요성

2011년 먼로 교수가 발간한 '아동보호에 관한 먼로 보고서(Munro Review of Child Protection, A Child-Centered System)'에 따르면 현 지역아동보호위원회 체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또, 교육과 실무, 해외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3) 임무

2004년 『아동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아동보호위원회에 대해서는 2015년 지 침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임무를 지정하고 있다.

-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아동의 보호
-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의 예방
- 아동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모든 아동이 최상의 기회를 보장받도록 노력

4) 구성

서식스 아동보호위원회는 그래함 바트렛(Graham Bartlett)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 부 및 민간단체의 간부들을 위원으로 하며, 협력단체는 다음과 같다.

- Brighton & Hove City Council (Children and Families, Education Services, Youth Offending);
- Brighton & Hove Clinical Commissioning Group;
- Brighton & Sussex University Hospitals NHS Trust;
- · CAFCASS:

- · 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 Forum;
- · Domestic Violence Forum;
- · East Sussex Fire and Rescue Services.
- · Kent, Surrey & Sussex Community Rehabilitation Company
- · Lay Members
- National Probation Service.
- NHS England (Surrey and Sussex)
- Schools Representatives;
- · South East Coast Ambulance Service;
- · Sussex Police;
- Sussex Community NHS Trust;
- · Sussex Partnership NHS Foundation Trust.

5) 아동학대 신고

아동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아동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주소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가령, 서식스 지역은 다시 Brighton & Hove와 East Sussex, West Sussex로 나뉘는 데. 각 지역마다 아동보호 사건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주소들이 명시되 어 있다.

또, 각 지역별로 아동보호위원회에 속한 단체들이 표시되는데, 가령, Brihgton & Hove 지역의 컨택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전담팀이라고 할 수 있는 Multi Agency Safeguarding Hub와 당직서비스 (Out of Hours Emergency Duty Service), 브라이튼 앤 허브 경찰서 아동보호과 (Brighton & Hove Child Protection Team), 브라이튼 앤 허브 아동보호관 (Designated Professionals Brighton & Hove), 지자체 아동보호전담관(Local Authority Designated Officer) 등이 그것이다.

Child Protection Referrals

Brighton & Hove

Multi Agency Safeguarding Hub (MASH) C/O Whitehawk Community Hub and Library 179A Whitehawk Road Brighton BN2 5FL

Telephone: 01273 290400

Email MASH@brighton-hove.gcsx.gov.uk

East Sussex

Duty and Assessment Team - West of county: 01323 747373

Duty and Assessment Team - East of county: 01424 724144

Out of Hours Social Care Service - Children's services: 01273 335905/6

West Sussex

Children's Access Point: Monday to Friday between 9am-5pm: 01403 229900

At all other times, including nights, weekends and bank holidays, contact the 'out of hours' emergency team: 0330 222 6664

Brighton & Hove Contacts

Multi Agency Safeguarding Hub (MASH)

Out of Hours Emergency Duty Service

Police - Brighton & Hove Child Protection Team

Designated Professionals Brighton & Hove

Local Authority Designated Officer (LADO)

Multi Agency Safeguarding Hub (MASH)

C/O Whitehawk Community Hub and Library 179A Whitehawk Road Brighton

BN2 5FI

Telephone: 01273 290400

Email MASH@brighton-hove.gcsx.gov.uk

Out of Hours Emergency Duty Service

Telephone: 01273 335905 or 335906

Police - Brighton & Hove Child Protection Team

Telephone: 101 and ask for Brighton CPT.

Designated Professionals Brighton & Hove

Designated Doctor Safeguarding Children: 01273 265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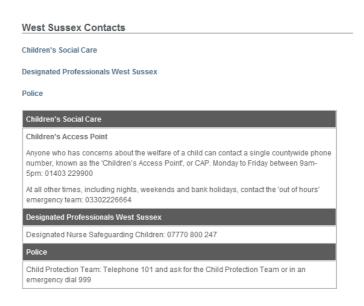
Designated Nurse Safeguarding Children: 01273 574680 / 07770381421

Local Authority Designated Officer (LADO)

Telephone: 01273 295643

Email: darrel.clews@brighton-hove.gcsx.gov.uk

반면에 규모가 작아서 경찰서 외에는 특별히 아동보호단체가 없는 곳에서는 보통 전화를 통해서 연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위에 보는 것은 웨스트 서식스에 대한 안내인데, 제일 밑에 경찰서가 보이고, 그 바로 위에는 웨스트 서식스 아동보호전담관의 전화번호가 나온다. 그런데 이것 외에 는 달리 연락할 곳이 없어서 '아동신고전화(Children's Access Point)'를 두고 있고, 설명에 따르면 "누구든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지역번호 01403 229900으로 전화하고, 주말과 휴일, 평일 5시 이후에는 긴급번호 03302226664로 전화하시오"라고 되어 있다.

제3절 국제연합법상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국제연합법 상 피학대아동 보호법제의 특징은 학대행위로부터의 안전을 아동의 권리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연합은 인간의 권리 선언에 이어 아동 권리협약을 만들어 다음과 같은 4가지 권리를 아동의 권리로 선언하고 있다.

● UN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기본권

01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02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입니다.

03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 반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04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보호권 규정에는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법 상 규범을 통하여 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천명하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아동의 보호권을 권리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아동학대를 체벌행위와 구별하지 못하는 가부장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20세기 후반에 가서야 아동의 권리협약이 명문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고, 학대로부터의 자유로운 권리의 내용을 아동권리협약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다.

1922년 아동복리회의 창설자인 애글란타인 잽(Eglantine Jabb)여사에 의해 성문화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을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전문과 5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아동의 권리 선언

그 다음으로 '아동의 권리 선언'이 있다.

1959년 유엔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채택되어 아동의 권리 신장 에 크게 기여한 국제문서이다. 아동의 권리는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원칙과 정 신에 입각하여 작성되었고. 전문과 10개 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네바 선언에 비해 내용이 확대되고 보강되었다. 아동의 권리 선언의 기본 정신은 아동 또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하여 실현 가능한 특별조치를 시행할 필요성을 선언하는 데 있다. 또, 아동을 구제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인권이나 자유의 주체로 파악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종전의 '선언'에서 '협약'으로 명칭을 바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오랜 논쟁을 거쳐 1989년에 채택되었는데, 여기서는 4개의 주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무차별의 원칙
-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 아동의 생존권 존중
- 아동의 보호 발달 및 참여

이와 같은 원칙과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모든 회원국에게 부과되어 있다.

나아가 UN이 1989년 11월 20일 전문 및 54개 조문으로 구성된 '아동의 권리에 관하 UN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1990년 9월 2일 세계 191개국이 비준하였으며, 현재 인권조약으로는 가장 많은 193개국이 가입국으로 되어 있다. 이 협약의 전문에서는 아동이 성인과 동일하게 포괄적인 인권을 가짐을 명시하기 위하여 "UN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선언과 조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먼저 제시한 후에 "아동은 사회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며, UN 헌장이 선언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고려한다"라고 제시함으로써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보호하고 있다.24) 특히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강조함에 있어서 아동 이 경험하는 다른 생애 시기와의 '차이'를 고려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UN협 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동의 다양한 권리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5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i) 종래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적 내용과는 달리 국제협약으로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협약 당사국에 있어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 력이 있는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ii) 아동을 부모에 예속된 소극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던 과거의 태도를 탈피하여 독립된 인권을 가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였다. (iii)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iv) 아동의 적극적 권리로서 시민적 자유권, 즉 의사표시권 과 자기결정권,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하였다. (v) UN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와 당사 국의 국가보고서 제출 규정 등, 협약당사국의 협약준수를 의무화하였다. 우리나라에 서는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기탁하여 1991년 12월 20일부터 동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161)

아래에서는 아동의 권리 협약을 통해서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내용을 검토하 기로 한다.

4. 아동학대 관련 협약 상 권리

협약은 먼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선언하고 있다.

제11조

-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하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 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¹⁶¹⁾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48회 정기세미나, "아동학대와 아동인권," 22-23면.

-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다.
-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 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학대로 인하여 워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시설에 수용하거나 입양하거나 위탁 입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인 보호 의무를 진다.

제20조

-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키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 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당사국은 또, 아동의 입양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아동의 의사에 따른 입양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국제입양은 모든 노력을 다하여도 아동이 태어난 나라에서 입양을 도모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 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나.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 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 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 여야 한다.
-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 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협약은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뛰어든 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도 아동 학대의 일종으로 보며, 따라서 유해한 노동환경으로부터의 보호도 아동의 권리의 하 나로 규정하고 있다.

제32조

-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아울러 아동학대 가운데 가장 늦게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으나 가장 피해의 정도 가 심각한 성학대와 성착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국가의 보호 의무를 선언 하고, 개별국가별로 또는 양국 및 다국간 조치를 통해서 성학대와 성착취 방지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시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 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협약은 아동에 대한 약취 유인이나 매매, 거래, 일체의 착취로부터 아동 을 보호할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과하고 있다.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 간, 다국 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협약은 노동착취, 성착취를 포함한 일체의 학대행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아동의 권리로 선언하고, 모든 당사국은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으며, 당사국에게 협약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 안에 당사국이 취한 조치, 노력 한 성과 등을 보고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가.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 나. 그 후 5년마다
-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 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동의 존재가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고 국가가 이들의 권리보호 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일련의 권리 선언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는 선언이 아니라 협약을 통해서 당사국의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제하고, 연차보고서의 제출이라는 형태로 후속조치를 도모하고 있다. 앞에서 본 미국과 영국 의 법제.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우리나라의 피학대아동 보호법제 역시 국제연합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것이다.

제4절 일본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1. 『아동학대방지법』

우리 법은 크게 보면 가정폭력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그 안에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아동학 대 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동학대방지법』이 있다. 2000년에 제정되고 2004년 에 개정된 이 법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1조(목적)
- 제2조(아동학대의 정의)
- 제3조(아동에 대한 학대의 금지)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조기 발견)
- 제6조(아동학대에 관한 신고)
- 제7조(비밀누설 금지)
- 제8조(신고 또는 송치를 받은 경우의 조치)

- 제9조(입회 조사 등)
- 제10조(경찰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제11조(아동학대를 행한 보호자에 대한 지도)
- 제12조(면접 또는 통신의 제한)
- 제13조(아동복지사 등의 의견 청취)
- 제13조의2(아동학대를 받은 아동 등에 대한 지원)
- 제14조(친권 행사에 관한 배려 등)
- 제15조(친권 상실의 적절한 운용)
- 제16조(대도시 등의 특별 규정)

이 가운데 우리 법과 내용이 다르거나 우리 법이 참고할 만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 기로 한다.

2. 아동학대의 정의

제2조에서는 보호자가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 (1) 아동의 신체에 외상을 입히거나 또는 외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폭행을 가하는 것
-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것
- (3) 아동의 심신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심한 영양실조 또는 장시간의 방치
- (4) 아동에 대한 심한 언어폭력과 아동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아동에게 심리적 외상을 입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우리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라고 한 것에 비해 훨씬 더 구체적인 정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영양실조와 배우자에 대한 폭력 행위에 노출시키는 것을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 발견, 피학대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 및 자립 지원, 학대를 행한 보호자에 대한 친자재통합의촉진 배려, 기타 피학대아동이 양호한 가정적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된적절한 지도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상호간 연계와 민·관의 연계 강화, 민간단체지원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영국의 지침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방지를위하여 일하고 있는 거의 모든 단체를 망라해서 총체적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아동복지법』제4조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과비교되는 대목이다.

4. 조기발견 제도

일본의 『아동학대방지법』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다. 제5조 제1항은 "학교, 아동복지시설, 병원 기타 아동의 복지 업무와 관계있는 단체 및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직원, 의사, 보건사, 변호사 그 외의 아동의 복지 업무상 관계있는 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아동보호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자에게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162)는 것으로서, 우리 법에서 조기 발견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입법이다.

2004년 『아동학대의 방지법』 개정 시 제6조 제1항에서 '학대를 받은 아동'이 아니라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아동을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학대를 알게 되어 아동보호전문 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었을 당시에 이미 응급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른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원가정복귀가 어렵고, 가족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부모의 개입 등 가족 통합적인 접근방법이 미흡[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다.]163)

¹⁶²⁾ 김잔디,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와 동향," 서울법학 제22권 제2호, 2014, 487면.

5. 신고 후의 조치

일본에서는 신고 후에 "학대부모에 대한 원조나 지도가 행하여지거나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아동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장수사[를 하거나] 임검·수색할 수 있다. 이 임검이나 수색은 경찰관이 전면에 나서 행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상담소의 직원 등이 행하는 것이고, 아동상담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경찰서장에 대해 원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64) 일본에서는 아동학대를 발견 한 경우 시정촌이나 도도부현에 설치된 복지사무소 또는 아동상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즉, 복지사무소와 아동상담소 중 하나라고 신고가 접수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이 경우 제8조는 "필요에 따라 인근 주민이나 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직원, 그 외 사람의 협력을 얻거나 아동의 면접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안전을 확인"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기타: 지역네트워크

크게 보면 일본의 아동학대 방지 법제는 조기발견과 신고, 피학대아동의 보호, 조 사, 부모와의 격리 및 지원이라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 제11조 제3호는 가해 부모에 대한 지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재통합과 친권 상실이라는 두 가지 옵션 중에서 피학대아동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지역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다.

일본의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제도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발견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와 학대받은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원조제도를 시정촌과 아동상담 소라고 하는 이원화체제로 변경되었다. 즉 가정의 문제를 지역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아동상담소 중심으로 충실하게 예방보호하고 있다. 165)

아동상담소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처리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언제

¹⁶³⁾ 이상희 외 2명, "한·일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대한 비교 연구," 아동과 권리, 제12권 제3호, 2008. 239면.

¹⁶⁴⁾ 강동욱, "일본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제와 법 제도." 법과 정책 연구, 제10집 제3호, 2010, 14면.

¹⁶⁵⁾ 오미희, "일본의 아동학대예방 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5, 417면.

든 지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은 영국의 '지역아동보호위원회' 체제와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

7. 결론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동학대는 오래도록 숨어 있는 범죄로 취급되어 왔다.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견도 쉽지 않고, 아동의 자립 능력 부족으로 발견 이후에도 아동과 가해부모를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는 점점 더 은밀해지면서 더 가혹해지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도 약 15년 전에 아동학대의 이런 폐해를 감지하고 피학대아동보호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면서 『아동학대방지법』이라는 단일 법률을 제정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모든 조치를 담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2004년 개정을 통해서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가해아동의 치료라는 치료적 대응 방법까지 갖추게 되었다.

한 마디로 정의하면 "[일본의] 이러한 제도들은 아동학대에 대하여 보다 엄격히 대처 하고, 피학대 아동에게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고 있는 추세이다."166) 그런 점에서 이제 아동학대를 가정폭력이라는 범주에서 떼어 내서 총체적 대응체계를 고민 하고 있는 일본의 『아동학대방지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제5절 우리나라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1. 『아동복지법』

가. 개요

우리 법 상 피학대아동 보호법제의 근간이 되는 것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이다.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¹⁶⁶⁾ 김잔디, 앞의 글, 497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즉, 영국의 아동법의 경우와 같이 아동학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 다. 하지만 크게 보면 아동복지와 아동학대의 방지를 두 개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므 로, 피학대아동 보호법제의 근거법으로는 손색이 없어 보인다. 『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정의하면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의 많은 부분을 포섭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은 또. 아동학대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먼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보호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제15조(보호조치)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
- 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이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여기서 보호대상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 하"167)므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방자치단 체의 장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제18조에서는 "시·도

¹⁶⁷⁾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궈상싴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168)고 하여 적극적인 개입 의무까지 인정하고 있다.

비록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제22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적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169)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전화를 설치"170)할 의무도 있다. 아동학대 방지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에 게 부과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171)여야 하며,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172)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 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불문하고 아동학대의 방지를 위 해 협력할 것을 정한 영국의 2015년 지침과 유사한 규정들이 『아동복지법』에 망라되 어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¹⁶⁸⁾ 아동복지법 제18조.

¹⁶⁹⁾ 아동복지법 제22조 제1항.

¹⁷⁰⁾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항.

¹⁷¹⁾ 아동복지법 제23조 제1항.

¹⁷²⁾ 아동복지법 제24조 제1항.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고,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73) 즉,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은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임 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으로 써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174)이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175) 할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것이다. 아동학대가 경찰만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사법권이 없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축이 돼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아동복지법의 제 규정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동복지법』은 사후관리 조항까지 두고 있다.

제28조(사후관리 등)

-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가동하게 한다.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시스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 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¹⁷³⁾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제2항.

¹⁷⁴⁾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제3항.

¹⁷⁵⁾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제3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176) 규정을 두고 있고, 2014년 2월 18일부터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177) 규정, 아동학대행위자의 취업 제한178) 규정, 아동학

176)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 177)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 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178)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 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1.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 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 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3.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 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세터
 - 7.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 8.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 9.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 10.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 11. 「정신보건법」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의2의 정신보건센터
 - 12. 「주택법」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상태를 추적하는 규정179). 취업 후 해임 규정180)까지, 아동학 대를 위한 거의 모든 규정을 망라하고 있다.

-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 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16. 「청소년 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 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 18.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 20.「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② 제1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 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 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9)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제 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8호·제18호·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제7호·제9호·제10호·제11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13호·제14호·제15 호·제16호·제20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 5. 국토교통부장과: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80)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 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 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 허가 등을 취소하 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법 규정을 주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특히 강하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아동보호전문가 등이 아동학대 범 죄의 발생과 처리. 예방과 사후관리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동학대 범죄가 최근 들어 줄기는커녕 더 늘어가 고 있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선제적으로,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제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정리해 보고, 이 문제에 대한 그간의 대응방안과 그 한계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나. 법제 상 문제점

1) 아동학대 개념의 혼동

먼저, 무엇이 아동학대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다. 즉, 경찰이 됐든, 중앙행정기관이 됐든, 기타 아동보호전문가가 됐든 아동학대 행위의 예방 책임을 지 고 있는데, 정작 무엇이 아동학대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무 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물론 아동복지법에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은 선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금세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계에서는 1974년 제정된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 제111조에서 아동학대를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혹은 성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을 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및 방임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통상 아동의 인권이나 복지를 중시하거나 아동학대의 예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미국의 'child abuse'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 아동하게 유해하면, 즉, 아동의 심신에 주관적 내지 객관적인 상해가 인지되면 모두 학대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에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 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되므로 협의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언어적 폭력, 성적 괴롭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특히 부모의 불화나 애정결핍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의 노출 및 아동의 권리침해까지 포함된다.181)

심지어 최근에는 아동을 심각한 비만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도 아동학대로 보자 는 논의가 분분하다. 즉,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대부분을 아동학대의 범주에 넣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학대아동보호 제도의 첫걸음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학대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 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사회복지적 개입의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애매 하게 하고, 학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갖게 하며, 이를 선별하는 비용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학대방지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학대 위험에 있는 아동 에의 효과적인 대응이 감퇴되는 부작용도"182) 있을 수 있다. 특히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워칙에 따라서 사법처리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좁게 보아야 할 충분 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동학대의 개념을 아동복지법처럼 넓지도 좁지도 않게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견해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먼저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아동학대의 개념을 넓게 잡은 다음에 구체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 범죄는 그보다 좁게 잡는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2)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의 반면에 해당한다. 단순 하게 보면, 아동을 끊임없이 학대하기만 하는 부모도 없고, 반대로 아동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보호하기만 하는 부모도 없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의례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생각에 미국사회도 오랫동 안 갇혀 있었다는 점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동학대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은 전통적으 로 아동이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독자적인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의 부속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83)

¹⁸¹⁾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법학논총 제21집 제1호, 446-47면, 2014.

¹⁸²⁾ 위의 글, 447면.

¹⁸³⁾ 위의 글, 444면.

이런 상황에서라면 아동학대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더 힘들 수밖에 없고 아동학대 사건을 실무에서 다뤄야 하는 사법기관과 행정기관, 아동보호기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 많다. 어디까지가 처벌해야 하는 아동학대인지, 어떤 학대 행위는 신고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학대행위자는 취업제한에 걸리는지 등등 애매한 상태로 남는 규정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 결과 『아동복지법』이 거의 완벽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소홀한 대처

아동학대 범죄의 80% 이상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184)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관이 출동해도 가정 문제에 개입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심각한 폭력행 위가 방치되는 것과 같이 아동학대 문제도 그런 운명에서 크게 달랐던 것 같지가 않다. 특히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계도 활동을 아무리 해도 가정 내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 나 경찰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4)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아동복지법은 최소한 몇 가지 정도가 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4. 삭제 〈2014.1.28〉
-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¹⁸⁴⁾ 보건복지부 아동관리과, 『2012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83-4면, 2013, 강동욱, 앞의 글, 463면("2012년 아동학대 사례 총 6,403건 중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5,370건(83.9%)이 며, 부모 및 친인척을 제외한 타인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505건(7.9%), 친인척의 경우가 435 건(6.8%), 기타 70건(1.1%), 파악 안 됨은 23건(0.3%)으로 나타났다")에서 재인용.

-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물론 이들 금지행위가 모두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 적인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은 물론이고 징역형까지 규정185)해서 부모를 포함한 수범자에게 경고 기능을 수행해 온 것만큼은 틀림없다.

하지만 여기에도 역시 한계가 있다. 먼저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는 주로 형법 상 범죄에도 해당하게 되는데, 형법 상 범죄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미 곪을 대로 곪은 아동학대 케이스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굳이 『아동복지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특별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까지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아동 복지법』의 장치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반증과 다름없다.

5) 소결

『아동복지법』이 가장 크게 실패하고 있는 부분은 범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병리현 상 중 하나인 아동학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이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거나. 범죄로 발전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처벌하는 등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형사처벌 처벌 외의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이 아동의 이익 에 가장 부합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 그냥 아동학대도

¹⁸⁵⁾ 아동복지법 제71조("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 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 2. 제2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

가정폭력의 일환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다른 법률에 있는 규정들을 쓸어 모으는 식으 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아동복지법』규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등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창의적인 협력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여러 기관들이 각자 자신이 할 일만 하고, 그것마저도 마지못해 의무만 면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아동학대라는 현상은 점점 더 곪아 들어가서 부모에게 맞아 죽는 아이 얘기가 신문지상에 나오게 되었고. 그제서 뒤늦게 『아동복지법』외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겨났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 결과가 바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가. 특징

『아동학대처벌법』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 대를 하면서 아동의 상해 혹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한 경우 상해범죄, 살인범죄에 비해서 가중처벌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보호자에게는 형사처벌 외에 친권 박탈의 제재를 가한다는 점이다. 즉, 『아동복지법』과 관련해서 『아동학대처벌법』의 핵심 규정은 다음 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 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 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동학대처벌법의 골자이다.

법안의 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186)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 로 들여다보면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2) 문제점

첫째,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는 다시 함구하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를 말한다"고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아동복지법에 미루고 있다. 그런데 앞에 서 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를 넓게 정의할 수도 있고, 좁게 정의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담당기관의 개입의 범위, 정도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처 벌법을 제정할 당시에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아동학대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렸 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둘째, 아동학대처벌법은 특정 사건에 대한 성급한 대응책으로 기획된 법이라서 그런지 아동학대 범죄를 다시 제한하고 있다.

-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모든 학대행위자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중한 결과에 대해서 "부모 또는 그 공범"에게만 한정해 서 책임을 묻는 법이다. "아동학대가 대부분 피해아동의 보호자들에 의해 행하여지는

¹⁸⁶⁾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유.

것을 근거로 보호자들에게 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도"187)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비록 작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친인척이나 이웃사람.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해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행위자를 특별법에서 달리 취급할 형사정책적 이유가 있는 지 의아해하 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피학대아동의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연 아동 자신을 위한 조치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 사회분위기가 아동을 학대한 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라면 '과연 그게 최선일까?' 라는 진지한 고민을 해야 마땅한데, 막상 통과된 법을 보면 일도양단식의 중형주의만 발견된다.

학대행위자의 83.9%가 부모인 현실에서 학대행위자를 모두 형사처벌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와 사회가 피해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피해아동은 오히려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보호무방비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또 부모인 학대행위자의 형사처벌로 인해 초래되는 부모와 자녀의 혈연관계의 물리적 단절로 인해 피해아동이 겪게 되는 정신적·물질적 영향이나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고, 자신으로 인해 부모가 형사처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피해아동의 심리적인 부담은 물론, 피해아동 또한 전과자의 자녀라는 낙인으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기 어렵다. 나아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부모 등의 학대에 대해 직접 증언을 하게 된다면 친자관계 자체가 파괴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아동학대의 대책에 있어서 '원가정회복'이라는 목적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법률에서는 부모를 포함하여 보호자인 학대행위자에게는 정상적인 가정의 회복이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우선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그럼에 도 불구하고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나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 한정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188)

넷째, 사실상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 친권 박탈의 청구 규정도 문제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제9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물론 다음에 나오는 단서에 따라 "친권상실의 선고

¹⁸⁷⁾ 강동욱, 앞의 글, 458면.

¹⁸⁸⁾ 위의 글, 464면.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범죄로 가해자를 처벌하면서 그가 친권을 유지해야 하는 사유를 검찰 측에서 열심히 찾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냥 규정에 따라 친권 상실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동학대처벌법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전문가들이 이상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동학대처벌법의 근간에 깔려 있는 중형주의에 대한 우려 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본다. "학대행위자 또는 학대행위만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나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형사처벌 중심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학대행위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고민이 필요하다."189)

3) 중요성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지는 의미 자체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되다. 수범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별 처우 가능성을 확보한다면 아동학대처벌법도 아동복지 분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법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현행 규정 가운데도 선진 외국의 예에 비추어 손색이 없는 규정이 여러 개 있다. 본문은 생략하고 제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9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20조 임시조치의 고지

제21조 임시조치의 집행

제22조 임시조치의 변경

제23조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제24조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5조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앞서 영국의 법제를 보면서 검토한 바 있는 긴급보호명령과 경찰관의 긴급보호조치 등을 그대로 따온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과

¹⁸⁹⁾ 위의 글, 469면.

동시에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기만 하면 아동학대 범죄로 인한 파국을 막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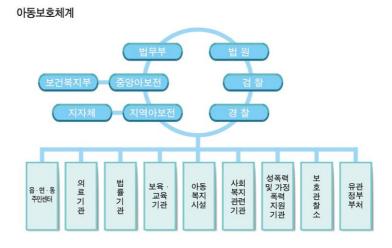
이것과 아동복지법 상의 다양한 대응조치 등을 합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전사회적 인 자원 동원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거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처벌법 도입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3. 실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 협력체계 확립과 정책 제안을 통하여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전개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영국의 지역아동보호위원회 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가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는 것과 같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도 여러 정부단체와 시민단체를 망라하는 아동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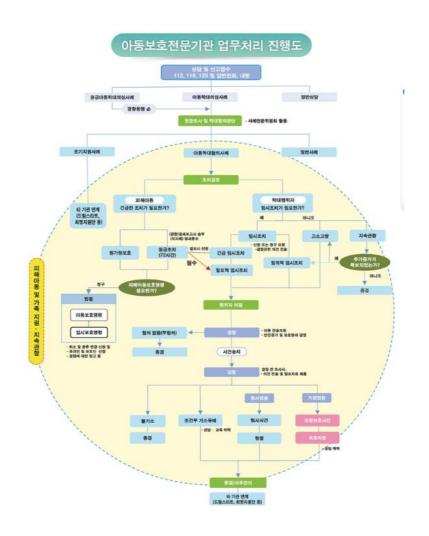
아래 그림을 보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법기관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이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각종 공사단체를 실행 부서로 해서 피학대아동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의 협력 지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학대아동의 신고 부터 지원, 사법처리, 관찰, 사후조치까지 우리 법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아동학대처벌법』상 긴급조치들이 책임감 있는 기관에 의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제6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개선방안

강은영·김희균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개선방안

제1절 아동학대 관련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우리 법이 그동안 아동학대를 가정 내 폭력사건의 하나로, 즉, 가정폭력의 한 양상으로만 파악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폭력행위의 방지와 가정의 유지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비교형량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처벌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큰 장애가 되어 왔던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아동학대에도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가정의 울타리 내에서 평화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또, 일어난 경우에는 그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점이 우리법의 가장 큰 허점이라고 본다.

가령, 종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라는 개념보다는 아동에 대한 개별 행위를 금지하는 편제를 취하면서 구체적 행위 유형을 일일이 같이 열거하고 있다.

-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4. 삭제 〈2014.1.28.〉

-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¹⁹⁰⁾

이 가운데 제1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래 10년 이하의 징역형뿐만 아니라 5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4년 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단일화한 점, 제3호에서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학대행위의 외연을 넓힌 점, 제9호에서 곡예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한 점 등은 예전의 입법보다 진일보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 규정대로 그대로 철저하게 처벌하는 실무적 뒷받침이 있을까 하는 점이다. 종래 우리가 벌칙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빠짐없이 처벌하지 못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느슨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가령, 아동학대를 경찰에 신고하면 법에 정한 처벌을 도모하기보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보라고 한다든지, 별 것 아닌 문제로 치부해서 가정 내 해결을 독려한다든지 하는 태도를 보여 왔던 점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우리의 불감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제라도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아동학대는 대충 무마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만 해도 『아동복지법』이 전에 비해 나아진 점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것 외에는 『아동복지법』의 모든 조치들은 아동학대라는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방어 수단이 되지 못했다. 가령, 『아동복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상적인 규정들 일색이었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¹⁹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 배포, 송출) 제25조(아동학대의 신고 의무와 절차) 제26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8조(사후관리 등) 제29조(피해 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191)

기본적으로 홍보와 교육만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홍보와 교육조차 실효적으로 진행되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지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아동학대에 대해 정부가 적지 않은 예산을 배정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아동학대에 대한 저 간의 노력이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에 입법부의 발 빠른 대응이 맞물려서 얻어낸 성과가 바로 『아동학대처벌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주 내용은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정의 유지보다도 그 보호자의 처벌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이른바 가중처벌 규정 이다.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가중처벌 규정만 놓고 볼 때, 종래 가정폭력 사건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떼어 내는 의미가 있다. 행위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 아니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그 행위자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을 종전처럼 유지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앞으로는 가정 내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은 빠짐없이 처벌할 것인지 우리는 지켜보아야 할

^{191) 2014}년 개정 이전 아동복지법 참조.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은 근본적인 허점이 있다. 가령, 부모 외의 제3자나 친척 등에 의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든 지, 아동학대에 다양한 행위 유형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하는 대목은 두고두고 우리가 다듬고 고쳐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이처럼 학대의 결과 심각한 피해 를 입은 경우 가중처벌을 위해서 제정된 법인데도, 법의 효과는 가중처벌보다는 다른 곳에서 발휘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긴밀하게. 또 연대해서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일련의 '대응조치' 규정들이 그것이다.

제10조(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1조(현장출동)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제15조(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종전의 『아동복지법』이 현장출동 및 격리조치만 규정하고 있던 데서 벗어나서 『아 동학대처벌법」에서는 외국 법제들이 채용하고 거의 대부분의 임시조치, 긴급조치, 기급명령, 보호명령 등 학대범죄피해자와 학대행위자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 워하고 있다. 학대범죄에만 국하되는 거라서 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 해를 입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아동학대범죄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이렇 게나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이런 태도는 다시 『아동복지법』에도 영향을 미쳐 2014년 여러 규정들이 추가되면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또 하나의 진전을 이루게 된다. 먼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업무에 있어서 중책을 맡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응조치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명하고 있는 점이 눈에 뛰다.

제22조의2(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 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경찰이 아동 학대의 의심 있는 사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통고하도록 했고.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응급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했다.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 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행위자에 대해서 상담을 권고할 수 있고.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 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 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의 취업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아동 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제29조의4(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의 점검, 확인)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이러한 법 규정을 보면 종래 『아동복지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던 것에서 벗어나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전체의 감응도가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점 등에서 충분히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 실무에 들어가 보면 법제도의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근본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눈에 띈다. 이 점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학대피해아동 지원 문제

『아동복지법』은 제28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제9조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4.1.28.
- ⑥ 제5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1.28.〉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의 주체는 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부 '아동보호전무기관의 장'이며. 아동보호전무기관의 장의 지워 조치에 대해서 피해아 동의 가족은 수혜자로서 협조해야 하고, 전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자로서 협조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장에서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지원에 동원할 인력과 자원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제27조의2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아동에게 당장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처리 진 행도'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는 사건의 관리 에 있지, 사건 이후의 처리에 있지 않다. 사후관리와 피해아동 가족 지원 등에 대해서 수행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법 규정도 숙지하고 있지만 미처 그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실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이런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아동보호전문 기관은 사건 처리만 해도 시간이 턱없이 모자랄 지경인데 이미 처리가 끝난 사건의 피해아동이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그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음 으로는 신경이 쓰이지만 몸이 움직여서 투입될 만한 여력이 없다.

그래서 사건이 처리되고 나면 피해아동은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수용되거나 그마저 도 여의치 않으면 '그룹홈' 등을 전전하면서 비행청소년으로 자라는 게 현실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장에서는 괜찮은 시설로 옮겨주고 싶겠지만 그런 시설 자체가 수용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아동은 또다시 거리를 전전하거나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 '중복학대'의 피해를 입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이 모든 문제가 사후관리와 피해아동 지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만 맡겨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시설과 긴밀한 연계 협력 체계를 갖추지 못한 탓이라고 본 다. 사건 처리에 급급한 수사기관도 여력이 없고, 전학만 시켜 주고 나면 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육당국도 마땅한 개입 루트가 없는 상황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만 보고 있다가는 『아동복지법』이 생각하고 있는 회복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요컨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컨트롤 타워로 해서 사후관리 및 피해아동과 가족 지원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보충해 주는 것을 최우선 의 과제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

3. 위탁양육과 입양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임시로 보호시설이나 위탁양육가정에 맡겨 두었 다가 건전한 부모를 찾아 입양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자와 가해자 아닌 부모가 있는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사회적 상황에 따라 어떤 길로 갈지가 달라지겠지만 앞서 본 외국 사례는 주로 전자의 길을 선호하고 있다. 그래 서 미국과 영국의 피학대아동 보호법제가 학대와 입양을 같은 법률 안에 놓고 규정하 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 『아동복지법』도 두 가지 옵션을 동시에 규정해 놓고 있다. 즉, 한편으로 제15조 보호조치의 취지를 보면 원가정복귀가 아닌 새로운 가정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제3호의 가정위탁과 제6호의 입양특례 규정은 외국 법제가 주로 공들여 만든 것인 데, 이를 우리 법에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 회복을 통해서 원가정에 복귀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은 규정도 보인다.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 두 규정은 폭력행위가 없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이를 지원할 것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가지 옵션 가운데 어떤 길이 피해아동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 고 할 것인가.

아동학대를 연구하는 국내의 많은 학자들은 원가정복귀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

아동과 부모로부터의 아동이 분리됨에 따른 국가나 사회가 부담하게 될 피해아동의 양육과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보더라도 사실 상 피해아동의 '원가정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부모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벌의 부과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그 법명은 물론 보호자 아닌 자에 의한 아동학대 와 달리 보호자의 아동학대로 인한 중한 침해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보호처분 보다 형사처벌을 강조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재검토를 요한다. 192)

다만 그 이유가, 아이는 친부모 손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원론에 기대서만은 아닌 것 같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학대 받은 아이를 임시로 보호해 주겠다고 나서는 위탁가정 도 그 수가 많지 않고, 또, 갓난아이도 아니고 상처가 없는 아이도 아닌데 선뜻 입양하 겠다고 나서는 가정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원가정복귀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 라는 게 솔직한 의견일 것이다.

하지만 원가정복귀 혹은 원가정보호가 항상 옳은 답은 아니다. 이미 학대의 전력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고, 치료 이후에도 학대행위가 재발되지 않는지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세밀하게 고안된 다음에 원가정 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상적인 가정으로 입양해 가는 길도 원가정복귀에 못지않은 대안이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 볼 수 있다.

미국 피학대아동보호법제의 역사에 본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기 를 기대하는 바이다.

¹⁹²⁾ 강동욱, 앞의 글, 464면.

4. 가중처벌의 필요

이상이 사건처리 이후의 문제라면 사건처리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 데, 그것이 바로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남발이라는 문제다.

본 연구결과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검찰 처분결과는 '구공판'이 32.2%, '구약식' 이 12.7%, '기소중지'가 0.6%, '기소유예'가 30.3%였다. 구공판과 구약식 처분을 받은 피의자들만을 대상으로 구형량을 분석하면. '유기징역'을 구형한 경우가 가장 많아 34.9%에 이르고, 그 다음이 '벌금'으로 28.5%로 아직까지 벌금을 구형하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정내 학대의 경우 '구공판'(35.6%), '기소유예'(33.9%), '불기소(혐의 없음/공소권 없음/죄가안됨)'(11.3%)의 순이다. 즉 가정내 학대는 구공판과 교육이수 혹은 상담조 건부 기소유예의 비율이 각각 약1/3을 차지하여, 이 둘을 합하면 약70%에 이른다.

사실 아동학대는 일회성에 그치는 폭력행위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핑계로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온 계속범이기 때문에 그 가해자를 벌금형으로 선처하거나 기소 유예와 상담 등으로 풀어줄 계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종래와 같이 가정폭력의 일환으 로 선처하는 경향이 계속된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감응도가 다시 예전으로 회귀하고, 아동학대 문제가 더 안쪽으로 곪아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원가정 보호라는 일견 설득력 있는 논거를 대면서 한 번도 기회를 주자는 온정주의가 팽배하게 되면 피해아동은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또,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외상후 장애 등 보다 근본적인 상처를 가지고 가정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별한 담보장치 없이 이들을 워가정에 방치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벌금형이나 기소유 예 처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처분에 걸맞은 이유의 해명도 없이, 또, 적절한 후속조치도 없이 가정에게 문제의 처리를 떠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아동학대의 폐해와 위험에 대해서 냉정한 시각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원회 전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많은 짐을 아동보호전 문기관에게 지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영국처럼 지역별 아동보호 위원회로 격상시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볼 만하다.

제2절 아동학대 관련 영역별 개선방안

1. 아동학대 예방 강화

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학대아동보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단계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아동학대살인 사건이나 아동방임 사건 등이 보도되면 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점차 향상되어지고 있기는 하나, 아동학대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각종 제도도입이 필요한 단계라 판단된다.

인식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은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고양시킴 으로써 아동학대의 발생을 예방하고 나아가 아동학대사건을 조기에 발견, 개입하는데 목적을 둔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가해자가 부모나 양육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어렵고, 제3자에 의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학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웃이나 통반장에 의해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이와 일치하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조사대상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친부모로 48.8%이고, 여기에 계부모(7.5%), 부모의 동거인(2.7%)을 모두 합하면 실질적인 부모의 위치에 있는 자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가 59.0%에 이른다. 또한 아동학대 피의자들은 주로 신고에 의해 검거되는데

(93.4%), 신고자는 부모가 47.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1.8%), 교육 및 보육시설 종사자(교원, 보육교직원, 유치원종사자)(10.9%)의 신고비 율이 높다. 주목할 점은 친인척(조부모. 형제자매. 친인척)(4.8%)보다는 이웃사람 (6.0%)과 모르는 사람(7.1%)이 신고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즉 핵가족화로 인하여 확대가족 구성원들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학대, 특히 부모 가 학대가해자일 때 아동들을 학대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지역공동체가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겠다.

따라서 일반국민, 지역사회 단위의 예방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아동학대예방뿐 아니라 조기발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아동학대가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하고, 신고방법과 신고기관이 무엇인지를 알리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나. 아동 및 아동관련 직종종사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강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 일반 성인, 아동관련 직무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아동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현재 수준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이미 학교에서 실시되어지고 있고, 보건복지부 등에서 교재가 개발된 바 있다. 특히 2014년 2.28 아동학대 예방 종학대책을 발표 한 후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아동안전교육을 강화한 바 있으며, 온라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상으로도 피해아동 본인이 신고한 비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피의자들은 주로 신고에 의해 검거되는데(93.4%), 그 중에서 '피해자 본인이 신고'가 13.5%에 이른다. 특히 부모가 주 가해자인 가정내 학대의 경우 약15%가 피해아동 스스로가 신고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학교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결과 아동의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아동 스스로 학대에 대처하는 방법을 인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결과일 수 있다.

아동 대상 예방교육은 부모 혹은 다른 성인들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아동권의 개념. 특히 학대받지 않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를 그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아동학대의 개념과 학대 피해시 대처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과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보다 강화된 형태의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와 의료진, 보육교사 및 교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교육과정과 보수교육과정 에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부모교육의 제도화

전체 아동학대 가해자 중 친부모, 계부모 등 실질적인 부모의 위치에 있는 자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가 59.0%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의 부모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도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가정내 학대는 '양육태도 혹은 훈육문제'(41.1%), '가해자 개인 특 성'(26.0%),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12.7%), '부부문제'(10.7%), '경제적 문제'(7.1%) 등 다양한 동기로 발생한다. 특징적인 부분은 가정내 학대 중 '친부모 학대'는 가해자 개인특성(30.7%)과 양육태도 및 혼육문제(28.6%)가 주요 원인인 반면, '가정내 중복학 대' 가해자들은 '가해자 개인 특성'(20.3%)보다는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42.9%) 때문 에 아동을 학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해서 가장 심각한 아동학대 형태인 가정내 중복학대의 경우 양육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학대원인이라는 것이다.

핵가족 사회에서 많은 부모들은 양육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0-2세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부모들은 양육에 대한 지식부족과 양육부담으로 인해 과다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특히 이 시기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될 경우 아동학대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역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일환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부부의 혼인신고 시, 자녀 출생신고 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시, 초등학교 입학 시, 중학교 입학 시 등 여러 방안들이 제시된 바 있으 나. 본 연구결과 이른 시기에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평균연령은 7.7세, 가정내 학대 피해아동의 평균 연령은 8.89세이며, 친부모학대는 8.92세, 가정내 중복학대는 8.98세로 초등학 교 저학년에 해당되나, 대부분의 가해자가 부모인 아동학대살인의 경우 피해아동 평 균 연령이 3.24세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초등 혹은 중등 입학시 교육은 시기가 너무 늦어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부모교육은 자녀가 출생하기 직전이나 직후 자녀양육이 시작되는 시점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효과 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할 때 혹은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 전체 사회의 폭력 감수성 향상 및 음주문화 개선

무엇보다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뿐 아니라, 가정폭력, 학교폭력은 긴밀히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 전반 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를 낮추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정내 체벌에 대해 허용적이고, 자녀 훈육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음주 후 폭력행동에 대해 관대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취약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음주문화의 경우 아동학대와 기밀히 연관되다. 본 연구 결과 23.9%의 가해자 들이 학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가정내 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40.0%가 음주상태 였으며, 특히 가정내 중복학대의 경우 범행시 가해자 음주비율은 52.2%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분석결과 아동학대 가해자 개인특성으로는 '폭력적 성향(31.6%)'과 함께 '알코올 문제(29.8%)'이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났고, '물질 및 중독 장애' 역시 17.4%의 가해자가 해당된다. 따라서 가정내 학대 가해자 치료시에는 알코올 문제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한다.

마. 시설내 아동학대 예방

핵가족화 및 맞벌이 증가 등으로 유아 취원율이 높아지고 종일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서 안전한 영유아 교육시설 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15년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동영상 파문 이후 영유아 교육시설 내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발표에 이어 학부모들의 CCTV 설치 요구가 여론화되었다. 이에 2015년 4월 15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되었다(9월 19일 실시). 개정법률은 원칙적 으로 CCTV의 설치는 의무화 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는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근거는 어린이 집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내부인에 의해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CCTV 녹화영상 없이는 학대사실의 발견과 입증이 없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 결과 시설내 학대 사건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는 19.7%에 불과하고 대부분 비신고의무자, 특히 '부모'에 의해 신고되는 비율이 높다(72.4%). 시설내 학대는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동료교사나 관리자(원장) 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많은 수는 부모에 의해 발견되고 신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CCTV 만으로 시설내 학대를 예방하기는 어렵다. CCTV는 사전예방 보다는 사후 사건처리의 수단으로 효용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제까지 논의되어온 바와 같이 종사자 처우개선이나,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보육시설에 도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영유아 교육시설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와 같은 기계적 감시보다는 시설 이용자들의 자연감시 강화와 영역성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설계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적용가능한 영유아 교육시설 범죄예방환 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신규시설 인증, 기존시설 개보수 및 일상적인 유지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활성화

가. 사회적 감시망 강화를 통한 조기발견 체계 구축

현재의 아동학대 발견체계는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 아동집단, 특히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빈곤계층의 고위험군 아동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193). 그러나 아동학대는 빈곤가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보편적인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1) 가정방문서비스 제도화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해서는 가정방문서비스의 제도화하여야 한다 는 주장도 있다. 자녀양육 부담이 가장 큰 자녀 양육 초기, 즉 영아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의무화함으로써 고위험 사례의 발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다194)

2) 예방의료체계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예방의료체계는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에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더욱 정책적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1) 영유아건강검진 중 3회(생후 4개월, 9개월, 2세)를 모두 불참하는 경우, 2) 필수 예방접종을 누락한 경우, 3)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기관을 통하여 가정방문을 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195). 이 방안은 아동학대를 조기발견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수검율과 접종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방의료체계의 활용은 의료진이 예방진료서비스 내에서 학대의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서 신고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동시에 조기발견이 가능하다 는 강점을 가진다196.

3) 의료체계연계를 통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아동이 반복적으로 화상, 골절상 등 상해를 입고 병원을 방문하거나, 응급실 방문 횟수가 많은 경우. 아동의 상처가 부모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관련 진료기록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이 신

¹⁹³⁾ 이은주, '정부의 아동학대예방대책 이대로 좋은가', [정부의 아동학대예방대책 이대로 좋은 가],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위원회, 2014. p.61

¹⁹⁴⁾ 정익중, '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안과 그에 근거한 정부 종합대책 평가',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이대로 좋은가],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위원회, 2014. p.6

¹⁹⁵⁾ 정익중, '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안과 그에 근거한 정부 종합대책 평가',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이대로 좋은가],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위원회, 2014. p.6

¹⁹⁶⁾ 안재진,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 아동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걸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p.67

체적 상해를 입고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의료진은 학대의심 여부를 진료기록시스템에 표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야 한다.

영국의 간호사 가정방문 서비스(nurse-based home visiting service)나 호주의 영아보기간호사(infant welfare nurses), 뉴질랜드의 Early Start 프로그램, 스칸디나비아국가의 보편적 모성 및 아동보건간호사(universal maternal and child health nurses) 등은 의료체계 연계를 통해 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한 성공적 사례라 할 수 있다197).

4) 신고의무 강화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는 것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학대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동학대의 많은 수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0-6세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31.5%, 10세 미만 아동 비율은 48.9%에 이른다. 본연구에서도 실질적인 부모의 위치에 있는 자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가 59.0%에 이르고, 피해아동 연령은 미취학 아동(6세 이하)이 가장 많아 42.9%이고, 학령기 아동 (7-12세)은 28.9%로 이 둘을 합치면 71.8%이다.

이들 연령의 아동들은 학대피해를 직접 신고하기 어렵고¹⁹⁸⁾, 특히 학대 가해자가 친부모나 양육자인 경우 더욱 발견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특례법에서는 신고의무자 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수행인력 등이 포함 되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의 범위는 아동과 접촉가능한 모든 직군으로 확대할 필요 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신고의무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 결과 전체 신고사건 533개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은 30.2%이고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은 66.4%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및 보육시설 종사자나 의료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신고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은 '아동보호전문기관

¹⁹⁷⁾ 안재진,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 아동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걸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p.64

¹⁹⁸⁾ 안재진,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 아동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걸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p.58

종사자'가 11.8%, '교육 및 보육시설 종사자'(교원, 보육교직원, 유치원종사자)가 10.9%이며, '의료인'이 3.0%, '복지시설 등 종사자(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지설, 사회복지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3%, '관련 공무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 지전담공무원)' 1.7%, '소방구급대원'이 0.6%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신고의무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통 해, 고용계약시에 신고의무를 고지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나 신고의무자에게 벌점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기관 내부적으로 아동학대 발견시 대응 매뉴얼과 절차를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물론 소속기관에 과태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들의 개인정보 및 신분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5) 아동학대 초기사정용 간이지표 개발 및 활용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 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초기사정용 간이지표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병원과 학교,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시군구 사회복지과 등에 초기사정용 간이지표 를 보급하여 신고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나. 조기개입 활성화

1) 개입단계의 개선

위기개입과 사례관리, 사후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현재의 기관수와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기개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즉 신고접 수, 현장조사, 상담과 치료까지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따라서 서비스 유형에 따라 그 역할을 지역사회와 분담할 필요가 있다.

위기개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그 이후 지역사회내 관련기관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센터, 교육기관 등이 사례관리와 사후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한다.

2) 잠재적 위험사례 관리 강화

현재의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정 및 개입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신고접수된 사례에 대하여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에만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학대피해의 응급성에만 초점을 두어 학대사례와 비학대사례로 이분하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향후 학대발생 가능성이 있은 잠재적 위험사례와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일반사례는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제외되고, 그 결과 잠재적 위험사례의 학대발생을 예방하지 못하게 된다. 즉, 위험에 처해있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예방서비스 대신 학대 신고와 학대조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199).

현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으로는 잠재적 위험사례까지를 관리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지역사회내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학대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상담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상담원 증원

특례법 시행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아동보호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아동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대 피해아동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일시보호시설과 그룹홈,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의 전문적인 가정위탁서비스가 현재 수준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영유아와 장애아동의 경우 시설 부족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어 우선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담당 아동수를 비교하여 보면 미국의 경우 1인당 2,26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4,882명으로 보고된 바 있다²⁰⁰⁾. 특히 우리나라는 2005년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아동보호기관 설치와

¹⁹⁹⁾ 안재진,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 아동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걸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p.59

²⁰⁰⁾ 황옥경, '아동보호서비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아동학대 현황과 피해 아동 보호방안], 국회인권포럼, 2014, p.45

전문인력 확충 미이행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201).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상담원이 증원되어야 한다. 일부 전문가는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설치시 인구수만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는 데202), 이는 농어촌과 같이 인구밀도가 낮지만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응급사례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적정수의 상담원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수교육과 수퍼비젼이 강화되어야 하며, 소진예 방 프로그램 역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률적 기능강화를 위하여 법률조력인의 배 치 및 전담 경찰관의 배치를 주장하기도 한다203).

나. 조사단계의 전문성 강화

조사 및 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조사 및 처분과정에 관계 하는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진술대리인 등의 전문성 역시 확보되어야 한다.

다. 아동치료서비스의 강화

많은 선행연구들은 보호자와의 애착이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에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아동들은 발달 및 성숙에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 로 보고한 바 있다.

첫째,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의 많은 수는 피해후유증을 겪게 되며, 이 때문에 치료적 개입이 요구된다.

²⁰¹⁾ 이여진, '아동학대 예방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아동학대 현황과 피해아동 보호 방안1. 국회인권포럼, 2014, p.63

²⁰²⁾ 이은주, '정부의 아동학대예방대책 이대로 좋은가', [정부의 아동학대예방대책 이대로 좋은 가],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위원회, 2014. p.65

²⁰³⁾ 정익중, '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안과 그에 근거한 정부 종합대책 평가',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이대로 좋은가!,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위원회, 2014. p.11

본 연구 결과 아동학대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의 결과 역시 복합적인 경우도 많다.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중에서 후유증이 없었던 경우는 21.2%였으며, 62.8%는 후유증을 경험했다. 피해아동의 45.4%는 한 가지 유형의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결과가 40.1%로 가장 많고, 사회적 결과가 4.1%, 정서적 결과가. 1.2%이다. 그러나 많은 수는 복합적인 후유증 내지 학대결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체적+사회적 결과' 5.8%,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결과' 4.9%, '신체적+정서적 결과' 3.6%, '정서적+사회적 결과' 3.2%의 순이다. 신체적 후유증으로는 '명, 부어오름, 타박상, 찰과상과 같은 신체적 손상', '도구흔이 있는 상처',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설명이 어려운 상흔' 등이 많았다. 정서적 후유증으로는 '공격적 혹은 위축된 극단적 행동 표출',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우울증상 및 부모 간 갈등을 더 많이 지각'이 많았다. 사회적 후유증으로는 '부모에 대한 두려움', '부모 이외의 성인에 대한 두려움', '어른과의 접촉회피', '잦은 결석'이 많았다.

시설내 학대보다는 가정내 학대의 피해아동이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가정내 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의 79.5%가 후유증이 있고, 20.5%는 별다른 후유증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내 학대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65.0%와 35.0%이다. 일회성에 그치는 시설내 학대의 경우에도 무려 65.0%의 아동이 후유증을 경험했다는 점은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결코 가볍게 다루 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겠다.

특히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은 폭력 후유증 뿐 아니라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204) 따라서 상담, 교육, 치료서비스 등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학대 피해아동의 57.8%만이 서비스를 받았다.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 면에서는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아 38.1%이고, 의료서비스가 9.4%, 심리치료 서비스가 9.1%,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 1.8%이다. 가정내 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의 79.5%가 후유증이 있고, 서비스 수혜비율은 78.5%이며, 시설내 학대의 경우 65.0%의 아동이 후유증을 경험하고, 서비스 제공 비율은 58.0%로 두 집단 모두

²⁰⁴⁾ 이은주, '정부의 아동학대예방대책 이대로 좋은가', [정부의 아동학대예방대책 이대로 좋은 가],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위원회, 2014. p.64

후유증비율에 비하여 서비스 수혜율이 다소 못미치는 수준이다. 실제로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후유증 유무와 관계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서비스가 현재 수준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학대의 유형과 학대의 심각성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피해자 관계 혹은 피해자 연령, 친부모 여부 등 여러 변수가 아동학대의 피해양상과 후유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가해자 피해자 관계에 따라, 피해아동 연령에 따라 피해아동의 후유증 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설내 학대보다는 가정내 학대의 피해아동이 후유 증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가정내 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의 79.5%가 후유증이 있고, 20.5%는 별다른 후유증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내 학대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65.0%와 35.0%이다. 일회성에 그치는 시설내 학대의 경우에도 무려 65.0%의 아동이 후유증을 경험했다는 점은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문제로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하겠다. 또한 피해아동의 연령은 학대 후유증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며, 피해아동 중에서도 초등학생이 가장 학대 후유증에 가장 취약하다. 후유증 경험비율은 학령기 피해자 (85.4%), 청소년 피해자(74.8%), 학령전 피해자(64.7%)의 순이다.

따라서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별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는 개별화된 전문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이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 가족지원 강화 및 가족내 추가학대 예방

학대아동의 80% 이상이 원가정보호 조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재학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만이 아니 라 가족지워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의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지역 가족지원서비스와 연계시켜 모니 터링이 가족지워서비스 내에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마.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지속적 관리

학대 피해아동만이 아니라 아동학대 가해자 역시 상담과 교육 등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적인 가능해졌으나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개입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대행위자에 대한전문성있는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아동학대 가해자의 31.3%는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이 있으며, 우울장애'(30.4%), 신체장애(17.4%), 물질 및 중독 장애(17.4%)가 많다. 장애나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적응이나 행동 문제가 있는 가해자는 31.0%로 폭력행동(31.6%), 음주(29.8%), 우울(11.6%), 반항/충동/공격성(6.1%), 불안(2.7%), 인터넷·게임중독(2.4%), 성문제(2.4%) 등이 많다.

둘째, 특히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이 시설내 학대 가해자에 비하여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이나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의 27.6%는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모두 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의 73.0%는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들은 17.0%만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정내 학대의 경우 피해 아동이 원가정 복귀되는 경우 가해 부모와 피해 자녀가 함께 거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만이 아니라 교육,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

셋째,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10.1%만이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는 그 비율이 23.6%, 청소년 학대 가해자는 24.6%에 이른다. 또한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적응 및 행동문제가 없는 비율이 있는 비율보다 더 높은 반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학대 가해자들은 문제가 있는 비율이 더 높다. 구체적인 비율을 보면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의 47.8%, 학령기 아동학대 가해자의 69.4%, 청소년 학대 가해자의 67.0%가 적응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다.

넷째, 그러나 아동학대 가해자의 28.7%만이 상담, 치료 등 서비스를 받았다. 구체적 인 서비스 유형으로는 상담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47.2%), 그 다음이 교육이며(35.4%), 그 외 서비스들은 비율이 낮아서 의료서비스, 심리치료 서비스, 가족기능강화 서비스가 모두 각각 5.8%이다.

넷째, 특히 가정내 학대 가해자의 51.4%가 서비스를 받은 반면, 시설내 학대 가해자 는 27.5%만이 서비스를 받았다. 부모 학대의 경우 검찰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을 내리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내 학대 가해자들은 시설내 학대 가해자 보다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 훨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만큼이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집단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가정내 학대 가해자의 절반 정도만이 서비스 수혜자이고 나머지 절반은 교육이나 상담과 무관한 처우를 받는다는 사실은 재범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많은 수가 부모이고, 피해아동들이 원가정 복귀 조치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한 쟁점일 수밖에 없다.

라. 통합적 사례관리 실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해체는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가정내 학대는 부부문제(10.7%), 경제적 문제(7.1%) 등이 주요한 학대동기로 분석되었으며, 피해아동 가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비율이 28.3%이다. 또한 가정내 학대의 경우 친부모 가족에서도 발생하지만(약1/3, 32.6%), 상대적으로 친부모 가족 외 가족형태가 많다(약2/3, 64.2%).

따라서 고위험 아동이나 고위험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절실하며, 이를 통해 조기발견과 조기개입 역시 가능하다. 이 때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는 별개의 시스 템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전체 사회복지 시스템 내에서, 특히 통합적인 가족지원서 비스의 일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통합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로 학대피해아동 보호기관과 가족지원기관간의 연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마. 아동학대 사망사례팀 구성과 통계집적

교통사고나 신체질환 등이 아닌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아동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망사례조사팀(child death review)을 구성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

고, 조사팀은 시도단위로 구성하되 경찰,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조사결과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살인 통계가 집적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학대 사망에 대한 정확한 기준 및 조사매뉴얼을 마련하여야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기관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법학논총 제21집 제1호, 446-47면, 2014.
- _____. "일본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제와 법 제도," 법과 정책 연구, 제10집 제3호, 2010, 14면.
- _____. 2011. "아동학대행위자와 그에 대한 조치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34: 97-115.
- 국회인권포럼. 2014. [아동학대 현황과 피해아동 보호방안] 워크숍 자료집.
- 김경태. 2004.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被害者學研究, 12(2): 205-232.
- 김경희, 이희연, 정익중, 김지혜, 김세원. 2013. "병원 학대피해아동보호팀의 아동학 대 사망사건 개입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4): 61-88.
- 김기현, 장화정, 김경희, 장희선. 2014. "한국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학대 특성 및 아동 보호서비스의 최종조치 관련 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6(4): 25-52.
- 김미정, 염동문, 이경은. 2013. "Cart 분석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21(1): 293-315.
- 김선숙, 유민상. 2012. "OECD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아동학대 발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아동학대로 인한 사망률 비교를 중심으로-." 『아동과권리』 16(4): 591-617.
- 김세원, 이정은, 정익중, 장화정. 2014.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현황과 예측요인." 한국 아동복지학 46(-): 25-56.

- 김세원. 2002. "아동학대 재발생의 영향요인".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수정, 이재연. 2011. "아동 보호를 위한 외국의 아동 학대 신고제도 연구." 아동과 권리 15(1): 21-43.
- 김은경. 2001.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 워보고서.
- 김잔디.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와 동향." 서울법학 제22권 제2호. 2014. 487면. . 2012. "특집 : 형사법 특집 ; 배우자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방안 -미국의 Greenbook 정책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3(0): 185-212.
- 김재엽, 류워정, 오세헌, 이현, 2014, "가정폭력의 세대 가 전이에 관한 연구: 여성의 생애주기 상 재피해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1): 81-101.
- 김재엽, 최권호. 2012. "중복학대 피해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비행행동: 신체학대와 방임의 중복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193-213.
- 김정옥, 류도희, 1997. "논문편: 부부폭력과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3): 205-22
- 김지혜, 정익중, 이희연, 김경희. 2013.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5(2): 131-154.
- 김현옥, 2005. "아동성학대의 가해자의 특성과 교정복지적 개입방안." 『교정복지연 구』(1): 137-150.
- 김형모. 2011. "아동학대의 실태 및 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 분석." 임상사회사업연구 8(2): 95-113.
- 노충래. 2002.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3(-): 123-154.
- 문선화. 1999. "부자가족에서의 아동의 문제와 복지대책." 한국아동복지학 8(1): 213-233.
- 문영희. 2014.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아동인권의 관점에 서-." 법학논총, 38(1): 155-182.
- 박량호. 2015. "특별기고(特別寄稿):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法曹 64(2): 5-56.

- 박명숙. 2002. "아동학대서비스에서 관련기관들간의 연계성에 관한 논의." 한국아동 복지학 13(0): 27-52.
- 박애리. 2014. "부모간의 폭력노출 및 학대받은 경험이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0): 503-528.
- 박진아, 이경숙. 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에 관한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幼兒教育研究 35(3): 27-54.
- 보건복지부 아동관리과, 『2012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83-4.
- 안동현, 장화정, 이영애, 홍강의, 이재연, 이양희, 조흥식, 곽영. 2003. "신고된 사례의 아동학대 실태와 후유증 연구." 아동과 권리, 7(1): 1-20.
- 안선경, 양지혜, 정익중. 2012.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영역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38(-): 331-358.
- 알란 켐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 연구회 역. 2001. 「가족학대·가족폭력」. 나남출판. 28. 양영임, 우남희. 2005.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외국의 아동정책 연구." 아동과 권리 9(4): 661-690.
- 엄명용. 2001.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8): 149-178.
- 오미희. "일본의 아동학대예방 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417면.
-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위원회. 2014 [정부의 아동학대예방대책이대로 좋은가] 발표회 자료집
- 윤선오, 박복숙. 20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식 연구." 福祉行政論叢 21(2): 25-59.
- 윤혜미. 1995. "아동학대 및 방임사례와 신고제에 대한 학부모 태도조사." 한국아동복 지학 3(1): 169-203.
- _____. 2007.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연구경향 분석." 한국연구재단 연구 성과물.
- 이경숙, 박진아, 신의진. 2015.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 유아의 외상 관련 증상 및 정신적 표상."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72-272.
- 이경숙, 박진아, 최명희. 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 및 상담 요구도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2): 227-252.
- 이봉주·김세원. 2005. "아동학대와 방임의 사회구조적 요인 : 빈곤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과권리』 9(3) : 347-373.
- 이상희 외 2명, "한·일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대한 비교 연구," 아동과 권리, 제12권 제3호, 2008, 239면.
- 이서원, 한지숙, 조유진. 2011. "초등학생의 가정내 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9(3): 103-127.
- 이소희. 1990. "兒童虐待 確認을 위한 家庭環境 分析 研究." 국내박사학위논문. 淑明女子大學校.
- 이수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 『21세기사회복지연구』: 139-162.
- 이윤호. 2011.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박영사.
- 이종화. 2007.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임상사회사업연구 4(1): 213-235.
- 이혜원, 윤혜미. 2010. "아동권리옹호의 이해와 제도화방안의 모색: 학대피해아동의 권리옹호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18: 107-127.
- 임동호. 2008.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안 고찰 -미국과 영국의 아동학대 보호를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6(4): 77-95.
- 장영인. "학대피해아동 보호에서의 아동권리와 부모권리의 균형모색." 『아동과권리』: 541-570.
- 장화정, 강미경, 신소현. 2000. "가정내 위기 요인과 아동학대의 관계." 아동과 권리 4(2): 125-138.
- 장화정. 2004. "아동학대와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과 권리 8(4): 777-792.
- 장희숙, 김예성. 2004. "가정폭력 행위자의 유형." 한국사회복지학 56(3): 303-325.
- 전영실. 2003. "가족특성과 아동학대 피해의 관계." 『피해자학연구』 11(2): 53-77.
- 정덕영. 2006. "아동학대 피해자의 심리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2(2): 3-38.
- 정채옥. 2002. "유아 교육 기관장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연구." 幼兒教育研究

- 22(1): 185-210.
- 정혜숙. 2009.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중복발생을 둘러싼 여성주의비판모델과 여성 복지적 과제의 검토."한국여성학 25(4): 110-139.
- 조민상, 장석헌. 201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57(-): 190-216.
- 조윤정, 신혜령. 201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경험과 인식에 관한 차이 및 신고행동의 영향요인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4(0): 213-237.
- 조은정. 2012.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학대경험 아동집단과 비경험 아동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29(-): 138-164
- 주소영. 2008. "아동학대와 탄력성의 관계에서 인지기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국내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 아동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걸음]. 워크숍 자료집
- 차영숙 문혜련. 2009.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유아교육기관의 아동학대." 한국영유 아보육학 58: 61-80.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48회 정기세미나, "아동학대와 아동인권," 22-23.
- 한성심, 송주미. 2008. "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유형분석을 통한 과제 연구." 아시아아 동복지연구 6(2): 121-141.
- 한지숙. 2004. "피학대아동의 가정복귀후 심리행동적 적응 요인." 국내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황옥경. 2002. "영국의 아동보호 제도 분석 : 스코틀랜드의 아동문제 청취제도를 중심으로." 『아동과권리』 6(1) : 5-30.

[국외문헌]

An Act Concerning the Care and Education of Neglected Children. 1866 Mass. Acts ch. 283.

- Belsky, j. 1993. Etiology of child maltreatment: A developmental-ecologic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3). 413
- Best, Joel. 1988. "What is child abuse? definition, typification, and domain expansion in claims-making." Society for the Study of Social Problems.
- Douglas P. Falconer, Child and Youth Protection, in 3 Social Work Yearbook 63, 65 (Fred S. Hall ed. 1935).
- Elmer, Elizabeth and Grace S. Gregg. 1967.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abused children." Pediatrics 40(4): 596.
- Fish, M. 1S. 1993. "Early patterns of mother-infant dyadic interaction: Infant, mother, and family demographic antecede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6(1): 1.
- Fletcher v. People, 52 Ill. 395. 1869.
- Hicks, F. M. 2000. "Family violence across the lifespan: An introduction, by ola W. barnett, cindy L. miller-perrin and robin D. perri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1: 296.
- Hussey, Jon M., Jen Jen Chang, and Jonathan B. Kotch. 2006. "Child maltreatment in the united states: Prevalence, risk factors, and adolescent health consequences." Pediatrics 118(3): 933-942.
- John E.B. Mayers, "A Short History of Child Protection in America," 42 Fam. L.Q. 449, 2008.
- Martin, H. P. B. 1977. "Behavioral observations of abused children."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19(3): 373.
- Mason, Mary Ann. 2005.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hildren's rights crusade: Leader or laggard?" Journal of Social History 38(4): 955-963.
- Meyerson, Lori A., Patricia J. Long, Robert Miranda Jr, and Brian P. Marx. 2002. "The influence of childhood sexual abuse, physical abuse, family environment, and gender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6(4): 387-405.

- Miller, Stephanie. 2002. "Child abuse and domestic violence." British Journal of Midwifery 10(9): 565.
- Muller, Robert T., Kristin Thornback, and Ritu Bedi. 2012. "Attachment as a mediator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ult symptomatology."

 Journal of Family Violence 27(3): 243-255.
- Nat'l Ass'n of Black Social Workers, Position Paper (Apr. 4-9, 1972).
- Ney, P. G., Fung, T., & Wickett, A. R. 1994. The worst combination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19(9), 705-714.
- Richard J. Gelles, The Book of David: How Preserving Families Can Cost Children's Lives (1996), 148-50.
- Siegel, L. J., B. Welsh, and J. J. Senna. 2006. Juvenile delinquency. Belmont, CA: Thomson/Wadsworth.
- Slep, A. M., and S. G. O'Leary 2001. "Examining partner and child abuse: Are we ready for a more integrated approach to family violenc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2):87-107.
- T. Styron & R. Janoff-Bulman(1997), "Childhood attachment and abuse:

 Long-term effects on adult attachment, depression, and conflict resolution", Child Abuse & Neglect., Vol. 21, 1015-1020.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11.
- Vincent De Francis, Protecting the Child Victim of Sex Crimes Committed by Adults 5. 1969.

Abstract

Studies on Child Abuse and its Victims:

Trends and Legal Policies

Kang, Eun-young · Kim, Hee-kyoon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trends of child abuse and investigate effective measures for preventing related crimes.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by 1) examining official statistics obtained from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abuse, 2) analyzing the criminal records of child abusers to differentiate among various types of offenders, 3) investigating the current legal strategies for child abuse used by Korean an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s, and 4) identify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strategies and exploring mor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child abuse.

Major legal policies of the present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States, the concept of 'parens patriae' has played great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child protection system. In the beginning, there were no governmental officials who dealt with battered children and the juvenile courts thought that child abuse was the problem of a family, so the solution must be found in the traditional dispute resolution process. However, passing the seventies and eighties, the Federal Government has begun to realize the severity of child abuse and come to legislate the basic tools for child protection, which is entitled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CAPTA). The details of the CAPTA will be summarized as follows.

In Japan, child abuse was known as 'hidden crime' or 'dark rumor' for a long time. It is hard to prosecute, and the prosecution is not always the best option for the victim.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tried not to see the reality as it is, it aggravates the victim's condition in a family and a society. It was about 15 years ago that the Japanese society has concluded that the child protection system was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suffering children and for revitali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members. The Child Abuse Prevention Act employed a lot of measures that guaranteed first of all safety of the children from offending parents.

The Child Welfare Law and the Punishment Law on Child Abuse in Korea has been deeply influenced by a series of the Japanese Child Protection legislation. We are trying to punish every child abuser even though he is the guardian of the victim and to introduce mandatory reporting system which requires that every citizen has to inform the law enforcement personnel of any accidents which are related with any kinds of child abuse. Despite of some flaws in the child protection system, various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institutions are working hard to save battered children from the on-going or imminent violence against them.

[**부록**]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지

아동학대 기록조사표 | (가해자용)

검찰청명	조사원성명	사례번호		

A. 범죄자의 죄명과 범죄경력 및 처리

1.	사건형제번호	형제

1)	아농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반(아동학대치사)
2	"	제5조 위반(아동학대중상해)
3	"	제6조 위반[상습(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카목의 각 죄명)]
4	"	제7조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5	"	그 외 위반()
6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위반(아동매매)
_		

- 7 제71조 제1항제1의2호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8) 제71조 제1항제2호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 강요·이용행위)
- ⑨ 제71조 제1항 제3호 아동복지법위반(양육알선금품취득, 아동금품유용)
- (II) 제71조 제1항 제4호 아동복지법위반(곡예강요행위, 제3자인도행위)
- ① 제72조 아동복지법위반[상습(제71조 제1항 각호 각 죄명)]
- (12) 7 제73조 미수범
- (13) " 그 외 위반()

2. 죄명

3. 경합여부	
---------	--

- ① 경합 아님(🖙 6번 문항) ② 동종 경합(🖙 5번 문항)
- ③ 이종 경합(☞ 6번 문항) ④ 동종+이종(☞ 5, 6번 문항)
- 4. 동종경합(코드 표기, 2번 문항 죄명 참조)
- 5. 이종경합 (죄명 표기)
- 6. 범죄 경력

① 총 체포횟수 회[수사+범죄경력조회]

② 총 전과 건[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제외]

③ 동종전과 건[아동학대]

④ 이종전과 건[아동학대 제외]

⑤ 실형전과 건

⑥ 첫 체포년도년

⑦ 아동학대로 인한 체포 횟수[수사+범죄경력조회] 회

6-1. 전과경력(향군법, 도로교통법 제외)(전과가 있는 사람에 한해 기입하시오)

※ 부족할 경우 뒷면에 기재하고 "뒷면기재"로 표기할 것

죄명	사건번호	처분결과	확정일자		

6-2. 전과가 아닌 아동학대/가정폭력 체포경력

죄명	처분결과	체포년도

7. 공범유무(아동학대의 공	범)								
① 공범 없음	② 공범 있음(명)							
7-1. 공범 간의 관계									
① 부부	② 동거인	③ 애인							
④ 친구, 선후배	⑤ 동네사람	⑥ 직장 동 료							
⑦ 친척	⑧ 모르는 사이	⑨ 기타 ()							
7-2. 가해자의 역할									
① 주도적 역할	② 보조적 역할	③ 단순가담							
8. 가해자 검거 경위									
① 자수	① 자수 ② 현행범 체포 ③ 피해자신고								
④ 신고의무자신고 (🖙	9번 문항)								

⑤ 제3자 신고(신고의무자 제외) ⑥ 다른 사건 조사 중 발각

⑦ 기타()

[※ 신고의무자 유형은 9번 문항 보기 참고]

9. 최초 신고자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1	교원	2	친부		
3	의료인	4	친모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6	계부		
7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8	계모		
9	보육교직원	10	양부		
11)	유치원 종사자	12	양모		
13	학원강사	14)	친조부		
15)	소방구급대원	16	친조모		
17)	응급구조사	18	외조부		
19	의료기사	20	외조모		
21)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22	친인척		
2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24	형제, 자매		
2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26	부·모의 동거인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27)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28	베이비시터		
29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0	위탁부		
31)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2	위탁모		
3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4	이웃		
35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36	낯선 사람		
37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38	기타()		
3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40	파악 안 됨		
41)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42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43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종사자				
44)	아동보호전문기관				

3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40	파악 안 됨
41)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42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43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종사자		
4	아동보호전문기관		
10. I	디해자수 (피해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11번 문학 총 명(남 명, 여 명)	항으로	이동)
	지해자 사이의 관계 (아동학대·성학대피해자 포함) 친형제·자매 ② 의붓 형제·자매	t, 중 ^集	록표시)
(3	③ 친구 ④ 친척		
Œ	© 모르는 사이 ⑥ 기타()
	'i해자의 범행 시인 정도 ① 전적으로 시인 ② 일부시인 ③ 부	.인	④ 알 수 없음
13. J	사건 후 가해자의 태도 ① 소극적으로 합의를 원함 ② 적극적으로 합의 ② 소극적으로 기소를 원함 ④ 적극적으로 기소	를 원	함
(일 수 없음		

14. 사건 후 피해자의 태도

① 처벌을 원함 ② 처벌을 원치 않음

 ③ 양가감정을 보임
 ④ 알 수 없음

1) 3	① 고소취소 함 ② 고소취소 안함										
16. 피해자 측의 합의서 여부 ① 합의안함 ② 단순한 선처요망 ③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 일부인정 ④ 피해자가 피의자의 범죄사실 일부 부정											
16-1.	피해기	다에게 {	준 위자.	료		<u>.</u>	<u> </u>				
17. 최종	등 판결	심급		심							
18. 구속	;여부										
① 3	구속			2	불구속			3	보석		
19. 검칠	처리현	<u> 황</u>									
① 3	구공판			② ·	② 구약식 3			3	기소중	지	
4	기소유역	계		⑤	⑤ 혐의없음			6	공소권	없음	
(7) E	라관송	ই]		8	⑧ 죄가안됨			⑨ 기타()			
20. 구형	념량(구 ⁹	약식, 구 	공판의	경우만)		1101 7 -	1				
구분		무기	유기	집행	건 보호	사의 구형 수강	사회	치료	보호		
	사형	징역	 징역	유예	관찰	명령	 봉사	감호	감호	벌금	기타
o/×											
형량											
21. 선고	21. 선고형량										
1			만역	원	2	집행유여]	개월			
3	징역		개	월	4 J	보호관칠	t		개월]	
5	사회봉/	나	개	월	6	기타			()	

15. 피해자 측의 고소취하 여부

22. 먼호인 선임 여부 ① 변호인 없음	② 사선 변호인	③ 국선 변호인
В. 🦩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ự 특징
23. 성별		
① 남	② 여	
24. 체포 당시 연령 만	세	
25. 국적		
① 국내	② 국외()
26. 주거지(번지 전까지 구체적	J으로 기술)	
27. 주거형태		
① 주거일정	② 주거부정	③ 알 수 없음
28. 교육정도		
① 무학 ② 구(호)조언	② 초(初)졸업	③ 중(中)졸업
④ 고(高)졸업 ⑦ 알 수 없음	⑤ 대(大)졸업	⑥ 대학원 이상
⊕ E IND		
29. 혼인상태		
① 미혼	② (혼인 전)동거	③ 결혼(초혼)
④ 재혼	⑤ 별거	⑥ 이혼
① 이혼(사별) 후 동거	⑧ 사별 후 동거	⑨ 별거 중 타인과 동거
⑩ 알 수 없음		

	① 있음	② 없 음	
31.	직업 (직업코드표 참조)		
32.	월평균 수입: 개인	원	
	가구	원	
33.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여부(복수응답)	
	① 정상	② 신체장애	
	③ 불안장애	④ 강박 및 관련 장애	
	⑤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	<u></u> 년 장애	⑥ 우울장애
	⑦ 양극성 장애	⑧ 정신분열 스펙트럼장애	
	⑨ 성격장애	⑩ 급식 및 섭식장애	
	⑪ 수면-각성 장애	⑫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	
	13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형	행 장애	④ 신경발달 장애
	⑤ 언어장애	16 틱(음성,신체,뚜렛)	☞ 파악 안됨
	18 기타()	
34.	적응·행동특성(복수응답)		
	① 주의산만	② 과잉행동	③ 인터넷(게임)중독
	④ 불안	⑤ 애착문제	⑥ 무력감
	⑦ 우울	⑧ 낮은 자아존중감	⑨ 성격 및 기질문제
	⑩ 반항, 충동 ,공격성	① 거짓말	12
	① 약물	① 음 주	⑤ 성문제
	⑥ 폭력행동	⑰ 대인관계 기피	18 파악 안 됨
35.	종교		
	① 개신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속	⑤ 종교 없음	⑥ 기타
	⑦ 미상		

30. 자녀여부

아동학대 기록조사표॥(사건용)

검찰청명	조사원성명	사례번호	피해자번호

A. 피해자의 특성 및 가해자와의 관계

1. 피해자 성별

① 남

(2) œ

2. 가해자 체포 당시 피해자 연령 만

세

3. 피해 기간

년

개월

4.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의 관계(중복표시)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1	교원	2	친부
3	의료인	4	친모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6	계부
7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8	계모
9	보육교직원	10	양부
11)	유치원 종사자	12	양모
13	학원강사	14)	친조부
15)	소방구급대원	16	친조모
17)	응급구조사	18	외조부
19	의료기사	20	외조모
21)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22	친인척
2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24	형제, 자매
2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26	부·모의 동거인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27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28	베이비시터
29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0	위탁부
31)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2	위탁모
3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0	파악 안 됨
35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37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3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41)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42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43	④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종사자		
44	아동보호전문기관		

5. 피해자 거주 지역(번지 전까지 구체적 기술, 중복 표시)

6.	피해자 교육 정도		
	①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② 초등재학	③ 초등졸업
	④ 중등 재학	⑤ 중등졸업	⑥ 고등학교 재학
	⑦ 교육경험 없음		
7.	피해자 동거가족 총	명 (모두 표시)	
	① 부	② 모	③ 양부
	④ 양 모	⑤ 아버지의 동거녀	⑥ 어머니의 동거남
	⑦ 조부	⑧ 조모	⑨ 친형제·자매
	⑩ 의붓 형제·자매	① 그 외 친척	① 시설 거주
	③ 동거가족 없음	④ 기탁()
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기	거여부	
	① 동거	② 비동거	③ 파악 안 됨

9. 피해아동의 가족유형(가해지	·기준)	
① 친부모가족	② 부자가정	③ 모자가정
④ 미혼부모가정	⑤ 재혼가정	⑥ 친인척보호
⑦ 동거 (사실혼 포함)	⑧ 소년소녀가정	⑨ 가정위탁
⑩ 입양가정	① 시설보호	⑫ 파악 안 됨
③ 기타()		
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개상	
① 수급권	② 비 수급권	③ 파악 안 됨
11. 학대 원인이 되는 피해야	동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여부(복수응답)
① 정상	② 신체장애	③ 불안장애
	⑤ 외상 및 스트레스 사	
⑥ 우울장애	⑦ 양극성 장애	⑧ 정신분열 스펙트럼장애
⑨ 성격장애	⑩ 급식 및 섭식장애	⑪ 수면-각성 장애
⑫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약	매 ③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 장애
④ 신경발달 장애	15 언어장애	(b) 틱(음성,신체,뚜렛)
⑦ 파악안됨)
12. 학대 원인이 되는 피해아	동의 적응·행동특성(복수응답)
① 주의산만	② 과잉행동	③ 인터넷(게임)중독
④ 불안	⑤ 애착문제	⑥ 무력감
⑦ 우울	⑧ 낮은 자아 존중감	⑨ 성격 및 기질문제
10) 반항, 충동, 공격성	① 거짓말	⑫ 도벽
③ 가출	⑭ 약물, 흡연, 음주	⑤ 성문제
16 학교부적응	⑰ 잦은 결석	⑱ 늦은 귀가
⑲ 학습문제	② 폭력행동	② 비행집단활동
② 불건전한 또래관계	② 대인관계 기피	② 대소변 문제
② 언어문제(비속어, 욕설	등) 26 파악 안 됨	

13. 사회적 고립 및 지역적 고립 여부					
① 예	② 아니요	③ 파악 안 됨			
※ 판단이유 기술					
B. 범죄	관련 사항 및 학대행위	특성			
14. 범행 장소(중복표시)					
① 아동 가정 내(가정 내)	② 학대가해자 가정 내(가?	성 내)			
③ 실외 공간	④ 가해자 피해자 공동주기	기			
⑤ 이웃집	⑥ 유치원	⑦ 학교			
⑧ 학원	⑨ 병원	⑩ 아동복지시설			
① 기타복지시설	⑫ 숙박업소	③ 종교시설			
④ 친척집	15 파악 안 됨	⑥ 기타()			
14-1. 주 범행 장소					
15. 가해자수	명(가해자포함)				
16. 사건 직전 가해자와 피해자	의 상호작용(중복표시)				
① 상호작용 없음	② 함께 대화	③ 함께 식사			
④ 함께 놀이	⑤ 함께 학습	⑥ 언어적 갈등(예: 말다툼)			
⑦ 물리적 갈등(예: 체벌)					
⑧ 비언어적 상호작용(예: 인	l어발달단계이전의 영아와의	눈 맞춤)			
⑨ 알 수 없음					
17. 학대유형(중복표시)		o wal			
① 신체적 학대	② 정서적 학대	③ 방임			
④ 유기	⑤ 살인치사				

18. 본 건의 복합학대 여부

(한 명의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19번 표기 후 판단)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9. 사건 발생 시 가해자의 행동(중복표시)

학대유형	번호	구체적 학대 행위	행위여부
	1	손, 발 등으로 때림	
	2	꼬집거나 물어뜯음	
	3	조르거나 비틀었음	
	4	할큄	
	5	도구로 때림	
	6	흉기나 뾰족한 도구로 찌름	
	7	화학물질이나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	행위여부
19-1신체학대	8	화상을 입힘	
19~1전세역대	9	강하게 흔듦	행위여부
	10	신체를 묶음	
	11	벽에 밀어 붙임	
	12	떠밀고 움켜잡음	
	13 던짐		
	14	거꾸로 매닮	행위여부
	15	강하게 흔듦 신체를 묶음 벽에 밀어 붙임 때밀고 움켜잡음 던짐 거꾸로 매닮 물에 빠뜨림 기타()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 언어폭력 잠을 재워주지 않음 벌거벗겨 내쫓음 형제·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함	
	16	기타()	
	1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 언어폭력	
	2	잠을 재워주지 않음	
	3	벌거벗겨 내쫓음	
	4	형제·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함	행위여부
	5	가족 내에서 소외시킴	
19-2 정서학대	6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함	
13 2 9 1 1 1	7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쫓음	
	8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데리고 다님	
	9	감금	
	10	약취 및 유인	
	11	노동 착취	
	12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	

학대유형	번호	구체적 학대 행위	행위여부
	13	기타()	
	1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2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방치	행위여부
	3	출생신고 하지 않음	
	4	아동을 가정에 두고 가출	
10 0 HEOL	5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짐	
19-3 방임	6	친족에게 알리지 않고 친족집 근처에 두고 사라짐	
	7	학교에 보내지 않음	
	8	무단결석205) 방치	
	9	의료적 처치나 개입을 하지 않음	
	10	기타()	
	1	보호하지 않고 버림	
10 4071	2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짐	
19-4유기	3	시설 근처에 버림	
	4	기타()	

20

٥.	신체적 학대의 경우 범행 도	구(중복표시)
	① 없음	② 빗자루, 효자손, 쇠파이프 등 막대기, 몽둥이
	③ 칼, 도끼 등 흉기	④ 유리병, 젖병
	⑤ 돌, 벽 등 자연물	⑥ 의자 등 가구
	⑦ 손, 발, 머리 등 신체	⑧ 물(뜨거운 물, 고춧물)
	⑨ 장난감	⑩ 가전제품(리모컨, 안마기, 다리미, 세탁기 등)
	① 베개	⑫ 스타킹, 허리띠 등 줄, 끈
	③ 악기(단소 등)	① 사 무용품 (자 등)
	⑤ 운동용품(검도 칼, 골프채,	, 야구방망이 등)
	16 음식, 토사물, 용변 등 강	제섭취
	⑪ 벌 세움(기마자세, 집 밖이	게 세워둠, 잠 안 재우기 등)
	18 금식	⑩ 화장실 안보내기
	20 기타()

21.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학대결과 (중복표시)

학대 유형	번호	구체적 징후	표시
	1	설명이 어려운 상흔	
	2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3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 상처	
	4	도구흔이 있는 상처	
	5	담배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등 다양한 화상자국	
	6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7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8	손목,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되는 붉게 긁힌 상처	
	9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21-1	10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신체적	11	대뇌, 망막,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긴 두피 등 복잡한 두부손상	
후유증	12	고막천공이나 귓불상처와 같은 귀 손상	
	13	골격계 손상 시간차 골절, 복합 골절	
	14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등 복부손상	
	15	폐좌상, 기흉, 흉막 손상	
	16	예방접종 및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17	지속적 악취	
	18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19	언어장애	
	20	극단 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21	기타()	
	22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 표출	
	23	공격적 혹은 위축된 극단적 행동 표출	
	24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21-2	25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정서적 ·	26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심리적 후유증	27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28	우울증상 및 부모 간 갈등을 더 많이 지각	
	29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30	기타()	
	31	비위생적 성장장애	
21-3 사회적 후유증	32	부모와 접촉회피(특히 분노를 포함하여 어머니에 대한 접촉회피)	
1-1 1 11 10	33	어른과의 접촉회피	

학대 유형	번호	구체적 징후	표시
	34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35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36	비행이나 도벽	
	37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38	잦은 결석	
	39	부모에 대한 두려움	
	40	부모 이외의 성인에 대한 두려움	
	41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42	기타()	
21-4	43	후유증 없음	
21-5	44	알 수 없음	

22. 학대 빈도(주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학대 포함)

(1)	ア	9	마	일

- ② 2~3일에 한 번 ③ 일주일에 한 번

- ④ 2주일에 한 번
 ⑤ 1개월에 한 번

 ⑥ 2~3개월에 한 번
- ⑦ 6개월에 한 번
 ⑧ 1년에 한 번
 ⑨ 일회성

⑩ 파악 안 됨

23. 가해자의 범행 시 음주 여부(주로)

- ① 전혀 마시지 않음 ② 약간 마셨으나 취하지 않음
- ③ 취했으나 의식은 있음 ④ 만취하여 의식 없음

24. 가해자의 범행 시 약물 여부(주로)

미복용

② 복용

25. 범행 동기/원인(중복표시)

번호	구체적 학대 동기 및 원인	표시
1	세상에 대한 원망과 혐오	
2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	
3	원치 않는 아동이거나 아동에 대한 온정 결핍	
4	장애아동에 대한 멸시나 천시, 장애아동 부모로서의 스트레스	

번호	구체적 학대 동기 및 원인	표시
5	아동양육에 도움을 줄 사회적지지 부족	
6	평소 폭력적 성향이 아동에게 적용	
7	가정 내 부부문제로 갈등, 별거 혹은 이혼 등	
8	별거 혹은 이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9	적대적·통제적 양육태도, 과도한 훈육	
10	아동에게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는 훈육	
11	여아에 대한 통제	
12	부모 역할과 양육에 관한 기술 부족	
13	알코올 중독	
14	약물중독	
15	어릴 적 학대 경험	
16	지나친 기대	
17	충동이나 감정 조절 불능	
18	가해자의 불안, 우울, 기타 정신질환	
19	생활고와 경제능력 부족	
20	산후우울증	
21	미혼모, 미혼부모의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살해	
22	보험금을 타려고	
23	성폭행, 성매매로 인한 임신	
24	미신, 종교	
25	기타()	

26. 피해아동 대상 제공 서비스

① 상담서비스	② 일시보호서비스	③ 심리치료서비스
④ 가족기능 강화서비스	⑤ 의료서비스	⑥ 고소·고발 지원서비스
⑦ 기탁()	

27.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공 서비스

① 상담서비스 ② 의료서비스

③ 심리치료서비스 ④ 가족기능강화서비스

C. 반복학대(본 건 전 동일 피해자에게 학대가 있었던 경우)

28. 본 건 전 학대 발생 여부			
① 있음 (🖙 26-1 문항)	② 없음		
28-1. 학대 발생 시 기관개입	여부		
① 있음(🖙 25-2문항)	② 없음		
28-2. 개입 기관			
① 경찰	② 아동보호전문기관	③ 병원	
28-3. 반복학대 발생 전까지의	의 기간		
28-4. 본 건 전 처분 여부			
① 구공판	② 구약식	③ 기소중지	
④ 기소유예	⑤ 혐의없음	⑥ 공소권 없음	
⑦ 타관송치	⑧ 죄가안됨	⑨ 기탁()

28-5. 본 건 전 피해아동 조치결과

D. 가정 내 학대 특성

- 29. 가정 내 중복학대(한명 혹은 여러명의 가해자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여부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30. 피해자 외 학대피해 가족 구성원 및 피해유형(중복표시)

표시	연번	관계	표시	연번	유형
	1	부		1	아동학대
	2	모		2	가족폭력
	3	양부		3	성폭력
	4	양모		4	살인치사
	5	아버지의 동거녀		5	기타()
	6	어머니의 동거남			
	7	조부			
	8	조모			
	9	친형제ㆍ자매			
	10	의붓 형제·자매			
	11	그 외 친척			
	12	파악 안 됨			

- 31. 피해자 부모의 평소 부부관계
 - ① 원만함
- ② 특별한 갈등 없음 ③ 사소한 말다툼

- ④ 잦은 말다툼
 ⑤ 잦은 폭력적 갈등
 ⑥ 대화 단절
- ⑦ 부부역할 전도 ⑧ 해당 없음
- ⑨ 파악 안 됨

- 32. 부부 직업 유무

 - ① 남편만 직업 보유 ② 아내만 직업 보유
 - ③ 남편과 아내 모두 직업 보유 ④ 남편과 아내 모두 무직

⑤ 알 수 없음

33. 피해자의 평소 형제관계

- ① 원만함
- ② 특별한 갈등 없음 ③ 사소한 말다툼

- ④ 잦은 말다툼
- ⑤ 잦은 폭력적 갈등
- ⑥ 대화 단절

- ⑦ 해당 없음
- ⑧ 파악 안 됨

34. 가해자의 평소 양육태도

- ① 보호자의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② 아동양육에 무관심
- ③ 아동을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로 여김
- ④ 체벌을 당연시
- ⑤ 양육에 적극적
 ⑥ 알 수 없음
- ⑦ 해당 없음

35. 가해자의 평소 대인관계(외부인의 가해자에 대한 평가)

- ① 원만함
- ② 폭력적(잦은 다툼) ③ 대인관계에 소극적

④ 알 수 없음

36. 가해자의 성장 시 학대 경험여부

- 있음
- ② 없음

37. 피해자 부모의 배우자에 대한 행동(중복표시)

유형	정도	구체적 행위	표시
37-1	1. 약한 폭력	물건을 던짐, 팔을 비틀거나 머리를 잡아당김, 밀치는 행동, 움켜잡는 행동, 뺨을 때림	
신체 폭력	2. 심한 폭력	칼이나 총 사용, 물건으로 때림, 목을 조름, 벽 쪽으로 밀침, 손으로 몸을 때림, 고의로 화상(담뱃불로 지짐)	
37-2	1. 약한 폭력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 고함이나 소리, 문을 크게 닫는 행동, 악의에 찬 말	
심리 폭력	2. 심한 폭력	피해자의 소유물 부심, 쓸모없는 사람 취급, 물건이나 행동으로 위협, 뚱뚱하거나 못생겼다고 함	
07.0	1. 약한 폭력	강제적인 성관계 요구,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싫어하는 체위 의 성관계 강요	
37-3 성적 폭력	2. 심한 폭력	싫어하는 체위의 성관계를 하기 위해 무력사용, 성관계를 갖기 위해 무력사용, 성관계를 갖기 위해 위협, 성관계를 갖기 위해 협박 사용	
37-4	1. 약한 폭력	삐거나 타박상 또는 작은 상처, 부부싸움으로 다음날까지 몸이 아픔	
상해	2. 심한 폭력	머리를 때려 기절, 부부싸움으로 다쳐서 병원에 감, 부부싸움으로 인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음, 뼈가 부러짐	

38. 피해자 부모의 부부싸움 시	동기					
① 배우자의 권리주장으로	인한 자존감 하락					
② 의사소통 부재/비난적 9	의사소통					
③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	③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					
④ 스트레스						
⑤ 분노(보살핌부족, 가장으	l 역할 당연시, 의심, 비교, 여	어머니역할 부 족)				
⑥ 알콜 중독/음주						
⑦ 경제적 문제						
⑧ 고부 갈등						
⑨ 가부장적 성역할						
⑩ 도박						
① 외도						
⑩ 편집증적 성격(의처증/의						
⑬ 성격장애/편집장애/정신	과석 문제					
(중복표시)						
	_					
39. 학대행위 직후 가해자의 태년						
① 용서를 구함		③ 피해자의 탓으로 돌림				
④ 기타()					
40. 학대 당시의 피해자의 저항	정도					
① 저항하지 못함	② 언어적 저항	③ 물리적 힘				
④ 도주 시도	⑤ 파악 안 됨	⑥ 도움요청				
⑦ 기타()					
41. 비 가해 가족의 학대 당시	태도					
	② 적극적으로 말림					
④ 알 수 없음	⑤ 해당 없음	⑥ 기타()				

42.	사건 후 친권 제한 및 박탈	여부			
	① 친권 제한	② 친권 유지	③ 친권 박탈		
	④ 알 수 없음	⑤ 해당 없음			
43.	피해아동 조치결과(1~6_격리	보호, 7_원가정보호)			
	① 일시보호	② 친인척보호	③ 장기보호		
	④ 연고자에 의한 보호	⑤ 병원입원	⑥ 가정위탁		
	⑦ 원가정보호(☞ 43-1번 등	문항)	⑧ 사망		
	⑨ 타 기관 의뢰				
4	43-1. 원가정보호 아동의 가정	형 복귀 시기			
	① 1개월 이내	② 1~3개월 사이	③ 3~6개월 사이		
	④ 6개월~1년 사이	⑤ 1년 이상	⑥ 기탁()		
E. 비가족 내 학대(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 특성					
	E. 비가족 내		학대) 특성		
	E. 비가족 내	학대(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 특성		
		학대(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 특성		
44.	가해자의 직책				
44.	가해자의 직책	학대(시설종사자에 의한 ② 중간관리자(예: 원감, 주			
	가해자의 직책				
	가해자의 직책 ① 시설장 가해자의 자격증 보유 유무	② 중간관리자(예: 원감, 주			
	가해자의 직책 ① 시설장 가해자의 자격증 보유 유무 ① 있다	② 중간관리자(예: 원감, 주 ② 없다	임 등) ③ 일반종사자		
	가해자의 직책 ① 시설장 가해자의 자격증 보유 유무	② 중간관리자(예: 원감, 주 ② 없다	임 등) ③ 일반종사자		
45.	가해자의 직책 ① 시설장 가해자의 자격증 보유 유무 ① 있다	② 중간관리자(예: 원감, 주 ② 없다	임 등) ③ 일반종사자		
45.	가해자의 직책 ① 시설장 가해자의 자격증 보유 유무 ① 있다 (시설 종사자의 교육관련 자 가해자 종사 기관	② 중간관리자(예: 원감, 주 ② 없다 격증 - 자료 참고) ※ 있는 2	임 등) ③ 일반종사자 영우 기재:)		
45.	가해자의 직책 ① 시설장 가해자의 자격증 보유 유무 ① 있다 (시설 종사자의 교육관련 자 가해자 종사 기관 ① 어린이집	② 중간관리자(예: 원감, 주 ② 없다 격증 - 자료 참고) ※ 있는 7 ② 유치원	임 등) ③ 일반종사자 경우 기재:) ③ 가정위탁시설		
45.	가해자의 직책 ① 시설장 가해자의 자격증 보유 유무 ① 있다 (시설 종사자의 교육관련 자 가해자 종사 기관 ① 어린이집 ④ 일시보호소	② 중간관리자(예: 원감, 주 ② 없다 격증 - 자료 참고) ※ 있는 7 ② 유치원 ⑤ 장기보호소	임 등) ③ 일반종사자 경우 기재:) ③ 가정위탁시설 ⑥ 지역아동센터		
45.	가해자의 직책 ① 시설장 가해자의 자격증 보유 유무 ① 있다 (시설 종사자의 교육관련 자 가해자 종사 기관 ① 어린이집	② 중간관리자(예: 원감, 주 ② 없다 격증 - 자료 참고) ※ 있는 7 ② 유치원	임 등) ③ 일반종사자 경우 기재:) ③ 가정위탁시설		

47. 가해자의 종사기간(경력)		
① 6개월 미만	②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5년 미만	⑥ 5년 이상
⑦ 10년 이상	⑧ 기타()
48. 가해자의 근무 형태		
	@ Z -1-10	○ -l=l=n
	② 주간근무	③ 야간근무
④ 기타		
49. 가해자의 근무시간(주)		
① 4시간 이내	② 8시간 이내	③ 8시간 이상
④ 12시간 이상		
50. 가해자 종사 시설유형		
① 민간	② 국공립	③ 가정 ④ 법인
⑤ 기타()		
51. 가해자 종사 시설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여부(유치원	실, 어린이집의 경우)
① 준수	② 초과	③ 미만
52. 가해자 종사 시설 내 카메리	·설치여부	
① CCTV	② IPTV	③ 없다
④ 기탁()		

F.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 사건 기록조사

53. 사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24시간기준	<u>=</u>)		
54. 사망 당일 학대	시 지속시간					
① 1시간 미만		② 2-4시	간 정도		③ 5-7시간	<u> </u>
④ 8시간 이상		⑤ 파악 여	안 됨			
55. 직접적인 사망	원인					
① 뇌출혈		② 질식시	ŀ		③ 익사	
④ 외상성 쇼크						
⑥ 두개골 골 ²	절로 인한 경막	출혈				
⑦ 전해질 이상	-	⑧ 복막염]		⑨ 다발성	출혈
① 패혈		① 외상성	심정지		① 기타()
56. 사망에 이르기	전 피해자 상태	태(중복응답	달)			
① 몸이 차가워	짐	2	호흡 불규칙			③ 열 발생
④ 바지에 오줌	을 싸는 등	기상행동	(5)	구토		⑥ 두통
⑦ 입과 코에 3	피를 흘림	8	경기 일으킨]		9 복통
⑩ 잘 먹지 못함	함	11)	기타 ()		⑫ 파악안됨
57. 사망에 이르기	전 학대행위지	의 조치				
① 방치		② 약 복	<u> </u>		③ 119 신	卫
④ 병원진료		⑤ 누군기	l에게 도움 요	L청		
⑥ 파악안됨		⑦ 기타()			

58. 아동 사망 후 학대행위자의 조치

① 자수 ② 거짓신고(911/112 등) ③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

 ④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
 ⑤ 그냥 현장에 머뭄
 ⑥ 도주

⑦ 기타()

58-1.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내용:

59. 범행현장 특성

항목		그렇다	아니다
사체처리 (유기)방식	1. 사체(안면) 숨김	(1)	(0)
	2. 사체(몸) 숨김	(1)	(0)
	3. 다른 물건(담요 등)으로 사체를 덮음(전신)	(1)	(0)
	4. 다른 물건으로 사체를 덮음(얼굴)	(1)	(0)
	5. 범죄현장 은폐/조작	(1)	(0)
	6. 사체 이동(범죄현장 내에서)	(1)	(0)
	7. 사체 유기(범죄현장 내에서)	(1)	(0)
	8. 사체 유기(범죄현장 외로)	(1)	(0)
	9. 사체 혹은 범죄현장에 방화	(1)	(0)
	10. 사체를 물속에 유기	(1)	(0)
사체처리	11. 사체 암매장	(1)	(0)
특성	12. 사체를 닦거나 목욕시킴	(1)	(0)
	13. 옷을 갈아입힘	(1)	(0)
	14. 사체 일부 절단(손가락 등)	(1)	(0)
수사방해	15. 지문, 혈흔, 상처, 멍 자국 등을 없앰	(1)	(0)
	16. 멍자국, 혈흔 등 증거를 감추기 위한 노력시도 (인터넷 검색, 주변사람에게 묻는 등)	(1)	(0)
범행의 우발성	17. 현장에 있던 무기사용	(1)	(0)
	18. 범행 전 음주	(1)	(0)
살인방법	19. 목을 졸라 질식사	(1)	(0)
	20. 베개 등으로 눌러 질식사	(1)	(0)
	21. 손발로 때려 사망시킴	(1)	(0)
	22. 독극물/약물 주입	(1)	(0)
	23. 소금중독	(1)	(0)
	24. 욕조 등 익사시킴	(1)	(0)

	항목	그렇다	아니다
	25. 도구로 때려 사망시킴	(1)	(0)
	26. 굶겨서 사망시킴	(1)	(0)
피해자 상처부위	26. 몸통	(1)	(0)
	27. 목	(1)	(0)
	28. 얼굴	(1)	(0)
	29. 머리	(1)	(0)
	30. 팔다리	(1)	(0)
	31. 치아	(1)	(0)
	32. 성기	(1)	(0)
피해자 상처유형	33. 1개 상해	(1)	(0)
	34. 한 곳에 여러 개 상해 흔적	(1)	(0)
	35. 여러 곳에 여러 개 상해 흔적	(1)	(0)
피해자 통제방법	36. 결박	(1)	(0)
	37. 재갈	(1)	(0)
	38. 눈을 가림	(1)	(0)
	39. 가둠	(1)	(0)

59-1. 사체 유기 장소

60. 피해자의 저항정도		
① 저항하지 못함	② 언어적 저항	③ 물리적 힘
④ 도주 시도	⑤ 파악 안 됨	⑥ 도움요청
⑦ 기탁()	

 ① 저수지
 ② 집 안
 ③ 야산

 ④ 기타(
) ⑤ 파악 안 됨
 ⑥ 해당 없음

연구총서 15-AA-09

아동학대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